

2020년도 상반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백서

2021. 2.



목 차

I.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주요경과	1
II.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5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건, '19.5.10)	7
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속기록, '19.5.10)	72
3.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안건, '19.8.23)	14
4.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속기록, '19.8.23)	16
III. 재승인 신청 안내	⑩
1.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신청 안내	17
IV. 시청자 의견청취	191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198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❸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211
1.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안건, '18.12.12)	❸
2.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속기록, '18.12.12)	❸
3.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안건, '19.1.29)	❸
4.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속기록, '19.1.29)	❸
5.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안건, '19.11.22)	❸
6.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속기록, '19.11.22)	❸
7.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안건, '20.2.19)	❶
8.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속기록, '20.2.19)	❸

VII. 재승인 심사	289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291
2. 세부 심사기준	293
3. 심사평가 결과	316
4. 심사의견서	324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3
1) 제1차 회의	336
2) 제2차 회의	359
3) 제3차 회의	410
4) 제4차 회의	471
5) 제5차 회의	478
6) 사업자 의견청취	532
VIII. TV조선 청문	629
1. TV조선 청문조사	631
2. TV조선 청문주재자 의견	636
VIII. 채널A 의견청취 관련	643
1. (주)채널에이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주요내용	6
IX. 재승인 의결	649
1.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20.3.26)	651
2.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20.4.20)	667
3.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20.4.20)	692
X.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7
1.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77

I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주요경과

주요 경과사항

- o '19. 5. 10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o '19. 8. 23 「'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o '19. 9. 3 재승인 신청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 o '19. 9 ~ 10월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신청서 접수
- o '20. 2. 19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위원회 보고
- o '20. 3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20.3.16~20)
- o '20. 3. 18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 의견청취
- o '20. 3. 26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
- o '20. 4. 9 채널A 의견청취
- o '20. 4. 10 TV조선 청문 실시
- o '20. 4. 20 TV조선, 채널A 재승인 의결

II.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건, '19.5.10)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 - 21 - 092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19. 5. 10.	
공개여부	공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9. 5.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 5. 10.(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1. 의결주문

- 「방송사업자 재허가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을 「붙임」 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 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여 2019년 이후에 허가 ·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8. 2월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관련 방통위 사무처 의견수렴

- '18. 7~11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 미디어 2인, 회계 1인, 법률 1인, KISDI 1인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18. 12. 18.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

- '18. 12. 26.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방통위 보고

- '19. 1. 2 ~ 1. 18.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 '19. 2. 19.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 '19. 4. 17.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

4.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 대상

(재허가·재승인 만료일 기준)

구분	19년	20년	21년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DTV) 라디오	12월(지역MBC 13개사, OBS, 지역민방 7개사 등 33개사)	12월(KBS, MBC, SBS, EBS, 지역MBC 3개사 등 10개사)	12월(CBS, 극동방송, 국악 방송)
	초고화질 텔레비전 (UHDTV)	12월(수도권KBS, MBC, SBS)	12월(지역KBS, 지역MBC 7개사, 지역민방 6개사 등 14개사)	-
	이동 멀티미디어 (DMB)	12월(안동MBC,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12월(KNN, 수도권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12월(지역KBS, 부산 MBC, 광주MBC, 대전 방송 등 7개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	3월(YTN, 연합뉴스TV) 4월(TV조선, 채널A) 11월(JTBC, MBN)	-	-

※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과 공동체라디오FM 7개사(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는 '22년도 심사 예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제5호·제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심사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 보도
	TV	R	DMB	공동체R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의 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함

라.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 (유효기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부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종전과 같이 50%로 변동이 없으며, 중점 심사사항 이외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변경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 감점 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 (중점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마.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 개선
 -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 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 *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유도하되, 기존의 우편, FAX, E-mail 의견 접수도 배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반영

※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및 기본계획(안) 반영 여부·사유 등은 붙임2 참고

7. 향후 계획

-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 수립
 - ※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

- 붙임 1.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1부
2.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2019. 5.



방송통신위원회

□ 대상 방송사업자

- o 2019년 1월 1일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만료일 기준)

구분	19년	20년	21년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DTV) 라디오	12월(지역MBC 13개사, OBS, 지역민방 7개사 등 33개사)	12월(KBS, MBC, SBS, EBS, 지역MBC 3개사 등 10개사)	12월(CBS, 극동방송, 국악 방송)
	초고화질 텔레비전 (UHDTV)	12월(수도권KBS, MBC, SBS)	12월(지역KBS, 지역MBC 7개사, 지역민방 6개사 등 14개사)	-
	이동 멀티미디어 (DMB)	12월(안동MBC,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12월(KNN, 수도권KBS, MBC, SBS, YTNDMB, 한 국DMB, 유원미디어)	12월(지역KBS, 부산MBC, 광주MBC, 대전방송 등 7개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	3월(YTN, 연합뉴스TV) 4월(TV조선, 채널A) 11월(JTBC, MBN)	-	

※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과 공동체라디오FM 7개사(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는 '22년도 심사 예정

□ 심사 기본방향

- o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등을 중점 심사
- o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o 지상파 TV · 라디오 · DMB, 공동체라디오, 종편 · 보도PP 각 매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를 위촉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 제시 등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한 현행 심사사항의 틀과 매체별 배점은 심사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지함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250	250	200	350	210	260
2.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통해 매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사를 진행함

- (공익성 개념의 중복 해소 및 명확화) 공익성 심사는 프로그램 편성 위주로, 공적책임·공정성 심사는 제도적 장치 위주로 심사

< 공익성과 공적책임·공정성 심사사항 비교 >

공익성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재난방송 편성실적 등 프로그램 편성 위주로 심사
공적책임·공정성	프로그램 품질 제고 노력(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선거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편성 규약 제정·공표 실적 등

- ※ 기존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던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실적은 현행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심사

- (편성수급·제작투자 구분 및 투자 심사 항목 조정)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가 혼재되어 평가받지 않도록 두 항목을 분리 신설*하고, 투자는 프로그램 투자 항목과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항목에서만 심사하도록 조정

- * 종편PP는 기존 평가항목(수급, 제작, 협력)을 프로그램 투자 평가항목으로 대체하고, DMB는 기존 평가항목(DMB전용 프로그램 (재)제작)에서 프로그램 투자 실적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투자 평가항목을 신설하지 않음
- (경영 관련 심사의 내실화) 인력운영, 재원조달 등 관리역량과 함께 중장기 경영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으로 변경
- (외주 상생제도 평가 강화)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항목을 '외주 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변경하여 외주상생방안 심사를 강화
- (지역방송사 특성 반영) 지역 방송사의 자체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평가' 항목을 신설
- (종편PP '프로그램의 균형 편성' 항목 추가) 종편의 특정 장르(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과다 편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심사
 - o 매체별·채널별 구분 없이 방송평가는 40%,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는 60%를 반영(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외)
 -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를 반영

※ 종전 재허가·재승인 시 이미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o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
 - '세부 심사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등

-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3년을 부여
※ 유효기간 차등화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다른 경우(예, 포항CBS와 광주CBS 점수가 다른 경우), 유효기간 차등 부여로 오히려 해당 방송사가 매년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일한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예외 규정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부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종전과 같이 50%로 변동이 없으며, 중점 심사 사항 이외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변경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 감점 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 (중점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시청자 의견수렴 방식 개선

- o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유도하되, 기존의 우편, FAX, E-mail 의견접수도 배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

- o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반영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안)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지역)	50(비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정도*** ⑯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⑯으로 병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지역)	50(비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 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2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40(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1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⑬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제작 투자 실적 심사 포함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공동체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①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② 청취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 실적 및 계획	120(비계량) 80(비계량) 150(비계량)	35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④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⑤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50(비계량) 50(비계량)	200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⑥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⑧ 재무적 건전성 ⑨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0(비계량) 50(계량) 120(비계량) 50(비계량)	350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⑩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⑪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⑫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감점(계량)* 감점(계량)* 100(비계량)	100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40(비계량)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⑪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속기록, '19.5.10)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5. 10.(금) 09:3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옥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 — — — —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21-092)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9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8년 2월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관련 방통위 사무처 의견수렴 후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 18일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 26일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을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19일 사업자 의견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4월 17일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 ~15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심사사항은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사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합니다.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에 3년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행점검주기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선정하여 점수대별로 차등화하였습니다. 조건부가의 경우에도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종전과 같이 50%로 변동이 없으나, 중점 심사사항 이외의 심사사항의 과락 기

준을 40%에서 50%로 변경하였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에는 감점 항목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매체별 심사항목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의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등의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수렴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및 기본계획(안) 반영 여부와 사유 등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별 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제4기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크게 6개 심사사항과 매체별 심사항목을 재검토하고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상파TV와 DMB, 종편PP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작년 말 재허가·재승인 개선안 보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임 위원들도 이달 초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방송사 임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한 의견들은 가능한 한 수용했다고 평가합니다. 방송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과락 기준을 높인 이유는 방송사업자들의 공적책임과 관리 능력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시청자 복지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과락 항목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며, 방송사들에 대한 시청자와 방통위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라 여기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높였음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상향된 기준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각 방송사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경영전략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전략수립이 어렵다거나 영업 비밀에 해당되므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영전략의 수립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영전략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방송과 경영환경 변화와 내부 역량을 감안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려 노력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경영성과는 경영전략을 잘 세웠

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립된 전략을 제대로 실행해 내느냐 하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실행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전략의 공개 수준도 각 방송사가 세부계획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상장회사의 대부분이 경영전략을 공개하고 주주들과 투자자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가운데 시청자 의견수렴 방식은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접수를 하는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중심, 시청자 중심의 능동적 방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청점유율 조사 때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사방식으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방송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재허가·재승인 사전계획안에 담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적인 변화 의지를 잘 읽어내고 적극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성가신 제도가 아니라 방송사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성장과 발전계획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육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하셨으니까 저는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수정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이 과락점수를 더 높여서 강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사업자들 의견청취를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다들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락점수를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신중하게 배점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올리는 것을 혼자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개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배점을 할 때 비례량 정성평가가 약 60% 정도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주관적인 자의적인 심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여권에 우호적인 분들이 더 많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심사가 공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방송사업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될 경우에 자칫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해서 또 그런 방송을 해 왔던 방송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또 심지어는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비례량 정성 평가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제로 올려서 중기과제 정도로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보해낼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송사업자들도 승복을 할 테고, 또 그만큼 심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기본계획의 수정안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이 중점 심사사항에 조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도 종편사업자나 보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중점심사항목에 대해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과락을 받을 경우에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진즉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파 사업자들이, 특히 공영방송들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중점심사항목, 예를 들어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방송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은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라도 소위 말하는 세칭 메이저방송이라도 재허가 심사 때 중점심사항목, 방송의 공정성, 또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편파방송을 계속 할 경우에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경종을 울려 주는 의미에서 저는 사무처의 중점심사항목을 강화한 것을 환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고, 생각 같아서는 공영방송은 이런 공정성, 공적책임에 관한 중점심사항목을 과락을 60% 이상으로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새로 배점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경영전략이라고 하면 거기에 영업비밀도 있을 수 있고, 또 각 방송사업자마다 어느 점에 치중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경우에는 전략 배점을 당초 30점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다가 20점으로 낮추고 재무적 안정성에 오히려 배점을 10점 정도 더 높여서 조정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청취 결과 그렇게 조율된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종합편성채널일 경우에는 이 배점이 경영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20점으로 매겼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변동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런 부분이 일부 종편사업자들이 왜 지상파는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경영전략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점을 낮추어 줬는데 왜 여전히 종편은 경영전략을 50점으로 높이 배점을 매겼느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상파까지는 못 낮추더라도 50점에서 40점 정도로 약간 낮추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 배점을 조율할 수 있는지 제안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상파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

그리고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의가 없으며,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의견청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많은 논의를 하였고, 저는 이 안 자체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3기 때부터 방통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감한 재허가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종편들도 그렇고 지상파도 했고,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심사위원 추천단체 선정부터 해서 그 단체에서 대체로 3배수 정도 추천해 오면 거기에서 어떤 분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킬 지까지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단체, 그 추천단체에서 추천한 분들 중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3기 때는 애당 추천위원으로서 방통위원을 했지만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여권에 우호적인 심사위원 선임이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3기 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관행이었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점심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과락 제도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과락 제도라는 것이 중점심사항목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나 공적책무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국장님 그런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과락 문제 중점심사항목도 있고 중점이 아닌 것도 있고, 기존에는 중점만 50%를 과락으로 하고 나머지 중점이 아닌 것은 40% 하다가 이번에 중점이 아닌 것까지 다 50%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락제도가 있는 것이 중점심사항목입니다. 그래서 과락제도 부분은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에 대해 그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과락을 맞았다면 우리가 재허가 불허 그리고 재허가나 재승인을 주더라도 조건부로 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락제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부분 이런 심사를 할 때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들이 운영하는 과락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심사 시 과락제도 다 운영하고 있고, 유료방송도 마찬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락 제도는 이런 허가 심사나 인가 심사에 있어서는 통상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재승인이나 재허가 제도의 무용론이 나온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특정 사업자들은 공적책임이나 공익성·공정성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에서 매우 높은 점수로 그냥 무난하게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상파 사업자들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 재허가 불허할 수 있는 점수인 650점 미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부과하고 재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방송사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 재허가·재승인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앞으로 심사할 사업자 중에서는 어쩌면 세 번째로 재허가나 재승인 불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의 공적책무·공익성·공정성 구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심사절차를 진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무처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제가 사전 논의할 때도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심사점수가 650점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상파나 종편사업자들이 반대해 왔습니다. ‘규제기관의 자의성과 임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견으로 보면 수용인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과거처럼 하자는 것인데 과거처럼 했다면 우리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도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준에도 650점 미만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조건을 붙인 케이스가 있고, 650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조건의 강도에 차이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50점 이상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형태의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썼던 부분인데 사업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행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가져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인적으로 사전 보고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650점 미만 사업자는 사실상 불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방송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허가·재승인 신청서가 불합격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라도 방송을 잘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허가 불허하면 정리되지만 조건부로 재허가 할 때는 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이 방송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추가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리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용이 안 됐지만 외주상생제도 평가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평가와 중복이 된다, 아니면 특정사업자의 경우 경영위기를 증폭시키고 고착시키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자

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여년 외주제작제도가 운영되면서 솔직히 지상파들이 외주제작시장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제작현장에서 제작진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최근에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외주제작 개선대책, 이러한 것들이 조건에 안착이 되어서 외주제작 시장이 투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또 허 옥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도 큰 골격에 대해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두 가지만 우선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관리라는 항목,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배점은 지상파 사업자들은 의견을 줘서 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수용되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종편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종편 전체 4사의 의견인지…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편·보도PP 쪽에 의견을 물어봤고 그중 특정 2개사에서 지상파와 동일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재허가·재승인 업무, 또 허가 승인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심사위원장을 방통위원 또는 외부 인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통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방통위원회가 방송사업자 간의 비대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장을 방통위원이 맡아야 한다, 앞으로 상세하게 논의할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민감성을 감안해 해오던 종편과 보도전문PP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는 거둬내고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초반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할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한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진 부위원장께서 중기과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중기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기준점은 650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650점에 미달했을 때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는데 구간 설정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620점이든지 600점이든지 그런 구간을 설정해서 그 미만은 아예 재허가를 거부한다, 재승인을 거부한다, 그다음에 가령 700점 이상은 어떤 권고사항도 없이 재허가·재승인을 한다, 이런 별도의 구간 설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때때마다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3회일 경우에는 아예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중기과제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업자들을 옥죄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하는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자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경영이나 또는 공익적·공공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입니다. 즉, 심사기준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상파는 당초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30점 부분을 20점으로 낮추어졌고, 재무적 안정성을 위하여 20점에서 30점으로 10점 배점 조정을 했는데, 왜 종편은 이것을 바꾸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종전 종편 출범 이후 또 안정적인 사업의 계획과 운영을 위해 용어만 ‘경영전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지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쭉 50점 항목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항목 자체에서 기존 종편의 경우에는 경영전략이라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향후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서 심사가 되어 왔고, 그에 비해 지상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상에서 주로 조직이나 인력 운영과 같은 관리적인 측면 위주로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저희가 안을 냈을 때 종편의 경우에 거부감이 지상파에 비해 낮았고, 지상파는 사실상 새롭게 뭔가 대단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를 강하게 했던 것이고, 종편에서는 특별히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런 면에서 사실상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전략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종편은 심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점수가 유지된 반면에, 지상파TV는 경영전략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지상파 사업자들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점을 조정하여 재무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차후에 경영전략 배점을 높인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종편PP의 경우 종전에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경영전략 및 관리실적, 계획의 적정성이 50점으로 되다가 갑자기 이 항목의 배점을 변경할 경우에 종편PP사 내부에 있어서 심사의 유불리가 갈리는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기존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심사기준의 명확화, 일관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차후라도 제대로 된 리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종전 기준의 일관성, 그리고 이 기준을 바꿈에 있어서 종편PP 내부에 있어서 유불리가 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존경하는 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파와 달리 종편 심사 때 블라인드 심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비대칭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블라인드를 걷어내는 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재허가·재승인 심사 위원장을 내부에서 방통위원회가 맞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달리 종편·보도PP 심사 때는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위촉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에 아주 중립적인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에 방통위원 구성이 아무래도 여야 3:2 구도로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한쪽 정파 쪽을 더 많이 반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맡으시는 분이 그런 정파적 이해를 걷어내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국장님, 심사 위원장은 당장 오늘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심사위원장 문제는 나중에 심사에 임박해서 세부심사기준 만들 때 그때 결정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게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을 정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표 위원님께서 점수 배점, 총점 650점 이하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거나 조건부로 재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재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점수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아예 방송을 폐쇄하는, 문을 닫게 하는 이런 구간을 하나 설정하는 것이 당초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것이 비계량 정성평가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이런 심사구조 때문에 자칫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계량 정성평가에서 지나치게 과락 점수를 집단으로 심사위원들께서 줄 경우에 어느 방송사 하나를 폐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언론탄압이지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놓고 마지막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점수를 설정해서 그 이하로 받으면 자동으로 바로 문을 닫게 하는 이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그런 기준 설정 자체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언론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합니다. 누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문을 닫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탈락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부위원장과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입장은 정리해 놓겠습니다. 특히 제3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할 때 재허가·재승인 심사뿐만 아니라 법정위원회 위원장들까지 저는 가급적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종편 재승인 심사,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대단히 민감하고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어떤 분이든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원칙은 상임위원들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자들의 성과와 관련된 평가인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를 하다 보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가 여기에서 보면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경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서 비계량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기준 점수로 보면 비계량평가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량평가가 통상 430점에서 440점 정도 됩니다. 사업자마다 약간 다르고, 나머지가 비계량 평가이기 때문에 560점, 570점이 비계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년 하는 방송평가는 대부분 계량평가입니다. 계량평가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A나 B+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계량척도를 주고 거기에 맞추면 다 통과합니다. 그런 평가와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송평가도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비계량평가 항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허가·재승인하는 그 시점에는 계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평가도 중요 하지만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께서 정성평가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공적책무를 잘했느냐,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데는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 이러한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신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바 제가 구간 설정을 아래위로 더 하는 것이 중기과제로 검토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똑같이 오랜 기간 언론을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단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이 650점 기준점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 아래가 나왔을 때는 방통위원들의 자의적인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 그리고 높은 쪽 두 구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600점 이런 예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600점 아래로 내려간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것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동안 사무처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체별로 의견수렴도 하는 등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함께 한두 가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중요한 업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통해 방송계 품격을 제고함으로써 더 좋은 방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지 재허가·재승인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는 그 목적에 우리의 재허가·재승인 사업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방송은 사회적 공기로서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적책무를 수행함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이라는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 그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단순히 허가 승인기간 만료에 따른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송사업자들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특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 방송사들의 품질을, 품격을 제고하는 행위, 또 반대로 이것을 통해 방송사업자를 옥죄거나 골탕을 먹이거나 특정한 사업자를 탈락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점에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종편들도 10년이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재허가·재승인 과정을 통해 우리 방송들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달라진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방송을 보는 눈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 스스로 향후 재허가·재승인 기간 동안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더욱 더 신뢰받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또 이런 우리의 뜻이 사업자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무처에게 준비부터 심사 전 과정에 완벽을 기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상기해서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인 만큼 심사위원회 구성 시 결격사유를 철저히 따져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시고 각 단계에서 절차를 지키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한 표현이 없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특정사업자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고, 또는 어떤 비판적인 언론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안건, '19.8.23)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 - 41 - 161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19. 8. 23.	
공개여부	공개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9. 8.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9. 8. 23.(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20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함

3. 주요경과

- 「방송사업자 재허가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19.5.10.)

4. 주요내용

가. 재승인 대상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종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김민배	'20. 4. 21.
	제이티비씨(주)	JTBC	손석희 홍정도	'20. 11. 30.
	(주)채널에이	채널A	김재호 김차수	'20.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승준 류호길	'20.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정찬형	'20. 3. 31.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조성부	'20.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나.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 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분량은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PP·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다.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 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 (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라.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국무회의 보고, '19.5.14.) 관련 심사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

-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계	1,050***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로 반영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은 필요 시 세부계획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마. 재승인 여부 결정 등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시)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바. 기타사항

- 현행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른 콘텐츠 투자금액 인정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방송제작에 쓰이는 비용임에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 ※ 심사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중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작성 시 세부기준을 참고

5. 추진일정

- '19.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승인유효기간이 '20.11월인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9. 9월)
- '19. 9~10월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9. 10~12월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20. 1~2월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2~3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20. 4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20. 4월)
- '20. 5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20. 6~9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20. 10~11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11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끝.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2019. 8.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종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김민배	'20. 4. 21.
	제이티비씨(주)	JTBC	손석희 홍정도	'20. 11. 30.
	(주)채널에이	채널A	김재호 김차수	'20.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승준 류호길	'20.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정찬형	'20. 3. 31.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조성부	'20.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분량은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PP·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 위촉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심사위원 결격사유

- '17.1.1.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17.1.1.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17.1.1.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의 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17.1.1.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2020년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17.1.1.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심사위원회 운영

○ 기본방향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 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의견청취

- (청취내용)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평가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건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부여
 - 비계량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 시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기준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 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 5호, 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국무회의 보고, '19.5.14.) 관련 심사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
-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계	1,050***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은 필요 시 세부계획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재승인 여부 결정 등

- (재승인 여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승인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조건 성격상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 부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 중, 감점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 평가에서 제외

- (중점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추진일정

- o '19.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승인유효기간이 '20.11월인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9. 9월)

- o '19. 9~10월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o '19. 10~12월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o '20. 1~2월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o '20. 2~3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o '20. 4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20. 4월)

- o '20. 5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o '20. 6~9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o '20. 10~11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o '20. 11월 종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 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20년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40(비계량)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⑯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50
계		1,05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⑪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⑮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50
계		1,05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6.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속기록, '19.8.23)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8. 23.(금) 14:31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9-41-16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지난 5월 10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승인 대상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2개사이며,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PP와 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 기본계획 의결 후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기본계획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과 배점 그리고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 심사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은 <표>를 참조하시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이 6번 항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0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평가 이후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승인유효기간은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만 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3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담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현행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른 콘텐츠 투자금액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방송제작에 쓰이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투자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8월 중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를 하고, 9~10월에 걸쳐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3월까지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티비씨㈜와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별도로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내년 3~4월에 승인유효기간이 끝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재승인 세부 계획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시해 온 심사계획이어서 심사기본계획의 큰 방향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세부계획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분량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하도록 제시하고,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 및 보도PP에 대해서도 재난방송의 공적책무를 심사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도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심사위원 선정이며, 심사과정의 엄격함과 투명성 제고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종편 PP의 위상은 지상파방송을 일부 넘어서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편PP도 영향력에 비례하는 공적책무를 부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종편PP의 소유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재승인 심사에서는 소유 지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종편PP의 소유 지분 합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재승인 심사기간에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유구조 부분이 재승인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 허 육 상임위원

- 이것이 필수 심사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승인해서 허가 승인장을 내주기 때문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오늘 보고자의 보고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특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지난번 종편 재승인 때도 콘텐츠 제작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우리 세부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것은 사업자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돼도 상관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을 많이 반영한 셈이 됐는데, 예를 들면 자체제작 인력의 인건비나 또 간접비도 전부 콘텐츠 투자금액에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계정과목도 다 열거해서 전부 다 통지가 가는 것이지요? 다 알려진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들을 다 계재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무처가 많이 애쓰고 정비를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들 반응도 좋게 나오는 것이지요? 불만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100%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 김석진 부위원장

- 100%는 할 수 없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거의 수용했고, 사업자 의견 수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잘하셨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종편 심사를 해보니까 제작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는 세부기준이, 또 간접비·직접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됐다는 부분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얘를 많이 쓰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승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경을 크게 쓰는 부분이고, 아울러 저희들 심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계획이 마련된 것은 그 사이의 기준들보다는 개선한 것이 많아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재난방송을 별도로 50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방송평가에서도 일부는 재난방송에 관해 평가합니다만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 유효기간이 구간별로 700점 이상은 재승인 기간이 5년, 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650점 아래가 되면 '조건부 재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20점대로 3년간 세 차례 연속 '조건부 재승인'이 된다면 이런 것은 패널티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부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50점 미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 연속으로 몇 차례 계속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상임 위원 또는 일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임위원이 꼭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방송 재허가 때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재허가 심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과 합리성,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장 문제는 심사를 앞두고 구성할 때 다시 논의해서 그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승인할 때 소유 지분 구조나 주주 구성의 적정성은 보지 않지요? 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최초 승인 때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재승인할 때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때는 심사배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종편은 주주 구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특정 종편은 주주 간의 지분 변동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승인 심사와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재승인과 관련 없이 현행법상 위반되면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재승인해야 할 시점까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주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시점이 재승인 심사기간과 겹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같이 여기에 넣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문제가 되는 사항이 시점이 언제 명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일단 재승인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재승인 시점에 문제로 확정이 된다면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특정 언론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이 실은 10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 허가 때, 최초 승인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다시 불거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심사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재승인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전부 사무처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들을 놓치다 보면 꼭 나중에 특혜를 줬느니, 아니면 심사가 부실하게 됐니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편들 승인해 주고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제출도 한계가 있지만 다른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표철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은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 전형적인 규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업무보다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면 이런 사전 세부계획이 면밀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나 일정, 심사의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승인·재승인, 허가·재허가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없도록,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사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III. 재승인 신청 안내

2020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 안내

2019. 9.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 차

I. 재승인 개요	73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73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73
3. 재승인 여부 결정	74
4. 추진일정	74
5. 유의사항	75
II. 재승인 심사	76
1. 심사 기본 방향	76
2. 심사절차	77
3. 심사위원회 구성	78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78
III.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 · 제출요령	79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79
2. 작성 및 제출 요령	81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82
IV. 재승인 신청서	83

I. 재승인 개요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o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종합 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유효기간이 '20년 상반기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o 제출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20.3.3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19.9.30까지 제출
 - '20.4.2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19.10.21까지 제출
-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등
- o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o 문의 :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
 - (종편) 02-2110-1431, je0918k@korea.kr / (보도) 02-2110-1433, mhkim95@korea.kr

3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시)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4 추진 일정

- '19. 9. 30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20.3.3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9. 10. 21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20.4.2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9. 9~12월 신청서 검토 및 보정, 시청자 의견접수 등
 -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20. 1~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3월 재승인 여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고지 예정

-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본 안내서에 기재된 심사 일정, 심사 계획은 심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I. 재승인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심사사항2)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심사사항3),
 -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그 피해 증가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편·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
-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실시
-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 법인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대표자 모두 참석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 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별로 심사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위원회 구성

- o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에 따른 법정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구성

< 심사사항 및 배점 >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합 계	1,050***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필요 시 세부계획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배점의 10%(100점) 범위 내에서 정의하도록 명시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III.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 ·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구분	서류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
	3. 부속서류	1	1	1	-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 후 재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18	2	
	3. 부속서류	1	18	2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추후 통보시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	18	2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 별도제출자료

- 2016년, 2017년, 2018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2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는 500쪽 이내로 제한
-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요약문은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한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까지 계획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작성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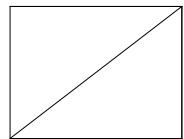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 현황
 - (종합편성) 사무관(02-2110-1431), 주무관(02-2110-1435)
 - (보도전문) 사무관(02-2110-1433), 주무관(02-2110-1439)

※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 문의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원 본

2019. 00.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I. 재승인 신청서	0
II. 서약서	0
III. 신청법인 명세	0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0
V. 승인장 사본	0
VI. 주간기본편성표	0

I. 재승인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 내용	승인번호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 :		공급분야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m²)]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재승인 신청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9호, 2017.9.2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복수 대표자인 경우, 모든 대표자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3.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II.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 등이 국민과 방송통신
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00월 00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III. 신청법인 명세

1

개요

※ 방송사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최초 승인장 교부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법인 현황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 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5%이상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5

주주 관련 사항

1. 주주 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업 해당 여부 (o,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o, ×)	
				주 식 수	지 분 율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국 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 ①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 ②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이상 주주에게 <6..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를 작성토록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이상 주주사가 특수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에 ‘특수관계자 확인서’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 5% 미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 ③ 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 ④ 외국인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방송법」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재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2. 주주 변동내역(재승인장 교부시점~'19.8.31.)

(단위 : 백만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엑셀 파일로도 별도 제출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1

공적책임 · 공정성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수행실적 및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차원에서 방송 심의제재 건수 감축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출연자 섭외 시 전문성 등 자질 검증장치, 관련규정 등
 -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프로그램명 (분야)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자체 조치사항 (조치일자)
000 (보도)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 0조제0항	방송언어 객관성	외부출연자 3명 출연정지 1개월 (20XX.1.1.)
	경고, 의견제시			정치적중립	진행자 1명 경고 및 프로그램 폐지 (20XX.12.10.)

※ 자체 조치사항 : 진행자, 제작진, 내부 출연자, 외부출연자 등 조치(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포함)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실적
 - 방송언어 순화 실적
 - 편성규약(제정일자, 주요내용, 공표방법·공표현황, 주요 이행사항 등)
 -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실적 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관련 이행실적 등
- ※ 제도적 장치 위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계획
- 편성규약 제정 및 공포 계획 등
-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계획 등

2

시청자 권리 보호 실적 및 계획

1. 시청자 참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양식)

○ 운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 요구) 반영 내역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요구)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 시청자 위원 명단(연도별 작성)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단위 : 분, %)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방송기간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분)	비고
'17. 1.1 ~ '17. 9.30	시청자 세상	60	
'17. 9.31 ~ '18. 10.7	시청자 평가	60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관련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청자 불만처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 '연도별 자체심의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이행실적
- 자체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이행실적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양식)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양식)

(단위 : 건)

대분류	중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진행자 불만								
	출연자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막 불만								
	편성불만								
	소 계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청								
	소 계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저작권에 관한 건								
	명예훼손에 관한 건								
	소 계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기술관련 불만								
	소 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기준(43쪽)에 따라 작성(보도PP 또한 분류기준 적용하여 작성)

□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양식)

(단위 : 건)

대분류	중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진행자 불만								
	출연자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막 불만								
	편성불만								
	소 계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청								
	소 계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저작권에 관한 건								
	명예훼손에 관한 건								
	소 계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기술관련 불만								
	소 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기준(43쪽)에 따라 작성(보도PP 또한 분류기준 적용하여 작성)

연도별 자체심의 현황(양식)

<20xx년>									
전체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전체심의 건수		사전심 의 건수 (비율)	당일심 의 건수 (비율)	사후심 의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 심의규정과 연도별 자체심의 세부 실적(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 - 시청자 불만처리 유형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 등
	진행자 불만	진행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 등
	출연자 불만	출연자에 대한 출연 불만 또는 출연자 발언 등에 대한 불만 등
	자료화면 불만	자료화면의 선정성 폭력성 및 다른 자료화면 사용에 대한 불만 등
	자막 불만	자막 오기 자막 표현에 대한 불만 등
	편성불만	프로그램 편성 관련 불만 등
프로그램 관련 시정 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영상 및 기사 불만 등
	정정보도 요청	리포트나 제작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민원인의 정정 및 삭제 요청 사항 등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피해보상 사항 등
	저작권에 관한 건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등
	명예훼손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명예훼손 사항 등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다시보기 불만, 이용 장애, 프로그램 소개 업데이트, 시청자 게시판 등
	기술관련 불만	방송 기술 및 난시청(종합편성 제외) 등
기타	기타	화질불만 등

3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실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양식)

연도	일자 ¹⁾	지역 ²⁾	유형 ³⁾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액(백만원) ⁴⁾	비고
2017년							
소계							
2018년							
소계							
2019년							
소계							
합계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①지역적 ②사회적 ③문화적 기여실적은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

- 1)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 2) 시 · 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양식)

< 개요 >

(단위 : 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방송시간) (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제작 실적		%		%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세부내역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과 <개요>의 방송시간은 동일해야 함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의 당초 기본방향 및 목표와의 부합 여부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관련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양식)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²⁾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

전문편성 분야 방송실적(보도PP)

(단위 : 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 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 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 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1월	/		/		/	
2월	/		/		/	
:						
연간 합산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향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간 ¹⁾	비율 ²⁾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전문편성 분야 방송실적(보도PP)

(단위 : 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총 방송시간						

구분	2023년		2024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총 방송시간				

주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편성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2. 편성의 자율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수급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실적(양식)

<20XX년>

구분	재승인 시 사업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비용 ²⁾	시간	비율	비용
자체	순수자체제작 ³⁾					
	공동제작 ⁴⁾					
	소계					
외주제작 ⁵⁾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⁶⁾					
	국외물 구매 ⁷⁾					
	소계					
총계		100%		100%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2020년 ~ 2024년까지 연도별 제작 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22년			2023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 비용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121쪽)에 따라 작성

구분		2024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2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투자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 방송프로그램 투자 관련 실적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투자 실적(양식)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²⁾	계획	실적 ²⁾	계획	실적 ²⁾
자체	순수자체제작 ³⁾					
	공동제작 ⁴⁾					
	소계					
외주제작 ⁵⁾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⁶⁾					
	국외물 구매 ⁷⁾					
	소계					
총계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비용 합은 연간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실적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의 비용을 작성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 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투자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 방송프로그램 투자 관련 계획

<2020년~2024년까지 연도별 투자 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 비용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121쪽)에 따라 작성

< 참고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

※ 20년도 이후 프로그램 수급, 투자 비용 산정 시 참고하여 작성

□ 개요

-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자체, 외주)하거나, 구매한 비용 (“콘텐츠 투자금액”이라 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 자체 :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
 - 외주 :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외부의 제작자가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
 - 구매 :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제작완료 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목적으로 사오는 것
-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대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 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과 기타 영업외비용 항목 중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재승인 사업계획서 중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 작성 시 본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콘텐츠 투자금액(계정과목별 금액이 아니라 총액 기준) 산정 시 이하 계정과목에 따라 계획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필요 시 방통위가 인정여부 판단

□ 자체제작 계정과목 및 세부내용

-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한 자산형태를 갖추지 못하므로, 제작이 완료될 때 까지는 선급금으로 산정
 - 다만, 일반적인 선급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분류
 - * 사업자의 회계연도 내에서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
- 방송사 내부 제작인력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
 - ※ 복리후생비(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포함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되, 본 세부기준 적용 이후 신규투자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부터 인정

* **감가상각비** : 시간의 경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

**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 상각비** : 시간의 경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

① 원고료 : 제작업무 중 작가, 통·번역 관련비용(사전기획료 포함)

예시) 문예비, 작가료, 사전기획료, 교열담당보수료, 원고료, 구성대본료, 외화번역료, 번역료 등

② 출연료 : 제작업무 중 출연자와 관련한 비용(전속금 포함)

예시) 출연료, MC료, 아나운서/기상캐스터 출연료, 특별출연료(직원), 가족 및 단체출연료, 음성배역, 사회자료, 성우출연료 등

③ 연출료 : 제작업무 중 연출(조연출, FD 등 포함) 관련 비용(사전기획료 포함)

예시) 연출료, 보도제작부스탭료 등

④ 기자인건비 : 제작업무 중 취재·촬영 기자와 관련한 비용

※ 인건비 이외 비용은 업무별 계정과목으로 할당

⑤ 영상촬영/편집비 : 제작업무 중 영상촬영* 또는 편집 관련 비용(영상촬영장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 포함)

* 촬영 기자, 영상촬영장비 차량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카메라임차료, 촬영료, 헬리캠, 편집료, 중계지미짚 임차, 6mm 외 기타 장비, 동시녹음, 외부카메라 등

⑥ 음악/음향효과비 : 제작업무 중 음악·음향효과와 관련한 비용
(CD, tape 등 저장매체, 음반CD 구입비, 효과료 등)

※ 음악저작권료는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음악료, 소모품비, 음악작곡용역비, 음악/음향 등

⑦ 미술효과/세트/조명비 : 제작업무 중 미술(CG)효과, 세트, 조명관련 비용(자막 포함)

예시) 삽화료, CG료, 미술비, 미술효과료, 세트비/세트장치(설치 해체료 포함), 구조물, 소도구, 전식, 철구조물 외, 특수효과, 외주미술비, 소품비, 조명, 자막료, 중계조명 임차 등

⑧ 의상/헤어/코디/분장비 : 제작업무 중 의상, 헤어, 코디, 분장과 관련한 비용

예시) 분장용품/분장료, 코디, 의상, 미용 등

⑨ 제작진행비 :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회의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조사연구비, 취재비 등 관련 비용(교통비, 유류비, 소품비 등 미포함)

※ 여비/교통비, 차량주유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기자실사용료, 취재지원비, 취재보조비, 진행비, 외주관리진행비, 자체제작진행비, 편집진행비, 연출제작진행비, 여론조사비 등

⑩ 외주용역비 : 제작업무 중 외부 인력(파견 포함)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

예시) 파견업무대행, 외주용역비, 제작용역사원, 제작외주용역비, 제작용역비 등

⑪ 여비/교통비 : 제작 관련 국내외 출장비(일비, 식비, 숙박비 등) 및 교통비 등 비용(사전기획 포함)

예시)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조기출근교통비, 사전답사, 항공료, 주차료, 식대, 시내교통비, 숙박비, 해외코디비, 해외통역비 등

⑫ 방송제작차량비 : 방송제작과 관련한 차량 비용[임차료, 차량유지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등 포함]

※ 방송제작과 관련한 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제외

예시) 제작차량용역비, 차량렌트료, 차량임차료, 중계차임차 등

⑬ 방송제작시설이용료 : 방송제작과 관련한 시설(스튜디오 등) 등 이용 비용(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포함)

※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유지비용 등의 수선유지비는 제외

예시) 외부제작시설이용료, 스튜디오임차료, 사무실임차료/관리비 등

- 스튜디오 임차료 : 재임대 면적 부분은 별도로 차감
-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일반 사무실 부분은 부서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 처리
- 건물 전기료 : 일반 사무실 부분은 부서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 처리

⑭ 통신비 : 방송제작 및 송출* 과정에서 이용하는 통신과 관련한 비용(회선사용료 포함)

* 제작 완료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비용은 제외(판매관리비)

예시) 무선인터넷단말기사용료, LTE모뎀사용료, 웹하드사용료, 제작우편료, 제작전용회선료, 제작전화료, 라우터사용료, 중계분담금, 회선사용료, 데이터전용선로, SNG위성사용료, 전용회선료, 방송회선료, 방송회선 임대, 중계회선사용료 등

⑮ 기타장비이용료 : 방송제작 관련 장비(영상촬영, 음악/음향효과, 미술 효과, 조명 등)가 아닌 기타 장비와 관련한 비용 (수선유지비 포함)

예시) 방송시스템유지보수, 방송장비수리, 송출노트북 수리, 방송장비수선비, 방송제작시스템위탁운영비, 방송IT장비수선유지비, 웹시스템위탁운영비, 방송장비수리, 송출VCR임차료, 발전기 등

⑯ 콘텐츠사용료 : 제작 관련 콘텐츠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예시) 외신영상사용료, 기상정보이용료, 저작권침해합의금, 영상물소재사용료 선금, 음악모니터링시스템분담금, 재방송료/복제료/전송료, 방송보상금, 방송사용료, 음악저작권수수료, 저작권사용료 등

※ 저작권료는 기존 저작권료, 재방영 경험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비용을 추산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⑰ 기타 : 제작관련 비용 중 상기 계정과목으로 분류가 어려운 공통비용(공통 소모품 등) 및 이월 자체제작비

- 당기 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한 프로그램이 당기에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 처리하여 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 다만, 무형자산 처리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 (손상차손) 처리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에서도 제외

□ 프로그램 구매비용 계정과목 및 세부내용

※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적용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매 완료 시점 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 처리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 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해 매출원가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서 제외)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 이 희박한 경우 관련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서 제외)

□ 콘텐츠 투자금액 불인정 계정과목

항 목	세부내용	비 고
국가지원금 등	방송발전기금 등	재승인 조건은 자체자금 투입을 전제
프로그램 상각	미방영 프로그램을 상각하여 비용처리	구매 프로그램은 방영 시 비용화해야 함
시설임대수입	스튜디오 등 임대수입	시설 일시 운용수익 등은 관련 임차 비용에서 차감
과태료	방송광고 법규위반	제작비용이 아닌 행정비용에 해당
송출회선 사용료	유료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송출 비용	프로그램 완성품 송출은 제작비용에 미포함
판관비	홈페이지 수수료, 운영대행료 등	판매관리비용은 제작비에 포함하지 않음
인터넷 사용료	사무용과 방송제작용 으로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방송제작이 아닌 경우, 포함하지 않음
세금과공과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방송발전기금, 법인세 및 벌금과 과태료 등 방송제작과 무관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일체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	개정안 시행 전 자산의 감가상각비	본 개정안 시행 이전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외

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

1. 공익성 관련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적			-			%			

※ 2019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일시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18.01.01	더불어 삽시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60	재방 2회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2.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소수시청자 그룹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권익실현 관련 이행실적
 - 어린이 · 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노약자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이행실적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방송시간) (분)	비고
		실적	%	실적	실적	%	실적	실적	비고
어린이 · 청소년			-				%		
장애인									
다문화가정 · 노약자 · 외국인									
기타									
계									

※ 2019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소수 시청자 그룹 프로그램 세부 편성 내역 >

일시	구분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어린이 · 청소년				재방 2회

※ 소수시청자 그룹별(어린이 · 청소년, 장애인 등) 세부 편성내역을 기재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양식)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화방송	(%)	(%)	%	(%)	(%)	%	(%)	(%)		
자막방송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어린이 · 청소년	(분 %)				
장애인	(분 %)				
다문화가정 · 노약자 · 외국인	(분 %)				
기타	(분 %)				
전체방송시간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 장애인 방송 편성계획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막방송	시간(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분)					
	비율(%)					
수화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종편PP)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및 실적’은 아래 양식 참조
※ 장르의 분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134쪽) 참고
- 이 외에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운영실적 및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술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및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소 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 계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계획과 이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은 아래 양식 참조※ 장르의 분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134쪽) 참고
- 이 외에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운영계획 및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

□ 향후 5년간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소 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 계					

※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

< 참고 -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

장 르	정 의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등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정규 뉴스 및 특별 편성 뉴스포함)
탐사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특정 시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 취재 사실 및 관련 분석 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사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자사 및 타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토론·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음악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게임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육(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 토론 · 대담 프로그램이란 특정주제에 관해 찬성 · 반대를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

1.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교육훈련 실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고용현황', '직원 교육투자 현황', '직원 교육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고용 현황(양식)

- 개요

(단위 : 명)

구분	재승인 시점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규직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직급별 인력 고용 현황('19.8.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임원	정규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19. 8.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 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기타	소계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 기술	기타 방송	소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소계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홍보, 기타 등으로 구분

※ 내부 조직도(2019.8.31. 기준)

조직도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직원 교육 투자 현황(양식)

(단위 : 백만원)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양식)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o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향후 인력 수급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향후 인력 수급계획(양식)

구분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정규직	신규					
	경력	자체				
		외부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가.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기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국내 콘텐츠 공급 및 유통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한 기본 경영 전략 및 방향
- 향후 5년간 시장전망
-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
- 신규 플랫폼 진출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 국내 콘텐츠 공급 및 유통 관련 계획

4.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콘텐츠 유통,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콘텐츠 유통,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자금조달 및 운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
- 자금 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6. 사업성 분석

- 향후 5년간('20~'24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정 재무제표(아래 양식 참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추정근거 제시) 사업성을 분석
 - 추정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 방법에 의한 순현재 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

□ 추정재무제표(양식)

(단위 : 백만원)

구 分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재무상태 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요약 손익계산 서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비용					
	기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재무 비율	인건비					
	기타 판관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17~'19. 상반기)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반기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요약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재무비율	당기순손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화일 별도 제출
- 2016, 2017년, 2018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3년간(2016, 2017, 2018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반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행사 매출액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o 상기 항목별 세부 매출액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반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계			%				%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국내·외 등으로 구분

3.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광고 매출액		%		%	
협찬 매출액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행사 매출액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기타사업매출액		%		%	
총 계		%		%	

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o 상기 항목별 세부 예상수입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구분	연도	2023년		2024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총 계						

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

1. 방송시설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로 제출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국산 방송장비 도입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계획(아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국산장비 도입 계획(양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o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관련 이행실적
- o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o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 o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및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 계획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및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 '상생협의체 운영',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에 관한 계획 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이행 계획
- 방송장비 산업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 방송인력 양성계획

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향후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향후 계획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관련 향후 계획

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현황

- ※ '19.8.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 방송법 위반 현황은 심의제재,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의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 방송법 위반 현황(2017.1.1 ~ 2019. 8. 31.)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방송법 위반사례
- ※ (예시) 법인의 방송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방송법 외 타법 위반 현황(2017.1.1. ~ 2019. 8. 31.)

- ※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법률 위반사례
- ※ (예시)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전파법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심의제재 현황(2017.1.1. ~ 2019. 8. 31.)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0조제0항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재심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 “소송”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기타 행정처분 현황(2017.1.1. ~ 2019. 8. 31.)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과태료					
과징금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 · 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황

* '19.8.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등 현황(2017.1.1. ~ 2019. 8. 31.)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사유	비고
시정명령				불이행	재승인조건 위반	소송 (00.00.00)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소송 (00.00.00)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 · 위반일자('yy.mm.dd), 위반 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4**(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 사업자별로 <붙임-참고>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자료작성은 요약, 본문, 별첨 자료로 구성·작성 (필요시 요약·본문·별첨을 뮤어서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

1. 재승인 조건**가. 요약**

재승인 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본문 (재승인 조건 내용 및 이행실적)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다. 별첨(증빙자료 등)

2. 권고사항

가. 요약

권고사항(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본문

< 권고사항 >

<이|행 실적>

다. 별첨(증빙자료 등)

<붙임-참고>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TV조선, 채널A)

< TV조선 : (주)조선방송 >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13건, '15년 11건, '16년 8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4. 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5. 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하여 이뤄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구 분	내 용
	<p>6.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p> <p>7.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8. 이행실적 점검 결과 2, 4, 5, 6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p>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 시청자 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동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17.3.24.)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함

< 채널A : (주)채널에이 >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7건, '15년 11건, '16년 7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 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4. 위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5.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전체 방송시간의 34%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 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6.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 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o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보도전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YTN, 연합뉴스TV)

< YTN : (주)와이티엔 >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 연합뉴스TV : (주)연합뉴스티브이 >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재난방송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가. 재난방송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편성 실적,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운영 기본 방향
 - 재난방송 편성실적
 -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인력 운영실적
 - 재난방송 교육실적
 - 재난방송 모의훈련 실적
 -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 현황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실적
- 재난방송 편성 실적(양식)

< 재난방송 편성 현황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재난방송	(%)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2019년 재난방송 편성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재난방송 세부 편성 실적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양식)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총괄표 >

(단위 : 건, %)

구 분	①통보건수	②실시건수	③미실시건수	실시율(%) (②/①*100)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시 현황 >

통보문 제목	통보시각	방송시작 시간	특보 (속보 포함)	자막 (스크 롤포 함)	spot (캠페 인등)	프로 그램 내 반영	방송 형태	상세입력사항 (시스템내기타처리시)	비고
지진 속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 1	-	-	-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 조기 경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 통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특보	9시뉴스 지진특보 반영	분이내

※ 2019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실적은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실시 의무대상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상 통보된 전체 건수 등은 총괄표의 비고란에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운영 기본방향
- 재난 예방방송 편성계획
 - 재난별 국민 행동요령, 재난예방 캠페인 등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계획

재난 예방방송 편성계획(양식)

(단위 : 분, %)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난 예방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방송시간(분)					

2**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표 자료****□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양식)**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명시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주식회사oooo가 2020년 0월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가운데 본인과 「방송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또한, 본인은 2017년 1월 1월부터 2019년 8월 31일 기간 동안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중 본인(법인)과 채무보증 관계에 있던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19년 00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첨부 : 1. 주주현황(2019.8.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족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족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족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삭제 <2016. 5. 2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9호)

-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주주현황

(2019.8.31 기준)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4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2017.1.1.~'19.8.31.)

1. 대표자 변경 현황

성명	재직기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직기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전 재승인 부터 2019년 8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5**협찬 운영 현황 ('17.1.1.~'19.8.31.)****1. 협찬 운영 방향****2. 협찬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캠페인 협찬	(%)	(%)	(%)
행사 협찬	(%)	(%)	(%)
시상품 협찬	(%)	(%)	(%)
기타 협찬	(%)	(%)	(%)
협찬수입 총계	(%)	(%)	(%)
전체매출액			

1. 개요(2017.1.1. ~ 2019.8.31)

2. 주요 내용

7

관계회사 현황

관계회사 현황(2019.8.31. 기준)

(단위 : 천원)

법인명	관계 ¹⁾	주요사업	지분율 (%)	콘텐츠 등 거래금액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 1) 신청 법인 기준으로 지배회사는 ‘지배’, 종속회사는 ‘종속’,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는 ‘계열’로 표기

8

특수관계자 방송사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방송사 현황(2019.8.31기준)

특수관계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채널명)	유형	특수관계내용	관련 법령
		PP	계열회사	방송법시행령 3조1항0목0호
			30% 출자	
			30% 출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19.8.31. 기준)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사업자명(채널명)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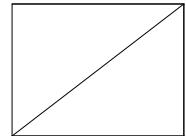
각종 수상 실적

V. 승인장 사본

VI. 주간기본편성표

- o 재승인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o 2019년 8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재승인신청서 ②



부속서류

원 본

2019. 00.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1. 법인등기부 등본	0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
3. 편성규약 전문	0
4. 자체심의 실적	0
5. 자체심의 규정	0
6. 재무상태표(2016년,2017년,2018년)	0
7. 손익계산서(2016년,2017년,2018년)	0
8. 기타	0

별도 제출 자료

1. 2016년, 2017년, 2018년 감사보고서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포함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IV. 시청자 의견청취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질의사항(『국민이 묻는다』)도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 2020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종합편성	(주)조선방송	TV조선	김민배	2020년 4월 21일
	(주)채널에이	채널A	김재호 김차수	2020년 4월 21일
보도전문	(주)와이티엔	YTN	정찬형	2020년 3월 31일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조성부	2020년 3월 31일

2. 의견접수 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 ~ 2020년 1월 19일(일)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고 재승인과 무관한 질문은 질의하지 않는 등 한정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접수된 질문 중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알림판 이용)

※ 의견제출 및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1.19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6488-9630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제출은 [붙임]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 끝.

※ 『국민이 묻는다』는 다음과 같이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명(TV조선(종편), 채널A(종편), YTN(보도), 연합뉴스TV(보도))	

[의견 제출 내용]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TV조선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p>1) 대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김민배 • 주요경력 :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p>2) 편성책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임택수 • 주요경력 : TV조선 제작본부 부분부장 <p>3) 자본금 : 납입자본금 3,100억 원</p> <p>4) 주요주주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 (주)조선일보사 • 주요주주 : Too Capital,LLC, (주)대한항공, (주)부영주택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p>1) 2017년 재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모바일) 사전심의 시스템 운영으로 사전심의 기능 강화 • 출연자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출연자 섭외시 자질 및 적합여부 검증 • <팩트체크시스템> 운용으로 방송중 발생 우려가 있는 공정성 해손 사례 방지하고, 뉴스 방송 이전에도 개별 기사에 대한 체크 • <바로옴부즈맨>제도 운용으로 생방송 중 방송 내용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 • <언어심의위원회> 운영 지속 및 제작진 언어교육 실시 • <시청자위원회>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전 사원에게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회의록 게시 <p>2)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인의 품격제고를 위한 징계제도의 강화(징계절차 개시요건 구체화 등) • 심의자료의 실질적 공유(심의 교육자료 등 정기적으로 책자 발간 · 배부) • 제20대 대선 보도 및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제작진 특별교육 실시, 진행자 및 출연자에 대한 관리 강화, 선거방송을 위한 모니터 특별 운영 등) •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운영

	<p>내실화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전문성 제고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p>1) 2017년 재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장르 축소 등, 장르별 분야별 균형 편성을 유지하며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가족중심 채널 지향 • 유연한 편성전략을 활용, 시간대별 채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청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프로그램별 편성 시간 배치에 성공 • ‘오픈제작시스템’ 운용 지속을 통해 경영진 및 대주주로부터 편성권 보호 • 매출대비 제작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제작비 투자와 수익의 선순환구조 확립 • 공익 프로그램, 공익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기획, 편성함으로써 시청자 복지향상과 사회, 문화적 통합 등 방송의 공익성 증진에 기여 <p>2)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기획 제작능력의 강화 • 비보도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및 공격적 편성 • ‘편성위원회’등 자율성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직원 교육 및 소통 시스템 강화 • 역동적 채널 이미지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공격적 투자 • 연도별로 전체 방송시간대비 20%이상의 높은 수준의 공익 프로그램 비율 지속 유지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p>1) 2017년 재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적화 인력 운영, 조직성과 평가 시스템 강화 •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의사결정체제 지속 • 자체 제작물의 포맷 수출하고 해외 콘텐츠 공동제작과 해외 미디어사와의 교류 통해 글로벌 인지도 확립 •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장비의 연속성 및 안정성 구현 <p>2)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인력 중심 채용을 통한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속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플러스 등 동영상 OTT 플랫폼과의 제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퍼런스, 해외 전시회 참관 및 방송사 견학을 통한 UHD 시스템 기술 확보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p>1) 2017년 재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순수외주제작비 비율 유지 ● 외주제작인력의 상해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 외주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른 권리(저작권, 협찬수입 등) 인정 ● 외부업체와 협력하여 방송시스템 공동개발 ● 재승인 조건 성실히 이행. 재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없음 <p>2)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의체’ 회의 정기적 운영 ●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 공정한 외주제작을 위한 표준계약서 수정 · 활용 ● 클라우드(cloud),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방송기술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 청년계층의 방송체험 기회 확대

□ 채널A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 청 인 에 관한 사항	<p>채널A는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채널A의 대표자는 김재호, 김차수 대표입니다. 편성책임자는 홍석민 편성본부장입니다. 채널A는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시청자의 꿈과 공정한 여론을 담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좋은 방송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채널A의 목표는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 다양한 사람이 공감하는 방송, 방송발전에 기여하는 방송, 방송시장의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p>
제2장 방송의 공 적 책 임 · 공 정성의 실 현 가 능성 및 지역·사 회·문화적 필요성	<p>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널A는 방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 미래 농업, 시민 안전과 같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일자리 기획 시리즈로 삼성언론상 어젠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p>나.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널A는 허위정보나 막말, 편향적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 가지 사전 검증 장치로 문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9가지 사후 검증 장치를 통해 방송내용을 되짚어보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출연자는 출연을 제재 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프로그램 폐지와 제작진 징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로 인한 벌점이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분의 1 수준(13%)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채널A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자체 검증기구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더욱 늘려 나갈 것입니다. <p>다. 지역·사회·문화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널A는 2017년과 2018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방송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전국 시청자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취재본부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스마트리포터를 운영해 깊이 있고 생생한 지역 보도를 실시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며 자영업으로 성공을 일군 소시민들을 다루는 <서민갑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팔아야 귀국> 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슈를 방송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클라이밍 선수인 김자인 선수가 맨손으로 롯데월드타워를 등반하는 <김자인 챌린지 555>를 기획 방송하고 카레이싱, 마라톤 종계방송으로 다양한 문화를 시청자에 소개했습니다.

	<p>라. 시청자들과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시청자 소통 창구를 모은 웹페이지 ‘열린 A’ 코너를 신설했고, SNS를 통해 수렴한 시청자 의견을 방송에 적극 반영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들이 대선 주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 채널A는 메인뉴스에 시청자 의견 수렴하는 코너를 신설했고, 온·오프라인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소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시청자위원과 시청자평가원으로 꾸준히 선임하겠습니다.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의 적절성	<p>가. 방통위 ‘2018년 방송평가’에서 종편 중 가장 좋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방송평가’에서 631.32점을 받아 4개 종편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593.46점에서 크게 개선됐습니다. <p>방송평가는 방송사가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 평가합니다. 채널A는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과 태풍 등 특보를 제때 편성한 점과 시청자들이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 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의 생활 및 TV시청 패턴을 반영해 주중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p> <p>나. 새로운 시도와 공감형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개인화 콘텐츠 시대에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감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에 기여하려 합니다. 세대공감 프로그램 <아빠본색> 가족소통 프로그램 <아이콘택트>를 제작했습니다. 취준생의 공감을 산 <굿피플>, 세대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리와인드> 등을 제작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에 기여하려 노력했습니다. -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인 <도시어부>와 <하트시그널>은 내부 PD들의 역량을 모아서 기획·제작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방송을 베끼거나 기존 방송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여행 로맨스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열두밤>, 한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등 완성도 높은 드라마도 제작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p>다. 장르별 균형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보도 프로그램을 꾸준히 줄이고 버라이어티쇼, 영화, 드라마, 음악쇼, 해외 프리미엄 콘텐츠 등의 편성을 늘려 왔습니다. 채널A의 보도 편성 비율은 2014~2016년 34.8%에서 2017~2019년 8월 21.0%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편성을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p>라. 공익적인 방송 프로그램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평일 아침 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코딩 알기: 초코알> 등 창의성 발달과 교육 목적에 부합

	<p>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13만 분 이상으로 더욱 늘려 소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 합니다. 특히 지진, 화재, 폭설, 한파 등 재난 상황 예방조치를 담은 영상물을 수시로 보도해 재난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과 재난 자동자막 송출 시스템 초기 구축을 인정받아 방통위 ‘재난대비 우수 방송사’로 선정되는 등 충실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4장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p>가. 새로운 사업모델 개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광고나 협찬에만 의존하지 않고 프로그램 해외 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하트시그널>은 중국 최대 OTT 플랫폼에 포맷을 판매했습니다. 리메이크 프로그램의 시청(조회 수)은 9억8000만 건을 넘겼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트렌드를 창출하고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연계 상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확장해왔습니다. <p>나.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드라마센터를 신설해 양질의 드라마를 다수 제작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또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제작본부 내에 6개의 ‘내부기획팀’을 운영해왔습니다. 채널A는 참신하고 신선한 신규 예능과 드라마 투자를 확대합니다. 뉴스 역시 짧고 생기 넘치는 형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신진 감독·작가를 발굴해 콘텐츠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또 해외 유수의 콘텐츠 제작사와 손을 잡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제5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 행 및 방송 법령 등 준 수 여부	<p>가. 외주상생 등 방송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외주제작사 상생을 위해 공정 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외주제작사와 저작권과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수익공유모델을 확립해 동반성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외주제작사와 상생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p>나. 사회공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는 일자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계 행사 개최, 지속적인 방송 인력 채용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방송시설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청자와 함께 나누는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 YTN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정찬형 - 주요경력 : (前) tbs 대표이사 • 편성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우장균 - 주요경력 : (現) YTN 총괄상무 • 자본금 : 420억 원 • 주주구성 : 한전KDN(주) / (주)한국인삼공사 미래에셋생명 / 한국마사회 / (주)우리은행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뉴스의 전달을 위해 노사 협약 아래 보도윤리강령 및 선거방송 준칙을 제정하고, 공정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 -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 - 시청자위원회 운영 및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 보도 및 취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소송에 휘말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내 교육 실시 - 매일 모든 방송에 대해 모니터하고 그 심의 결과를 그룹웨어 게시판에 공지 - 과거 간판 코너였던 '돌발 영상'의 부활과 '주간 돌발 영상' 편성 -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 진출 노력 - AI(인공지능) 스피커에 음성 뉴스 제공 - 새로운 플랫폼의 선두 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3월 국내 언론사 최초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하여 골드플레이 버튼을 수상. YTN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처음 24시간 라이브를 제공한 유튜브 채널 - 모바일 시장에 맞는 다양한 방송 포맷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 시청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뉴스 시청권 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스마트수어방송 등)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현장실사 및 스마트수어방송 개시 선포식 (2019년 7월 4일) 개최 -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슈 발굴 및 심층 분석 보도 지향(에디터제 도입)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오보 방지와 충실한 팩트체크를 위한 시스템 개선 - YTN 윤리강령의 엄격한 이행 -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시장 성장에 따른 플랫폼 확대에 주력 - 시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청권 확대 노력 지속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스마트 수화방송 등) - 시청자 뉴스제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 시청자의 요구에 걸맞은 뉴스 콘텐츠의 형식 변화 추구 - 재난방송, 특보 상황에서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대응 - 한국 전통문화 홍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 보도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공익적 프로그램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쉽고 재미있는 뉴스 제작 -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 젊은 세대를 위한 ‘와플뉴스’ 제작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집 프로그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주년 특별기획<다시 걷는 독립대장정>, 특집 다큐<3.1운동 100년의 외침> 등 편성 - 생활 밀착형 뉴스 보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정하는 이슈 목록에 ‘생활 뉴스 항목’을 별도로 두어 생활 밀착형 뉴스 발굴에 노력 - 보도전문 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서 일일 평균 20시간 이상 생방송 뉴스 편성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아야 할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 소수 시청자그룹을 지원하는 공익 프로그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확대 - 24시간 생방송 뉴스 체제로 각종 사건·사고와 국민 안전을 위한 뉴스 속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 - 한류 확산과 전 세계 740만 재외 동포들에게 국내 정보 제공 - 편향성 없는 객관적 보도로 건전한 여론 조성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 재난·재해, 민방위 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 신속 전파 - 시청자위원회 월 1회 시행, 공정방송위원회 월 1회 시행 -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편성에 반영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수지 개선 (2016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 : 억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2014년</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r> </thead> <tbody> <tr> <td>영업이익</td> <td>-235.4</td> <td>-54.7</td> <td>12.4</td> <td>21.6</td> <td>8.7</td> </tr> <tr> <td>당기순이익</td> <td>108.7</td> <td>-36.8</td> <td>33.9</td> <td>45.4</td> <td>8.3</td> </tr> </tbody> </table>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업이익	-235.4	-54.7	12.4	21.6	8.7	당기순이익	108.7	-36.8	33.9	45.4	8.3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업이익	-235.4	-54.7	12.4	21.6	8.7														
당기순이익	108.7	-36.8	33.9	45.4	8.3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 최소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 취재력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신규사업 진출 위한 인력 채용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여 -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및 직무 교육, 교양 교육 실시로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동시 추구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경영 정보 공시 강화 및 주주총회, 이사회 실질 기능 수행 등 경영 투명성 확보 - 지진 자동자막 송출 시스템 구축 - 자체 선거방송 집계 분석·그래픽 표출시스템 개발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경영 실시 및 경영 투명성 증대를 위한 공시기능 강화 - 시청률 향상과 매출 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경영 유지 - 상암동 신사옥 및 서울타워 임대수익 증대 노력, 신규 사업 다각화 노력 - 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및 UHD 수신 시스템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수어방송 : 이중화 구성 및 상용 서비스 시작 - 스키아리아프(위성), SKB(IPTV), CJ헬로비전(케이블) 시범방송 및 상용화 서비스 - 영상 전송 및 수신 최적화 시험(2017년) - 수어방송 스튜디오 구성(2018년) - 클라우드 수어 콘텐츠 VOD 제공(2018년) - 이중화 구성 및 상용 서비스(2019년 7월 4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및 그래픽 표출시스템 개발 (2018년)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발전, 문화발전을 위한 콘텐츠 편성 - 밥송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철저 준수 - 중·고등학교 영어토론대회 개최 및 보도 통해 전국 중학생의 어학 실력 함양 및 글로벌리더 성장 기회 제공 - 전국 역·터미널·공항·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YTN 뉴스제공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청자 보편적 정보 접근권 확대 - 쑥쑥 뉴스말돋보기’, ‘삼삼오오우리숲이야기’, ‘구석구석코리아’ 등 교양·상식 콘텐츠를 주요기관·기업·단체 등에 공급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연합뉴스TV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채널명 : 연합뉴스TV) ○ 대표자 : 조성부, 편성책임자 : 장윤주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 법인설립일자 : 2011.3.15, 개국일자 : 2011.12.1 <p>■ 주요 이행실적</p> <p><연합뉴스TV 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는 출범 초기부터 기존 방송의 틀을 깨는 차별화와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견제·감시, 불편부당한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 여론 다양성에 기여 - 보도전문채널 시청률 3년 연속(2016년~2018년) 1위, 2017 방송평가 보도전문분야 우위 확보. 시청점유율 매년 상승세,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정 '공정한 미디어' 부문 순위 및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선정 '대한민국 톱 뉴스 브랜드' 순위에서 상위권 기록 <p><공정보도, 방송품질 제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와 근로자 동수로 구성된 공정방송위원회, 패널선정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함으로써 출연자 전문성과 자질 검증 체계 구축, 객관적 패널 후보군 취합·선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준수, 자체 심의규정 제정 및 준수. 심의실 사전·사후 심의 진행,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광고심의 의뢰 등 조치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p><재난방송 및 재난 사전예방 프로그램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해·재난 사고 발생 시 뉴스특보(재난방송) 비상편성 체제 향시 유지. 전국에 있는 지역취재망과 공조해 실시간 현장, 피해 현황 등을 보도. 제보 영상 적극 활용. 우상단, 하단스크롤 자막 등 보도 화면을 최대한 활용해 24시간 수시 송출 - 태풍, 겨울철 한파, 폭염, 폭설 대비 재난피해 사전예방 캠페인을 적극 편성 <p><시청자 권익 보고 및 시청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의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바로보는TV 옴부즈맨' 편성, 시청자 민원 전담 조직 시청자센터 운영 <p><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뉴스, 지역 문화 및 현안 소개 프로그램 편성(연합뉴스TV 첫 UHD 프로그램 론칭 등). 문화보전 및 문화발전 소식 수시 보도, 관련 프로그램 편성. - 시청자 중심의 홈페이지(PC/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면 개편 - 국내 대부분의 N스크린에 채널 서비스 실시. 공항, 역사, 버스터미널, KTX,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은 물론 해외방송사에도 채널 송출 중 - 꾸준한 신규 채용으로 실업 해소 기여. 일자리 정보 관련 프로그램 제작·편성. 한국직업방송 채널 운영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 취업난 해소 등에 기여 <p><공익적 행사 개최 및 캠페인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경제심포지엄, 정기음악회, 송년음악회 등 개최 - 대한응급의학회와 공동캠페인,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캠페인, 국방부와 유해발굴사업 업무협약,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산불예방 및 피해 이웃돕기 홍보 등 진행

	<p>■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방송위원회, 패널선정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방송 품격 제고 - 각종 재해·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방송 비상편성 체제 향시 유지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센터 등 지속 운영 - 지역, 사회, 문화 관련 뉴스 수시 보도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편성 - 국내외 N스크린, 주요 교통시설, 해외방송사에도 채널 송출 확대 노력 - 매년 경제포럼, 경제심포지엄, 음악회 개최, 공익적 캠페인 및 후원 지속 확대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p>■ 주요 이행실적</p> <p><방송 편성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편성규약 제정 및 이행 - 공정방송위원회, 시청자모니터링단 등 운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시청자 주권 확보 <p><편성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는 뉴스 편성이 90% 이상 차지(자체제작). 외주제작은 물론 국내외 우수프로그램을 구매해 편성함으로써 다양한 공익적인 정보를 전달 - 프로그램 투자비(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는 계획 대비 초과 달성 <p><공익적 프로그램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중심의 편성으로 보도전문채널다운 편성을 구현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 및 방송의 보편성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도 다수 편성하기 위해 노력 - 대선 및 총선 등 선거방송, 국가적 행사 및 사건 현장 중계 및 관련 특보, 주요 국경일 기념식 생중계, 시사·대담 프로그램 등 제작·편성. 지역특화뉴스 및 지역 프로그램, 국내외 취약계층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작·편성 - 공익광고 및 공익 캠페인 상시 편성 <p><정보·사회소외계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실시 - 농아인협회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수어통역사 화면 비율 확대 시행중 - 뉴스 속보, 동시통역 등 주요 이벤트에 속기자막 방송화면에 동시 송출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추진 <p>■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규약 이행 노력. 공정방송위원회, 시청자모니터링단 등 지속 운영 - 재난재해, 사건사고 등 뉴스 중심의 편성으로 보도전문채널다운 편성을 구현 - 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지속 시행. 속기자막 동시 송출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p>■ 주요 이행실적</p> <p><조직구성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회사 조직 구성을 핵심 역량인 콘텐츠 제작 능력 제고에 집중. 콘텐츠 제작 담당 인력 전체의 80% 이상 차지 - 연합뉴스TV 인력 고용 계획 대비 실적 초과 달성 <p><경영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한 매출 증가에 힘입어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당기순이익이 지속 증가 - 개국 초기인 2012년에 비해 2018년 수입은 2.3배 증가로 재정적 건전성 확보

	<p><플랫폼 송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의 기본티어로 송출.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 시청가능(ALL COVERAGE) - 티팟(Tpod) 오디오 뉴스, 데일리모션에 신규 진출하는 등 국내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N스크린에 채널 송출. 역사, 공항, KTX·공항철도 등 교통시설, 정부기관, 버스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뉴스콘텐츠 보급으로 국민의 알권리 총족 - 해외방송사에도 영상 공급을 통해 한인방송 지원 및 해외동포에 대한 정보 욕구 총족 <p><방송기술 투자 및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방송, 영상취재, 뉴미디어시스템 등 고도화를 위한 방송시설 투자 강화 - 국산장비 도입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계획 대비 실적 초과 달성 - 스마트 미디어 기술, 다채널 무선 전송 시스템 등 첨단 방송기술 투자 노력 이행 <p>■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뉴스, 사건사고 등 대응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조직 구축 - 재정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신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노력 - 국내외 신규 플랫폼 진출 및 상호 협의를 통한 서비스 범위 확대 실시 - 국산장비 도입 노력, 방송시설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점진적인 투자
제5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p>■ 주요 이행실적</p> <p><유료시장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 육성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TV, 지상파사업자 등의 신규 플랫폼에 콘텐츠 제공 확대 - PP, 케이블TV 등과 콘텐츠 상호 교류협약 체결 등을 통한 콘텐츠 질 제고 - 디지털케이블TV쇼, Ace-Fair 등 유료방송사업자 주요행사에 협찬사로 참가 - 유료방송플랫폼에 큐톤 할당, 제작사에 채널로고 등 협찬 진행 - 다양한 뉴미디어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해 뉴미디어 성장 견인 <p><방송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기자단, 대학생 시청자모니터링단 운영 - 해외한인방송인, 방한기자단, 국내외 대학생 등 방송시설 견학 - 직원 교육비 계획 대비 실적 초과 달성, 신입 및 경력 직무교육 강화 <p>■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 등 신규 플랫폼에 콘텐츠 제공 확대, 유료방송업계 행사 후원, 활발한 콘텐츠 교류로 유료플랫폼사업자 및 PP사와 협력 강화 - 방송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 지속 투자 및 외부 견학, 모니터링단 등 운영 - 방송법 등 관련 법안, 방송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1.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안건, '18.12.12)

제 70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18. 12. 12.	보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18. 12.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18. 12. 12.(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보고 사유

-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이하 보도PP)의 재승인 조건 '17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2. 주요 경과

- o '17. 3월 보도PP 2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o '17. 3월, 11월 종편PP 4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17.3.24), (주)매일방송('17.11.27)
- o '18. 1월~4월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접수
- o '18. 4월~11월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외부 자문반* 회의(4회) 개최
 - * 방송(2), 법률(1), 경영·회계(1), 시청자(2)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o '18. 8월, 11월 종편PP 4사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현장실사
- o '18. 10월~11월 회계 ·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2회) 개최
 - * 회계사 4인, 변호사 2인 등 전문가 6인이 참석

3.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 주요 내용

- o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이행 실적(4사 공통)

- 오보 · 막말 · 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이행 여부(4사 공통)
-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 운영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주)매일방송)
-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 · 대담 장르 프로그램 합산비율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사업계획서상의 '17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4사 공통)
-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실적((주)매일방송)
-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서)상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주) 매일방송)

4. 종합편성PP 이행실적 점검결과

- ①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이행 실적(4사 공통)
 - 종편PP 4사가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
- ② 오보 · 막말 · 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이행 여부(4사 공통)
 - '17년도 재승인((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 3.24, (주)매일방송 11.27) 이후 방송분에 대해 '17년도에 오보 · 막말 · 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음

③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 운영 이행 여부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 o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오보 · 막말 · 편파 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④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 o '17년도 재승인(3.24) 이후 방송분에 대해 '17년도에 오보 · 막말 · 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없음

⑤ 사업계획서상의 재방비율 준수 현황((주)매일방송)

- o (주)매일방송에게 부가된 재방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 (주)매일방송은 '17년 12월 방송분에 대해 재방비율 47.5%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17.10.30.)하였으며, 위원회 실사 결과 46.45%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MBN의 '17년 12월 재방비율 현황 >

	(주)매일방송 계획 비율	(주)매일방송 제출 비율	방통위 실사* 결과
재방비율	47.5%	47.35% (1,268,400초/2,678,400초)	46.45% (1,244,214초/2,678,400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시스템을 통해 '17년 12월 재방시간을 직접 측정한 결과 당초 (주)매일방송이 제시한 재방비율인 47.35% 보다 낮은 46.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⑥ 사업계획서상의 보도 관련 장르 편성비율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o 3개 종편PP((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에 부가된 보도 관련 4개 장르(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 · 대담)에 관한 편성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 3개 방송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17년 보도 관련 4개 장르 편성비율 계획 및 실적 >

	TV조선	JTBC	채널A
계획(연간)	33.0%	32.58%	34.0%
사업자 제출 실적	30.05%	26.11%	30.1%
장르 재분류 후 실적	32.85%	26.11%	31.93%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 '17년 재승인 조건에서 제시한 15개 세부장르 기준은 불임4 참조

-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 방송사와 방통위 실무진 간 보도 관련 4개 장르 포함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프로그램 시사*를 통해 장르를 판정하였음

* 이행실적 점검 외부자문반(4.27, 11.9)은 프로그램 시청률을 통해 당초 방송사가 보도 장르가 아니라고 제출한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 '외부자들'은 '시사논평' 장르로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⑦ 사업계획서상의 '17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4사 공통)

(가) 콘텐츠 투자

- o 종편4사 모두 재승인 심사('17. 3월, 11월)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상의 금액 이상을 준수했다고 실적을 제출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17.12월분)
실적(계획)				

- o 방통위 실사 결과,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14년 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주)채널에이와 (주)매일방송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한 결과 계획한 금액만큼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8월(종편PP 4사), 11월((주)제이티비씨를 제외한 3사) 2차례에 걸쳐 방송사 본사를 방문하여 방송제작비의 계정원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실사 진행

<방통위의 종편PP별 투자금액 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17.12월 1개 월 분)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계획 금액				
제출 실적(4.30)				
추가 제출(10월)				
제출 실적 합계				
차감 금액				
산정 후 콘텐츠 투자 실적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미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 자체제작비의 경우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붙임5 참조)을 좀 더 구체화,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행실적점검 자문반의 의견이 있었음

(나) 콘텐츠 펀드 운영((주)조선방송)

- o (주)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0,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운영은 계획대로 이행함

⑧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실적((주)매일방송)

- o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주)매일방송에서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감사위원회 구성,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18년 1월말에 제출했음
- o 그러나 (주)매일방송에서는 감사위원장으로 (주)매일방송의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여 경영의 독립성이라는 조건을 위배

- 또한 사외이사 2인을 임명했으나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방송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 최OO 제지회사 회장, 엄OO 지급결제 전문기업 회장

⑨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서)상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주) 매일방송))

-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서를 통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및 해외판매에 대한 권리 보장 등 8개 항으로 이루어진 ‘외주사와의 상생계획’을 준수하겠다고 제출함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외주사와의 상생계획’>

① 정부 표준 계약서 사용 ② 선지급금 지급 기준 마련 ③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등 수익 배분 개선 ④ 제작사에 촬영원본 영상의 사용권 부여 ⑤ 제작비 현실화 ⑥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간담회 반기별 1회 개최 ⑦ 저작권 및 해외 판매에 대한 권리 보장 ⑧ 사전 제작비 지급 확대

- 그러나 ’17년 12월의 1개월 동안 (주)매일방송이 신규 또는 재계약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외주상생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 ① 정부표준계약서 사용, ⑤ 제작비 현실화 등 2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검토 결과, (주)매일방송의 계약서는 전체 조항의 개수가 총 00개에 불과하여 총 3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상의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되었으며, (주)매일방송 계약서의 일부 조항은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외주사인 ‘을’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정부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재계약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상생 계획에는 연간 물가인상률 이상의 제작비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제작비를 지급 하여 계획을 불이행함

5. 종편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주)매일방송은 사회적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 최초 승인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권고 사항	방송사	방송사 조치 현황
시청자 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주)조선방송, (주)매일방송	토론내용 · 출연자 · 진행자((주)조선방송), 진행자 · 출연자 · 방송언어((주)매일방송)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제작진에게 별도 송부하여 개선 요구
사회적 소수대상 프로그램 확대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는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달성했으나 (주)매일방송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함
재방비율 감소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3사 모두 계획대비 재방비율 준수
재정건전성 확보	(주)제이티비씨	'17년도 128억원 유상증자, 방송사업매출 56%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하여 권고사항 준수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주)채널에이	편성위원회 분기 2회 개최, 회의록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등 권고 이행
협찬수익 의존감소	(주)매일방송	매출 다변화를 위한 신규 예능 및 드라마 편성 확대. 다만, '18년 상반기 매출만으로는 유의미한 협찬수익 의존도가 감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 방안 마련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시스템이 아닌 일반문서에 제작협찬 내역만 관리, 협찬 종류별 관리부서가 달라 협찬 전체 내역(제작협찬, 장소·소품, 시상품·경품 협찬)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제작협찬 관련 내부 품의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하고 있어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권고 사항	방송사	방송사 조치 현황
최초승인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 이행	(주)매일방송	비정규직의 매년 00%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18~ '22년까지 연간 00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초 승인 시 제시한 계획(2016년까지 직원을 000명으로 확대)을 이행하지 못함
국산 방송장비 도입 계획 이행	(주)매일방송	점검대상 기간인 '17. 12월에 도입하기로 한 국산 조명 장비 도입 연기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함

6. 보도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권고 사항	방송사	방송사 조치 현황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 티브이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 전문기자, 해설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프로그램 출연자로 선정((주)와이티엔) 패널 중요성 인식, 단계별 검증 통해 선정((주)연합뉴스 티브이) 하는 등 권고 이행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주)와이티엔	노사 각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 · 운영('17년 2월, 3월 총 2회 개최)으로 권고 이행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주)연합뉴스 티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연합뉴스 티브이는 방송사로서 시청률, 조직구성, 수익구조 등에서 (주)연합뉴스와 차이가 있음 • (주)연합뉴스가 다른 방송사와 비교하여 (주)연합뉴스 TV에 대해 혜택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타 방송사도 (주)연합뉴스에 불만제기를 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연합뉴스가 (주)연합뉴스 티브이의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시청자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	(주)연합뉴스 티브이	방통위가 권고한 후보자 공모→적격여부 심사→()배수 후보자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재정건전성 확보	(주)연합뉴스 티브이	16년, 17년 2년 연속흑자, 광고 · 수신료 매출액 매년 상승,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한 흑자기조 유지 도모 등 권고 이행

7. 조치방향(안)

- o (주)채널에이 :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 부과
- o (주)매일방송 : 콘텐츠 투자계획과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 부과
 -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중 '17년에 이행하지 않은 '외주사와 상생방안 준수' 및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중 '감사위원회 구성' 조건의 경우 '18년에 이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짐
 - * '18년부터 정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임명
- o 권고사항 점검결과는 '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주)매일방송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

구분	점검사항	대상사업자	조치내용
재승인 조건	콘텐츠 투자	(주)채널에이	시정명령
	콘텐츠 투자	(주)매일방송	시정명령
	경영 전문성· 독립성·투명성 (사외이사 관련)		
권고 사항	사회적 소수대상 프로그램 확대,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공정성 고려 등	종편·보도PP 공통	'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

8. 향후 계획

- o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 : '18. 12. 12(수)~12. 26(수)
- o 시정명령 의결 : '19. 1월 중

- 붙임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안) 1부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4.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1부
 5.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기준 1부
 6. 시정명령 관련 법령 1부. 끝.

2.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속기록, '18.12.12)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12. 12.(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자의 재승인 조건 2017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7년 3월 보도PP 2개사를 재승인하고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를 재승인하고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접수하고,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자문반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현장실사를 실시 하였고,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회계·법률 자문가에 대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이행 실적 4사 공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이행 여부(4사 공통)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 기구 구성·운영 이행 여부,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해당사항입니다. 진행자 및 출연자 법 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방송프로그램 재방 비율 이행 여부(주)매일방송,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 합산비율을 이행여부(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4사 공통),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실적(주)매일방송), 사업계획서상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주)매일방송)입니다. 다음으로 종합편성PP 이행실적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종편PP 4사가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조건의 경우 2017년도 재승인 이후 방송분에 대해 20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의 경우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 조건의 경우 2017년도 재승인 이후 방송분에 대해 20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매일방송에게 부가된 재방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하여 매일방송은 2017년 12월 방송분에 대해 재방비율을 47.5%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위원회의 실사 결과 46.45%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3개 종편PP에 부가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관한 편성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해서 3개 방송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보도 관련 4개 장르 편성비율 계획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방송사와 방통위 실무진 간 보도 관련 4개 장르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프로그램 시사를 통해 장르를 판정하였고,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은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당초 방송사가 보도 관련 장르가 아니라고 제출한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의 ‘외부자들’은 ‘시사논평’ 장르로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종편 4사 모두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상의 금액 이상을 준수했다고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방통위 실사 결과,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널에이와 (주)매일방송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한 결과 계획한 금액만큼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위의 종편PP별 투자금액 산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제작비의 경우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좀 더 구체화,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행실적점검 자문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0,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운영은 계획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매일방송에서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2018년 1월 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방송에서는 감사위원장으로 (주)매일방송의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여 경영의 독립성이라는 조건을 위배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2인을 임명했으나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째, 사업계획서상 외주제작사 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서를 통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및 해외판매에 대한 권리 보장 등 8개 항으로 이루어진 ‘외주사와의 상생계획’을 준수하겠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의 1개월 동안 (주)매일방송이 신규 또는 재계약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외주상생계획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부표준계약서 사용과 제작비 현실화 등 2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종편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주)매일방송은 사회적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 최초 승인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도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보도PP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권고사항이 부과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권고 사항을 이행하였지만 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 연합뉴스가 연합뉴스티브이의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안)입니다. (주)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계획과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중 ‘17년에 이행하지 않은 ‘외주사와 상생방안 준수’ 및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중 ‘감사위원회 구성’ 조건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권고사항 점검결과는 20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주)매일

방송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고 2019년 1월 중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작성하고 나서 혹시 사정변경이 있는 사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의 경우에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관련해서 본인들이 다음번 주총에서 방송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공문 내용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선임하겠다고 인적사항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받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주총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인적사항까지 우리에게 제출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참작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7년도의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계획만 가지고 이행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MBN에서 좀 더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로 투자하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MBN과 채널A의 경우 액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자료화면이거나 저작권에 관한 부분인데, 지상파나 또는 스포츠 중계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협찬을 하다 보니까 지불해야 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과거 몇 년 전에 사용대가를 작년에 한꺼번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 판단은 그것은 어쨌든 2017년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봐야 하기 때

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상파와의 프로그램사용료 대가,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권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돈이 그만큼 프로그램 제작비에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것이 언제 인정을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송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우리가 꼭 기계적으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정명령을 내려야겠다는 것보다는 방송현장의 어려움을 좀 더 경청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어쨌든 시정명령이 나가면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 국장님 여지가 없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이것이 회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저희가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사무처에서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회계전문가 4명과 법률전문가 2명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문반 6인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떠나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취지라는 것이 해당 연도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부과한 것을 감안할 때 예전에 2011년이나 2017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금액은 설사 2017년 한 해에 이것이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승인 조건에 포함해서 전액을 다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쳤습니다. 저희가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 안건에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채널A 같은 경우 약 oo억원이라는 돈이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주장에 따르면 외주사에서도 그 자료화면을 지상파로부터 많이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외주사가 지불하지 않고 채널A에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작비에 쓰인 돈은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까? 과거에 썼기 때문에 과거의 회계로 처리해야 하고 털어야 되는데 돈이 '17년도에 지불됐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소급해서 회계 처리하기는 곤란한, 이미 재승인 심사가 다 끝났고,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였던 돈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제작비로 투자했다는 것은 인정을 영원히 못 받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일단 회계처리는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승인 관련해서는 회계처리 여부를 떠나서 해당 연도에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 관점은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17년도에 실제로 지출이 제작에 투자되지 않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혹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채널A에서 투자한 실적이 과거에 인정을 받아서 과거에 채널A가 콘텐츠 투자 미이행으로 인해 받았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분이 소급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종편들의 경우에 과거부터 항상 콘텐츠 투자실적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적이 과거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기준에 나갔던 시정명령이나 저희가 부과했던 과징금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과거에 반영된다고 해서 채널A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017년 실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또 저희 재승인 조건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의 의견에 따르면 자체제작비의 경우에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점검을 할 때 방송사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간접제작비다, 직접제작비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있어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 보완하실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지침을 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업자들 심사를 할 때, 이행점검 나갈 때 미리 예고했던 그 기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마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예측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번 하는 것이지만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은 일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재승인·재허가 조건의 이행이라는 것은 이미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0%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비 투자 문제, 재방비율 문제나 프로그램 편성 비율 문제는 원칙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100%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 2%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양해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김석진 위원님 지적한 제작비 투자금액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의 의견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쪽에서 제출한 의견도 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그리고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조건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에 종편사에 대해 재승인해 준 이후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 방송 품질 자체는 상당히 높여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방비율 준수나 보도 관련 장르 편성 비율 이행,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계획 또한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종편사들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의무위반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편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투자도 많이 하니까 시청률이 높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종편 사업권을 승인해 줬던 취지입니다. 이 부분들, 즉 종편사들이 노력해서 실적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작비 투자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 이분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직접비만 콘텐츠제작비로 인정되는 부분들의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잘 점검해서 우리가 일부러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최대한 성의를 갖고 투자도 한다면 그 부분들은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과정에서는 이런 기준에 모호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전반적으로 종편PP의 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이 양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쟁점은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절성 여부인 것 같습니다. 먼저 MBN의 2017년도 음악 저작권 및 스포츠중계권료 1년분 oo원을 전액 제작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점검대상기간인 '17년도 12월 한 달만을 균분해서 한 달 제작비만 인정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인 발생주의 회계, 그리고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을 고려할 때 12월 한 달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널A의 경우에 2011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지상파 자료화면 저작권료의 일시 지급액 oo원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17년분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채널A 측은 이 금액이 외주제작사의 지상파 자료화면 무단사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내역과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운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제 비용 지급시기인 2017년에 전액을 콘텐츠 투자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제작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처는 2017년 해당분인 oo원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발 채무에 관한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고려할 때 채널A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콘텐츠 투자를 재승인 조건의 하나로 부과한 취지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행실적의 관리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미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점들과 재승인 조건 부과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7년도 해당 분만 인정한 사무처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채널A가 저작권료로 지급한 oo원 가운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oo원에 대해서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안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도 재무제표에 그대로 둘 것인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채널A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어떤 경우라도 방통위로서는 재승인 조건의 부과 취지와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감안할 때 2017년도 해당 분인 oo원만 인정한 의결주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콘텐츠 제작비 부분 인정에 따라서 채널A는 당초 투자계획보다 oo억 o,000만원, 즉 2.3%가 모자라고 매일방송은 o억 o,000만원, 즉 3.5%가 부족해서 재승인 조건의 미이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원칙을 고수해야만 하는 사무처 입장 역시 이해가 됩니다. 이번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다른 안건보다 엄격한 심의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지키려는 종편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방통위로서도 심결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아쉽긴 하겠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방통위 입장은 이해하고 내년에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김석진 위원님, 그리고 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사무처가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조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작인력의 인건비나 제작에 투입되는 방송 제작비의 감가상각비가 콘텐츠 투자비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나 외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외부 임대가 아닌 자체스튜디오 이용 시 시설관리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속히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다 잘 말씀하셔서 저도 방송사 경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널A의 경우 정책당국에 호소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돈을 일괄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해마다 쓴 저작권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개수가 다릅니다. 2011년 다르고 2012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다 검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7년 분 N분의 1을 해서 회계처리상 그것만 인정한 것으로 되었는데, 회계원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위낙 명쾌하게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연합뉴스TV의 문제입니다.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사장이 겸임 사장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송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 광고를 다루는 업무가 신문 쪽인 연합뉴스 쪽에 있다는 것은 독립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권고사항이 확실히 지켜지는지는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방송이 광고를 직접 영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광고제도를 개편하는데 그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행실적 점검 하느라 사무처 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점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방송사들을 괴롭히거나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방송사로 발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이것 가지고 지나친 규제를 하거나 불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종편과 보도 전문채널들이 이행실적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장르를 구분해서 하는데 이런 쪽에도 할 수 있고 저쪽에도 할 수 있게 해서 뭔가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비 계산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더 점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이 있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종사하는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 진다면 방송사가 몇 년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렵고 우리 방송이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생을 통해 그들에게도 외주제작사, 그리고 외주제작사에 종사하는 또는 외주제작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안전하고 여유 있는 환경에서 제작할 수 있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의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또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 간 상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종편들, 나아가 우리 방송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가령 정부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제작비를 현실화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이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는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이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3.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 (안건, '19.1.29)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 - 05 - 013~014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19. 1. 29.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9. 1.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

<2019. 1. 29.(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의안번호	법인명 (채널명)	시정명령(안)
제2019-05-013호	(주)채널에이 (채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10월 21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17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 할 것
제2019-05-014호	(주)매일방송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10월 30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 할 것· 20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확보방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이행 할 것

2. 제안이유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7. 3월, 11월 종편PP 4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17.3.24), (주)매일방송('17.11.27)
- '18. 1월~4월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접수

- '18. 4월~11월 종편PP 4사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 '18. 12. 12. (주)채널에이 · (주)매일방송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 '18. 12. 26. (주)채널에이 · (주)매일방송,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4.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

-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콘텐츠 투자계획(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경영의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확보방안,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주)매일방송)
 - 다만, 감사제도 개선계획과 외주상생방안은 각각 '18년 12월과 '18년 6월 기준으로 이행되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법인명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주)채널에이	(콘텐츠 투자계획) 재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16. 10. 21.)한 '17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00,000백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00,000백만원(97.7%)을 투자하여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
(주)매일방송	<p>(콘텐츠 투자계획) 재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17. 10. 30.)한 '17년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0,000백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0,000백만원(96.5%)을 투자하여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p> <p>(경영의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경영의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확보 방안('18. 1. 26.)으로 제출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p> <p>(외주사와의 상생방안) 재승인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서('17. 11. 27.)에서 제출한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함</p>

- (피심인의 주요 의견)

가. (주)채널에이

- 이행실적 점검보고 당일(18. 12. 12)에 방통위의 제작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타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자료 제출을 받아줘야 함

※ 방통위 측에서 언급한 “17년도 해당비용이라도 ’17년도 제작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7년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채널A가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외부정보 이용자로부터 재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체시설이나 장비 이용은 직접제작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주제작시설이나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의 비용은 콘텐츠 투자비로 인정받는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은 방송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비합리적 내용임
- (주)채널에이가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항목은 ①광화문 사옥 방송시설 및 상암동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전기, 공조, 세트 관련 기계시설 관리비) 0억원, ②기존 외주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채널에이 스튜디오, 종편실 등의 이용계약을 유상으로 변경할 금액 0억원, ③작가협회, 방송실연자협회, MBC 등에 ’18년에 지급한 ’17년도분 저작권료 0억원, ④지상파(KBS, SBS) 자료화면 사용 저작권료 0억원(’11. 12.~’17.3월분) 중 외주사 제작분 금액에 대해 (주)채널에이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 0억원 등 총 oo억원임

나. (주)매일방송

- 2018년 4월 30일 제출한 2017년 12월분 콘텐츠 투자비용에는 음악저작권, 스포츠 영상사용료와 같이 1년치 사용분을 12월에 한꺼번에 정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이전에 미리 예측하여 월별로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확정되는 시점인 12월에 제작비로 인식했음
- 매경닷컴과 체결한 운영대행 계약비용의 계약서에 ‘인터넷 및 모바일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 및 운영’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프로그램을 가공한 뒤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대가로 제작의 범주에 포함됨
- 2018년 3월 31일 제출한 현 사외이사 3인 중 최OO 이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를 맡은 방송전문가이며, 염OO 이사도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방

송산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인 만큼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에 부합함

5. 검토 의견

o (주)채널에이 관련

- 콘텐츠 투자실적 인정 여부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통위가 사전에 제시한 현행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광화문 사옥 방송시설 및 상암동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전기, 공조, 세트 관련 기계시설 관리비 등) 0억원은 방송제작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주)채널에이의 스튜디오 등에 대한 이용계약을 유상으로 변경하고 외주사에 지급할 예정인 제작시설 이용비용 0억원 및 '18년에 지급한 '17년도분 저작권료 0억원의 경우, 콘텐츠 투자금액 인정은 해당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17년도 재무제표에 없는 해당 비용을 '17년도 콘텐츠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지급한 자료화면 사용 관련 손해배상금 oo억원 ('11. 12.~'17. 3월분) 중 외주사 제작분 금액에 대해 (주)채널에이가 외주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 0억원의 경우, 손해배상금 0억원 중 '17년도분 0억원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이미 인정했으며, (주)채널에이의 외주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는 방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o (주)매일방송 관련

- 음악저작권과 야구·축구·농구 등 스포츠 영상사용료는 '17년 12월전에 확정되었으므로 월별로 비용의 분배가 가능하여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매경닷컴과 체결한 운영대행 계약은 송출대행 또는 프로그램 전송료

성격을 띠고 있으며, 피심인에게 구체적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피심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엄OO 사외이사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하나 방송분야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박OO 사외이사도 방송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사외이사 2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 1월 26일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o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심인들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

6. 향후 계획

- o 시정명령 통보 : '19. 1월 중

붙임 1. 피심인 제출 의견
2. 종편PP 재승인조건
3. 관련 법령. 끝.

4.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 (속기록, '19.1.2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1. 29.(화) 15:0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9-05-013~01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채널에이는 2016년 10월 21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매일방송은 2017년 10월 30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또한 20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이행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7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재승인과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고,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편PP 4사의 2017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12월 12일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였고,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이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승인조건 위반 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은 (주)채널에이·(주)매일방송이,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과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은 (주)매일방송이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매일방송의 감사제도 개선계획과 외주상생방안은 각각 2018년 12월과 2018년 6월 기준으로 이행되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채널에이는 이행실적 점검 보고 당일에 방통위의 제작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타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받아줘야 함.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시설이나 장비 이용은 직접제작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외주제작시설이나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의 비용은 콘텐츠 투자비로 인정 받는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은 방송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비합리적 내용임.

2018년 3월 31일

제출한 현 사외이사 3인 중 최OO 이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를 맡은 방송전문가이며, 염OO 이사도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방송산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인 만큼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채널 에이의 경우 콘텐츠 투자실적 인정 여부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통위에 사전에 제시된 협행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염OO 사외이사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하나 방송분야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박OO 사외이사도 방송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사외이사 2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 1월 26일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심인들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월 중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도 방송사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이고, 방송사 경영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특히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방통위가 적용하는 이 기준이 충분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회계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회계처리 원칙상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저도 달리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축성이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또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어려운 점도 우리가 정책행정기관으로서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작년 제70차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방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것으로서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콘텐츠 투자금액에 대한 인정 여부는 발생주의, 그리고 기간의 구분, 수입과 비용 대응 원칙 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방송시설 및 장비 이용에 대한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사전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완키로 했다는 점도 명백하게 지난번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사무처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통해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의 의견을 접수했고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매일방송의 경영전문성 또 투명성 확보 방안은 상반기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은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매일방송이 종편PP 사업 승인조건의 중대함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안에 동의하고 각 방송사는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충분히 사업자 의견을 우리는 참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 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생 언론사의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애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 당해 연도만 인정해 줄 것인지, 그 전에 소급해서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회계처리기준을 따랐다고 하나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2017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이 인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고도 지불하지 않았던 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중에 날아간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된다, 그것을 다시 인정을 받아서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는 일단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피심인 제출의견을 보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로부터 재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위해서라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제작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리고 자료화면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업자 서로 간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직접제작비, 간접제작비 간 경계선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금년도에 정책연구과제 형태로 해서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직접제작비, 간접제작비의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예시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나중에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자에게 통지해서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회계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했는데 왜 한달치만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방송 같은 경우 신생 언론사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해서 사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인식을 줄 것이 아니라 뭔가 방송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장의 사정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궁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 지침대로 하는 것은 경직된 행정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방송의 방송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3인 중 최OO 이사는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 경력을 가졌는데 이분은 방송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3인 중 2인이 방송 전문성이 없다고 봤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도 지금 매일에서 피심인 제출의견서를 낸 것을 보면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설득을 해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과 회계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투자를 했는데 회계상의 잘못으로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는 것이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표철수 위원님,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풀리도록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리 대처해서 회계를 맞게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그런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송사들이 이런 것을 제출할 때 그런 회계원칙에 맞도록 아까 김석진 위원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리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 빠뜨렸는데 MBN 같은 경우 사업자 의견은 1년치 사용분을 12월 이전에 미리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월별로 미리 분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가 낸 전문가들로부터 나중에 의견 받을 데에 따르면 시점이 12월 전에 확정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이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나 사무처 입장은 12월 전에 이미 다 확정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는 12월 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낼 수 없었다, 12월에 가셔야 비로소 확정이 됐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부분은 클리어가 됐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부분은 현장실사를 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그 전에 4월 정도에 이미 다 확정되어서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만 지급이 12월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발생 주의 회계원칙에 따르면 그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12월분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회계사의 의견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기들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방송사들이 준수해야 할 회계 처리원칙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제회계처리기준만이 아니라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처리기준으로 인해 등의 이런 몇몇 가지 부분들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지금 제시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오히려 더 불명확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보다 더 원칙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정확한 업무처리와 회계처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방송의 경우 12월에 확정된 것, 그것이 4월이냐, 12월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어차피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러면 1년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분배할 때는 명확하게 월별 분배가 되어 있고, 방통위가 산정한 기준점은 한 달간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12월이냐, 4월이냐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방송사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면서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방통위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떠나시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안건, '19.11.22)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19. 11. 22.	보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19. 11.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19. 11. 22.(금),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보고 사유

-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18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2. 주요 경과

- o '17. 3월, 11월 : 종편·보도PP (조건부)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주)와이티엔·(주)연합뉴스티브이('17.3.9.),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17.3.24.)·(주)매일방송('17.11.27.)
- o '19. 1월~4월 : 종편PP 재승인 조건에 대한 '18년도 이행실적 접수
- o '19. 6월~7월 : 종편PP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 회계분야 3인, 방송분야 2인, 사무처 2인으로 이행실적 점검반을 구성·운영
- o '19. 8월, 10월 : 외부자문단 회의(대면1회, 서면1회) 개최
※ 방송분야 2인, 법률분야 1인, 경영·회계분야 1인, 시청자분야 1인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운영
- o '19. 10월 : (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중 방송발전계획(외주사와 상생방안)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추가 현장실사
※ 사무처 2인(방송지원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3. 종편PP 재승인 조건 주요내용

< 재승인 조건 및 이행실적 제출시한 >

구 분		제출시한
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준수 (공통)	1월 말
	②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공통)	1월 말
	③ 검증기구 운영 (TV조선, 채널A)	1월 말
	④ 진행자·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TV조선)	1월 말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⑤ 뉴스 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공통)	1월 말
	⑥ 재방비율 준수 (MBN)	1월 말
	⑦ 콘텐츠투자금액 준수 (공통)	4월 말
	⑧ 콘텐츠 편드 조성 (TV조선)	4월 말
기 타	⑨ 외주상생방안 준수 (MBN)	1월 말
	⑩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MBN)	3월 말

< 방송의 공적책임 >

- ① (공통)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 ② (공통)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 ③ (TV조선, 채널A)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 ④ (TV조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

- ⑤ (공통)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
- ⑥ (MBN)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42.4%) 이내로 편성할 것

⑦ (공통)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⑧ (TV조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 기타 >

⑨ (MBN)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⑩ (MBN)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4.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① (공통)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o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상의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TV조선 추가개선계획 : 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

※ MBN 추가개선계획 : 진행자 징계 강화(1회 내부징계, 2회 진행자 교체),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법정제재 3회시 폐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② (공통)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o '18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7건으로 4개사 모두 4건 이하임

※ TV조선 : 3건, 채널A : 1건, MBN : 3건

<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주요내용 >

사업자	제 목	일 시	주요내용	적용조항	방심위 결정 (결정일)	방통위 처분일
TV 조선 (3건)	뉴스9	'18.4.17.	드루킹 댓글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주의 ('18.6.25.)	'18.7.11.
	뉴스7	'18.5.19.	풍계리 취재 1만 달러	제14조(객관성)	주의 ('18.7.9.)	'18.8.1.
	신통 방통	'18.6.25.	강진 살인사건 묘사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유지)	주의 ('18.10.22.)	'18.11.8.
채널A (1건)	뉴스 특급	'18.1.17.	여자하키 대표팀 자료화면 왜곡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주의 ('18.5.28.)	'18.6.18.
MBN (3건)	뉴스 파이터*	'17.9.12.	240번 버스 오보	제14조(객관성)	주의 ('18.4.9.)	'18.4.24.
	뉴스 파이터	'18.6.20.	여성상의 탈의 장면 자료화면 노출	제21조(인권 보호) 제27조(품위유지) 제35조(성표현)	주의 ('18.10.22.)	'18.11.8.
	뉴스8	'18.7.24	노회찬 의원 타살설	제14조(객관성)	경고 ('18.10.22.)	'18.11.8.

* 해당 건은 '17년 재승인 심사 및 이행실적 점검 시 未반영 되었고, 법정제재는 처분일 기준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자문 및 외부자문단 의견에 따라 '18년 이행실적 점검 시 반영

③ (TV조선, 채널A)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 o 관련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기구 운영(TV조선 월1회 '공정 보도특별위원회', 채널A 분기별 '공정보도 심의위원회' 등)

④ (TV조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 o 해당 프로그램(신통방통) 진행자('18.11.17.)와 외부 출연자 2명('18.11.21.)에게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하였음

⑤ (공통)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

- o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음

구 分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연간)	32.80%	29.11%	34.44%	33.40%
사업자 제출실적	30.09%	26.74%	26.63%	33.10%
방통위 점검결과	32.58%	26.73%	29.21%	33.08%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17년 이행실적 점검 당시 외부자문단의 판정에 따라, 당초 방송사가 보도 관련 장르가 아니라고 제출한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의 '외부자들'은 보도 관련 장르에 해당함

⑥ (MBN)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계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42.4%) 이내로 편성할 것

- 점검 결과 42.26%을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 分	(주)매일방송 계획 비율	제출실적 및 점검결과
재방 비율	42.40%	42.26% (222,100/525,600시간)

⑦ (공통)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 4개사 모두 방통위의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금액이 일부 있었으나, 해당 금액을 가감하더라도 계획한 금액 만큼 콘텐츠 투자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

구 分 (단위:백만 원)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				
제출실적				
점검결과				
점검 후 투자금액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19.6.~7월 현장실사를 통해 방송제작비의 계정원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했고, 외부자문단 회의 결과 임직원 프로그램 출연료(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비 변상적인 금액)를 추가로 직접제작비로 인정하기로 함

※ '17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시 외부자문단이 조치필요사항으로 지적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 구체화·명확화'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8.23.)을 통해 개선 완료하였음

⑧ (TV조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 만기 도래한 펀드를 재구성(총 ooo억 중 TV조선 출자액 oo억 원)하고, ooo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o개를 추가로 조성하여 '18년 계획(oooo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조성완료 및 운용 시작)을 준수(총 oooo억 원)

- ⑨ (MBN)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 총 8가지의 외주상생 계획을 이행하였음

- ※ 총 oo건(신규계약 oo건, 재계약 oo건)의 외주계약을 대상으로 외주상생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지원)
- ※ '제작비 현실화' 및 '저작권 및 해외판매 권리보장'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 현장실사를 실시(10. 25.)하여 프로그램별 계약서 원본을 확인

구분	계획	결과	세부내용
1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25개) : 이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점검 시 공지한 필수조항을 계약서에 포함 ○ '18년 방영권 구매 프로그램(4개) : 수정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가 제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시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 - 다만 MBN 측은 제작사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저작권, 방송횟수, 편집 등에서 제작사의 권리를 모두 수용했고 향후에는 구매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함
2	선지급금 기준 마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지급금 기준 마련 완료('18.2.27) 및 4개 프로그램 선지급금 지불
3	저작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정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수익배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완료('18.2.27) 및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함으로써 이행
4	촬영원본 영상사용권 부여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시, 제작사에 협의 후 영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 (다만, 영상사용권을 요청한 제작사는 없음)

구분	계획	결과	세부내용
5	제작비 현실화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프로그램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윤을 보장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서에도 제작비 관련 논의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기존프로그램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프로그램 모두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제작비 인상
6	외주사 상생간담회 및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사 상생간담회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외주 제작사 10곳에 포상금과 상패 등 인센티브 제공 ○ 시장동향점검회의 개최 : 이행(분기별 회의록 제출)
7	저작권 및 해외판매 권리보장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외판매 권리 및 저작권을 공유 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 및 판권은 외주사에게 부여하고 방송사가 국내방영권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서 작성
8	사전제작비 지급 확대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제작비 지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제작에 제작비의 상당부분이 소요되는 해외촬영 제작물, 대형 오락물, 드라마 프로그램'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자문단 의견 :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은 구매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 실질을 살폈을 때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⑩ (MBN)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o '17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8.12.12. 보고)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진이 경영의 전문성·독립성 조건을 위배했다는 사유로 방통위의 시정명령 처분('19.1.)을 받았으며, MBN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19.5.)

o MBN은 이와 별개로 '19.3.22.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인사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진을 재편하였음

※ 감사위원장 김oo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외이사 고△△ 前 방송사 감사

※ 자문단 의견 : '18년에는 이행실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감안하여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위반 상황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

5.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 현황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TV조선, MBN	15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TV조선), 5항목 13세부사유로 구분·관리하며, 홈페이지에 공개(MBN)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공통	4사는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달성하였음
재방비율 감소	TV조선, JTBC, 채널A	3사 모두 전년대비 재방비율 감소 ※ TV조선 38.77%→38.63%, JTBC 38.7%→36.7%, 채널A 43.0%→40.47%
재정건전성 확보	JTBC	'18년도 153억원 유상증자, 전년대비 방송사업매출 12%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를 유지하여 권고사항 준수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채널A	편성위원회 8회 개최, 회의록을 사내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권고사항 준수
협찬 의존감소, 투명한 회계관리	MBN	- 17개 신규 예능 및 드라마 편성 확대를 통한 매출 다변화 노력과 함께, 뉴미디어 매출·콘텐츠 판매 증가 등을 통한 협찬 의존도 감소 동시 추진 - 협찬 매출을 기업별, 내역별로 관리하고 있음
일자리확대	MBN	비정규직의 매년 00%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18~ '22년까지 연간 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및 '18년 계획 이행
국산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MBN	'18년 계획 이상으로 국산방송장비를 도입하여 권고 사항 준수

6.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YTN, 연합뉴스 TV	(YTN) 프로그램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 전문기자, 해설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프로그램 출연자로 선정 (연합뉴스TV) ‘패널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패널 검증 강화,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및 타사 심의제재 사례 교육을 통한 보도의 공정성 및 품격제고 노력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YTN	- YTN 사장 선임 및 노동조합 파업 등의 현안으로 인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보도국장과 공정방송추진위원장 간의 면담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연합뉴스 TV	- 비록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나, 연합뉴스TV는 주요주주 대표로 구성된 사외이사제도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광고매출목표 및 실적점검 등 경영사안 관련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고자 노력 - 연합뉴스TV 측은 향후 모바일광고 등 뉴미디어 분야의 독자영업능력을 강화하고 광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시청자위원회 구성다양성 제고	연합뉴스 TV	방통위 권고(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체운영내규를 개정 ※ 시청자위원회선정위원회 구성→후보자공모→19개 민간 단체 후보자 추천 요청→적격여부 심사→최종선정
재정건전성 확보	연합뉴스 TV	- 3년('16~'18년) 연속 흑자, 광고·수신료 매출 상승 - 대외 홍보·마케팅활동을 통해 매출 상승 여력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7. 조치방향(안)

-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는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
-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9년 말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
 - ※ MBN의 재승인 조건 중 '18년에 이행하지 않은 '경영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조건의 경우 '19년에 이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짐
 - ※ YTN의 권고사항 중 '18년에 이행하지 않은 '공정방송위원회 정기적 운영'의 경우 '19년 이행(8월 말 기준 6회 개최)하여 이행을 촉구할 실익이 없어짐

- 붙임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2.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3.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1부
4.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기준 1부. 끝.

6.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속기록, '19.11.22)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1. 22.(금) 09:03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욱 상임위원 (1인)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2018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17년도에 종편·보도PP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4월까지 이행실적을 접수받았고, 6월~7월에 걸쳐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주)매일방송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조건 주요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별로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된 사항 4가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된 사항 4가지, 그리고 기타 사항 2가지 등 총 10가지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된 조건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 언어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이것을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이 있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과 관련해서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TV조선 관련해서는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조건으로 MBN에 대해서 외주 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그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준수하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종편PP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상의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종편 4사가 '18년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7건으로 4개사 모두 4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TV조선의 경우 3건, 채널A 1건, MBN 3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TV조선과 채널A에 부과된 검증기구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TV조선이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채널A가 공정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TV조선의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 2명에 대해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관련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조건에 대해서도 4개사 모두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뒤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MBN에 부과되었던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의 경우에 42.26%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조건 관련해서는 4개사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정 기준을 일부 따르지 않은 금액이며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감하더라도 계획된 금액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밑에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실사 기간 동안 방송제작비의 계정원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점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TV조선에 부과한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18년도에 0,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총 0,000억원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출자 증서를 확인했습니다. 아홉 번째, MBN의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준수하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밑에 <표>에 다음 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8가지 외주상생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29건의 외주계약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송기반국의 협조를 얻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제작비 현실화 등 추가 현장실사를 실시해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MBN에 대해서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MBN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BN은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22일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인사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진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문단에서 일정 부분 위반사항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사업자별로 각각 총 8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했었는데 모두 준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YTN은 '18년도에 파업 등의 현안으로 인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노사 대표 간 면담을 통해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 사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향후 모바일 광고 등 뉴미디어 분야의 독자 영업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입니다. 먼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는 2020년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로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9년 말까지 이 부분에 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과 YTN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진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조금 격이 다른데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행을 다한 것으로 되었으니까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권고사항 가운데 아직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지요? 왜냐하면 연합뉴스TV는 내년 초에 재승인 대상 사업자니까 아마 이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경영의 분리 문제, 그다음에 텔레비전의 재원의 주축인 광고영업을 연합뉴스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도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특별히 추가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종편PP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매체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서 상당히 진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법정제재가 우리가 제시했던 연4건 이하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경영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이행실적은 MBN이 조금 처졌지만 나중에는 위반사항이 해소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조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보도PP인 연합뉴스 TV는 광고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도PP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도PP는 시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오락 프로그램이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공공성이 강한 뉴스전문채널입니다. 그래서 독자 영업을 하면 광고영업행위가 뉴스편성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KOBACO나 렙을 통해 공동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YTN은 직접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서 렙을 통해 공동영업을 해서 좀 더 투명성과 공영성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PP도 잘 안착을 해서 매체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종편과 보도PP를 승인해 줬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잘 진입되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융합시대이고, 또 M&A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 혁신 노력을 해서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보도PP 같은 경우 YTN과 연합뉴스TV가 서로 경쟁적으로 건전한 여론조성을 놓고 경쟁을 해서 좀 더 시청률을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부문에 보면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에서 15개 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한다, 또 5개 항목 13개 세부사유로 구분·관리해서 매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다 말하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만을 제기한 시청자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서 해소가 되었는지 그 디테일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번에 시청자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적격자를 뽑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는데,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보면 시청자보호를 위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편성이나 제작하도록 한 옴부즈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인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런 내실화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학자들이 이 옴부즈만 프로그램이 편성이나 내용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프로그램 제작이나 또 다른 시청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방송사마다 아주 잘 되는 곳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통합방송법 개정하면서 이런 법 취지를 살려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실화가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관련 자료를 추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10시 43분 폐회】

7.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
(안건, '20.2.19)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20. 2. 19.	보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20. 2.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2020. 2. 19.(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보고 사유

-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 '17년도, '18년도 이행실적은 현장실사·자문단 논의 등 검증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 '19년도 이행실적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이행실적 제출결과만을 보고

2. 주요 경과

- o '17. 3월, 11월 : 종편·보도PP (조건부)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 (주)와이티엔·(주)연합뉴스티브이('17.3.9.), (주)조선방송·제이티비씨(주)·(주)채널에이('17.3.24.), (주)매일방송('17.11.27.)
- o '20. 1~2월 :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접수

< 이행실적 점검 관련 주요경과(재승인 이후) >

- o '18. 12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 o '19. 1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의결
 - ※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 o '19. 1~2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촉구(권고사항)
 - ※ (주)연합뉴스티브이('19.1월), (주)매일방송('19.2월)
- o '19. 11월 :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 o '19. 11월 :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촉구(권고사항)
 - ※ (주)연합뉴스티브이('19.11월)

3. 이행실적 확인대상

o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 조건 부과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 확인

※ 재승인 심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콘텐츠 투자비 등은 가결산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행여부 확인

< 종편PP 재승인 조건 >

구 분	
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준수 (4개사)
	②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4개사)
	③ 검증기구 운영 (TV조선, 채널A)
	④ 진행자·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TV조선)
프로그램 기획 · 편성 · 제작	⑤ 뉴스 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4개사)
	⑥ 재방비율 준수 (MBN)
	⑦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4개사)
	⑧ 콘텐츠 펀드 조성 (TV조선)
기 타	⑨ 외주상생방안 준수 (MBN)
	⑩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MBN)

o 종편PP 4개사 및 보도PP 2개사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4.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①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 4개사

o (조건내용)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o (이행여부)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 중

② 오보 · 막말 · 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 4개사

- (조건내용)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 (이행여부) '19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 수는 총 2건(채널A 1건, MBN 1건)

<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주요내용 >

사업자	제 목	방송일	위반내용	적용조항	방심위 결정일	방통위 처분일
채널A (1건)	뉴스 TOP10	'19.5.31.	진행자가 잘못된 내용 언급	제14조(객관성)	주의 (‘19.11.11.)	‘19.12.4.
MBN (1건)	뉴스 와이드 1부	'19.4.21.	하단 스크롤 자막에 잘못된 내용 표기	제14조(객관성)	주의 (‘19.7.22.)	‘19.8.12.

③ 검증기구 운영 - TV조선 · 채널A

- (조건내용)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 (이행여부) 2개사 모두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 · 운영 중
※ ①TV조선 : 공정보도특별위원회(월 1회 개최), ②채널A : 게이트키팡 회의(매주), 공정보도심의위원회(분기별) 등

④ 진행자 · 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 TV조선

- (조건내용)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 (이행여부)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 다만 '19년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건수는 없음

⑤ 뉴스팀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 4개사

- (조건내용)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
- (이행여부)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

< 종편PP 편성 계획 및 제출실적 >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연간)	32.70%	29.11%	34.44%	32.70%
사업자 제출실적	28.89%	26.73%	27.53%	31.00%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⑥ 재방비율 준수 - MBN

- (조건내용)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 (이행여부) '19년도 MBN 재방비율은 39.4%로 재승인 조건 이행(계획 40.8%)

< MBN 재방비율 계획 및 제출실적 >

구 분	재방비율 계획	제출실적
재방 비율	40.8%	39.4%(207,293 / 525,600시간)

⑦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 4개사

- (조건내용) 사업계획서 ·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에 의할 때, TV조선과 채널A는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
 - '20년 하반기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JTBC · MBN은 결산자료가 확정된 후 제출받을 계획(재승인 조건에 따른 제출시한 : 매년 4월 30일까지)
<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제출실적(단위 : 백만원) >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연간)				
사업자 제출실적*				
이행여부	이행	-	이행	-

* 해당 자료는 가결산 자료로 향후 회계법인 검증 과정 등에서 변동 가능

⑧ 콘텐츠 펀드 조성 - TV조선

- (조건내용)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TV조선 출자법인의 펀드 조성·운용(총 000억 중 oo억 출자), 콘텐츠 관련 펀드에 대한 TV조선의 투자(펀드총액:000억, 약정액:00억, 출자액:00억) 등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 이행 중

⑨ 외주상생방안 준수 - MBN

- (조건내용)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외주상생계획을 이행 중

< MBN 외주상생계획 세부내용 >

구분	계획	결과	세부내용
1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	○ 신규·재계약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계약서 사용
2	선지급금 확대 지급	이행	○ '18년 2월 제정한 선지급금 기준에 따라 '19년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선지급금 지급
3	저작권 수익배분 개선	이행	○ '18년 2월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사 요청 시 적극 협의 진행(일부 프로그램의 OST 음반제작 판매권을 외주제작사가 소유)
4	촬영원 본 영상사용권 부여	이행	○ 프로그램 계약 시, 제작사와 영상사용권 협의 (다만, 영상사용권을 요청한 제작사는 없음)
5	제작비 현실화	이행	○ 신규프로그램 :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통해 제작사가 요구한 제작비를 반영하여 제작비를 책정하고, 제작비 규모에 따라 제작사의 기업이윤을 보장 ○ 기존프로그램 : '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1.5%) 하여, '19년 2월부터 제작비 인상(총 10개 프로그램)
6	외주사 상생간담회 및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	이행	○ 반기별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간담회를 개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 제작사 시상 및 인센티브 지급 ○ 시장동향점검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개최
7	저작권 및 해외판매 권리보장	이행	○ 프로그램 계약 시 제작사와 해외 판매, 재방송권 등에 대한 권리 협의
8	사전제작비 지급 확대	이행	○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제작비 지급 - 제작기간 및 투입 인원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급

⑩ 경영전문성 · 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 MBN

- (조건내용)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이행여부)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외이사 2명* ·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 김oo 신문방송학과 교수(감사위원장), 최oo 前 한국케이블TV oo방송 사장

5.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재승인 권고사항을 미준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 현황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TV조선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불만사유를 14가지 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TV조선), 5항목 13세부 사유로 구분·관리하며, 홈페이지에 공개(MBN)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사 모두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계획 달성
재방비율 지속적 감소	TV조선 JTBC 채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채널A 전년 대비 재방비율 감소, JTBC 전년 수준 유지 ※ TV조선 : 38.63%→37.7%, JTBC : 36.70%→36.70%'(18년 계획 38.3%, '19년 계획:37.5%), 채널A : 40.47%→39.04%
재정건전성 확보	JT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도 공모사채 발행을 통한 이자 감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 '19년 방송사업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확인 예정(6~8월)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채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 0회 포함 총 0회의 편성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사내정보시스템에 공개
협찬 의존감소, 투명한 회계관리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매출액 대비 협찬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18년:00%→'19년:00%)하였으며, 신규 프로그램 런칭·뉴미디어 매출 확대 등을 통해 협찬의존도 감소 및 매출 다각화를 위해 노력 ○ 협찬 매출을 기업별, 내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협찬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윤리교육 실시
일자리확대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MBN 미디어텍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 '19~ '23년까지 연간 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및 '19년 계획 이행
국산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픽 제작장비 투자 등 '19년 계획 달성

6.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YTN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YTN)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섭외, 정책담당자·사건 당사자의 출연 확대 등 프로그램 출연자의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를 위해 노력 (연합뉴스TV) '패널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패널 검증 강화,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및 타사 심의제재 사례 교육을 통한 보도의 공정성 및 품격제고 노력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 각각 0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19년 총 0회 개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채용 확대, 사외이사제도 운영,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운영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위해 노력 중 연합뉴스의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가칭 '연합뉴스TV의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영업 업무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
시청자위원회 구성다양성 제고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한 자체 운영내규를 바탕으로 제5기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중 ※ 시청자위원회 구성→후보자공모→19개 민간 단체 후보자 추천 요청→적격여부 심사→최종선정
재정건전성 확보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16~'19년) 연속 흑자, 광고·수신료 매출 증가(계획대비) 비용절감과 추가 수익창출(온라인 및 사업수익 강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

7. 기타 : '18년도 종편PP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 점검결과 정정

- ‘18년도 종편PP의 콘텐츠 투자실적 점검결과(위원회 보고 ’19.11.22.) 중 당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정정 시에도 ’18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은 달성)

- (채널A)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00백만원으로 정정

※ (추가 불인정 항목) ①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000백만원) ②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000백만원)

- (TV조선)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00백만원으로 정정

※ (추가 불인정 항목)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000백만원)

< 채널A·TV조선 콘텐츠 투자금액 정정사항(단위:백만원) >

사업자	계획금액	이행실적		이행여부
		정정 전	정정 후	
채널A				이행
TV조선				이행

8. 조치방향(안)

- (기본방향) 사업자별 재승인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방향 검토

- (TV조선 · 채널A · YTN · 연합뉴스TV) 4개 사업자는 3월 재승인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

※ 재승인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6~8월 예정)

- (JTBC · MBN) 하반기 심사예정인 2개 사업자는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점검(6~8월 예정)한 후, 조치방향 검토

- 붙임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2.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3.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1부
4.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기준 1부. 끝.

8.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
(속기록, '20.2.1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2. 19.(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이행실적은 현장실사와 자문단 논의 등 검증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으나, 2019년도 이행실적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과 11월에 종합 및 보도 PP 재승인 관련해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2월까지 종편 및 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을 접수받았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관련된 세부적인 경과는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확인대상입니다.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와 종편PP 4개사 및 보도PP 2개사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조건 부과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콘텐츠 투자비 같은 경우 가결산 자료로 점검하였습니다.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입니다. 첫 번째,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입니다. 4개사에 공통적으로 부과된 조건이고, 조건 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이행여부는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 중인 것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해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4개사 공통입니다. 조건내용의 세부내용은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과 관련해서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채널A가 1건, MBN이 1건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19년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2건으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기구 구성 관련해서는 TV조선과 채널A에 부과된 조건인데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고, 채널A의 경우에는 게이트 키핑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공정보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진행자·출연자의 법정제재 시 진행자와 출연자를 출연정지시키라는 TV조선에 부과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여부 관련해서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하라는 조건인데, '19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정제재받은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팀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사 공통조건입니다.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적인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방비율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계획 40.8%였는데 '19년도 재방비율이 39.4%로 확인되어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인데 사업자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를 확인했는데 TV조선과 채널A는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TBC과 MBN의 경우 하반기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가결산이 끝나고 본결산 자료를 받아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TV조선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고, TV조선이 출자법인을 통해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고, 콘텐츠 관련 펀드에 TV조선이 일정금액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펀드 조성 관련된 내용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외주상생방안 준수와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 외주상생계획 세부내용을 보시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열 번째,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외이사 2명·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시청자 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관련해서는 TV조선, MBN, 그리고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는 공통, 이렇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로 방송사에 부과된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 내용도 역시 미준수하고 있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현황 관련해서 연합뉴스TV와 YTN이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연합뉴스TV 관련해서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 참조 동그라미 2개에 있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18년도 종편PP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 점검결과에서 정정하는 내용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18년도 종편PP 콘텐츠 투자실적 점검결과, 당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22일자로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투자계획은 달성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채널A 관련해서는 20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억 0,000만원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불인정하는 항목은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 0억 000만원,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0억 0,000만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V조선과 관련해서는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억 0,000만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불인정하는 항목은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0억 0,000만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치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사업자별 재승인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4개 사업자는 3월 재승인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승인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JTBC와 MBN은 하반기에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6~8월 까지 점검을 한 후에 조치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재승인 조건 부과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재승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재승인이라는 행정행위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재승인 조건의 이행점검은 행정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고안건>은 '17년과 '18년에 이어서 '19년도 종편 및 보도PP의 재허가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지난해 재승인 이행실적이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하는데 <4>번 항목에서 진행자·출연자 법정제재 시 법정제재 판정을 받아도 만약 소송을 하면 최종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산입이 안 됩니다. TV조선의 경우 실제 법정제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불산입했던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TV조선의 경우 소송 중인 건이 2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2건의 경우 검증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에는 TV조선의 경우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를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 외 종편PP는 재승인 권고사항 가운데 미준수 항목은 없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보도PP 가운데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독립성 확보의 권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고, 연합뉴스TV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권고사항의 내용은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었고,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다거나 광고를 연합뉴스에 위탁해서 광고판매를 하고 있다는 등 2가지 정도 중점사항이 있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운영의 독립성에 구체적 내용을 두고서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그 부분은 다음 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우선 종편과 보도PP에서 특히 종편채널에서 권고사항 또 재승인 조건을 다 잘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품격제고 계획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노력에 대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를 매년 4건으로 줄이라는 조건에 대해 2개사가 1건씩만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무슨 의도된 잘못이 아니고 진행자가 잘못된 내용을 언급했거나 자막이 잘못된 오기가 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종편방송들이 초창기에 보면 보도전문채널이나 마찬가지로 너무 보도 장르에 방송비율을 할애해서 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서 방통위에서 합산 비율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보도 장르라면 뉴스나 탐사보도, 또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인데 합산해서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특히 30% 미만으로 대부분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보도채널 같은 성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편, 종합편성의 당초 허가 취지를 잘 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종편들이 종합편성채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해서 꽤 반가운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금액을 보면 당초 TV조선과 채널A가 000억원 정도를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연간 또는 0,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런데 모두 지난 '19년도에 제출실적을 보면 이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 아닌가, 특히 종편들이 오락 부분도 어느 프로그램은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편들이 보도 장르에 치중했던 방송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정말 종합편성 방송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현상이 눈에 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방송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입부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9년도 실적은 저희가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콘텐츠 투자비용도 가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정도부터 시작할 실제 점검으로 인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낼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하도록 추가로 여기에 언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종편사업자들에게 심의에서 법정제재가 1년에 4건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4월 15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재를 받아도 방송평가의 감점으로 반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에 보면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노사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 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했고, '19년도에 7차례 개최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한 것 같은데, 회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작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점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시청자의 권리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되겠지만 시청자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그것이 반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잘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VI. 재승인 심사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분 야	이 름	현 직
심사위원장	윤 석 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3인)	마 정 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정 미 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채 영 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법률(2인)	민 경 한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박 지 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경영 . 회계 (3인)	노 진 백	삼일회계법인 이사
	이 정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본부장
	조 연 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
기술(1인)	이 상 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시청자 . 소비자 (3인)	김 은 규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마 동 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2. 세부 심사기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

2020. 3. 16



1

개요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제시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2

세부평가 방법

- (기본원칙) 심사위원회를 제외한 심사위원(12인) 전원이 각자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의 중복을 최소화
- (평가유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평가 : 방송평가와 재정적 능력, 법령 위반 정도,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 비계량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점수 계산)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함
 -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 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재승인 여부 결정)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 중, 감점 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 다만, 심사사항 중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서 정한 재승인 여부 결정 방안 >

총점	심사사항 점수	재승인 여부
650점 이상	•	재승인
	다음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상기 심사사항을 제외한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재승인(조건부가)
650점 미만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3

세부항목별 심사

【 세부심사항목 구성 】

- 각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계획 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 구성

< (예시) 세부심사항목 구성 >

심사항목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세부심사항목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u>이행실적의 적정성</u>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u>실현계획의 적정성</u>

- 일부 심사항목*은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실적만 반영

* ①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⑩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⑬방송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정도 ⑭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재)승인시 부과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 세부심사항목 배점 】

- (배점비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방송평가와 재승인 이행여부 등으로 평가되므로 과거 실적만 평가하는 심사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보다 계획에 대한 배점 비중 강화(실적대비 계획 비중을 약 1:2로 부여)

* 과거실적을 평가하는 심사항목 배점을 합산하면 종편·보도PP는 각각 500점임

- '17년 재승인과 비교할 때,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과 ⑯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이 신설된 점을 고려할 때 계획 배점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계획 배점 비중 '17년 27% → '20년(안) 35%)

※ 지상파 재허가 심사 : (2013년도) 실적 675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및 계획 325점, (2016년도) 실적 705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및 계획 295점임, (2019년) 실적 730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및 계획 320점, 2019년은 총점이 1,050점임

- 종편·보도PP의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외 심사항목의 배점(650점)에서 실적(281점)보다 계획(369점)의 비중을 높게 하여, 총점 1,050점 중 종편PP는 실적 681점, 계획 369점, 보도PP는 실적 686점, 계획 364점으로 배점을 구성

<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 >

심사사항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실적	계획	실적	계획
1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400	-	400	-
2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20, 150)	40	80	50	100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25	45	30	50
3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30)	6	14	10	20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60)	15	35	20	40
	⑥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80, 70)	30	50	25	45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30)	7	13	10	20
	⑧ [신설]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10	30	-	-
4	⑨ 경영 전략 및 관리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40)	16	34	13	27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30	-	30	-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7	13	3	7
5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30)	10	20	10	20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	-	-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	-	-	-
	⑮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70)	70	-	70	-
6	⑯ [신설]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50)	15	35	15	35
합 계		681 (65%)	369 (35%)	686 (65%)	364 (35%)
2017년		731 (73%)	269 (27%)	720 (72%)	280 (28%)
2014년		675 (67%)	325 (33%)	650 (65%)	350 (35%)

< (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계획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실적	계획	실적	계획
1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400	-	400	-
2	② 공적책임 ·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20, 150)	60	60	75	75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30	40	35	45
3	④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30)	5	15	10	20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60)	20	30	25	35
	⑥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80, 70)	35	45	30	40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30)	10	10	15	15
	⑧ [신설]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15	25	-	-
4	⑨ 경영 전략 및 관리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40)	20	30	15	25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30	-	30	-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10	10	5	5
5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30)	10	20	10	20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	-	-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	-	-	-
	⑮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70)	70	-	70	-
6	⑯ [신설]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50)	15	35	15	35
합 계		730 (70%)	320 (30%)	735 (70%)	315 (3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계량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
 - 따라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방송평가 평균 점수를 반영하되,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17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점수('16.1.1.부터 '17.1.31.까지)를 제외하고 반영
- ※ '17년 재승인시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는 '14.2.1~'17.1.31까지, YTN은 '12.1.1~'17.1.31까지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이 반영되었음
-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감점	계량

- (적용대상/기간) 재승인 신청법인의 '17.2.1.부터 '20.1.31.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반영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 방송법 위반 중 종편·보도PP와 관련없는 일반PP 운영과 관련된 법 위반은 제외

- (관계법령 범위)

【1안】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규정된 법 위반사항만 반영

-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인 '14년, '17년 재승인에서는 위 5개 법령 이외에 그 밖의 법 위반사항도 감점항목에 반영하였음('17년은 자본시장법, 저작권법 등의 위반사항이 반영)

【2안(심사위원회 의결)】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규정된 법 위반 사항은 감점항목으로 반영하고,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은 심사항목 '② 공적책임 ·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서 비계량평가로 반영

-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은 상사, 콘텐츠, 저작권, 금융, 중소기업, 형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후, 위반내역을 심사에 반영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재허가 등)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생략>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 (참조기준)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 참조

법령위반	기준점수
방송법* (편성관련규정)	.과태료 : -6점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5점, 5천만원 초과 -22.5점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태료 : -4점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0점, 5천만원 초과 -15점 .심의제재 :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공정거래법	.과태료 : -4점, · 시정명령 : -8점, · 과징금 : -10점
그 외 법령	.과태료 : -2점, · 시정명령 : -4점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 (감점기준)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법령위반	행정처분	종편PP감점	보도PP감점
방송법 위반 (편성관련규정)	과태료	-3.43	-4.8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8.57 -12 -12.86 -18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 본법 위반	과태료	-2.29	-3.2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5.71 -8 -8.57 -12
	심의제재	① 주의 ② 경고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②+③, ②+④ ③+④, ②+③+④	-0.57 -1.14 -2.29 -2.29 -2.86 -3.43 -0.57 -1.14 -2.29 -2.86 -3.43 -0.57 -1.14 -2.29 -2.86 -3.43
공정거래법 위반	과태료	-2.29	-3.2
	시정명령	-4.57	-6.4
	과징금	-5.71	-8
그 외 법령 위반	과태료	-1.14	-1.6
	시정명령	-2.29	-3.2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86 -4 -4.29 -6

※ '16.7.1.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해 강화된 심의제재를 반영하여 감점 적용

※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점 유예

※ '17년~'18년말까지는 방송평가 결과(연평균 감점 사항)로 반영

- ('19년 위반사항 감점계산) 관계법령 위반 감점은 '16년~'18년 위반 사항은 방송평가 점수로 반영되므로 3개년 평균치로 반영하나,
 - '19년 위반에 대해 1년 감점점수로 반영시 연도별로 적용방식이 달라져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17년 재승인시 사업자 문제제기)
 - '14년 및 '17년 재승인시에는 최근연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을 가중하는 측면과 별도의 심사항목이라는 점에서 '14년 및 '17년 재승인시 1개년 감점으로 평가

【1안】 '19년도 법령위반건은 1개년 감점을 1/3로 계산하여 평가

【2안(심사위원회 의결)】 '19년도 법령 위반건은 1개년 감점으로 평가 ('14년 및 17년 재승인과 동일한 방법)

구분 (예시)	방송평가 반영 (종편PP : 700점만점)	재승인 반영('14년 및 17년 방식)	
		'17년, '18년 위반 (방송평가 점수로 환산)	'19년 위반
방송법 (과태료)	-4 점	$\begin{aligned} & - 4 \times 400 / 700 \\ & = -2.29 \text{ 점} \end{aligned}$	$\begin{aligned} & - 4 \times 400 / 700 \\ & = -2.29 \text{ 점} \end{aligned}$
		$\begin{aligned} & - 2.29 \text{ 점} / 3 \\ & = -0.76 \text{ 점}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 } 2.29 - 0.76 = 1.53 \end{aligned}$

【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량

- (적용 대상 및 기간) 재승인 신청법인의 '17.2.1.부터 '20.1.31.까지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범위)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 단, 소송중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감점 유예
- (참조기준)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

구분	기준점수
방송편성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12점 • 시정명령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5점/5천만원 초과 -22.5점
그 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8점 • 시정명령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0점/5천만원 초과 -15점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 (감점기준)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적용

※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행정처분	종편PP감점		보도PP감점	
	편성관련	그외	편성관련	그외
시정명령	-6.86점	-4.57점	-9.6점	-6.4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8.57점	-5.71점	-12점
	5천만원 초과	-12.86점	-8.57점	-18점

※ '17년~'18년말까지는 방송평가 결과(연평균 감점 사항)로 반영

- ('19년 위반사항 감점계산) 관계법령 위반정도에 대한 감점계산 방식을 적용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1안)		배점(2안)		평가 지표
			종편	보도	종편	보도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8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부채비율	10	10	12	12	계량
		자기자본순이익율	10	10	9	9	계량
		총자산증가율	10	10	9	9	계량

- (세부심사항목)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

※ '10년 및 '14년, '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 재정적 능력 평가지표와 동일

- (배점) 종편·보도PP 사업을 시작한 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지표별 고른 배점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1안】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지표별 동일한 배점을 적용

【2안(심사위원회 의결사항】 '14년, '17년 재승인 배점과 같이 안정성 지표의 배점을 강화

< 과거 승인 및 재승인 재무능력 배점 현황 >

세부심사항목	10년 최초승인		14년 재승인		17년 재승인	
	종편	보도	종편	보도	종편	보도
부채비율	30	20	25	15	12	12
자기자본순이익율	30	20	20	15	9	9
총자산증가율	30	20	20	10	9	9

- (대상기간)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17년, '18년, '19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9년의 경우 신청법인의 재무 현황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

-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

- (최저점 설정) * 세부심사항목별 배점은 1안(항목별 배점이 동일한 안)을 가정

◆ 제1안(심사위원회 의결사항) : 최저점수를 20%

('17년 재승인, 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세부심사항목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A < m-2a	m-2a ≤ A ≤ m+2a	A > m+2a
부채비율(10점, 10점)	10점, 10점	[0.6 + 0.8 x (m-A)/4a] x 배점	2점, 2점
자기자본순이익률(10점, 10점)	2점, 2점	[0.6 + 0.8 x (A-m)/4a] x 배점	10점, 10점
총자산증가율(10점, 10점)	2점, 2점	[0.6 + 0.8 x (A-m)/4a] x 배점	10점, 10점

◆ 제2안 : 최저점수를 30%('14년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항목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A < m-2a	m-2a ≤ A ≤ m+2a	A > m+2a
부채비율(10점, 10점)	10점, 10점	[0.65 + 0.7 x (m-A)/4a] x 배점	3점, 3점
자기자본순이익률(10점, 10점)	3점, 3점	[0.65 + 0.7 x (A-m)/4a] x 배점	10점, 10점
총자산증가율(10점, 10점)	3점, 3점	[0.65 + 0.7 x (A-m)/4a] x 배점	10점, 10점

※ 붙임 :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1. 방송평가 (400, 400)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400, 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를 400점으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년,'17년,'18년도 방송평가 평균점수를 반영 '17년 재승인시 반영된 감점점수를 제외하고 반영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150)	공적책임·공정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실적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실적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실적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적(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및 여론 다양성 (패널의 다양성 포함) 관련 이행실적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행실적 방송언어 순화실적 편성규약 제정 · 공표 현황 및 이행실적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실적 등 기타 법령 위반 실적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현 계획(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실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실현 계획 방송언어 순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의지 편성규약 이행 관련 향후 계획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계획 등
③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35)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방송법 제87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실적(방송법 제89조)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 실적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실적(방송법 제86조) 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3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5, 1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발전관련 기여실적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발전관련 기여 계획 사회적 기여 계획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여 계획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기여계획 등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6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2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방송분야별, 제작주체별 등) 수급 실적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방송법 제4조) 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정성(30,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방송분야별, 제작주체별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방송 법 제4조) 등
	⑥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80, 70)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우수성(3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이행실적 등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45,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계획 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3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편성 실적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 노약자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등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편성 계획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노약자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절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실적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 및 운영실적 등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제도운영 실적 등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절성(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계획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제도운영 계획 등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4. 경영 · 재정 · 기술적 능력(100, 80)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40)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2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 운영 실적 • 교육훈련 실적 •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이행실적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등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3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교육훈련 계획 •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계획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계획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전략 관련 계획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향후계획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 규모의 실현가능성 • 추정 재무제표의 적정성 • 추정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부채비율(12, 12)	0 부채총액/자기자본('17년 및 '18년)
		자기자본순이익률(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7년 및 '18년)
		총자산증가율(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17년 및 '18년)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실적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관련 이행실적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적 등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계획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⑫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30)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개발(R&D) 이행실적 방송인력 양성 이행실적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관련 이행실적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실적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이행실적 등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방송인력 양성 계획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계획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향후계획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향후계획 등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법인이 위반한 법 위반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법 위반 건수는 제외하고 평가 종편PP 감점기준 <p>(편성관련 방송법 규정* 위반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3.43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8.57점 5천만원 초과 -12.86점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p> <p>(그외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2.29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71점 5천만원 초과 -8.57점 - 심의제재 : ①주의 -0.57점, ②경고 -1.14점, ③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29점, ④방송편성 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2.29점, ②+③, ②+④ -2.86점, ③+④, ②+③+④ -3.43점 <p>(공정거래법 위반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2.29점 - 시정명령 : -4.57점 - 과징금 : -5.71점 <p>(그 외 법령 위반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14점 - 시정명령 : -2.29점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2.86점 5천만원 초과 -4.29점 • 보도PP 감점기준 (편성관련 방송법 규정*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4.8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2점 5천만원 초과 -18점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그외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3.2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8점 5천만원 초과 -12점 - 심의제재 : ①주의 -0.8점, ②경고 -1.6점, ③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2점, ④방송편성 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3.2점, ②+③, ②+④ -4점, ③+④, ②+③+④ -4.8점 (공정거래법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3.2점 - 시정명령 : -6.4점 - 과징금 : -8점 (그 외 법령 위반 시)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6점 - 시정명령 : -3.2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4점 5천만원 초과 -6점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이 받은 시정명령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 • 시정명령은 방송법 위반에 한정 • 종편PP 감점기준(편성관련 규정* 위반시 감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4.57점(-6.86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71점(-8.57점) 5천만원 초과 -8.57점(-12.86점) • 보도PP 감점기준(편성관련 규정* 위반시 감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6.4점(-9.6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8점(-12점) 5천만원 초과 -12점(-18점)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 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p>
⑮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70)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70,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 취득 여부 - 재승인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여부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실적 점검 관련 필요사항 협조 여부 -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의 적정성 - 이행촉구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여부 - 이행촉구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의 적정성 • 재승인시 부과한 권고사항 이행의 적정성 - 권고사항 이행실적 제출 여부 - 권고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등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⑯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50)	<p>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15, 15)</p> <p>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35, 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 운영 실적의 적정성 -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인력 현황 -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 재난방송 관련 캠페인 및 프로그램 편성 실적 - 재난방송 교육 및 모의훈련 실적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실적 - 재난방송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 재난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완 실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및 조직·인력 운용 계획 - 재난방송 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 - 재난방송 관련 캠페인 및 프로그램 편성 계획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계획의 적정성 - 재난방송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 재난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완 계획 등

3. 심사평가 결과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 TV
1. 방송평가	400	400	계량	343.34	344.00	340.29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104.15	109.60	134.30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150	비계량	57.95	61.10	78.0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28.35	29.75	42.15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29.60	31.35	35.85
2-2.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80	비계량	35.30	38.20	40.40
2-2-1.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35	비계량	14.80	14.50	19.20
2-2-2.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45	비계량	20.50	23.70	21.2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30	비계량	10.90	10.30	15.90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10	비계량	2.65	2.40	6.0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20	비계량	8.25	7.90	9.9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103.90	103.50	83.80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50	60	비계량	29.20	26.90	31.9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25	비계량	11.70	10.25	14.05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35	비계량	17.50	16.65	17.85
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70	비계량	44.90	44.80	35.30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	35	30	비계량	20.55	19.85	16.65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40	비계량	24.35	24.95	18.65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30	비계량	9.10	9.40	16.60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15	비계량	4.45	4.45	8.85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15	비계량	4.65	4.95	7.75
3-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40	-	비계량	20.70	22.40	-
3-4-1.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정성	15	-	비계량	7.45	8.45	-
3-4-2.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정성	25	-	비계량	13.25	13.95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6.57	56.33	41.19
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40	비계량	31.15	28.10	21.25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15	비계량	12.75	11.20	8.60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25	비계량	18.40	16.90	12.65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30	계량	16.42	15.73	15.24
4-2-1. 부채비율	12	12	계량	12.00	12.00	11.64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9	계량	1.80	1.80	1.80
4-2-3. 총자산증가율	9	9	계량	2.62	1.93	1.80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0	비계량	9.00	12.50	4.7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5	비계량	4.45	6.25	2.48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5	비계량	4.55	6.25	2.22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50.10	52.37	57.18
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30	비계량	14.90	16.80	14.20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4.95	5.55	4.90
5-1-2.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9.95	11.25	9.30
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계량	-2.28	-5.71	-0.80
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	계량	-1.52	-1.52	0.00
5-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70	비계량	39.00	42.80	43.78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50		28.00	30.30	29.95
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50	비계량	28.00	30.30	29.95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8.20	9.25	9.5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35	비계량	19.80	21.05	20.45
합 계	1,050			686.06	696.10	686.71
1000점 환산	1,000			653.39	662.95	654.01
						657.37

■ (주)조선방송(TV조선)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1. 방송평가	400	400	계량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343.34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비계량	120.00	58.00	99.00	56.00	134.00	79.00	101.50	94.00	123.00	123.00	106.00	131.50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150	비계량	66.00	36.00	56.00	20.00	80.00	40.00	56.00	47.00	65.00	76.00	60.00	82.0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36.00	18.00	28.00	10.00	35.00	20.00	28.00	23.00	30.00	38.00	30.00	35.5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30.00	18.00	28.00	10.00	45.00	20.00	28.00	24.00	35.00	38.00	30.00	46.50
2-2.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80	비계량	42.00	14.00	30.00	32.00	43.00	28.00	35.00	34.00	45.00	37.00	35.00	40.00
2-2-1.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35	비계량	18.00	6.00	10.00	12.00	15.00	12.00	12.00	17.00	20.00	20.00	15.00	17.00
2-2-2.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45	비계량	24.00	8.00	20.00	20.00	28.00	16.00	23.00	17.00	25.00	17.00	20.00	23.0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30	비계량	12.00	8.00	13.00	4.00	11.00	11.00	10.50	13.00	13.00	10.00	11.00	9.50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10	비계량	3.00	2.00	3.00	1.00	3.00	2.00	2.50	3.00	3.00	3.00	2.50	2.5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20	비계량	9.00	6.00	10.00	3.00	8.00	9.00	8.00	10.00	10.00	7.00	8.50	7.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비계량	99.00	92.00	118.00	80.00	107.00	122.00	90.00	117.00	123.00	105.00	117.00	86.00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50	60	비계량	30.00	20.00	30.00	20.00	36.00	38.00	25.00	32.00	34.00	29.00	29.00	30.0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25	비계량	12.00	8.00	12.00	8.00	18.00	15.00	10.00	12.00	14.00	10.00	11.50	12.5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35	비계량	18.00	12.00	18.00	12.00	18.00	23.00	15.00	20.00	20.00	19.00	17.50	17.50
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70	비계량	39.00	48.00	60.00	34.00	37.00	48.00	37.00	57.00	51.00	49.00	54.00	31.00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	35	30	비계량	17.00	21.00	25.00	16.00	17.00	21.00	15.00	30.00	25.00	21.00	27.50	13.50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40	비계량	22.00	27.00	35.00	18.00	20.00	27.00	22.00	27.00	26.00	28.00	26.50	17.50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30	비계량	8.00	8.00	6.00	6.00	9.00	12.00	9.00	12.00	14.00	10.00	11.00	5.00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15	비계량	4.00	4.00	3.00	3.00	4.00	6.00	4.00	6.00	7.00	5.00	5.50	2.50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15	비계량	4.00	4.00	3.00	3.00	5.00	6.00	5.00	6.00	7.00	5.00	5.50	2.50
3-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40	-	비계량	22.00	16.00	22.00	20.00	25.00	24.00	19.00	16.00	24.00	17.00	23.00	20.00
3-4-1.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정성	15	-	비계량	7.00	6.00	7.00	6.00	10.00	9.00	8.00	6.00	9.00	7.00	8.50	7.00
3-4-2.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정성	25	-	비계량	15.00	10.00	15.00	14.00	15.00	15.00	11.00	10.00	15.00	10.00	14.50	13.0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비계량	57.42	63.42	45.42	46.42	49.42	54.42	54.42	56.42	59.42	66.42	56.42	65.42
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40	비계량	33.00	37.00	25.00	20.00	25.00	30.00	27.00	30.00	34.00	40.00	33.00	39.00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15	비계량	13.00	15.00	10.00	8.00	10.00	12.00	12.00	12.00	14.00	14.00	15.50	15.50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25	비계량	20.00	22.00	15.00	12.00	15.00	18.00	15.00	18.00	20.00	26.00	17.50	23.50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30	계량	16.42	16.42	16.42	16.42	16.42	16.42	16.42	16.42	16.42	16.42	16.42	16.42
4-2-1. 부채비율	12	12	계량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9	계량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4-2-3. 총자산증가율	9	9	계량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2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0	비계량	8.00	10.00	4.00	10.00	8.00	8.00	11.00	10.00	9.00	10.00	7.00	10.0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5	비계량	4.00	5.00	2.00	5.00	4.00	4.00	6.00	5.00	4.00	5.00	3.50	5.0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5	비계량	4.00	5.00	2.00	5.00	4.00	4.00	5.00	5.00	5.00	5.00	3.50	5.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비계량	33.20	76.20	38.20	66.20	65.20	50.20	52.20	54.20	36.20	59.20	44.20	35.20
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통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30	비계량	9.00	20.00	12.00	15.00	19.00	12.00	16.00	18.00	12.00	20.00	16.00	9.00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통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5.00	7.00	5.00	5.00	4.00	4.00	6.00	6.00	4.00	5.00	5.50	3.0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5-1-2. 와주상생 등 방송산업별전과 유료방송사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4.00	13.00	7.00	10.00	15.00	8.00	10.00	12.00	8.00	15.00	10.50	6.00
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계량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	계량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5-4. (재)승인사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70	비계량	28.00	60.00	30.00	55.00	50.00	42.00	40.00	40.00	28.00	43.00	32.00	30.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50		30.00	30.00	32.00	35.00	24.00	27.00	25.00	30.00	28.00	29.00	24.00	22.00
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50	비계량	30.00	30.00	32.00	35.00	24.00	27.00	25.00	30.00	28.00	29.00	24.00	22.00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9.00	9.00	10.00	10.00	9.00	6.00	8.00	9.00	8.00	7.00	6.00	7.0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35	비계량	21.00	21.00	22.00	25.00	15.00	21.00	17.00	21.00	20.00	22.00	18.00	15.00
합 계	1,050			682.96	662.96	675.96	626.96	722.96	675.96	666.46	694.96	712.96	725.96	690.96	683.46
1000점 환산	1,000			650.44	631.39	643.77	597.10	688.53	643.77	634.72	661.87	679.01	691.39	658.06	650.91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채널에이(채널A)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1. 방송평가	400	400	계량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122.00	76.00	94.00	60.00	148.00	107.00	105.00	117.00	122.00	106.00	123.00	121.00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150	비계량	67.00	40.00	51.00	20.00	92.00	60.00	58.00	70.00	68.00	56.00	71.00	70.0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36.00	20.00	25.00	10.00	47.00	24.00	30.00	33.00	33.00	26.00	35.50	35.0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31.00	20.00	26.00	10.00	45.00	36.00	28.00	37.00	35.00	30.00	35.50	35.00
2-2.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80	비계량	43.00	28.00	30.00	35.00	45.00	36.00	36.00	39.00	45.00	38.00	41.00	41.00
2-2-1.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35	비계량	18.00	12.00	9.00	13.00	15.00	12.00	12.00	15.00	20.00	13.00	17.50	17.50
2-2-2.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45	비계량	25.00	16.00	21.00	22.00	30.00	24.00	24.00	24.00	25.00	25.00	23.50	23.5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30	비계량	12.00	8.00	13.00	5.00	11.00	11.00	11.00	8.00	9.00	12.00	11.00	10.00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10	비계량	3.00	2.00	3.00	1.00	3.00	2.00	3.00	2.00	2.00	2.00	2.50	2.5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20	비계량	9.00	6.00	10.00	4.00	8.00	9.00	8.00	6.00	7.00	10.00	8.50	7.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99.00	92.00	118.00	88.00	116.00	121.00	103.00	94.00	123.00	93.00	95.00	107.00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60	비계량	30.00	20.00	30.00	20.00	35.00	30.00	30.00	26.00	28.00	26.00	20.00	29.0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25	비계량	12.00	8.00	12.00	8.00	15.00	12.00	12.00	8.00	11.00	8.00	8.00	11.5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35	비계량	18.00	12.00	18.00	12.00	20.00	18.00	18.00	18.00	17.00	18.00	12.00	17.50
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70	비계량	37.00	48.00	60.00	38.00	46.00	50.00	40.00	39.00	56.00	43.00	41.00	44.0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	35		비계량	15.00	21.00	25.00	18.00	23.00	20.00	17.00	21.00	26.00	15.00	20.50	18.00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비계량	22.00	27.00	35.00	20.00	23.00	30.00	23.00	18.00	30.00	28.00	20.50	26.00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30	비계량	8.00	8.00	6.00	6.00	10.00	12.00	11.00	10.00	14.00	8.00	11.00	10.00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비계량	4.00	4.00	3.00	3.00	4.00	6.00	5.00	4.00	7.00	4.00	5.50	5.00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비계량	4.00	4.00	3.00	3.00	6.00	6.00	6.00	6.00	7.00	4.00	5.50	5.00
3-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40	-	비계량	24.00	16.00	22.00	24.00	25.00	29.00	22.00	19.00	25.00	16.00	23.00	24.00
3-4-1.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6.00	7.00	8.00	10.00	11.00	10.00	9.00	8.00	6.00	8.50	9.00
3-4-2.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정성	25		비계량	15.00	10.00	15.00	16.00	15.00	18.00	12.00	10.00	17.00	10.00	14.50	15.0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6.73	61.73	49.73	49.73	51.73	43.73	54.73	61.73	62.73	73.73	61.73	58.73
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40	비계량	33.00	26.00	24.00	20.00	26.00	20.00	26.00	30.00	32.00	44.00	35.00	29.00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0	11.00	9.00	8.00	11.00	8.00	11.00	12.00	13.00	18.00	11.50	11.50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9.00	15.00	15.00	12.00	15.00	12.00	15.00	18.00	19.00	26.00	23.50	17.50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30	계량	15.73											
4-2-1. 부채비율	12		계량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계량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4-2-3. 총자산증가율	9		계량	1.93	1.93	1.93	1.93	1.93	1.93	1.93	1.93	1.93	1.93	1.93	1.93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0	비계량	8.00	20.00	10.00	14.00	10.00	8.00	13.00	16.00	15.00	14.00	11.00	14.0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4.00	10.00	5.00	7.00	6.00	4.00	7.00	8.00	6.00	7.00	5.50	7.0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4.00	10.00	5.00	7.00	4.00	4.00	6.00	8.00	9.00	7.00	5.50	7.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30.77	70.77	43.77	64.77	63.77	46.77	56.77	60.77	43.77	53.77	50.77	42.77
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30	비계량	10.00	18.00	12.00	22.00	19.00	12.00	18.00	18.00	21.00	18.00	17.00	15.00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4.00	6.00	5.00	7.00	5.00	4.00	6.00	6.00	7.00	6.00	5.50	5.00
5-1-2.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6.00	12.00	7.00	15.00	14.00	8.00	12.00	12.00	14.00	12.00	11.50	10.00
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계량	-5.71											
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		계량	-1.52											
5-4. (재)승인사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70	비계량	28.00	60.00	39.00	50.00	52.00	42.00	46.00	50.00	30.00	43.00	41.00	35.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50		30.00	30.00	32.00	35.00	28.00	30.00	26.00	33.00	28.00	35.00	29.00	30.00
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50	비계량	30.00	30.00	32.00	35.00	28.00	30.00	26.00	33.00	28.00	35.00	29.00	30.00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9.00	10.00	10.00	9.00	8.00	12.00	8.00	10.00	8.50	9.0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비계량	21.00	21.00	22.00	25.00	18.00	21.00	18.00	21.00	20.00	25.00	20.50	21.00
합계	1,050			682.50	674.50	681.50	641.50	751.50	692.50	689.50	710.50	723.50	705.50	703.50	703.50
1000점 환산	1,000			650.00	642.38	649.05	610.95	715.71	659.52	656.67	676.67	689.05	671.90	670.00	670.00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와이티엔(YTN)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1. 방송평가	400	400	계량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340.29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비계량	143.00	106.00	122.00	151.00	125.00	144.00	126.00	106.00	159.00	115.00	144.00	141.00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150	비계량	86.00	60.00	75.00	90.00	71.00	75.00	67.00	60.00	90.00	70.00	85.00	88.0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47.00	30.00	45.00	45.00	36.00	45.00	37.00	45.00	45.00	35.00	44.50	44.0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75	비계량	39.00	30.00	30.00	45.00	35.00	30.00	30.00	15.00	45.00	35.00	40.50	44.00
2-2.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80	비계량	42.00	32.00	25.00	45.00	42.00	48.00	44.00	34.00	48.00	30.00	44.00	38.00
2-2-1.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35	비계량	21.00	14.00	7.00	20.00	20.00	21.00	22.00	21.00	18.00	20.00	16.00	
2-2-2.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45	비계량	21.00	18.00	18.00	25.00	22.00	27.00	22.00	13.00	27.00	12.00	24.00	22.0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30	비계량	15.00	14.00	22.00	16.00	12.00	21.00	15.00	12.00	21.00	15.00	15.00	15.00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10	비계량	6.00	6.00	10.00	5.00	4.00	9.00	6.00	6.00	7.00	5.00	5.00	5.0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20	비계량	9.00	8.00	12.00	11.00	8.00	12.00	9.00	6.00	14.00	10.00	10.00	10.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비계량	83.00	96.00	103.00	72.00	73.00	79.00	80.00	82.00	95.00	75.00	88.00	87.00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50	60	비계량	30.00	36.00	33.00	29.00	24.00	36.00	31.00	36.00	37.00	30.00	35.00	31.0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25	비계량	15.00	15.00	19.00	14.00	10.00	10.00	13.00	15.00	16.00	15.00	14.50	13.0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35	비계량	15.00	21.00	14.00	15.00	14.00	26.00	18.00	21.00	21.00	15.00	20.50	18.00
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70	비계량	38.00	42.00	50.00	31.00	29.00	28.00	35.00	31.00	40.00	25.00	37.00	40.00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	35	30	비계량	18.00	18.00	20.00	15.00	13.00	12.00	16.00	21.00	17.00	15.00	17.50	17.00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40	비계량	20.00	24.00	30.00	16.00	16.00	16.00	19.00	10.00	23.00	10.00	19.50	23.00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30	비계량	15.00	18.00	20.00	12.00	20.00	15.00	14.00	15.00	18.00	20.00	16.00	16.00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15	비계량	9.00	9.00	10.00	6.00	11.00	9.00	7.00	9.00	9.00	10.00	8.50	8.00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15	비계량	6.00	9.00	10.00	6.00	9.00	6.00	7.00	6.00	9.00	10.00	7.50	8.0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비계량	46.24	41.24	34.24	37.24	39.24	43.24	43.24	44.24	44.74	30.24	43.24	40.24
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40	비계량	26.00	24.00	13.00	18.00	20.00	24.00	22.00	24.00	24.00	10.00	23.00	21.00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15	비계량	10.00	9.00	8.00	6.00	10.00	9.00	8.00	9.00	9.00	4.00	11.50	8.00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25	비계량	16.00	15.00	5.00	12.00	10.00	15.00	14.00	15.00	15.00	6.00	11.50	13.00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30	계량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4-2-1. 부채비율	12	12	계량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9	계량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4-2-3. 총자산증가율	9	9	계량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0	비계량	5.00	2.00	6.00	4.00	4.00	4.00	6.00	5.00	5.50	5.00	5.00	4.0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5	비계량	2.50	1.00	3.00	2.00	2.00	2.00	3.00	3.00	2.00	3.00	2.00	2.5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5	비계량	2.50	1.00	3.00	2.00	2.00	2.00	3.00	2.00	3.50	2.00	2.20	1.5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비계량	55.20	77.20	62.20	65.20	49.20	63.20	49.20	59.20	53.20	49.20	55.00	51.20
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체와 유료방송사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30	비계량	14.00	18.00	8.00	16.00	14.00	16.00	14.00	10.00	12.00	20.00	14.00	15.00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체와 유료방송사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5.00	6.00	4.00	5.00	5.00	4.00	5.00	7.00	4.00	5.00	5.50	4.50
5-1-2.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체와 유료방송사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9.00	12.00	4.00	11.00	9.00	12.00	9.00	3.00	8.00	15.00	8.50	10.50
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김점	계량	-0.80	-0.80	-0.80	-0.80	-0.80	-0.80	-0.80	-0.80	-0.80	-0.80	-0.80	-0.80	-0.80
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김점	계량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5-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비계량	42.00	60.00	55.00	50.00	36.00	48.00	36.00	50.00	42.00	30.00	41.80	37.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비계량	25.00	30.00	30.00	42.00	32.00	27.00	25.00	27.00	35.00	35.00	26.00	28.50
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비계량	25.00	30.00	30.00	42.00	32.00	27.00	25.00	27.00	35.00	35.00	26.00	28.50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10.00	9.00	9.00	12.00	10.00	6.00	8.00	13.00	10.00	10.00	8.50	8.5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비계량	15.00	21.00	21.00	30.00	22.00	21.00	17.00	14.00	25.00	25.00	17.50	20.00
합 계	1,050			692.73	690.73	691.73	707.73	658.73	696.73	663.73	658.73	727.23	644.73	696.53	688.23
1000점 환산	1,000			659.74	657.84	658.79	674.03	627.36	663.55	632.12	627.36	692.60	614.03	663.36	655.46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1. 방송평가	400		비계량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343.84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비계량	135.00	110.00	146.00	141.00	119.00	139.00	137.00	145.00	153.00	142.00	139.00	124.00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비계량	75.00	60.00	90.00	80.00	67.00	75.00	78.00	86.00	90.00	80.00	84.00	64.0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비계량	30.00	30.00	45.00	40.00	29.00	30.00	39.00	44.00	45.00	35.00	44.00	29.0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비계량	45.00	30.00	45.00	40.00	38.00	45.00	39.00	42.00	45.00	45.00	40.00	35.00
2-2.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비계량	48.00	32.00	32.00	45.00	40.00	48.00	42.00	41.00	48.00	45.00	40.00	45.00
2-2-1.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21.00	14.00	14.00	20.00	20.00	21.00	19.00	14.00	21.00	15.00	15.00	20.00
2-2-2.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비계량	27.00	18.00	18.00	25.00	20.00	27.00	23.00	27.00	27.00	30.00	25.00	25.0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2.00	18.00	24.00	16.00	12.00	16.00	17.00	18.00	15.00	17.00	15.00	15.00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4.00	6.00	10.00	5.00	4.00	4.00	6.00	6.00	5.00	7.00	5.00	5.0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8.00	12.00	14.00	11.00	8.00	12.00	11.00	12.00	10.00	10.00	10.00	10.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비계량	86.00	96.00	112.00	88.00	69.00	89.00	80.00	94.00	93.00	80.00	90.00	89.00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비계량	36.00	36.00	39.00	34.00	24.00	24.00	33.00	42.00	35.00	30.00	35.00	33.0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비계량	15.00	15.00	18.00	14.00	10.00	10.00	14.00	18.00	14.00	15.00	14.50	14.0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비계량	21.00	21.00	21.00	20.00	14.00	14.00	19.00	24.00	21.00	15.00	20.50	19.00
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비계량	32.00	42.00	51.00	42.00	29.00	53.00	33.00	34.00	42.00	30.00	38.00	40.00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	35		비계량	15.00	18.00	20.00	18.00	12.00	23.00	15.00	18.00	18.00	13.00	17.50	17.00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비계량	17.00	24.00	31.00	24.00	17.00	30.00	18.00	16.00	24.00	17.00	20.50	23.00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비계량	18.00	18.00	22.00	12.00	16.00	12.00	14.00	18.00	16.00	20.00	17.00	16.00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비계량	9.00	9.00	11.00	6.00	10.00	6.00	7.00	9.00	8.00	10.00	8.50	8.00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비계량	9.00	9.00	11.00	6.00	6.00	6.00	7.00	9.00	8.00	10.00	8.50	8.0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비계량	53.91	35.91	35.91	46.91	53.91	53.91	51.91	48.91	53.91	54.91	56.91	50.91
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비계량	24.00	8.00	8.00	17.00	22.00	24.00	21.00	19.00	22.00	25.00	26.00	22.00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9.00	3.00	3.00	5.00	10.00	9.00	8.00	9.00	8.00	7.00	11.50	8.0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25	비계량	15.00	5.00	5.00	12.00	12.00	15.00	13.00	10.00	14.00	18.00	14.50	14.00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30	계량	25.91											
4-2-1. 부채비율	12	12	계량	9.88	9.88	9.88	9.88	9.88	9.88	9.88	9.88	9.88	9.88	9.88	9.88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9	계량	7.84	7.84	7.84	7.84	7.84	7.84	7.84	7.84	7.84	7.84	7.84	7.84
4-2-3. 총자산증가율	9	9	계량	8.19	8.19	8.19	8.19	8.19	8.19	8.19	8.19	8.19	8.19	8.19	8.19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0	비계량	4.00	2.00	2.00	4.00	6.00	4.00	5.00	4.00	6.00	4.00	5.00	3.0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5	비계량	2.00	1.00	1.00	2.00	3.00	2.00	2.00	2.00	3.00	2.00	2.50	1.5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5	비계량	2.00	1.00	1.00	2.00	3.00	2.00	3.00	2.00	3.00	2.00	2.50	1.5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32.60	55.60	66.60	37.60	44.60	19.60	45.60	46.60	47.60	38.60	36.00	49.60
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30	비계량	13.00	22.00	18.00	19.00	12.00	12.00	16.00	18.00	12.00	15.00	15.00	16.00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4.00	7.00	6.00	6.00	4.00	4.00	5.00	6.00	4.00	5.00	4.50	5.00
5-1-2.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9.00	15.00	12.00	13.00	8.00	8.00	11.00	12.00	8.00	10.00	10.50	11.00
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계량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		계량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4. (재)승인사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70	비계량	26.00	40.00	55.00	25.00	39.00	14.00	36.00	35.00	42.00	30.00	27.40	40.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50		30.00	30.00	30.00	40.00	30.00	27.00	25.00	23.00	22.00	35.00	29.00	26.00
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50	비계량	30.00	30.00	30.00	40.00	30.00	27.00	25.00	23.00	22.00	35.00	29.00	26.00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9.00	9.00	9.00	12.00	9.00	6.00	7.00	9.00	7.00	10.00	8.50	8.0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35	비계량	21.00	21.00	21.00	28.00	21.00	21.00	18.00	14.00	15.00	25.00	20.50	18.00
합 계	1,050			681.35	671.35	734.35	697.35	660.35	672.35	683.35	701.35	713.35	694.35	694.75	683.35
1000점 환산	1,000			648.90	639.38	699.38	664.14	628.90	640.33	650.81	667.95	679.38	661.29	661.67	650.81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4. 심사의견서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20.3.31.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 티브이, 2020.4.21.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3. 20.(금)

1. 종합 의견

- o 2017년에 비해 콘텐츠의 질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향후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이 요구됨
- o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종편·보도PP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종편PP는 약속한 콘텐츠 투자 등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재승인 기한 내에 콘텐츠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 콘텐츠 투자 분야를 비롯한 일부 사업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므로 재승인을 받는 사업자의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 o 보도PP는 뉴스제작과정에서 오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2. 중점 심사사항 별 소견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시청자가 종편·보도PP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비해 사업자의 인식은 뒤떨어진 상태이므로 공정성과 관련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며 객관성, 진실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함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여론 다양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의견반영,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여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됨
- (주)조선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구성이 미디어 관련 학과 교수나 현업 종사들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시청자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매우 미흡하므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비평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있고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진행자와 출연자(시사·대담)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는데 시청자 의견과 자체심의 간 괴리가 크므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엄격히 통제할 필요
- (주)채널에이는 유사한 위원회와 TF(ex :공정심의위원회와 공정보도 심의위원회, 공정선거TF와 공정선거보도TF)는 통폐합을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검증장치의 운영이 필요함
 - 또한,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품격저하, 신뢰성저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 종편·보도PP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주)조선방송의 최대주주인 조선일보사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함
- (주)채널에이의 최대주주사(동아일보) 임원과 직원의 겸임 및 교류가 타 종편PP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주)연합뉴스티브이는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겸직 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편PP의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세부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종편PP가 홈쇼핑방송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동시간대에 건강 등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 현혹 및 혼동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편PP는 협찬을 받아 방송을 하는 경우 협찬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하여 권리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o (주)조선방송이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웃제’ 같은 제도는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속 유지시키는게 바람직함
- o (주)채널에이는 Killer Content의 개발을 위한 편성·제작의 노력과 제작 자원의 투입전략이 필요하며 보도·시사·대담토론 등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함

3. 재승인 조건(안)

□ TV조선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계획(공적책임 확보,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방송 공정성 구현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 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내지 제20조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시킬 것. 단,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4.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공적책임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간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전문외부 기관을 선정하고 방송사업자는 진단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5.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6.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17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을 미달하였을 경우, '20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7.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 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를 노출하지 말 것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직후,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익월 15일까지 제출할 것 8.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등의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을 준수하고, 특히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2.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프라이버시 등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통위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 할 것 3. 소유·경영 분리, 최대주주로부터의 영향력 배제 및 이사회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4.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자제할 것.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직원파견의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5. 방송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방송콘텐츠 펀드 조성·운영, 펀드 투자 참여 등 방송콘텐츠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채널A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계획(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구현,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내지 제20조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시킬 것. 단,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공적책임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간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전문외부 기관을 선정하고 방송사업자는 진단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17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을 미달하였을 경우, '20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를 노출하지 말 것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직후,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익월 15일까지 제출할 것 8.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등의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을 준수하고, 특히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2.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프라이버시 등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통위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 할 것 3.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공동대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자제할 것.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의 겸직·공동대표 및 직원파견의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할 것

□ 연합뉴스TV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연합뉴스로부터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개선방안은 재승인 후 6개월 이내,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의 겸직·공동 대표 및 직원파견의 해소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수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청자의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 단, 탐사보도 장르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따름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미래 비전이 뚜렷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새로 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수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청자의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 단, 탐사보도 장르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따름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2020년 종편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3. 16.(월) 11:11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11시 11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회의 개최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총 열세분 중 열세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안녕하십니까. 심사지원반입니다. 먼저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쪽에 1장짜리로 되어 있는 회의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 때 할 안건 순서이고, 이번 제1차 회의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4가지입니다. 제1차 회의 첫 번째 안건이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1>번 안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II> 개요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일정은 1일차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및 세부 심사기준 등을 의결합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를 구성하겠습니다. 2일차, 화요일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청취를 준비합니다. 3일차, 수요일에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일차, 목요일에는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심사평가표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일차, 금요일에는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고,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 후 해산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입니다. 직무는 심사위원회는 방통위에서 의결로 정한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장님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안건은 심사위원장님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분과를 구성하여 심사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분과별 논의 사항을 정리 및 보고를 위해 분과별로 심사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서 및 속기록 작성입니다.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 시, 출석 심사위원이 확인 서명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내용은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공개 여부입니다.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은 개별 심사위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으나 익명으로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자료입니다. 신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본문과 부속서류, 보정서류 및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서류입니다. 필요 시 심사위원회는 신청법인에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신청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신청법인·대표자·편성책임자 행정처분 등 조사결과입니다. 네 번째는 신청법인 대상 의견청취 결과를 심사자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II> 심사위원회 회의 일정 및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1차 회의입니다. <의결사항> 첫 번째 현재 제가 보고드리고 있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은 3가지인데 첫 번째, 심사 사전 기본계획입니다. 이는 2019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심사 세부계획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2019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저희 심사지원반에서 준비한 세부 심사기준(안)입니다. 오찬 후 오후에 개최하는 제2차 회의입니다.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고, 이때는 <의결사항>이 2가지입니다.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게 되고, 세 번째 시청자 의견청취 접수 결과를 의결하시면 됩니다. <보고사항> 네 번째, 종편·보도PP 2019년도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회의 때 진행사항이 하나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과별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제3차 회의입니다. 심사 4일 차 목요일 10시부터 개최합니다. <보고사항>으로는 그 전날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논의결과를 1분과 논의결과, 2분과 논의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제4차 회의입니다. 4일차 목요일에 계량 평가 결과를 의결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제5차 회의는 5일차 금요일 10시부터 시작하며,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게 됩니다.

<III> 심사위원회 분과 구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개 분과를 심사 1일차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구성하고, 운영 횟수는 논의경과를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분과회의 일정은 일단 심사 2일차 저녁 7시부터로 잡아놓았고, 2차 분과회의는 심사 3일차에 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제1분과는 심사위원님들 중 방송·미디어 분야 2인, 법률 분야 2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2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1분과의 직무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시청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기획·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 검토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제2분과는 심사위원 중 방송·미디어 분야 1인, 경제·경영·회계 분야 3인, 기술 분야 1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1인으로 구성합니다. 직무는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및 결과를 논의하고, 경영·재정에 관한 사항, 콘텐츠 투자실적 및 콘텐츠 펀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승인조건·권고사항 관련 검토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업자 의견청취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취내용입니다.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청취대상은 재승인 대상 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배석하는 실무자는 4인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청취일시는 심사위원회 3일차인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청취 순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지난 2월 26일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순서는 채널A, TV조선, YTN, 연합뉴스TV 순으로 진행합니다. 결과처리는 의견청취 결과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 의견청취 준비는 심사 2일차 내일 화요일 15시~17시 30분까지 논의하고, 이 회의는 공식 회의는 아닙니다. <보고사항>으로 의견청취 진행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논의사항>으로 질의서를 확정한 후 심사위원간 역할 분담을 정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 의견청취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는 의견청취를 마친 후 3일차 수요일에 17시 30분~18시 30분까지 합니다. <붙임>자료는 심사장 배치도, 일정,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이는 <붙임>으로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가는데 조금씩 짧아질 수도 있고 조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 사항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 심사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기본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5월에 방통위에서 의결했고, 이것은 재승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사업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8월에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보고를 드리고 기본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만 따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서면보고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접수하겠습니다.

나.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 심사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 나>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 파일에 설명한 페이지를 띠지로 붙여놓았는데 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방송사업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편PP 4개사와 보도PP 2개사입니다.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 TV 순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하반기에 진행하며, 이번 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가 해당됩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하게 됩니다. 방통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실시합니다.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 위촉기준과 심사위원 결격사유는 이미 기 공지한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고 평가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심사위원회 임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과 배점과 평가방법을 결정합니다. 심사평가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 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합니다.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의견청취는 앞서 의결하신 운영계획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방안입니다. 평가원칙입니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합니다. 평가방식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계량평가는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건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비계량평가는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합니다. <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12인의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부터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평가항목별 평가 산정 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합니다. 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 대분류로 통합하였습니다. 심사사항 대분류입니다.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입니다. 두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입니다. 네 번째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입니다. 여섯 번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지난 2019년 5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여섯 번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종편PP <표>를 보시면 되겠고, 보도PP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점은 1,050점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 방법입니다. 재승인 여부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합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의결 시 3년을 부여합니다. 이행점검주기는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합니다. 조건 부가는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거나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심사사항입니다.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은 <2>번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관련 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붙임>자료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경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조건 부가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이라고 했을 때 ‘개별’이라는 것이 어느 단위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각 항목별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심사기준 및 배점에서 1~6까지 점수 중 이 점수가 예를 들면 100점짜리가 50점 밖에 안 나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기획·편성 부분에서 210점인데 이것이 100점 정도밖에 안 나왔을 경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일종의 과락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 심사위원

- 대부분의 항목이 개별이라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분과 운영 관련해서….

○ 심사위원장

- 분과 운영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제2분과 직무에 콘텐츠 투자실적 및 펀드에 관한 사항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항목 중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 심사지원반

- 콘텐츠 투자실적과 콘텐츠 펀드에 관련된 사항은 심사사항에는 별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분류, 세분류로 가면서 더 세부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콘텐츠 부분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 중분류와 세분류 사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세분류에 있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12페이지 평가방식의 계량평가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인데 심사위원 개별 평가 대상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계량평가는 제2분과 소위에서 검토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다음 보고드릴 마지막 보고사항인 세부심사기준에서 계량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님들이 정해 주십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의결해야 하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은 다음에 보고드리고 오후에 의결하시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계량평가 점수가 확정이 되고 그것을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표에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16페이지를 보시면 계량·비계량 점수, 어떤 것이 계량이고 어떤 것이 비계량인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큰 점수표만 있고 나중에 세부 계획에는 분야분야마다 점수가 따로 있지요? 몇 점씩 나누어져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11페이지를 보시면 '재승인 여부 및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해서 방통위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준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나 의견과 다르게 방통위에서 결정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마지막 날 채점을 하고 나가시면 본인이 평가한 점수는 알 수 있는데 평균이 어떤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알고 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결과를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그 점수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650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승인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 결정과 위원회 결정이 다르거나 같다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OOO 위원님.

○ 심사위원

- 재승인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나와 있는 부분에서 650점 미만 사업자, 재승인 거부에 관해 둘 중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거부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세부 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됩니다. 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 심사위원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조건 부가를 보면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점 미달이 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경우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접수하겠습니다.

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 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을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됩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부심사항목 및 배

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부평가 방법입니다. 기본원칙입니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12명 전원이 각자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의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평가유형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수 계산입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사항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합니다. 계량평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사항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이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 방법입니다. 이는 앞서 세부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한 번 더 요약정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서 정한 재승인 여부 결정 방법입니다. 총점이 650점 이상인 경우라도 다음 중점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기 심사사항을 제외한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을 붙여서 '재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6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별 심사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부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각 심사항목은 과거실적과 계획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예시로 첫 번째 심사항목인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세부심사항목에서 나눌 때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두 번째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일부 심사항목의 경우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실적만 반영합니다. 그 심사항목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⑬ 방송법 및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전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권고 이행여부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배점입니다. 배점 비중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방송평가와 재승인 이행여부 등으로 평가되므로 과거 실적만 평가하는 심사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보다 계획에 대한 배점 비중을 강화하는 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실적을 평가하는 심사항목의 배점을 합산하면 총점 1,050점 중 종편·보도PP 모두 500점을 차지합니다. 2017년 직전 재승인과 비교할 때,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과 ⑯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계획의 배점 비중이 2017년과 할 때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원반에서 제시해 드린 안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계획의 배점 비중이 27%였는데 저희가 제시해 드린 안은 2020년도는 35%로 제시합니다.

참고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 배점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실적이 675점이었고, 계획이 325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 방송평가 400점이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는 실적이 705점, 계획이 295점이고, 2019년도에는 실적이 730점, 계획이 320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외 심사항목의 배점 650점 중 실적 281점, 계획 369점으로 계획 점수 비중을 높게 제시합니다. 즉, 총점 1,050점 중 종편PP는 실적을 681점으로 구성하고, 계획은 369점입니다. 보도PP는 실적이 686점이고 계획은 364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칠한 부분이 실적만 평가하는 심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의 합계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종편·보도PP가 각각 이렇게 나누어지고, 비율적으로는 실적이 65%이고 계획이 35%, 보도도 같습니다. 비교하기 편하게 2017년과 2014년도의 배점 비중을 아래 <표>에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실적이 73%를 차지하였고 계획이 27%였고, 2014년에는 실적이 67%였고 계획이 33%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심사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배점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심사항목별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입니다. 이는 첫 번째 심사사항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이고, 이는 세부심사항목까지 동일합니다. 배점은 400점으로 종편·보도PP 모두 동일합니다. 평가지표는 계량평가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2017년도의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평균점수를 반영하되, 동일사안이 중복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7년도 재승인 시 이미 반영된 2016년 1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는 방송평가 점수에서 제외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종편PP는 방송평가 원 점수가 700점이므로 이를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의 원 점수가 500점이므로 이를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입니다. 이 심사사항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심사사항에 포함되며, 심사항목 중 분류에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이고 세부심사항목도 동일합니다. 배점은 감점 방식으로 반영되고 평가지표는 계량평가입니다.

적용대상 및 기간입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2017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반영하되 방송평가로 이미 반영된 2017년, 2018년 행정처분은 여기에서 제외 합니다. 사전에 법 위반사항을 조회했는데 일부 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관련 없는 일반 PP를 운영하는데 법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 범위입니다. 이는 <1안>과 <2안>으로 제시합니다. <1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규정된 법 위반사항만 반영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4가지 법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법 시행령은 2019년 6월 2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4년,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시에는 위 5개 법령 이외에 그 밖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점항목으로 계량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2안>으로 제시한 것은 <1안>과 동일하게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법 위반사항은 감점항목으로 반영하되, 그 밖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② 심사항목인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서 비계량평가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은 상사, 콘텐츠, 저작권, 금융, 중소기업, 형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후, 그 위반내역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심사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표> 법과 시행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참조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점하는 배점의 기준은 먼저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 평가를 참조하고, 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기준 점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번째 감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가 원 점수인 700점에서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원 점수 500점에서 400점으로 환산하므로 위 <표>에 보시는 기준점수를 이와 같은 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처분별, 과태료·과징금별 종편PP와 보도PP의 감점 배점을 계산하여 제시합니다. 아래 참고 표시 중 두 번째인 소송 중인 행정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감점을 유예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도 위반사항 감점계산 방식에 대해 결정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위반의 감점은 2016년~2018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방송평가로 점수에 반영되어 3개년 평균치가 반영됩니다. 다만, 2019년도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점수가 없는 관계로 동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되어야 하는데 1년 감점점수로 반영이 될 경우에는 과거 연도별로 적용된 방식이 달라져서 연도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017년도에 사업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2014년, 2017년도 재승인 시 최근 연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을 가중하는 측면과 별도의 심사항목이라는 점에서 2014년, 2017년도 재승인 시 1개년 감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안>과 <2안>으로 제시합니다.

<1안>은 2019년도 법령위반 건은 1개년 감점을 방송평가와 동일하게 1/3로 다시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2안>은 2014년, 2017년 재승인 방법과 동일하게 2019년 법령위반 건은 1개년 감점으로 평가합니다.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법에서 어떤 사업자가 과태료를 맞아서 방송평가

에서 반영되는 경우에는 -4점으로 방송평가에 반영됩니다. 이를 재승인에 반영할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2017년, 2018년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었다고 하면 -4점을 방송평가 만점인 700점 중 400점으로 환산을 먼저 하고, 그 계산이 된 -2.29점을 다시 3년 평균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1/3로 적용해서 -0.76점이 재승인 감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가 2019년도 위반이 된 경우라면 -4점에 4/7를 곱하여 -2.29점만 감점이 됩니다. 따라서 범위 반사항의 연도가 2019년과 2017년, 2018년도 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반영되는 점수가 달라 총점에서 1.53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1안>, <2안>으로 제시합니다.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심사사항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심사항목은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반영되고,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로 감점으로 반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량평가 항목입니다. 적용 대상 및 기간은 앞서 보신 관계법령 위반 건과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까지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범위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하고, 소송중인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참조기준과 감점기준은 이미 관계법령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2019년 위반사항 감점계산은 앞서 <1안>, <2안>으로 제시한 감점계산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중에서 심사항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부분입니다. 이를 세부심사항목 3가지 사안으로 나눕니다.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은 안정성·수익성·성장성의 주요지표를 대표적 지표로 뽑아서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로 세부심사항목을 마련하였고, 이는 최초 승인인 2010년과 재승인 2014년, 2017년에 재정적 능력 평가지표와 동일합니다. 배점에 대해서는 <1안>, <2안>으로 제시합니다. 종편·보도PP가 사업이 시작된 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리하여 이를 고려해서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지표별 고른 배점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지표를 동일한 배점을 적용하는 방안, <2안>은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배점과 같이 안정성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아래 <표>에 과거 최초 승인 및 재승인 재무능력 배점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입니다.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019년의 경우 현재 회계감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무현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방법은 2014년, 2017년 재승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신청대상

회사의 지표값을 비교하여 점수로 환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점 설정 방안입니다. 최저점 설정에 대한 <1안>은 최저점수를 20%로 주는 방안이고, <2안>은 최저점수를 30%로 주는 방안입니다. <1안>은 2017년 재승인에 사용했던 방식이고 방송평가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에도 최저점수를 20%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2안>은 2014년 재승인 심사 시 반영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가로 표로 되어 있는 <붙임> 자료에는 세부심사항목과 평가방법을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붙임>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 기준(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끝났는데,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 소송을 하면 미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영하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그런 경우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재승인할 때 그런 것으로 미뤄진 것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2017년 당시 소송 제기가….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 재승인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반영하게 됩니다. 소송결과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시기에 감점으로 반영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때 행정처분으로 미뤄진 것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렇게 자료는 만들어졌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번 신청 대상법인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세부심사기준(안)은 만들었지만 심사위원들 결정을 하실 때, 편견이 생겨서 만들어 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업자별로 조회한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고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여쭤본 이유는 3년 전 백서를 보니까 형사처벌받은 경우 감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위원들끼리 엄청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3년 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만약 이번에 있었다면 여기 기준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준에 없어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에서 어떤 법인을 특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없으면 여기에 기준이 없어도 별 문제없는데, 만약 형사처벌받은 법인이 있다면 미리 기준을 정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 전에 치열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참고했더라면 여기에서 시간이 더 절약되고 여러 가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날 회의록을 보니까 엄청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대상 4개 법인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특정 법인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감점기준이 있다면 다음에 기준 정할 때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 심사지원반

- 형사처벌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기준에서 정하는 부분은 그 법과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4개 법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반영할지 여부를 미리 정하시고, 만약 형사처벌을 받은 법인이 있다, 없다를 아시면 결국 그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4개 보다 더 많이 적용하면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기로 정했는데 그것은 고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그것도 그러는데, 저번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서 해 왔으면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등장했다면 그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 심사위원장

- 세부심사기준은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님,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논의한 사례는 방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사항입니다. 개정 방송법이 2018년 12월 2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7년 재승인 시에는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모든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회를 띠운 후 모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감점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심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의 범위에 대해 <1안>, <2안>으로 불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2월 24일에 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4개 법령만 보도록 법이 정해지게 된 이후 최초 재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위반의 범위에 대해서 정해져야만 심사를 계량평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법령위반 건을 먼저 공개하면 이 기준에 편견이 생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1안>과 <2안>에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1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감점만 하는 것인데 감점은 시행령상으로 정해진 4가지 외에는 감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안>도 감점은 그것만 하되, 나머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심사위원이 보고, 그것을 공익적 항목에서 비계량평가으로 평가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감점 자체는 시행령에 있는 것 외에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1안>으로 결정하면 저희가 4개 법 이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들께 제공하지 않습니다. <2안>으로 결정하면 저희가 그 밖의 법 위반사항, 아까 말씀하신 형사처벌을 다 포함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

- 저희 입장에서는 법 취지로 보면 공정성 항목이기 때문에 제공은 받되, 비계량 항목으로 알아서 각자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면 <2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1차 회의에서 결정이 아니고 제2차에서 합니다.

○ 심사위원

- 오후 회의 때….

○ 심사지원반

- 지금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제2차에서 더 많이 논의하신 후 의결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있으니까 더 고민하시지요.

○ 심사위원

-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방송법이 2018년 12월에 시행되어서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처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법이 이렇게 개정된 취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방송법이 개정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에서 재허가·재승인 시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런 것이 법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나 흘수평사업자 같은 경우 유통법이나 그런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가 반드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정한 법령위반 건에 대해서는 심사 시 반영해라, 법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본문을 보시면 제17조제3항의2의2에서 공적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심사에 반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방송법 시행령에서 2019년 6월 25일자에 종편·보도PP에 대해서는 <가> 「기본법」, <나> 「전파법」, <다> 「망법」, <라> 「공정거래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정해졌습니다.

○ 심사위원회

- 그러면 2017년도에 자본시장법과 저작권법이 그 당시에는 어쨌든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위반사항으로 저희가 <2안>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2014년, 2017년과 동일하게 모든 부처에 다 띄워 놓아서 조희가 되었는데, <2안>으로 하면 받은 법령위반 여부를 제공해 드리고 비계량평가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회

- 법령 취지를 여쭤본 이유가 법 시행령에서 4가지 법으로만 한정한 것이 법과 관련해서 명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 한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저희가 그 외의 법령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와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법률가들에게 물어보고 내린 사항입니다. 4개 법으로 꼭 한정해야 하느냐, 또는 그 밖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심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냐 부분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문결과 꼭 4개 법에 한정해야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부분도 공적책임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심사해 왔던 것처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회장

-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1안>, <2안>을 읽어보시고 잘 숙지하셔야지 제2차 회의할 때 때 의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잘 보시고 어느 것이 가장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지 <1안>, <2안> 중에서 잘 판단하셔서…, OOO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심사위원

- 3페이지 배점 비중에서 계획에 대한 배점 비중 강화에 대한 취지나 이유들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3페이지 배점 비중에서 실적에 대비해서 계획에 대한 배점 비중을 더 강화해 비중이 2배 정도 되는데 그 취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설명드리면 이미 과거 실적만 평가하는 심사항목의 배점이 1,050점 중 종편·보도 모두 500점씩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계획을 모두 봐야 하는 심사항목에 계획과 배점 비중을 동일하게 갈 경우에는 지나치게 실적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균등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거 실적만 평가하는 심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계획에 대한 배점을 높이 가야 전반적으로 실적과 계획 비중이 균등하게 봐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어쨌든 다음번 재승인 심사할 때 그 계획에 대한 평가, 그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 실적에 더 점수가 들어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래서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는 방송평가에서도 많은 부분을 보고, 4페이지 <표>를 보시면 ⑯ 항목에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도 여기에서 70점 배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보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배점 비중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도 사무처에서 계획 비중을 높이 제안드렸는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해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과 배점 비중을 동일하게 간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 대비 계획을 약 1:2로 배분해서 제안드렸는데 2017년 재승인 시에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②, ⑤, ⑥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 비중을 실적과 계획을 반반으로 구성해서 아래 <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실적 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이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바뀐 부분이었습니다.

○ 심사위원

-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 그 대목에서 2014년 수치와 2017년 수치를 보고 또 금년도 수치를 보면 수치가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정당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3년 전에는 실적에 대한 비중이 퍼센트로 종편PP 기준으로 6%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8%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정당성의 논리가 있어야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2017년 심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심사지원반

- 2017년에 73% 된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항목을 변경시킨다 보니까 이렇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비교할 때는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으나 저희가 2014년에 비해 신설된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⑧번과 ⑯인데 이렇게 신설된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계획을 봐야 하는 심사항목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도 다소 계획이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안은 안이고, 이 부분은 심사위원님들께서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부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변경하셔서 의결 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이전에 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에 대한 달성을 평가가 됩니까?

○ 심사지원반

- 계획에 대한 달성을 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애초에 계획을 조금 낮게 잡았던 사람들이 이익일 텐데요.

○ 심사지원반

-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세부심사항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실한 계획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방송평가 점수가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심사위원회에 대한 재량권이 감안되지 않았던 정당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논의하셔서 배점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OOO 위원님.

○ 심사위원

- 6페이지를 보시면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에서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인지, 소송으로 인해서 확정된 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를 궁금합니다.

○ 심사지원반

- 소송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방송평가는 2016년, 2017년, 2018년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런데 방송평가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방송평가에도 이미 관계법령 위반이 감점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2017년과 2018년 이미 방송평가에 관계법령 위반이 거기에 반영된 점수가 저희에게 방송평가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또 감점을 시키면 중복해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2017년, 2018년에 이미 방송평가에서 관계법령 위반으로 빠진 점수는 여기에서 빼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 심사위원

-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법률 위반이 있었던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만약 소송했으면 판결이 확정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그 시기 그대로 처분방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결국 2017년, 2018년도가 빠지고 2019년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법 위반이….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것도 소송을 제기하면 유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3년 전에 재승인을 받을 때 처분받은 것이 방송평가에 반영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5. 폐 회

○ 심사위원장

-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폐회】

2020년도 종편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20. 3. 16.(월) 14: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열세분 중 열세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

○ 심사위원장

- 먼저 의결사항입니다. 앞에 제1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안>, <2안>이 있었는데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해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식사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러면 세부심사기준(안)을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내용이 3페이지부터입니까?

○ 심사위원장

- 3페이지부터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8페이지와 10페이지 <1안>, <2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의결해야 하니까요.

○ 심사위원

- 6페이지 관계법령의 범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지원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점도 정해야 하고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1안>, <2안>과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 2019년도 법령 점수 계산과 재정적 능력 평가에 대한 배점 <1안>, <2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점수 방안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3페이지를 보시면 지상파 재허가도 그랬고 종편·보도PP도 2014년과 2017년에 실적 비중이 67:73, 계획이 33:27로 실적 비중이 높은데, 이번 안은 너무 실적 비중이 낮고 계획이 높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실적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적에 비중을 더 높이 했는데 이번에 더 낮아졌는데 기준대로 실적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OOO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획에 나와 있는 1:2를 오히려 2:1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조절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합계가 1,00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1,000점 만점으로 보면 방송평가가 400점이니까 40% 정도가 현재는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을 반반 정도 본다면 7:3 정도가, 나머지 60%를 30%로 비중을 반반씩 본다고 하면 65:35보다는 70%와 3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과거 실적에 대한 계획도 일정 부분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도 반 정도 있으니까….

○ 심사위원장

- 현재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방송평가 점수가 실적은 400점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 281점을 가지고 실적 점수를 배정해 놓았고 계획은 369점입니다. 대충 3.5:6.5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부분 실적을 더 늘리게 되면 계획 점수가 확 줄어들고,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상의를 해야 하는데 실적과 계획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초안으로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평가와 재승인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

해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계획의 비중을 1:2로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항목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40점과 80점으로 나누었는데 총 120점까지는 이미 위원회 의결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40점과 80점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아래도 보시면 25:45로 꼭 떨어지지는 않지만 1:2로 대략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 비중을 더 높이고 싶으면 2017년 사례는 어떻게 했나 하면 ②번 항목과 ⑤번 항목과 ⑥번 항목을 반반으로 했습니다. 즉, ②번 항목을 40:80이 아니라 60:60으로, 그리고 ⑤번 항목을 15점, 35점이 아니라 45점, 45점으로, ⑥번 항목도 30점과 50점이 아니라 40점과 40점으로 이렇게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그렇게 3가지 항목만 절반, 절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비중 점수가 더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과거에는 1,000점 만점인데 지금은 1,05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이번에는 1,050점 만점입니다.

○ 심사위원

- 표면적으로 실적과 계획 비중을 1:1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단순하게 1:1로 보시면 이미 실적으로만 보는, 과거 실적만 평가하는 항목들이 음영 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실적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과거 실적만 평가로 심사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심사사항 <1>번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과 그 아래 <2>번부터 큰 <6>번까지 쭉 오는 281점이 실제 내용상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면은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방송평가는 운영영역, 방송영역 등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가령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이 방송영역에서 또 편성영역에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겹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2014년, 2017년 전후로 해서 계획 점수가 33% 비중에서 27%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35%로

들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설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비중이 왜 줄었다가 다시 또 늘었느냐, 이것은 이야기를 납득이 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 가지 비율대로 비슷하게 가든지, 대부분 그런 입장이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재승인일 텐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계획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초인데,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재승인을 3년마다, 5년마다 한다면 실제 계획은 불투명하고 이행 대비 실적은 명확하니까 오히려 실적 비중이 조금 높아야 되는 추세로 보였는데, 갑자기 저희가 계획 대비 비중을 올리는 논리가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의 취지 자체가 기준 실적들에 대한 평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1 조차도 굉장히 자의적인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때 했을 때. 물론 각각의 비중들이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론적이고 많이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획일적이지만 1:1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1:1조차도 굉장히 재승인 심사하는 취지에 맞춰서는 계획 비중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400점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650점을 325:325 하면 1:1인데, 지금 현재 281과 369이지 않습니까? 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실적과 계획에 대한 비중 편차가 많이 들어난 것을 조금 줄이고, 실적을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15:35로, 아까 1:2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점수를 빼서 실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신설한 것 있지요?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이런 점수는 조금 조절이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물론 계획에 들어갈 점수가 더 많겠지만 이것을 한번 미세하게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안)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안을 너무 크게 벗어나서 27% 이하로 떨어져도 곤란할 것 같고, 27%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 사이로 유지를 하고 정리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2014년과 2017년도 중간 정도, 그러면 70:30이 됩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여기 점수가 681점이 아니라 730점, 740점 정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계획이 줄겠지요. 한 50점 가까이 줄면 320점이나 319점이 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비율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심사항목별 점수들을 계속 조정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일부 심사항목이 과거 실적만 반영했던 것이 2014년, 2017년에도 동일했던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은 과거 실적을 반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획 비중을 높였다는게….

○ 심사지원반

- 초안을 만들 당시 고민을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심사항목이 어떤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실적과 계획 비중이 예를 들어 1:3, 1:4로 임의로 조정하면 심사항목에 바이어스가 들어갈 것 같아서 심사항목별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심사위원회에 제시했던 1:2 비중에 대해서도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실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미세조정을 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신설된 항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⑧번 항목과 아까 말씀드린 재난방송 실적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비중이 다소 올라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렇다고 1:1로 했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실적이 많아지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

- 신설된 ⑧번과 ⑥번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렇지, 이것이 공적책임이나 방송 기획·편성의 적절성하고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을 나눴다고 해서 실적 대비 계획을 더 높이 잡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신설 항목은 고시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 심사지원반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보도PP 세부계획을 의결할 당시에 심사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재난방송은 그 사이에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 관련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난방송 실적과 계획을 재승인에 반영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바 있어서 세부계획에서 들어간 항목입니다.

○ 심사지원반

- 신설 항목은 당연히 재난방송은 사업자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한 이전의 실적을 적용하면 소급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 비중을 좀 더 높이 한 것입니다. 15:35 계획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⑧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도 신설항목은 사업자들이 이것을 평가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실적보다 계획 평가를 많이 하는 것은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⑧번과 ⑯번이 신설 항목이라면 정확하게 하려면 계획으로만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말씀드렸지만 재난방송 부분은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지난 고성산불 이후에 좀 더 부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 심사에 반영하자고 해서, 원래 5월에 의결한 기본계획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심사계획에 추가하면서 1,000점이 아니고 1,050점이 된 것입니다. 1,050점을 나중에 다시 1,000점으로 환산하게끔 추후에 한 부분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방송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적을 아예 안 볼 수도 없었습니다.

○ 심사지원반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에는 이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에서 구체적인 개별 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올해 처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공적책임이나 공공성에 녹아들어가서 과거에는 평가될 수 있는데 재난방송이 강제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새롭게 빼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의무화되어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도 당연히 종합편성사업자는 이미 승인 당시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도PP는 ⑧번 균형적 편성이 없는 이유가 종합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편PP의 경우 별도 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올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2017년도에 항목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7년 대비 ⑧번과 ⑯번 항목의 계획 비중이 높아서 3% 정도 올라간 것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017년이 27%였으니까….

○ 심사위원장

- 예를 들면 심사항목 <2>번에 대해 40, 25, 6, 80, 45, 14에 대한 점수 포인트 중 실적 점수를 높여야 할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의결해야 어느 정도 합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OOO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범주를 벗어나면 곤란하니까 2014년도와 2017년도 정도에 준해서 70 정도 전후로 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비율대로 735점과 315점으로 맞추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실적에서 +50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정을 ②, ③, ④, ⑤에서 10점에서 15점 정도 왼쪽으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심사사항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이 부분은 점수를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획을 줄이고 여기에서 10점을 더 플러스하면 어떻겠느냐, 동의하시면 정리하시지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동의합니다. 그래서 54점을 조정해 주시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50:70으로 하고요.

○ 심사위원

- 2017년에 60:60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 그래서 이것은 50:7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보도PP는 어떻게 할까요? 60:90으로 할까요? 오른쪽 보도PP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 심사위원

- 60:90….

○ 심사위원

- 60:90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60:90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은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도 조정할까요?

○ 심사위원

-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30:40으로 할까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점수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는 35:45로 할까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은 큰 것이 없으면 내버려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하는 심사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 다음에 <3>번 심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은 15:35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을 5점 더 올려서 20:30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옆에 있는 보도PP도 25:35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미세하게 조정한다면 5점 정도로 실적을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35:45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것은 30:4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진 것이 30점 정도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20점 범주 내에 빠지면 되니까 <3-7>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은 그대로 내버려둘까요, 아니면 조정을 할까요? 방법은 10:10으로 하거나 뒤에 것을 12:18이나 13:17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공익성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10:10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10:10으로 할까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오른쪽에 있는 보도PP는 똑같이 1:1로 할까요? 15:15로요? 보도PP는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15:15로 할까요?

○ 심사위원

- 동일하게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이니까 똑같이….

○ 심사위원장

- 15:15이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 심사사항 중 ⑧번은 신설된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도 15:25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신설 항목이라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대로 두어야겠지요?

○ 심사위원

- 잠깐만요. ⑯번 재난방송 같은 경우야 상황이 다른데 균형적 편성은 기본에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5:25이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 심사위원

- 20:30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장

- 20:30으로 할까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고칠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죄송합니다만 ②번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이 부분에 대한 조정안이 종편PP의 경우 50:70이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70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1:1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상향이 될 수 있을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을 1:1로 가자고요? 그렇게 되면 60:60입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17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저도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1로 했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17점을 더 조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까지만 조정하면 다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바꾸지 않는다면 퍼센티지는 실적이 거의 70%까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저희가 점수를 실적 점수 주고 계획 점수를 따로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세부심사항목이 각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2개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니까요.

○ 심사위원

- 아까 보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수 단위가 5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5단위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배점 정도가….

○ 심사위원

-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역·사회도 6:14니까 이것을 5:15로 하면….

○ 심사위원장

- 예를 들면 55:65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④번만 5점, 15점으로 하면 남아 있는 5점짜리로 안 끊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⑪번도….

○ 심사위원

- ⑪번하고 그 2개만 조정하시면, 왜냐하면 7점이면 수, 우, 미, 양, 가 주면 점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채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게 어려운 산술 수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쓰시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가장 핫 이슈가 심사사항 <2-2>입니다. 이 점수를 아까 50:70으로 조정했는데 60:60, 55:65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뒤에 배점 차이가 있으니까 바꿔지기 어렵습니다. <2-2>가 이번 심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점수를 60:60으로 하거나 아니면 55:65로 하거나 이 정도 정해야 해니까 정확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의견드리겠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 실적과 관련해서는 항상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있어서 이슈가 되었던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3년이 유예가 된다는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장

- 60:60, 다른 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이것은 2017년도에도 똑같이 1:1 비율이었습니까?

○ 심사지원반

- '17년도에는 1:1 비율로 한 심사항목이 3가지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②번 공적책임·공정성과 ⑤번 항목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⑥번 항목 투자 실적 및 계획, 이 3가지 심사항목에 대해서 1:1로 조정하셨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조정하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70% 정도의 실적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50점 정도 오버되어야 하니까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지금 현재 69%:31% 정도입니다.

○ 심사위원

- 7점을 더 조정해 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 심사위원장

- 5점 정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공적책임의 보도PP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어느 쪽이요?

○ 심사위원

- 공적책임 <2-2> 보도PP는….

○ 심사위원장

- 60:90인데 이것도 70:80으로 할 수 있습니다. 70:80으로 할까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70:80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장님, 공적책임 부분은 1:1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 심사위원장

- 아니요, 종편을 1:1로….

○ 심사지원반

- 종편만 1:1로 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예, 보도PP는 70:80입니다. 여기에서 의결하면 75:75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같은 항목인데 기준을 다르게 하면….

○ 심사위원장

- 그러면 75:75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세부적으로 ④번과 ⑪번 항목을 5점 단위로 끊어서 ④번을 6:14를 5:15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⑪번도 5:15 그다음에….

○ 심사위원장

- <3>번의 ⑦은 10:10으로 했고, <4>번의 ⑪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 말은 <2>번의 ④번 있지 않습니까? 미세조정인데 5점과 15점으로 하시면….

○ 심사위원장

- 계산하기 편하게?

○ 심사위원

- 계산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⑪번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실적을 너무 적게 보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실적은 어차피 많습니다.

○ 심사위원

- 실적, 계획을 합쳐서 우리가 점수를 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아니요, 따로따로 냅니다.

○ 심사위원

- 실적, 계획을 따로 냅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종편이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1점 차이입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서울에서도 방송하고 지역도 방송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점수를 많이 주면 이것은 점수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OOO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2개만 1점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5점

단위로 딱딱 끊어지게….

○ 심사위원장

- 5점, 15점 하면 정확하게 딱딱 맞는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예,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5점, 15점 혹은 10점, 10점 하면 되겠네요. ⑪번도 마찬가지고요.

○ 심사위원

-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다 그렇게 맞추셨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6점, 14점이나 5점 15점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산은 다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바꿔주는 것이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딱딱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⑪번은 10:10으로 합니까?

○ 심사위원

- 합계 내기 어려울 텐데….

○ 심사위원장

- 괜찮습니다.

○ 심사위원

- 로직을 정확히 해야지요. 이것은 저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 심사위원

- 제 의견은 그렇고, 다른 분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5점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평가

하는 것이 5점 척도라서 그것이 훨씬 편하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2-4>를 5:15로 하는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4>의 ⑪번 항목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 심사위원장

- <4>의 ⑪번도 받았겠네요?

○ 심사위원

- 이것은 <3-7>번을 10점, 10점으로 했으면 이것도 10점, 10점으로 해야겠네요.

○ 심사위원

-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장

- <3>의 ⑦번 10점, 10점 했습니다.

○ 심사위원

- <4>의 ⑪번도 10점, 10점으로….

○ 심사위원

- <4>의 ⑪번 10점, 10점, 5점, 5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점수가 합쳐서 20점이 되어야 하는데 5점, 5점이면 10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보도PP가 5점, 5점이라는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장

- 뒤에는 5점, 5점….

○ 심사위원

- 종편이 10:10이고 보도가 5:5입니다.

○ 심사위원

- 그다음에 <4>의 ⑨번의 보도PP 남았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15:25 아닙니까?

○ 심사위원

- 로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70%라는 것들이 자의적인 퍼센티지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70% 전후가 된다고 했지, 70%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딱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4-9>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도 아까 5단위로 한다면 15:35로 하거나 20:30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까 20:30 나왔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20:30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 심사위원

- 보도PP….

○ 심사위원장

- 20:30,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보도PP는 어떻게 할까요?

○ 심사위원

- 아까 15:25….

○ 심사위원

- 보도가 15:25….

○ 심사위원장

- 15:25,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 방송기술은요?

○ 심사위원

- 10:10, 5:5….

○ 심사위원장

- 10:10, 그다음에 뒤에는 5:5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머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것 합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②번입니다.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종편PP는 실적 대 계획이 60:60, 보도PP는 실적과 계획이 75:75, 그다음에 ③번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은 실적이 30, 계획이 40, 보도PP는 실적 35, 계획 45입니다. 그 다음에 ④번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종편PP는 5:15, 보도PP는 10:20입니다. 그 다음에 ⑤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종편PP 실적 20, 계획 30, 보도PP 실적 25, 계획 35, ⑥번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종편PP 실적 35, 계획 45, 보도PP는 실적 30, 계획 40, ⑦번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종편PP 실적, 계획이 각각 10:10, 보도PP는 실적, 계획이 15:15, 그다음에 ⑧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종편PP는 15:25, 그다음에 ⑨번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종편PP 실적이 20, 계획이 30, 보도PP는 실적이 15, 계획이 25입니다.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종편PP 실적, 계획이 각 10점씩, 보도PP 실적, 계획이 각 5점씩입니다. 이렇게 합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 심사지원반

- 전체 실적을 보는 점수는 종편PP가 730점이고, 계획이 320점입니다. 보도PP는 735점이고, 계획은 315점으로 종편PP는 7:3이고, 보도PP도 7:3으로 계산됩니다.

○ 심사위원장

-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안까지 해서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십니까?

○ 심사지원반

- 다시 정리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배점표는 어차피 배포해 드려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나중에 의결할 때 불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범위를 <1안>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규정한 법 위반사항만 반영할 것이냐, <2안>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비계량평가를 반영할 것인가, 그 밖의 법이 <2>안으로. <1안>, <2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만약 <2안>을 따른 경우 시행령에는 4개만 제시되어 있는데 <2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 저작권, 형사처벌 등도 반영한다면 시행령 위반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시행령 위반이요?

○ 심사위원

- 시행령에 4개가 딱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1안>으로 하면 관계없는데 <2안>으로 했을 경우 그 5개 플러스 콘텐츠, 저작권, 형사처벌도 반영하자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반영하되, 5개 법 이외 나머지는 비계량평가로 <2>번 심사항목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

- 비계량평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 심사지원반

- 계량평가 항목으로 마이너스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 심사위원장

- 아까 배분할 때 1번 <2-1>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평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저는 이것이 방송법 시행령 하위법령을 말한다가 열거적 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열거 같은 경우와 예시를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1안>으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무엇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거로 해석할 필요 없고 예시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비계량평가로 반영하는 것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고려했을 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2안>으로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은 <2안>으로 해서 나머지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을 공적책임 비계량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인데, 굳이 그 외의 위반사항을 특정 <2>번으로 축소해서 적용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축소해서 적용한다는 의미가 법에서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느냐는 말씀입니까?

○ 심사위원

- 심사항목에서 특정 하부 항목으로만 비계량평가로 그 외의 법령을 적용하는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 심사위원

- 시행령에서 이렇게 개정되면서 4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법률 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량평가로 가고, 나머지 공적책임 부분에서 비계량평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2-2>와 <2-3>, <3-5>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해석하자고 저희가 정보를 받자는 것 같습니다. <1안>으로 가면 4가지 법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위반사항을 알 수 없고, <2안>으로 가면 심사지원반에서 저희에게 이것을 다 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2안>으로 가야지만 저희가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2안>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2안>에 그 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까?

○ 심사지원반

- 이미 조회를 끝내 놨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조회가 됐으니까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안> 2019년도 법령위반 건은 1개년 감점을 1/3로 계산하여 평가하거나 <2안>….

○ 심사위원

- 아까 거기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2안>으로 가는데 4가지 법의 경우 그 뒤에 점수가 과태료, 과징금, 심의제재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처벌의 경우는 감점이 안 됩니까?

○ 심사위원장

- 비계량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 심사위원

- 그것은 4개 법 이외에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 비계량으로 가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보다 더 중한 처분인데 4개 법 위반했을 때 4개 위반이 과태료, 과징금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감점 외 형사처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처벌의 경우 감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2안>으로 결정하시면 감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4개 법 위반했을 때도?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1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1안>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사위원

- <1안>도 <2안>도 마찬가지 형사처벌은 지금 법에 없어서….

○ 심사지원반

- <2안>의 경우 4개 법 이 외 법들을….

○ 심사위원장

- 법인이 받은 형사처벌입니까?

○ 심사위원

- 예. 그런데 3년 전에도 그것을 많이 논의를 했던데 형사처벌이 과태료, 과징금보다 중한데 왜 이것은 감점하면서 더 중한 형사처벌은 감점하지 않느냐, 많은 위원들이 그때 논의를 했던데….

○ 심사지원반

-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세부심사기준에서도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일단 감점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법 등 방송발전 기본법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처벌로 가기 직전에 과태료, 과징금이 일단 부과가 되고 형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 고발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별, 행정처벌에 한하여 관계법령 위반으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형사처벌까지 갔다면 과태료, 과징금보다 훨씬 위반행위가 큰 것인데 왜 위반행위가 큰 것은 감점하지 않고 더 적은 것만 감점하느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저도 같이 말씀드리면 아까 ooo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을 만들기 전보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폭이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폭이 줄어든다기 보다는 적용되는 법률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 법령 없이도 저희가 재승인 시 관계법령 위반으로 봤습니다. 다만, 그전에도 ooo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감점기준이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 그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살아 있는 거네요?

○ 심사위원

- 제 생각에 형사처벌은 예를 들어 법인의 임직원이 만약 잘못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대표자를 못 합니다. 해당 종편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벌칙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평가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표자나 일반 임원이 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개인의 직위가 해제되는 것이지요. 만약 법인의 임원 중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저희가 공적책임 부분에서 좀 더 비계량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떤가 싶은 것입니다. 계량적으로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계량적으로 어떻게 좀 더 고민해 볼지를 나중에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법령 위반에 형별 조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벌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 과태료와 행정벌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별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심사위원장

-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비계량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법령위반 건 1개년 감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1안>, <2안> 중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궁금한 것이 2019년도 법령 위반 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2017년도에 위반했는데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갔을 때 만약 2019년에 확정이 됐다면 그것은 2019년도 법령 위반 건으로 보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발생한 것은 2017년에 났고, 결론이 2019년에 났으면 2019년에 난 것으로 판정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당시에는 2017년도에는 방송평가에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방송평가에서 감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시점에 저희가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방송평가는 매년 공표를 해서 사업자 간 순위를 매기니까 실질적으로는 4점이 반영됩니다. 사업자가 느끼기에는 4점이 반영되어서 평가받고, 사실은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1/4, 1/3로 감액된 효과가 있는데 2019년 방송평가는 아마 올 연말 정도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도 되는 것이라면 기존 2014년, 2017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고, 또 최근에 했던 법령위반이 더 중하다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안>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난번 재승인 때 다 <2안>으로 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2안>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2안>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방통위에서 <1안>, <2안>을 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1안>에 약간 무게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1안>, <2안>에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뒤엣것도 마찬가지로 재무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7년도에 발생된 것이 2019년도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나왔다면 저는 <2안>보다는 1/3로 <1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1안>에 1/3을 평가해서 1/3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송평가가 1,000점 만점인데 1,000점 만점 중 4점이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3년치 평균을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 온 것이 2.29점이라는 것이지, 방송 평가 내에서도 이것을 4점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해에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으면 점수는 후순위로 확 밀립니다.

○ 심사위원

- 2019년도에 결론이 난 것이 2016년도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2015년에도 발생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것을 2019년도에 다 뒤집어쓴다는 것은 약간 논리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래서 사업자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만약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아마 재허가 받는 연도에 해당되는 것에 소송이 끝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100%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의견이 갈리는데 <1안>, <2안> 중에서….

○ 심사위원

-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 위반의 감점에 대한 안인데, 저희가 6페이지에서 <2안>으로 결정했을 때 관계법령 이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비계량적인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관계법령 밖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8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법령은 방송법과 관련된 그 법령에 한정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계량평가로 반영되는 방송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4개 법령, 즉 5개 법령에 대한 감점 방식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다면 6페이지 <2안>에서 결정했을 때 비계량평가로 심사항목에서 어떠한 별칙적인 조항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8페이지의 <2안>에서는 그것들이 포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나머지 기타 법 위반사항들은 <2>번 심사항목에서 비계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

- 8페이지 <2안>에서는 감점으로 평가를 할 때 제 생각에는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은 감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은 계량이 아니라 비계량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8페이지에서는 계량평가만 놓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 말씀은 잘못한 범인이 있는데 실제 평가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인지요.

○ 심사위원

- 계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까 네 항목 시행령에 있는 4개 플러스 방송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 외의 것은 비계량으로 가서 다른 데서 평가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것인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안>, <2안>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표결할까요?

○ 심사위원

- 재승인 시 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했던 논거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논거가 있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일단 위반 연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점수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다, 연도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옛날 심사 때는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것은 이중 감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이중 감점은 한 적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계속 고려해 왔던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2016년, 2017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결론이 2019년도에 나온 예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위반된 사례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위반된 사례에 대해 더 감점하는 것이….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최근에 위반된 사례가 포함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심사위원

- 이런 것이지요. 법령 위반 건수가 판결이 된 것이 과거에 했던 것이 2019년도에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위반된 것도 있을 것이고….

○ 심사위원

- 그러면 건수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발생한 것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다. 건수가 아니고 A라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2019년도에 났느냐, 2018년도에 났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알 수 없지요.

○ 심사위원장

- 제가 보기에도 큰 점수 차가 반영된 것은 아니니까 <1안>, <2안>에 의견이 갈리니까…

○ 심사위원

- 방송평가는 법령위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법령을 감점합니까?

○ 심사지원반

- 방송평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아주 많이 감점을 하던데요.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4가지 법에 한정해서 감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1/3의 감점을 해 주면 위반행위에 대한 감점 폭이, 전체 사업자 중 감점이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적은 점수만 감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2014년, 2017년에 했던 재승인 방법과 동일하다면 우선 저희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안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장

- 먼저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2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2안>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 2017년 재승인과 동일한 방법인 2019년도 법령위반 건은 1개년 감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1안>은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지표별 동일한 배점을 적용, <2안> 2014년, 2017년 재승인 배점과 같이 안정성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보면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 항목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은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여기에서는 <1안>, <2안> 중복 안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세부심사항목 구성의 방법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논의하셔서 바꾸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저희가 드린 초안에서는 이 3가지 안으로 제시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2010년, 2014년, 2017년에 공히 같은 항목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아까 5단위로 끊었으니까 동일하게 배점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1안>이지요.

○ 심사위원장

- 동일한 배점으로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중에서 종편PP 같은 경우 아직까지 안정성을 좀 더 많이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좀 더 높게 배점을 준 <2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ooo 위원님과 동일하게 <2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ooo 위원님과 함께 <2안>에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익성·성장성이 좋으면 안정성도 좋은 것 아닙니까? 3개가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비슷하지는 않지요.

○ 심사위원

- 전혀 다릅니까?

○ 심사위원장

- 예, 지표가 차원이 다르지요.

○ 심사위원

- 부채비율이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결정해 주십시오. 경영·회계 파트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 심사위원

- 전문가들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 심사위원장

- 대부분 <2안>을 강조하셨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이것은 특별히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2안> 지난 2014년, 2017년 재승인 배점과 같이 안정성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최저점 설정이 있습니다. <1안>은 최저점수를 20%, 그다음에 <2안>은 최저점수 30%입니다.

○ 심사위원

- 2017년도에 최저점수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당시 표결로 정했는데,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계량평가에만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일 가까운 시일에 했던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편차가 커지지요. <1안> 20%로 하면 갭이 최하와 최고가 80%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커지니까….

○ 심사위원장

- 제일 가까운 2014년~2017년 안이 우리는 낫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1안>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1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째로 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수정된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항목에 대한 계획 배점 안내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이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7:3의 비율로 배분했습니다.

○ 심사지원반

- 맞습니다. 730:320점입니다.

○ 심사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정확하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심사위원장

- 아까 점수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적, 계획만 정확하게 합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합계 730:320으로 70%, 30%, 보도PP는 실적, 계획이 735:315로 이것도 거의 70%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67:33, 2017년도에 73:27, 대충 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730:320으로 해서 1,050점 기준으로 70: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범위는 <2안>으로 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위반 전에 대한 평가는 <2안>으로 정해졌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지표별 동일한 배점을 적용하는 <1안> 대신에 <2안>인 2014년, 2017년 재승인 배점과 같이 안정성 지표의 배점으로 강화하기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최저점수를 20% 반영한 <1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배점 기준이나 관련된 세부심사 기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다음 <의결사항 나>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접수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 주문으로는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결과 접수 결과를 의결합니다. 제안한 이유는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결과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접수 결과입니다. 개요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편 2개사(TV조선과 채널A)와 보도PP(YTN, 연합뉴스TV)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국민이 묻는다」 포함)을 접수받았습니다. 「국민이 묻는다」는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 기존의 시청자 의견청취 및 법인 대표자 등 의견청취 방식 이외에 추가로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수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하여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기준 방식에 대해서 접수된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재승인 신청법인 대표자 등 의견청취 시 별도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19년 12월 20일~2020년 1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총 접수 건은 32,355건으로 <표>를 보시면 TV조선 17,133건, 채널A 8,154건, YTN 2,950건, 연합뉴스TV 4,118건 이렇게 해서 총 32,35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수 결과입니다. 종편PP를 보시면 종편PP에 대한 재승인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의견을 전수 검토한 결과, 재승인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아주 극소수로 다수 시청자 의견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TV조선의 경우 불승인 비율이 약 75%, 채널A 약 77.6%, 나머지 승인, 기타, 내용없음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데 기타 의견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지만 기타 의견도 구체적 조치에 대한 의견이 없을 뿐 대부분의 내용이 편파 보도, 왜곡 보도, 국익 무시, 오보정정하지 않음, 가짜뉴스의 진원지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부정적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보도PP입니다. 보도PP의 경우 종편 관련 시청자 의견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승인을 요구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YTN의 경우 불승인 비율이 62%, 연합뉴스TV 65% 정도입니다. 보도PP에서 기타 의견을 보시면 편파 보도, 왜곡 보도 등 공정성을 의심하는 부정적 내용이 많고, 특히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세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은 부당한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이 묻는다」입니다. 시청자 의견을 접수받을 때 사업자에 대한 질의인 「국민이 묻는다」도 동시에 총 211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사업자별로 다양한 내용이 있으나 시청자 의견과 거의 유사하고 일부 사업자별로 주주일탈이나 재정안정성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종편·보도 합쳐서 211건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이 묻는다」 분량은 전체 시청자 의견 대비 상대적으로 적으나 국민이 직접 재승인 대상 PP에게 의견을 물어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자 의견청취 때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질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제출 의견 (「국민이 묻는다」 포함)에 대한 재승인 심사 반영 결과는 백서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1>에는 간단하게 종편과 보도로 나누어 놓았고 시청자 의견 일부가 있고, <붙임 2>에는 「국민이 묻는다」 의견 일부가 있습니다. 이 의견을 붙인 것은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순으로 발췌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의견 개진을 할 때 실명으로 다 공개하나요.

○ 심사지원반

- 예.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의견을 보시면 32,21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휴대폰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명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사이트에서도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받을 때 실명으로, 일단 들어가서 클릭하다 보면 사업자별로 의견을 넣기 전에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받아서 의견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공개는 안 됩니까?

○ 심사지원반

- 공개는 안 됩니다.

○ 심사위원

-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99%인데 「국민이 묻는다」 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여론조사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할 때 보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올려라', '어디로 피드백해 줘라' 그렇게 간단하게 팩트만 이야기한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맞습니다. 팩트만 이야기하게, 완전히 서술식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의도성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 의견청취란에 적게 되어 있고, 「국민이 묻는다」 의견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공란을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종편PP나 보도PP 밑에 자막으로 의견을 달라고 스크롤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것은 시청자 의견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구체적으로 시청자 제출 의견(「국민이 묻는다」 포함)에 대한 결과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자는 말씀입니까? 방송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 심사지원반

- 방송법상으로는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를 심사에 반영했는지 여부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에 반영했다, 그래서 시청자 의견이 들어온 것을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심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총 1,050점 만점 항목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이것은 별도 배점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시청자 의견을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을 각 항목에 맞게 어떤 시청자는 공익성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시청

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재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목별로 비계량적으로 반영하시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시청자 의견 들어온 것은 여기 심사장에 놓여 있는 노트북에 원문 그대로 다 데이터를 넣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복사해서 심사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사업자 의견청취 때, 즉 수요일에 오셨을 때 이 내용을 별도로 질의해서 답을 얻어 보라는 이야기인데….

○ 심사지원반

- 취지는 그렇습니다. 방통위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시청자 의견을 그냥 받아서 끝내지 않고 시청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심사위원님들이 대신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는 <불임 1>과 <불임 2>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 심사지원반

- 저기에 보시면 2가지가 있는데 3만건 이상 전문은 PC에 들어있고, 그 중에서 「국민이 묻는다」 일부 211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프린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책자가 2개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 심사위원

- 핸드라이팅한 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은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이 내용을 보고 파악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손으로 쓴 수기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준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거기에 보면 팩스로 주신 것이 있고 메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프린트 한

것입니다. 맨 앞에 컴퓨터로 받은 것은 엑셀 일부분을 프린트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런 의견들은 신빙성이 있는 의견이라면 반영을 일정 포션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저도 그것을 잘 몰라서 어떤 계획인지 여쭤봤는데 별도의 항목은 없고 전체 공익성 측면, 지역성 측면 거기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이미 심사기준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건의사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하라 정도가 아니라,

○ 심사위원

- 일정 포션….

○ 심사위원

- 전 항목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지난번 2017년도 종편 심사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시청자 의견청취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련된 배점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이번에 되돌릴 수 없다면 다음에라도….

○ 심사위원장

- 그것을 비계량평가할 수 있도록 두루뭉술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런데 저희가 의결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의견들을 심사할 때 알고 있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계량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은 위원들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ooo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배점에 시청자 반영의 비율 점수를 예를 들어 5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배점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의견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놓으니까 관계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시청자 의견 접수하는 방법이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4군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수를 높게 하면 영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우편은 보낼 수 있겠지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3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접수를 둔다면 연령대별로 차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마지막 날 이것을 전체 건의사항으로 채택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향후에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번에 반영은 비계량평가할 때 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시청자 의견 <9>번에 보면 기타 비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사실은 「국민이 묻는다」의 방식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지, 아니면 시청자들이 부작위로 자기가 의견을 달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신 것인지….

○ 심사지원반

- 후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 시청자 의견 쓰는 란이 있고, 그 밑에 「국민이 묻는다」 의견 쓰는 란이 있는데, 「국민이 묻는다」 의견란에 쓰신 분들이 211명으로 조금 적은데, 이분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위에 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 심사위원

- 여기 의견을 다는 것이 있습니다. 승인, 불승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재승인하면

안 된다, 아니면 승인을 취소해라 이렇게 답변을 유도한 것인지….

○ 심사지원반

- 그렇지 않습니다. 빈칸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아닙니다. 이것은 open-ended라고 자기가 의견을 주관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꼭 그렇지 않고, 저에게만 이것을 주신 것 같아서 보니까 시청자 의견서, 의견제출 내용 <1>번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그랬으니 이것은 재승인 허가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재승인 대상 방송사에게 「국민이 묻는다」, 이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2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질문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재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하여간 이 2개의 항목별로 나온 답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저희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당연하지요.

○ 심사위원

- 왜냐하면 저는 의결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심사항목에서 시청자권익보호 실적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먼저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점수를 배분할 때 우리가 조정한 30:40이 아니라 오히려 더 1:1로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의견에 보면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반영 여부를 하였다고 공표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형식적으로 반영했다는 책임들을 가지게 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동의를 이렇게 다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록으로 남겨서 다음에 개선사항을 남기는 수준이라면 저는 반영

여부 공표를 저희가 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 대해 저도 일부 동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만약 우리가 계량 항목으로 배점을 넣어서 반영할 경우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편PP 쪽에서….

○ 심사위원

- 비계량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계량이든 비계량이든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무적인 포션이 반영된다고 할 때 평가를 받는 종편PP 쪽에서 의도적으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편파적인 의견을 추가해서 왜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하는 그 원칙에는 저도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도화하는 방식에 대해 제가 의견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기로 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확인하고 평가에 임했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주문 안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승인이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위원들이 동의하는 것인니까 제가 보기로 비계량평가 할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확인했다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인다면 금요일에 할 때 앞으로 개선책으로 이 분야의 배점에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이 의견을 계량점수로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ooo 위원님,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시청자 의견 7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의견을 개략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 대부분 다 재승인 반대, 승인 반대, 없어져야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모아졌고, 이것이 실적이라기보다는 향후 승인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타에서도 의견을 조건부 승인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라 앞에 심사했던 배점과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3>번 항목이 시청자권익보호 실적이라서 권익보호 활동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ooo 위원님과 위원님들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항목 자체를 우리가 하나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2>번 공적책임·공정성 실적에도 들어가고, <3>번 시청자권익보호에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때 그 안에 녹여서 쓰고, 그 다음에 의사록에 그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 의견청취에 대한 방법, 거기에 대한 정교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정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의견제시가 좀 더 의견을 다양하게 심사에 필요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너무 의견이 '승인반대' 이런 내용들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의견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약 항목에 들어가면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어서 조금 정교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ooo 위원님 이야기는 3페이지의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청취했습니다.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게끔 할까요? '각 항목에서 비례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약간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받는, 아까 ooo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틀이 다시 필요합니다. 지금 봐서는 거의 다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기타도 한 20 몇 퍼센트인데 기타 의견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청자 의견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청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심사위원들이 보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다음번 재승인할 때는 방법을 바꾸어서 시청자 의견을 어떻게 잘 청취할 것인가 질문부터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심사지원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보고드렸던 재승인 세부계획에 보시면 의견청취 부분을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한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어서 지금 별도 항목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건의사항으로 나중에 심사 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내는 의견을 어떻게 지표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한 사실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의사봉 3타)

○ 심사위원

- 위원장님, 5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3시 25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보고사항

가.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가>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이유는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을 보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17년도 3월과 11월에 종편·보도PP를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17년도 3월 9일에는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주)조선 방송·제이티비씨(주)·(주)채널에이를 했고, ‘17년도 11월 27일에 (주)매일방송을 했습니다. ‘20년 1~2월 사이에는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을 접수했습니다. 주요 경과는 네모 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실적 확인대상은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했고, 조건부가 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했습니다. 크게 종편PP 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기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1>번~<10>번까지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편PP 4개사 및 보도PP 2개사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도 확인했습니다. <4>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첫 번째가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준수는 4개사 전부에게 부가되었고, 조건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이행여부는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4건 이하로 하도록 4개사에게 부가했습니다. 조건 내용은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이행여부는 '19년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2건입니다. 채널A 1건이고, MBN 1건이 되겠습니다. 검증기구를 운영하라고 조건을 단 것은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조건내용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이행여부는 2개사 모두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기구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네 번째는 진행자·출연자 법정제재 시 진행자 출연정지, 이것은 TV조선에 부가된 것이고, 조건내용은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취할 것, 이행여부는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서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했고, 다만 '19년도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팀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는 4개사 전부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조건내용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 합산의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이행여부는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다 나와 있고, 제출실적을 보면 다 이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방비율 준수는 MBN에게 조건이 주어진 것이고, 조건내용은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이행여부는 '19년도를 보면 계획 대비 39.4%로 이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4개사 전체입니다. 사업계획서 조건내용은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행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에 의해서 TV조선과 채널A는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였

습니다. '20년 하반기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JTBC과 MBN은 결산자료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 받을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콘텐츠 펀드 조성입니다. TV조선에게 조건이 부가되었고, 조건 내용은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이행여부는 TV조선이 출자법인의 펀드 조성·운용을 하는데 총 ooo억원 중 oo억을 출자했고, 콘텐츠 관련 펀드에 대한 TV조선의 투자가 펀드총액이 ooo억원에서 약정액이 oo억원이고 출자액이 oo억원으로 이러한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외주상생방안 준수는 MBN에 부가되었습니다. 조건내용은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이행여부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외주상생계획은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MBN 외주상생계획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열 번째, 경영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이행실적입니다. MBN에 부가되었습니다. 조건내용은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행여부는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 여부입니다. 현재 재승인 권고사항을 미준수한 항목은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6>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 기타사항으로 '18년도 종편PP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정정한 것이 있습니다. '18년도 종편PP의 콘텐츠 투자실적 점검결과 당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채널A의 경우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ooo억 oooo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가 불인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방송시설 관리비용, 손해배상금 등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추가 불인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TV조선은 '18년도의 콘텐츠 투자금액을 이행실적을 ooo억 oooo만원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가 불인정 항목이 o억 oooo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앞으로 조치방향(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사업자별 재승인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방향을 검토하고,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등 4개 사업자는 이번 3월 재승인 심사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JTBC와 MBN의 경우 하반기 심사예정인 2개 사업자는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점검한 다음 조치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붙임> <1>번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

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 있고, <2>번은 보도, <3>번은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 기준, <4>번은 방송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승인 유효기간이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인데 2017년도, 20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드렸고, 이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관계법령 위반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 3월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행실적 점검을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만 위원회에 보고드렸고,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사를 하시면 된다는 것 때문에 2019년도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2017년, 20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는 잠시 후에 참고자료를 나누어드릴 텐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5>번 장르별 합산비율 준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분야 상호 간 조화를 이루도록 참조하라는 것이 비율이 각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통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 본인들이 교양·오락이라고 제시한 것이 사업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양인지 오락인지 조금 아리송한 퀴즈프로그램이 있을 때 오락의 비중이 조금 떨어지면 그쪽으로 집어 넣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통위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방통위가 판단하는 것인지, 사업자 스스로 비율을 정하고 사업자가 그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심사지원반

- 첫 번째, 사업자가 제시한 비율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르 구별 관련해서는 요즘 탈장르 시대에 구별이 명확하게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오락인데 교양으로 분류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다시 정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뚜렷한 구분 기준은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붙임 3>을 보시면 위원회 의결로 2017년 재승인 시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분류해 오고, 저희가 이 기준에 부합한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 심사위원장

- 옛날에는 방송사 기준을 많이 따졌는데 종편PP 등장 이후부터 방통위에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심사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 TV조선 계획 32.7%, 사업자 제출실적 28.89%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앞에 수치보다 미진한 수치인데,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국 최종 판단은 이행여부인데….

○ 심사지원반

- 합산비율 준수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뉴스팀사, 시사논평 등 보도에 치중한 종편에 문제가 있어서 이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보다 더 작게 편성하면 이행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보도가 너무 많아서 조건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낮은 것이 이행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상한선을 제시한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사업자 스스로 상한선을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보도가 30%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냈고, 그 내에서 했으니까….

○ 심사위원

- 질문하면 <6>번, <7>번을 보면 <6>번도 재방비율이 생각보다 아주 높은데 상한선은 없습니까? 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40.8%로 했고, 제출을 39.4%라고 해서 어쨌든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재방비율이 40%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금액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방통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재방비율에 대해서도 MBN에 국한해서 부과된 조건입니다. 2017년도에 MBN에 조건부 재승인 조건이 나가면서 추가로 개선계획을 가지고 왔고 MBN이 제출한 재방비율의 계획입니다.

2017년 재승인 시 이것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방비율을 낮추라고 권고가 나갔고, 거기에 대해 이행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높다고 판단을 심사위원회에서 했을 것이고 거기에 부합해서 조금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MBN이 할 수 있는 비율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재방비율이 제가 알기로 MBN이 50% 넘든지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이행여부할 때 40%를 하겠다고 하고 이를 39.4%만 한 것입니다. 그런 식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보통 종편PP 심사할 때 재방비율 기준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재방비율은 법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재방비율이 많이 줄지요. 재방비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지요?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8페이지 <6>번을 보시면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있는데 이런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권고사항 <붙임 1>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권고 사항은 '공익성을 높여라',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재가 없는지, 제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심사지원반

- 권고사항은 조건과 달리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행을 못 했으니까 이행하라고 권고하는데, 통상 이행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번 재승인 심사에서 그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상향시키는 부분들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 있습니다. 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2018년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한 제출결과를 위원회가 점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채널A와 매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2019년도에는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는 매번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도 이때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정명령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행했다고 했는데 점검해 보니까 이행을 못한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2017년도에는 사업자는 이행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 콘텐츠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와 매일방송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촉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행을 촉구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는 이 제출자료가 거의 실효성이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겠네요.

○ 심사지원반

- 예, 2018년 이후부터는 콘텐츠 부분을 전부 이행했다고 적어왔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2018년부터 종편PP들이 방통위에서 요구한 것들을 대부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허가 심사나 재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종편들은 보도프로그램을 많이 줄이고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서 편성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요. 대부분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도가 거의 50%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은 30% 이내로 다 줄어들었으니까….

○ 심사위원

- 질문 있습니다. 3페이지에 검증기구 운영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검증기구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방송법에 있는 시청자위원회와 별도인 것 같고, 공정보도위원회를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일단 이 조건에 대해서는 검증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방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본인들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검증기구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에 적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이 부

과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예. 그러면 이 검증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 심사지원반

- 3년 동안의 실적 부분은 앞에 놓인 사업계획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종편·보도PP 20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 구성을 합니다. 분과 구성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나누는데 법률, 경영·회계, 기술 쪽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 세 분 중 한 분이 제2분과, 마찬가지로 시청자·소비자 분야에서 추천된 세 분 중 한 분이 제2분과에 가셔야 합니다. 세 분이 상의하셔서 제1분과에 두 분, 제2분과에 한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가실지, 제가 임의대로 조정하지 않고 세 분이 조율이 안 됐을 때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ooo, ooo, ooo 위원님 세 분이 상의하셔서 제1분과, 제2분과를 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ooo, ooo, ooo 위원님 세 분이 상의하셔서 제1분과, 제2분과를 정해 주십시오. 의결이 안 되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분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1분과에는 법률 분야 두 분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2분과에는 경제·경영·회계 맡으신 세 분 들어가시고, 기술 분야 ooo 위원님이 들어가십니다. 그것만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분과 조율)

○ 심사위원장

- 정해지셨습니까?

○ 심사위원

- 결정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정했습니까? 제2분과를 누가 하기로 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제2분과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제1분과입니다.

○ 심사위원장

- OOO위원님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제2분과로 가고 두 분이 제1분과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경제·경영·회계에서는 ooo 위원님, ooo 위원님, ooo 위원님, 기술 분과 ooo 위원님, 제1분과 시청자·소비자는 ooo 위원님과 ooo 위원님, 방송·미디어 분과에 ooo 위원님과 ooo 위원님, 법률 분과에 ooo 위원님과 ooo 위원님, 시청자·소비자에는 ooo 위원님과 ooo 위원님입니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1분과, 방송·미디어 분야 ooo 위원님, ooo 위원님, 법률에는 ooo 위원님, ooo 위원님, 시청자·소비자에는 ooo 위원님, ooo 위원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분과, 방송·미디어 분야에는 ooo 위원님, 경제·경영·회계는 ooo 위원님, ooo 위원님, ooo 위원님, 기술 쪽에서는 ooo 위원님, 시청자·소비자는 ooo 위원님입니다.

각 분과에서 논의사항 정리 및 보고를 담당하여 주실 간사는 제가 지명해서 오늘 7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 회의는 2일차 저녁 및 3일차 저녁에 개최 예정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분과별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분과별 논의결과는 운영계획에서 정한 일정대로 12일 목요일 개최되는 제3차 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과위원님들은 따로 모이시지 않고 계속 17시 30분까지, 지금부터 내일까지 공부하셔서 모례 의견청취할 때 질문할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보시면서 본인이 맡으신 분야에 대해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신청서요?

○ 심사위원장

- 예, 지금부터 5시 30분까지 보셔야 합니다. 6시까지 보면 되지요?

○ 심사지원반

- 사업계획서 보시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밤에 보시고, 다 보시면 일찍 들어가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쭉 보시다가 읽을 때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제1분과, 제2분과 담당 사무인력이 누구지요?

○ 심사지원반

- 제가 제1분과 회의 담당이고, 제2분과는 ooo 사무관이 담당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간사님만 정하면 되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언제 정할까요?

○ 심사지원반

- 간사님은 지금 정해 주셔도 되고, 내일 오전에 모이셨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부속서류를 여기에 갖다 놓아도 됩니까? 각자 12개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부속서류는 위에 보시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번호에….

○ 심사위원장

- 보시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여기에 두고 보셔도 되고….

○ 심사위원장

- 이것을 보시다가 혹시 부속서류가 필요하시면 가서 찾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각 사업자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님들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효율성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심사 때 참고하라고 심사 참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1분과 회의 때 논의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놓았고, 관계법령 위반이나 오늘 <2안>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타 법령 위반도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해야 하고, 참고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심

사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업계획서와 대조하시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2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 하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료가 있는데 보면 수치나 계획 말고 실적 관련해서 나온 수치들은 방통위에서 다 사실관계를 검증한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모든 실적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청 요령에 어떻게 안내했느냐 하면 그 실적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에 다 붙여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든지, MOU를 맺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래 하단에 부속서류 몇 번에 몇 페이지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숫자들은 콘텐츠 부분이나 재무제표는 콘텐츠 부분은 3년짜리 실적점검을 했고, 재정적 능력 평가는 옆에 보시면 감사보고서를 다 제출받았습니다.

○ 심사위원장

- 000 위원님, 저 자료를 보시고 의혹사항이 있으면 모례 의견청취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때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시간이니까 지속적으로 오늘부터 심사평가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폐회】

2020년도 종편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3. 19.(목) 10:35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록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10시 35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열세분 중 열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먼저 오늘 의결해야 할 사항이 2개 있습니다. 추가로 한 자료들에 대한 채택 여부, 전부는 아니겠지만 들어온 자료 중 심사에 반영할 자료와 두 번째는 각 분과별로 논의한 결과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청취 후 사업자에게 추가 요청한 심사자료와 관련하여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이것은 꼭 추가해서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 것만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일괄적으로 각 사업자별로 요청자료를 불러서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TV조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거방송 관련 내부의 심의·의결 회의 현황자료 필요합니까?

○ 심사위원

- 예, 필요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제45차, 제73차, 제75차 회의록 필요합니까?

○ 심사위원

-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회의가 왔는데, 전체회의록이 반영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조선방송의 주식 매매거래 총 18건에 대한 주당 매매가격과 평가주체와 평가시기….

○ 심사위원

-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건은 어떤 입증자료가 없고 그냥 <표>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조선방송이 IPTV 3개사에 수신료 단가 인상을 제안하였다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 단가 인상 제안을 IPTV사업자가 수용하여 확정되었는지 여부….

○ 심사위원

- 이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답이 왔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반영할 필요가 없네요.

○ 심사위원

- 그런데 확정된 것으로 수정해서 매출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가했다고 수정했습니다. 제가 만약 단가가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 안 된 것을 기준으로 수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자료까지 감안해서….

○ 심사위원장

- 기준 자료로 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예, 반영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심사자료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계획서 377페이지에 제시한 ‘유료방송사업자의 UHD 송출 관련 시스템 구축 미흡과 기술표준 미정’의 정확한 사실관계….

○ 심사위원

-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 심사위원장

- 아직이 아니고 지금 안 들어오면….

○ 심사위원

- 여기에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추가에 넣지 않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 심사지원반

- 어떤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심사위원

- 기술표준 사실관계 관련해서….

○ 심사위원

- TV조선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뒤쪽에 있는데….

○ 심사위원

-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맨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맨 뒤에 있다는데요.

○ 심사위원

- 맨 뒤에 2페이지….

○ 심사위원

- 맨 뒤에 제일 끝에서 한 6페이지에….

○ 심사위원장

- 회의록 뒤에, 회의록이 앞이고….

○ 심사위원장

- 맨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네 번째 페이지쯤 <2>번, <3>번, <4>번으로….

○ 심사위원

- 뒤에서 여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 심사위원

- 뒤에 2쪽부터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뒤에서부터 다섯 번째 장….

○ 심사위원장

- OOO 위원님 보시고 반영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4>번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 심사위원장

- <4>번은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 심사지원반

- 안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 심사위원장

- 지금 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지금 사업계획서가 ooo원으로 가정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 심사위원

- OOO원으로 추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자는 애초에 ooo원으로 추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OOO원으로 추정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채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채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채택하는 것이 맞네요. <4>번은 채택한다고 합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 ooo원, ooo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제출한 자료 <2>번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2>에 있습니다. 맨 뒤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자기의 바람을 반영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사업계획서는 ooo원인데 여기에서는 ooo원이라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정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확정 안 됐으니까 ooo원으로 가정했을 때 어제 의견청취 리뷰 시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이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액이 과대포장되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ooo 위원님 <5>번 어떻게 합니까?

○ 심사위원

- 저는 부족하지만 있기 때문에 반영하셔도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5>번 반영,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6>번, TV조선 정관 제20조제2항제6호 회사 설립 후 2년 이내에 그 설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ooo분의 o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의 체결을 특별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유를 설명할 것, 설명이 됐습니까?

○ 심사위원

- 설명해 왔는데 제가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TV조선이 변태설립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탈법에 대비한 규정이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결의사항은 더 높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족수에 대해서 이것은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설명을 받았으니까 채택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까?

○ 심사위원

- 설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채택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채택해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상법에 규정이 있어서….

○ 심사위원장

- 굳이 채택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6>번은 상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가지고 채택할 필요가 없다….

○ 심사위원

- 이대로 설명을 ooo위원님이 하신 것이라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채택을 할까요?

○ 심사위원

- 채택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콘텐츠 투자조합 관련 향후 5개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되 조합(펀드)별 펀드총액, 출자약정액, 추가 납입예정금액 등 구체적인 조성 및 운영계획을 조성할 것, 사업계획서 427페이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채택합니다.

○ 심사위원장

- 채택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8>번, 사업계획서 73페이지에 강화된 출연제재 등으로 인해 섭외에 애로점이 발생하여 징계제도를 다소 수정하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진행자·출연자 일진아웃제, 제작진 이진아웃제, 프로그램 삼진아웃제를 향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동 제도(3가지 아웃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동 제도를 개선 또는 변화시킨다면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그 내용, 또한 의견청취 시 대표자가 제시한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근본적인 변화계획>, 이것은 새로 왔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채택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설명드리면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기존 4가지 장르 중 시사·논평, 토론·대담, 탐사보도,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뉴스 부분은 제외하겠다, 나머지는 적용하겠다, 그리고 뉴스는 스트레이트 보도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기한 출연정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되기 때문에 '무기한 출연금지라는 조항을 없애고 기한을 정하겠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TV조선 아홉 번째입니다. '신청법인의 주주 관련 의혹에 대한 서약서' 이것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 심사위원

- 받아야지요.

○ 심사위원

- 받아들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TV조선은 <3>번만 채택되지 않고 다 채택되었습니다.

○ 심사위원

- 확약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받았습니다. 그다음은 채널A입니다. '편성위원회 운영 회의록 등 구체 자료 일체' 이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원래 이것이 계획서에 없습니까?

○ 심사위원

-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2>번도 받아들이었습니다.

○ 심사위원

-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심사위원장

- 채널A 쪽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예. 이것은 제가 요청드린 것 같은데 운영규정에 안 나와 있어서….

○ 심사위원장

- 자기들 규정이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다음 <3>번입니다. '사업계획서 352페이지에서 UHD 기술표준이 확립되지 않아 2019년 UHD 방송시스템 도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해당 UHD 기술표준의 정확한 명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심사위원

- 예, 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채택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4>번, '과거 3년간 해외 기업과 콘텐츠 공동제작 규모 금액' 콘텐츠 쪽은….

○ 심사위원

- 제가 했는데 다 와 있습니다. 채택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새로 왔습니까?

○ 심사위원

- 예, 왔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채택하겠습니다. 과거 3년간 글로벌 포맷매출 등 콘텐츠 판매 실적….

○ 심사위원

- 와 있습니다. 채택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예. <6>번, '향후 5년간의 콘텐츠 제작 규모 및 수출 금액 목표액 등 세부계획의 구체적인 자료'

○ 심사위원

- 왔습니다.

○ 심사위원장

- <7>번, '부속서류로 제출한 감사보고서 21페이지상 기술된 외국정부가 발생한 채무증권 oo억원의 상세내용과 2018년 말 oo억원의 손실을 인식한 근거자료', 없습니까?

○ 심사위원

-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자료 있습니다. ooo 국채….

○ 심사위원장

- 필요합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이 ooo 국채입니까?

○ 심사위원

- ooo 국채 관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어디 있습니까?

○ 심사위원

- 페이지가 없어서, ooo 앞에….

○ 심사위원

- ooo 앞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있으면 채택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필요합니까?

○ 심사위원

- 필요합니다.

○ 심사위원장

- 예. <8>번입니다. ‘최초 승인 당시 ooo, ooo, ooo 등 우회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결정문을 제출하고, 동아일보가 ooo이 (주)채널A에 ooo원을 출자한 대가로 ooo 주식 ooo원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및 회사 측 입장을 제출할 것,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와 ooo 상호 간에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을 제출할 것, 중간에 주식을 처분 하였으면 처분시기, 처분금액, 처분단가도 함께 표시할 것’ 이것은 ooo 위원님이 요청한 것 같은데, 다 와 있습니까?

○ 심사위원

- 다 오기는 했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이 여기에는 ‘불기소 결정서 결정문’인데 ‘기소 결정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타이기는 한데, 제가 ooo을 대신해서 여기에 와서 쓴 것인데 이런 오타는, 그러니까 글씨를 틀리거나 ‘을’, ‘를’이 바뀌거나 글씨가 잘못됐을 때인데, 이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요청할 때 시간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 놓았지 않습니까? ‘기소 결정문을 제출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요청하신 검찰 기소 결정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왔습니다.

○ 심사지원반

- 수정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아니요, 이미 받았는데 수정할 필요 없지요.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회

- 뒤에 불기소 결정문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나와 있는데….

○ 심사위원회

- 불기소 결정문을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

○ 심사위원

- 기소 결정문은 존재하지가 않지요.

○ 심사위원

- 없지요. 공소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소되었으면 공소장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 심사위원

- OOO 위원님이 조금 당혹스러웠다는 말씀이시지요.

○ 심사위원

- 당연히 이것을 제가 썼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ooo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총 4가지 의혹 중에서 ooo만 검찰에 고발이 안 된 상태라, 이것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 심사위원회

- 불기소 결정문 제출까지만 인정하고, 그 밑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심사위원

- 예. ooo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ooo 사실관계 및 회사 측 입장을 제출할 것’ 이 부분은 빼고….

○ 심사위원회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수사를 했으면 그 수사 결과를 기소가 됐다, 안 됐다를 낼 수 있을 텐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 심사위원장

- 수사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검찰 기소 결정문'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불기소가 됐는데 왜 기소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하느냐,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기소 결정문을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감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기소했는데 기소 결정문을 내라니까 '기소가 된 적은 없다, 기소 결정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아까 ooo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신중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한 자를 오타로 누락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ooo은 수사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이렇게 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은 하되, 제가 참고로 이것을 다 계산해 봤는데 상당히 심증은 갑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2011년에 ooo주를 ooo원, ooo원입니다. 동아일보가 ooo을 ooo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ooo이 또 채널A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ooo원에 서로 이렇게 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4일~12월 27일까지 여러 차례 동아일보사가 ooo 주식을 매입했는데 제가 계산을 일일이 해 봤더니 ooo주를 매입해서 ooo주를 매도해서 지금 한 ooo주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우리는 매도·매수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서로 ooo원씩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쌍방이 상대방 주식을 ooo원씩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 심사위원장

-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 심사위원

-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 심사위원장

- OOO이 상장사입니까, 아닙니까?

○ 심사위원

- 모르겠습니다. 상장사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의심은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채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상당히 의심은 갑니다. 쌍방이 ooo원씩 지금 10년째 서로 상대방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채택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예, 채택하겠습니다. 채널A의 마지막 <9>번입니다. 신청법인의 주주 관련 의혹에 대한 서약서 제출했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채택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채널A와 관련된 추가 자료는 전부 다 채택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채널A 요청자료 중 맨 뒷장을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나서 콘텐츠 공동제작과 관련한 요구자료 중에 사실관계를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를 1장으로 붙여드렸습니다. 과거 3년간 해외 기업 콘텐츠 공동 제작 규모 금액이라고 해서 ooo와 협업한 내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붙어 있던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MOU를 체결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A 측에서 밑에 참고표시로 '이 해당 실적은 해외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재 결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만 정리한 것'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왔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를 제작에 실제 착수하거나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액 등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정정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심사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그리고 <4>번도 채택 가능한 것이지요? 금액이 없는 것으로….

○ 심사지원반

- 예, 맨 뒷장까지 포함해서 채택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채택은 가능한데 수정 내용을 반영해서 평가할 때 배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YTN 자료가 7개 와 있습니다. <1>번 '2019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것은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것이 완성이 안 됐는데 새로 왔습니까?

- 심사위원

- 왔습니다. 이것은 채택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2>번입니다. '2019년~2020년 고용노동부 "부당정직" 사유' 왔습니까?

- 심사위원

- 예, 왔습니다. 채택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3>번 '자살보도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자료요청 및 이와 관련된 규정 유무 여부' 왔습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이 왔는데, 그리고 교육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교육을 했느냐고 해서….

- 심사위원

- 교육자료는 따로 PT 출력한 것….

- 심사위원

- 그런데 거기에 자살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새로 파워포인트 자료 가지고 온 데서….

- 심사위원

- 예. 자료 요청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의사항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 심사위원장

-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채택해야지요.

○ 심사위원

- 예, 해야지요.

○ 심사위원

-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니까 해야지요.

○ 심사위원

- 그리고 아까 PT 자료에도 전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법률지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 심사위원장

- 거기에 자살보도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채택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채택하겠습니다. <4>번 '2021년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000원에 대한 상세자료'입니다.

○ 심사위원

- 채택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5>번 '20년~'2024년도 프로그램제작비용 세부내용 및 '17년~'19년도 프로그램 제작비용 세부내용, 이것 왔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내용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채택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000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입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6>번입니다. '구체적 사업계획 제출, 신기술 도입 시스템부터 데이터 시대 보도·편성 중장기 계획, 팩트체크 시스템, 보도 및 취재 관행 개선 시스템, 신사업 매출 변화 계획' 이것이 사업 추진 및 공정보도 시스템 구축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 5개를 다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제안서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고 보내왔습니다. 채택을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보내온 내용도 썩 충실하지는 않아서….

○ 심사위원장

- <7>번 '향후 5년간 계획 보충자료'입니다. 사업자 자율로 제출한 것인데, 저는 이것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7>번은 자료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7>번 자료의 경우 어제 사업자 의견 들을 때 5년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어서 자율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자율로 제출한 것을 우리가 꼭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래도 주셨는데 저희가 굳이 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장

-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자율적으로 제출한 것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계획서 쓸 때 썼어야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은 제출했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을 자율 제출하면 자기들이 사전에 계획서에 대해서 추가로 낼 때 그때 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연합뉴스TV 6건 있습니다. <1>번 '프로그램 투자실적이 2020년도 연평균 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비용은 연평균 000원 정도만 증가한다고 추정 한 것에 대한 설명 제출', 했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채택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2>번 '프로그램 투자계획에 대한 세부내용', 채택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3>번 '향후 5년간 계획에 대한 상세계획 제출', 이것은 어느 분이 요청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4>번 'ooo에 외국인 지분총합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국인 해당 여부의 오류 여부 확인 요청'

○ 심사위원

- 제가 했습니다. 수정해 왔습니다.

○ 심사위원장

- 법적으로 연합뉴스TV의 경우 해외 지분이 몇 퍼센트까지 허용되어 있지요?

○ 심사위원

- 10%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 심사위원

- 관계없는데, ooo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아니라고 체크해 와서 그것을 정정시킨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정정,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5>번 ‘사외이사 프로필 제출’, 제출했던데 채택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제가 했는데 채택합니다.

○ 심사위원장

- <6>번 ‘그래픽 사고 발생 이후의 유사사건 발생 시 매뉴얼 제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까?

○ 심사위원

- 제출했는데 이것은 만든 느낌이 나서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픽 사고 발생 이후의 유사사건 발생 시 매뉴얼’은 급조된 느낌이 들어서 심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래픽 매뉴얼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사고 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매뉴얼입니까?

○ 심사지원반

- 사고 난 이후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나름 이 프로세스대로만 검증하면 유사사고 방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채택합니까?

○ 심사위원

- 채택하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심사자료 채택 여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TV조선이 제출한 추가 심사자료 중 <3>번 ‘(주)조선방송의 주식 매매 거래 총 oo건에 대한 주당 매매가격과 평가주체와 평가시기’, 이것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YTN <7>번입니다. ‘향후 5년간 계획 보충자료(사업자가 자율 제출)’한 것은 프로세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여기에서 정리된 요청 자료는 TV조선 9건 중에서 8건, 채널A는 9건 모두, YTN은 7건 중에서 6건, 연합뉴스TV는 6건을 추가 심사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이 요청자료를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보고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분과별 논의사항에 대해 각 간사들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분과 간사이신 ooo 간사님께서 <보고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대한 사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1분과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입니다. 공적책임·공정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건 부가에는 TV조선과 채널A가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제재와 관련한 조건 부가 여부와 관련되는데 어제 의견청취에서도 대표들이 이야기하셨듯이 법정제재가 이것을 조건 부가한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성과가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이 법정제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조건들을 부가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행정지도 관련해서 여전히 방심위 행정지도는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법정제재는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지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이것을 논의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것을 유지할 것이나? 지금 있는 것은 매년 최저 전수가 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 심사위원장

- 2017년에 재승인된 내용 중에서 매년 법정제재 4건 이하는 이번에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예, 적용을 하는 것으로. 추가로 이야기한 것은 사업자별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계획 실행을 촉구하면서 이것을 조건 부가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사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의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이행 내용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승인 조건 때 내용을 명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부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나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약간 행정공백이 발생하는데 심사과정 기간 동안 행정공백이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즉, 2017년 재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부가하고, 매년 동 조건을 이행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평가기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2020년 재승인 조건 부가할 때는 1월 1일부터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 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는 방송심의 규정만 적용했는데, 재승인 조건 때 오보·막말에 있어서 선거방송에서도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재승인 조건에 이것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재승인 조건(안)을 이렇게 3가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그리고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서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두 번째는 방송심의 규정 이러한 조항에서 위반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러한 조항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시킬 것, 단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세 번째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보고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 공정성·공적책임이라는 부분이 대내적으로 자체심의 중심 그리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계기들이 부족하다, 특히 공정성과 공적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자별 자체적인 평가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공적책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공적책임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 간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전문외부기관, 예를 들면 학회 등 선정해서 방송사업자는 진단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재승인 조건에 포함을 시키자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 심사위원

- 복수의 전문외부기관이 진단하는데 방송사업자가 진단된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어쨌든 사업제안서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진단된 결과를 받아서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회

-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고, 일단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다음에 추가로 정책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법정제재에 대해 4건으로 재승인 조건을 포함시켰는데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심위의 행정지도는 계량적인 평가에 우리가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즉, 비계량적으로 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몇 건 정도까지 이것을 우리가 정하느냐, 이것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 또 어떤 방식으로 행정지도에 대해 계량적인 부분들을 적용할 것인지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건의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심사위원회

- 우리가 정책 건의사항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회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계편성 보고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계편성 프로그램 관련된 것인데 어제 의견청취에서도 몇 차례 의견들을 여겼는데 모든 업체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연계편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재승인할 때 감안할 것이냐 해서 7페이지에 이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유가 종편PP는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재승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재승인 조건(안)에 협찬을 받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고지 시점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와 프로그램 중간에 총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를 노출하지 말 것,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직후,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재승인 조건(안)에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부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외주제작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것을 재승인에 포함시켜서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재승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 기준 등의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각각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을 재승인 조건(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번째, 2019년 콘텐츠투자 실적 점검 후 조치 관련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필요한 이유는 2019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후 필요 시 방통위에서 조치하는 법적제재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승인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재승인 조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2017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9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을 미달하였을 경우, 2020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 해 2020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광고대행체제 관련 운영의 독립성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합뉴스TV의 독립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승인 조건에 연합뉴스TV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연합뉴스로부터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개선 방안은 재승인 후 3개월 이내,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을 할 것, 이것을 부가했습니다. 이것은 영업과 운영의 독립을 위해서 따로따로 만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겸임과 직원교류 문제를 따로 만들었는데, 해당되는 기업은 연합뉴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TV조선의 경우에는 직원 교류 문제가 조금 있어서 해당 업체에 포함시켰습니다. 채널A는 대표자, 이사 겸임 부분이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만들기 전에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 겸임과 직원 교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12페이지에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 조건에 포함시켰고, 채널 A와 TV조선은 민간 기업이라는 특성상 재승인 조건에 당장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건을 포함시켜서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연합뉴스 TV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과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방송 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

견을 해소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의 겸직·공동대표 및 직원 파견의 해소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널A와 TV조선에서는 각각 권고사항을 마련했는데 채널A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공동대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자제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의 겸직·공동대표 및 직원 파견의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TV조선은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자제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직원 파견의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분과 논의를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1분과 논의내용에 대해 제2분과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4페이지를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발생시기 있지 않습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제2분과 계량평가할 때 방송법령 위반이 2020년 1월 말까지 계량평가 감점을 했는데 혹시 이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량평가는 이번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심사기준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향후 재승인 조건을….

○ 심사위원

- 이행 실적,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심사지원반

-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심사위원

- 9페이지에 있는 콘텐츠투자 실점 점검 후 조치 관련은 제2분과 논의사항과 겹치기 때문에 추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일 중요한 것인데 10페이지와 12페이지에 '재승인 조건'이 아니라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왜냐하면 이것이 재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안)으로 해야 합니다. 앞에는 다 (안)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철자를 고치면서 바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승인 조건 (안)'이기 때문에, 또 권고사항도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논의결과를 통과시키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1분과 위원도 (안)으로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안)을 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조건(안)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되면 이 (안)이….

○ 심사위원

- 최종 결정은 방통위가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를 들면 재승인에 조건이 불거나 조건부 재승인이 될 경우 재승인 조건이 되는 것인지요?

○ 심사지원반

-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1분과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을 제1분과에서 보고드린 것이 '(안)'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승인 조건(안)에 대해서는 심사의견서에 일부 위원님들이 작성해 주시면 내일 심사의결서를 통과시킬 때 거기에 <붙임>으로 심사 재승인 조건(안)과 권고사항(안)이 의결됩니다. 그 부분이 방통위로 넘어오게 되고, 방통위가 그것은 최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의결해서 통과시키더라도 방통위에서 문건 수정이 가능하고, 채택 여부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이것은 현재 이 논의 결과에 (안)으로 해서 올려야 명확하지요.

○ 심사위원

-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650점이 커트라인 점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50점 이상이면 통과되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내일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이전에 보고드렸고, 세부심사기준 의결할 때 안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승인 조건은 650점 이하가 나와서 '조건부 재승인'을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계획서 중 일부 미이행이 우려되어서 그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재승인되더라도 예를 들어 매년 4회 이상 하는 것, '그것은 재승인됐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50점 이상이 되더라도 재승인 조건(안)은 붙일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결하지 않았으니까 (안)으로 해야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은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이야기입니다. 분과 간사님에게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5페이지를 보시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내용은 좋은데, 궁금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계획은 사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이렇게 하면 다른 계획들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준수할 것이라는 전의를 해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간사님, 참고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재승인 조건(안) <1>번 항목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 밑에 또 붙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방통위에 제시한 계획의 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되고 이 실적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그래서 미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미이행했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방송법상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항목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이행한 부분은 3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재승인 심사 때 사업계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심사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1>번으로 들어가는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추가로 들어감으로써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해서 그 결과 여부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면 방통위가 원해도 이 실적을 중간에 점검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원칙은 재승인 기간마다 우리가 실적을 평가해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심사위원

- 사업자들에게 한 요구만 중간에 보고, 나머지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보면 중간에 사업자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 심사위원

- 기본적으로 일년에 한 번씩 방송평가하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은 방송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승인·재허가의 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방송법상 5년 이내 재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여기에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 심사지원반

- 공적책임 확보,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방송 공정성 구현은 TV조선 사업계획서의 대표 제목을 예시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조건화 될 때는 사업자별로 조건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제목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마다 다른 제목을 다 예시로 들 수 없어서 ‘등’자가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공적책임·공정성 실적만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계획을 1년 단위로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이렇게 조건을 부가시킨 것은 계속 공정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평가와 굉장히 괴리감이 크고, 그리고 그들이 해서 오는 1년마다 하는 방송평가, 3년마다 하는 평가서에도 확인할 수 있는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 조금 더 촘촘하게 공정성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을 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제1분과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심사위원

- 2017년 재승인 조건 때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청자들의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고, 국민이 묻는다에서도 보셨듯이 공정성 부분이 아주 우려될 수준까지 침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책임·공정성 유지 강화를 위한 어떤 조건들이 더 강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도 매년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저희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세부심사항목 중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을 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부분에 있는 세부심사항목 중에서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이 부분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심사지원반

- 제1분과 논의 결과에서 그렇게 정리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헛갈려서….

○ 심사위원

-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관련 우리는 이런 맥락만 봐도 이해되는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하지요.

○ 심사위원장

- 저는 재승인 조건(안)은 다 좋은데, 세 번째 '복수의 전문외부기관(예:학회 등)을' 제시한 이유가 복수의 전문외부기관이 임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수의 관련 학회와 전문외부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명확하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너무 특정 학회를 주려고 한 것 같은….

○ 심사위원장

- 복수니까요. 복수의 전문학회이니까 이것이 ooo학회도 있고 ooo학회도 있고 ooo학회도 여럿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 심사위원

- 학회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굳이….

○ 심사위원

- 복수의 관련이나 유관학회, '관련'이나 '유관'을 앞에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장

- 유관학회나 관련학회나 관계없는데 그것을 정하고, 그것과 '전문외부기관을 선정하고'니까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와 협의하면 되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와'가 and입니까, or입니까?

○ 심사위원장

- '와'이니까 and지요.

○ 심사위원

- 학회도 선정하고, 전문기관도….

○ 심사위원

- 사업자는 전문외부기관 하면 자기들과 관련된 곳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회를 따로 '예'로 넣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복수의 관련학회….

○ 심사위원

- 예, '복수의 관련학회와'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전문외부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 간 협의해서 선정하는데 이것이 복수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장

- 학회가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하는 학회가 메인 학회가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메인 학회가 아닌 조그마한 핸들링하기 쉬운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라는 것을 꼭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학회를 먼저 선정하고, 예를 들면 방송사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마이너한 또는 핸들링 쉬운 학회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라고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수입니다.

○ 심사위원

- 진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진단합니까? 진단 기준이 있습니까?

○ 심사위원

- 학회가 해야지 공정하다는 것이 공식이 선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상대적으로 공정한 편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교수님들이니까 그렇지, 저희가 봐서는 학회가 해야 공정하다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학회를 특정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회

- 학회가 아니라 관련 학회입니다.

○ 심사위원

- 학회가 아니고 다른 기관일 수도 있는데 굳이 꼭 학회로만….

○ 심사위원

- 보통은 진단하려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기준이야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학회로 특정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심사위원회

- 원래는 인증기관이 있으면 인증기관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방송 관련해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 심사위원회

- 인증기관은 전문외부기관이 인증기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팩트체크 단체도 쓰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 자격 기준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쉽지는 않지요.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오히려 <1>번 재승인 조건(안)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것에 세 번째가 들어 가면 훨씬 사안이 촘촘한 그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재승인 조건 세 번째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하나의 정책 건의사항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건의 정도는 가능한데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건의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꼭 교수여야지 공정하다, 이런 논리를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런 생각에서 ‘학회’로 아까 문구를 정했는데 ‘학회’ 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의견청취 시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외부심사기관을 통해서 진단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다들 주저 없이 “OK”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체로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회를 한 이유는 업계가 복수의 학회로 이야기한 경우는 방송평가를 내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평가 기준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학회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부의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성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저희도 경영 외 쪽에서 관련 학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인 학회가 있고, 아류 학회가 있는데 저희가 무엇을 볼 때 꼭 학회에 하자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회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나가면 특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진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단의 기준을 여기에서 제시할 것은 아니지요. 하는 기관이 진단할 리스트를, 항목들을 정리하겠지요. 지금 위원장님은 ‘학회’를 팔호 열고 넣지 말고 밖으로 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제기하신 것처럼 꼭 학회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회는 팔호, 예를 들어 이런 학회에 의뢰한다.

○ 심사위원

- ‘예’자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권고지요.

○ 심사위원

- 잠깐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학회라는 말을 굳이 팔호 열고 ‘예를 든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문구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정하고, 이것이 하도 말 하나가 민감하니까 선정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진단된 결과를 제출하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선정하여 이행하고’ 이 정도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고사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재승인 조건(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했을 때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종편들의 공정성 여부가 누구나 관점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 문제에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정성 체크는 잘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한번 볼 수 있는 장치를 하자고 했더니 하겠다고 본인들도 체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큰 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ooo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권고사항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안)으로 빠지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들끼리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정하고, 나머지 문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승인 조건(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제1분과 제안에 대해서 전체위원들의 생각이 엇갈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재승인 조건(안)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권고사항(안)에 넣을 것인가, 빠지는 것은 대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의를 하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분과에서 논의과정을 보셨으니까 권고사항(안)으로 넣어도 좋은지, 아니면 재승인 조건(안)에 넣되 자구 수정은 가능하니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 심사위원

- 조건을 부가하면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재승인 거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진단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진단했을 때 과연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저희가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승인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건은 재승인 거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12~13년에 잘 아시다시피 당시 KBS, MBC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학회에 의뢰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재승인 조건(안)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1분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 제1분과 내에서도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갈 것인지, 정책 건의 사항으로 갈지 했을 때 1분과의 판단은 효력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공정성 문제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성적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들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 내용을 빼자는 것이 재승인 조건(안)에 명백하게 집어넣을 것인지….

○ 심사위원

- 저는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지원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둘 다 관계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사무 처리나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 심사지원반

- 저희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내일 심사의결서에 조건이 들어가든 권고가 들어가든 정책 건의사항이 들어가든 의견을 주시면 방통위로 가지고 들어가서 저희 내부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하나로 의견을 달라는 것입니까? 의견이 듀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절차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야지, 내일 의결할 때 또 이것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

○ 심사위원장

- 지금 현재 권고사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 심사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재승인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법상 승인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좀 더 부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ooo 위원님, ooo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나와 있는 안의 취지는 진단 결과를 받아서 보고하라는 것이고, 즉 공익성이라는 그 잣대를 정성이 됐든 정량이 됐든 진단을 받아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이해되는데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니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정말 충실히 공익성의 개념을 제대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ooo 위원님 말씀이라면 동감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TV조선과 채널A가 헛갈리는데 회사들이 전부 다 공익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또 다른 일을 하는 일이 되면 오히려 좋은 취지와는 달리 공익성이라는 개념에 제가 더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다른 잣대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공익성 추구를 오히려 더 헛갈리게 만들어서 전체의 판이 흐려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TV조선이나 채널A에서도 수많은 어떤 사람을 불러오는지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있지,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잣대를 준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의 부담뿐만 아니고 오히려 공익성이라는 한 마리의 토끼를 잡다가 더 혼란과 아울러 복잡한 것만 부가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심사위원

- 취지는 좋은데 이대로 이것을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령학회가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면 로비해서 예를 들어 '이것 좋은 의견 좀 써 줘'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1분과에서 이 문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빼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1분과에게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인데 저는 권고사항에 넣자고 했고, 다수가 조건에 넣자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제2분과도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요.

○ 심사위원장

- 제가 이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재승인 조건 사항으로 넣을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모든 평가에 자체평가가 있고 심사자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제3자 평가입니다. 이 요소가 들어가면 복잡해지지요.

○ 심사위원

- 제가 추가 제언을 하면 예를 들면 공정성·공적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것은 객관적인 지표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의결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 그런 방법론을 개발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수는 있겠지요.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접어두고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항목에 대해 먼저 하겠습니다. 연계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 없습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 이겠습니까?

○ 심사위원

- 3회 이상 고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심사위원장

- 어디요?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에 보면 중간에 3회 이상 고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3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심사위원

-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나고, 중간에 상품이 드러날 때….

○ 심사위원장

-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 심사위원

- 예, 관련 정보 나올 때 포함해서 3회.

○ 심사위원

- 원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없습니다. 이것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기준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3회를 임의로 넣은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그런데 문구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 않고 중간에 딱, 진짜 말 그대로 60분이면 0시에 시작, 30분, 가운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 심사위원장

- 편성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심사위원

- 위에는 종편PP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재승인 조건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3회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 심사위원

-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근거를 물어볼 것 같아서….

○ 심사위원

- 금지는 하지 않되 이런 부분에 고지를 해서….

○ 심사위원

- 3회인데, 3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초, 10초….

○ 심사위원

- 이것은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지하는 의무가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지원반

-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게 되어 있고, 협찬고지는 말씀하신 대로 연계 편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도 한 번 나와야 할 필요를 고려해서 최소 3회라는 것을 쓴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3회는 최소 3회는 고지되어야 시청자가 '이것을 협찬 받아서 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정도는 되어야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보다는 더 강하게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취지는 좋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나올 때 그것이 나와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심사지원반

-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출이 여러 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능 소개하는 것이 한 번만 되면 상관없는데 1분 있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을 특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 심사위원

- 그 프로그램을 1분짜리 간단하게 10분짜리 소개되면 10분 안에 3번을 해야 합니까?

○ 심사지원반

- 보통 협찬프로그램이 10분짜리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제 말은 가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3회라는 것에 대해, 보통 광고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에 10%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프로그램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3회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왜냐하면 협찬광고 관련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 프로그램 중 10분밖에 나오지 않는데 3회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이것은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횟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시간별로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사업자에게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분 한 번 하고, 20분은 두 번 하고, 30분에 세 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 3회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고, 중간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정도는 되어야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횟수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많은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연계 프로그램 한 달에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비율이, 이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다는 사람이 99%입니까?

○ 심사위원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제 주위에 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보통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신뢰에 대한 장치 없이 전문가가 나와서 홍보를 일방적으로 하여 굉장히 신뢰를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 신뢰성 있는 의사, 약사,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 심사위원

-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릅니다.

○ 심사위원장

- 보통 의사와 한의사가 많이 나옵니다.

○ 심사위원

- 프로그램 성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찍어서 이것은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딱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니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신뢰성 여부는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이것이 협찬을 받아서 제작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것은 협찬을 받아서 만든 거구나’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사시는 것이고, 시청자에게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연계 프로그램 가지고 3회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재승인 조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제1분과에서 논의해서 낸 결론이라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과도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너무 관여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하게 오락이나 어떤 흥미를 위해서 시간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나 같이 공유해야 할 가치들까지 프로그램에서 받는데, 협찬을 권고사항으로 놓아두면 과도하게 상업적인 정보나 가치가 두드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 과도한 상업성이 차단되는 효과가 아주 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부가 설명드리면 연계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심위에서도 4~5년 전부터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 재승인 조건(안)에 개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고지 시점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프로그램 중간을 포함하여 총 3회 이상 고지할 것이 아니라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

- 시작, 종료를 포함해서 총 3회.

○ 심사위원장

- 예, '최소 3회 이상 고시할 것'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그 정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방통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심위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엄청 쏟아진 내용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고사항 내지 재승인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조치는 필요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총 3회니까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최소 3회 이상 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시작, 종료 시점은 그것 두 번 넣는 것은 의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에 한번 더 넣든가, 마지막에 넣거나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시지요. 다음에 외주제작 거래 재승인(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어제 제1분과에서 문구를 '증거자료'가 아니고 그냥 '자료'라고 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어느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안)에….

○ 심사위원장

- 8페이지?

○ 심사위원

- 예. '증거자료를'이 아니고….

○ 심사위원장

- '증거자료를'….

○ 심사위원

- 아니요. '증거' 빼고 '자료를'….

○ 심사위원

- '증거를' 빼고 '자료를'….

○ 심사위원장

-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콘텐츠투자 실적 재승인 조건(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제2분과 논의사항이라 저희가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2분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 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제2분과의 주요업무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2분과 할 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광고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재승인 조건(안)에 갑니까? 특별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음 대표이사에 관련된 재승인 조건(안)이나 권고사항(안)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 광고대행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예를 들어 조건을 부가하려면 이것이 방송법 위반입니까? 법 혹은 시행령 위반입니까?

○ 심사지원반

- 지금 보도PP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렙 의무가 안 되어 있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광고대행사요?

○ 심사지원반

- 당연히 법 위반이면 원래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 위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닌 사항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고, 법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 심사위원장

- 조건 부가는 행정지도나 행정제재지요.

○ 심사지원반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저는 반대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저는 광고대행 체제 관련된 운영의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처럼 보도전문채널도 정책 건의사항에서 '미디어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미디어렙을 검토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것은 정책 건의사항으로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코로나 때문에 올해 광고시장이 너무 어렵다, 광고를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재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회사들에게 '기존에 하던 영업방식을 바꿔라' 이런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너무 강한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래서 정책 건의사항으로 보도전문채널의 미디어렙 설립을 검토한다.

○ 심사지원반

- 이 부분은 보고를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건의사항은 위원 한 분, 한 분이 심사의견서에 정책건의를 써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할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YTN의 영업방식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연합뉴스TV는 특이하게 대주주에게 직접적으로 광고위탁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고의 업무 문제뿐만 아니라 독립성의 문제도 상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송광고는 방송사에 정말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그에 대한 판매를 대주주가 다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광고업무보다는 운영의 독립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일반적인 내부자 거래 비슷한 측면이 있다.

○ 심사지원반

- 그렇지요. 이것은 광고와 다르게 본 측면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도 있고, 종편도 신문과 방송과 연계광고판매가 많으니까 종편에 미디어렙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도전문채널도 만약 연합뉴스TV처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면 미디어렙을 도입해서 그와 같은 고리를 어느 정도 끊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나머지 대표이사 재승인 건이나 권고사항(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

○ 심사위원

- 이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가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아닙니다. 재승인 조건(안)이요.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

지요. 경영 관련된 사항인데, 연합뉴스TV 관련해서 겸직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지요. 단순히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와 분리해라' 연합뉴스가 대주주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널A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고 아무리 권고사항이라도 '너 대표이사 그만 둬라' 이것까지 하는 것은 약간 오버가 아닌가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재승인조건이면 모르지만 권고사항이니까 관계없지요.

○ 심사위원

- 권고사항이더라도 이것은 민간 기업인데….

○ 심사위원

-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넣은 이유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

- 보통 방송을 겸업한다는 것은 각 매체의 독립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인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경영하는지, 또 책임지고 경영하는지 경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쪽에서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좋은지, 옛날에 미국에서 그랬지요. 아니면 일치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다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까지 권고사항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약간….

○ 심사위원

- 민간 기업이라도 방송이 공적 매체이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은 언론입니다. 신발 산업과 다른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장사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신발 산업, 아이스크림과 그렇게 대비하지 마시고요.

○ 심사위원

- 어떤 상품과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상품인데 사회적인 어떤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 심사위원

- 어떻게 신발 산업과 아이스크림 사업과 대비를 하십니까?

○ 심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을 따지고 객관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문의 성격과 방송의 성격이 다른데 신문에서 논의된 뉴스나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 들어와서 신문기자로서 쓰는 칼럼이나 방송에서 보도해야 할 내용이나 또 대담프로그램에 임할 때는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신문기자 출신들이 서로 교류할 때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TV조선이나 채널A에 나와서 대담에 참가하는 많은 기자들이 정파적인 성격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정당에서 추천된 패널들이 정파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괜찮은데, 소속 기자가 자기와 연관 있는 매체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피력하는 것은 정치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자기 얼굴 알리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나 그 다음에 취재를 위한 교류 관계에서 조금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채널 혀가를 추가로 해 준 것은 다양한 여론을 우리가 방송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취지인데 같은 신문, 같은 방송이면 채널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사가 상당히 중요한, 저는 ooo나 ooo나 ooo에 대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발가게나 아이스크림 장사 정도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하시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발이나 아이스크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인지요.

○ 심사위원

- 언론사를 비교할 때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제1분과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첫 번째 이슈는 오후에 좀 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조건(안)에 대해서 논의

하도록 하고, 현재 이 조건(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질의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접수하고 오후에 의결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의결은 내일 합니다.

○ 심사위원

- 의사진행 발언인데 그렇다면 또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지금 다 논의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연장해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일 하면 새로 또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일반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고라고 했을 때 '무엇무엇을 시행할 것'이라고 끝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 심사위원

- '시행을 권고함' 이렇게 워딩….

○ 심사위원

- '이행할 것을 권고함'

○ 심사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 심사위원

- '언제까지 할 것' 하면 그것은 의무지요.

○ 심사위원

- '제출할 것을 권고함'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권고함'으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심사의견서 쓸 때 권고사항을 쓰시면 되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조건이 나갈 때 <붙임> 문서에 재승인 조건은 <1>, <2>, <3>, <4>, <5>, 권고사항은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가 다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의결하는데 정책

건의사항은 위원님들마다 다 쓰시는 것입니다. 조건과 권고사항은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은 조건과 다른 것은 아까 설명드렸고, 정책 건의사항은 방통위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5페이지 세 번째 것을 위원님들이 고민할 때 ‘학회’라는 부분을 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제1분과에서 한번 더 고민하시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제4차 시작하기 전에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더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종편·보도 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나.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다음으로 제2분과 간사이신 ooo위원님께서 <보고사항 나>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정책 건의를 원래 전체회의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나니까, 기술 부분이 계량평가 항목이 심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하는 것을….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제2분과에서 해서 와야지요. 제2분과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니까….

○ 심사위원

- 제2분과에….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그러면 제2분과는 어떻게 합니까?

○ 심사위원장

- 보고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 심사지원반

- 위원님, 말씀드리면 정책 건의사항은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심사지원반

-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 심사위원

- 내일 그것도 의결합니까?

○ 심사지원반

- 의결할 때 저희가 '정책 건의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라고 의결합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제2분과 논의결과 방송콘텐츠에 해당되는 것부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TV조선 방송콘텐츠 펀드 관련입니다. TV조선은 2017년 재승인 시 추가개선 계획을 제출할 때 약 000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020년 사업계획서에도 방송콘텐츠 펀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현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TV조선이 2017년에 000원의 펀드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밝혔고, 방통위는 이를 '펀드 조성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제출 실적으로는 2019년 말 기준 총 000원의 규모를 운영 중이라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 내부 결과 TV조선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000원에 불과하고 출자에 참여한 것은 000원으로 전체 펀드 규모는 000원이지만 운영하는 것은 000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참여한 펀드 규모가 000원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서, 저희의 의견은 2020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콘텐츠 펀드 투자 관련 사항에도 불명확한 것이 있으니까, 펀드 조성·운영과 펀드 투자 참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고, 일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방송콘텐츠 산업 발

전 등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 <표>는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 심사위원

-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펀드 참여에 좀 더 투자해라'라는 권고를 부가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모았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3페이지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고, 4페이지는 오늘 아침에 의결한 추가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한 것입니다. 6페이지는 제1분과와 논의된 것과 겹치는 부분인데, 콘텐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계정별 원장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실제 점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실적 점검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건사항이고, 문구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조건(안)이라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조건입니다. 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요청하는 형식에 따라 이행실적 점검 관련 자료를 제출 하되, 이 제출자료를 저희가 검증하기 때문에 이 검증 자료는 기존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안이었는데 검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안으로 조건을 부가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동안 방통위가 제출받았던 내용들을 첨부한 것입니다. 제2분과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권고, 두 번째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현재 내부 논의했습니다.

○ 심사위원

- 회계법인은 어떻게 정합니까?

○ 심사위원

- 사업자가 정합니다.

○ 심사위원

- 보통은 감사인들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질의 있습니까? 제2분과는 간략한데 2가지 중 하나는 권고사항이고, 하나는 조건부 재승인(안)이지요?

○ 심사위원

- 예. 두 번째는 저희는 이행과 미이행으로 나누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연도의 콘텐츠 투자계획이 부족하면 미이행입니다. 그런데 그 미이행을 다음 연도에 제1분과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보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나, 미이행으로 끝내야 하는데 미이행과 이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했느냐, 미이행했느냐인데, 만약 미이행했어도 그다음 연도에 채우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겸종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행, 미이행만 따지면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제2분과의 논의사항입니다.

○ 심사위원장

- 실효적인 제재안을 마련하신 것이네요.

○ 심사위원

- 미이행이기 때문에 재승인 거부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1분과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다음 연도에 채운다기보다는 당해 연도에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보기엔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000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실적 점검을 받아서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2019년도 것은 지난 2017년 재승인 조건에 따라서 콘텐츠 투자실적을 저희에게 제출하고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서 제출할 텐데, 그것을 검토했을 때 미이행이 나오면 저희는 조건 위반으로 봐서 행정청이 시정명령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실적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재승인 취소까지 가는 선 조건이 나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별도의 판단인 것인지요. 그 해는 미이행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 심사지원반

- 미이행하면 저희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시정명령을 하시면 되지요.

○ 심사지원반

-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감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부분은 다음에 엎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것은 시정명령을 할 때 나중에 판단하는 문제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하면, 2019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해도 2020년에 채우면 조건을 완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못 내리지요.

○ 심사지원반

- 그 부분에 대해 왜 그 고민이 필요하냐면 2019년도는 지난 재승인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이번에 제1분과 회의 때 그 부분을 왜 조건에 붙여야 하느냐고 논의를 했느냐면 2019년도에 대해서는 미이행했으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없다는 어떤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평가부터 연결시키는데 저희는 끊고 싶은 것입니다. 연도별로 끊고 싶은 것인데 제2분과가 논의된 계량평가 방송평가도 2016년도 방송평가 점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 재승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제1분과 논의했던 콘텐츠를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던 것도 제2분과에서도 그것은 반대라는 말씀이십니까?

○ 심사위원

- 저희는 반대입니다. 저희는 다음 연도에 채워지는 것은 반대입니다. 시정명령을 통해서, 저희도 콘텐츠 000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난 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 시정명령을 내릴 때,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그것을 채운 것은 인정해 줄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니 재심사에 고려할 때 그때 논의지만, 아까 말씀하신 조건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연도별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궁금한 것은 ooo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9년에 안 되면 미이행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건을 부가한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다른 느낌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시행 조정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시행하라는 조건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이 내용이라는 것인지요.

- 심사위원

- 미이행은 미이행이고 2020년도에 그것을 포함해서 해 봤자 미이행은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아까 말한 것처럼 협찬고지를 3회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에 협찬고지 4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니지요. 3회를 하지 않으면 재승인 조건 위반입니다.

- 심사위원

- 똑같은 이야기로 저는 이해된다는 것인지요. 콘텐츠 투자는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 심사위원

- 그러면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하라는 것인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이 더 완화된 조건인 것인지요.

- 심사위원

- 다음에 할 수 있다….

- 심사위원

- 없다는 것인지요. 끝내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재승인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시정명령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치유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이지요. 투자는 못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재원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앞에 하지 못한 투자액을 그다음 연도에 하라는 것도 맞는지 생각해 봐야지요.

○ 심사지원반

- 이것은 한시적으로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가지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법적 다툼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2019년도 이행분에 한해서만 별도로 2020년에 이행하고 조건을 붙이자는 의미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이 4월 21일에 종료가 되면 그 이전의 조건들을 가지고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한정해서만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만약 가결산 자료로 보면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행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본결산이 끝났을 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 어렵다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으니, 그러면 이것을 2020년도에 하라는 것을 달겠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2019년에 하라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조건이 이미 승인유효기간이 끝나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심사위원장

- 2019년에 미흡한 투자에 대해서 2020년에 하라는 것을 달도록 하는 재승인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결국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년 이행실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허위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가결산이라는 부분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희가 2019년 투자실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행했다고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허위일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니지요. 가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으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3월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결산 자료로 제공을 한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하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결산이 나와서 그 숫자가 다소 바뀌어서 미이행됐을 때 그 여부에 대한 후속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안)을 제1분과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전에도 이행실적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종편은 2017년 이전에는 콘텐츠에 대해서 모두 불이행했습니다. 이행한 사례가 2018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전부 다 계획 대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투자를 안 했으니까….

○ 심사지원반

- 투자를 계속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 심사위원

- 그때도 시정명령이 나갔습니까?

○ 심사지원반

-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데 그때는 가결산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다 불이행했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대두되는 문제는 다 이행했다고 하니까 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다음 재승인 심사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까?

○ 심사위원

- 다시 또 의논해서 들어갑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은 또 의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조건은 반대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위원님들은 의견서에 써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의견서에 쓰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의견서에 써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각자 의견서에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장

- 우리가 냈던 내용들의 권고(안)이나 그다음에 재승인(안)은 우리가 쓴 것을 가지고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재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하나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의견(안)을 나중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계량을 보고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계량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평가에 보정 사항이 발생해서 보고드립니다. 2017년 재승인 시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감점된 행정처분이 2016년 1월 1일~2017년 1월 31일 내역에 재승인 심사 때 감점

했는데, 저희가 2016년, 2017년, 2018년 방송평가를 포함함에 따라서 2016년, 2017년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감점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송평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방송평가 해당 사항이 감점 관련해서 6점의 가산점 부여가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 했던 방식으로 했을 때는 방송 재승인 때 예를 들어 21점을 감점했는데 지금은 가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점보다도 추가적으로 가산점이 발생하는 것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정입니다.

<1안>은 가산점이 반영된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재승인 때 21점을 감점했다고 하더라도, 3페이지 먼저 보시고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은 재승인 때 19.5%를 평균 감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평가 때는 가점을 줘서 평가에는 14점이 감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재승인 때 19.5점을 감점했으니까 방송평가를 19.5점 보정해 주는 것이 <2안>이고, 2016년 방송평가 점수를 받아본 최종 점수에는 14점밖에 감점이 안 됐기 때문에 14점만을 보정해 주자는 것이 <1안>입니다.

저희 제2분과 논의사항으로는 어차피 그 당시에는 평가점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9점을 감점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최종 2016년 방송평가는 14점이 감점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점수만 반영하는 것이고, <1안>과 <2안> 차이는 0.53점으로 평균을 내보면 차이는 크지 않아서 제2분과는 <1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논의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1안>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2분과 논의사항은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1시 30분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와 제2분과 논의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였기에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하신 제2분과의 계량평가 관련된 점수 안에 대해서 1시 30분에 모여서 제4차 회의 때 의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1분과에서 한 것 중에서 안이 안 된 것 <1안>, <2안>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심사자원반

- 그것은 내부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의결은 아니지만 내부 토론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폐회】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3. 19.(목) 15:06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15시 06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열세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20년도 종편·보도PP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아울러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 중 재승인 심사에 적용되는 방송평가 점수는 본 안건에 따라 결정되는 점수로 변경한다. 본 건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를 <붙임>과 의결하기 위해 제안드립니다.

<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계량평가 결과입니다. 방송평가 400점 기준으로 TV조선 343.34점, 채널A 344점, YTN 340.29점, 연합뉴스TV 343.84점을 획득하였고, 이 사항은 이후에 나올 보정이 반영된 점수입니다. 관계법령 위반 사례와 시정 명령 불이행은 감점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점 만점 TV조선은

16.42점, 채널A은 15.73점, YTN은 15.23점, 연합뉴스TV는 25.9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방송평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미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신 바와 같이 신청법인의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방송평가 평균점수를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심사와의 중복 감점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및 2017년도 방송평가 점수에서 2017년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내역, 즉 2016월 1월 1일~2017년 1월 31일 간에 반영된 감점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제2안>은 <표>인데 세부심사기준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2017년도는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된 점수는 원 방송평가 점수이며, 보정 후 점수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은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평가 점수 그대로 적용됩니다. 3개년도의 방송평가 평균을 하여 이것을 400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점수입니다.

보정 내역에서 특이한 점은 2016년도의 경우 방송평가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져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구분하여 보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2분과 회의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최종 보정은 방송평가 중 가점이 반영된 부분에 한해서 보정하기로 결정 하였기 때문에 가점이 반영된 점수로 최종 보정 점수가 반영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량평가 점수에 400점 점수를 TV조선부터 4개 사업자가 있는데 관련법령 위반사유에 시정명령 불이행 점수를 깎아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 심사위원장

- TV조선이 343.34점인데 관련법령 위반사례로 -2.28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고 시정명령 불이행 1.52점을 빼고 나와야 하는 점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계량평가 점수는 방송평가 400점이 따로 들어가고, 다른 심사항목으로 감점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343.34점은 불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 심사지원반

- 나중에 점수표에 감점으로 들어가는 점수입니다.

○ 심사위원

- 여기 하단에 있는 감점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감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합산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혼돈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항목이 별도의 건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밑에 감점표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뒤에 설명하시겠지만 연합뉴스TV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심사위원

- 9페이지를 보시면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점수가 쪽 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 점수는 종편들이 12점 만점으로 높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 증가율에서 연합뉴스TV가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나머지 3개사가 1.80점인데 비해서 이익 수준이 자기자본 규모 대비 미흡한데 연합뉴스TV 자기자본 규모 대비 이익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가 최초에 했던 납입자본의 반 이상을 까먹었습니다. 자기자본 자체가 굉장히 자본잠식이 심해서 없는데, 최근에 이익을 환원하면서 이익 규모가 높아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것이라, ooo 위원님 의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지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 심사위원장

-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점수 배점표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어떻게 보면 적자를 많이 보던 법인이 흑자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지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 말에 부가시키면 안정성이 부채비율이고, 수익성이 자기자본순이익률이고, 성장성이 총자산 증가율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순이익률을 많이 봅니다. 연합뉴스TV는 자기자본이 많이 줄어들어서 모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확 늘어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익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모두 대비 이익이 큰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세 분께서는 이 평가지표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다음 심사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정책 건의사항으로 심사의견서에 쓰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현재 있는 지표로는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

○ 심사위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에 심사할 때는 건의사항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자산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연합뉴스TV가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이익 규모만큼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합뉴스TV는 그 두 부분의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더하기, 빼기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계산해서 넣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합니까?

- 심사지원반

- 의결이 끝나면 배점표를 나누어드릴 때 계량평가 점수만 1장으로 보기 편하게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수기로 옮겨 적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옮겨 적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에 계량 수치는 다 넣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나중에 심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자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심사표에 이것은 일단 세팅해야 하니까,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려고 합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점수 배점표에 지금 현재 의결된 계량평가 점수를 명기하고 배점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오늘 제4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폐회】

2020년 종편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3. 20.(금) 10:0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록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속기록

【10시 08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열세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먼저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붙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20년 3월 31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 2020년 4월 21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종합의견과 중점 심사사항별 소견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내용을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구도 수정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종합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종합의견을 보시고 종합의견에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종합의견은 전부 다 옮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뒤에 중점심사사항별 소견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ooo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그다음 중점심사사항별입니다. 종합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종합의견이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넘어가시고, ‘의결하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하면 동의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문구도 조금 그런 것….

○ 심사위원장

- 종합의견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종합의견은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두 번째입니다. 중점심사사항별 소견입니다. 2~3페이지까지 내용을 쭉 보시고, 혹시 이 중에서 정리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첨부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ooo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조선방송은 너무 많아서 일단 뺏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논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논의도 없이 갑자기 빼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앞에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가 종편PP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비해서 사업자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 상태이므로 공정성과 관련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며, 객관성·진실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함’, 이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제작을 담보하기 위해….

○ 심사위원장

- 그것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담보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조선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다음에 ‘(주)채널에이의 유사한 위원회와 TF는 통폐합을 하는 등 선택과 집중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검증장치의 운영이 필요함’, 이 부분 이상 없으시면 채택하겠습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 다음에 그 밑에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및 여론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요구됨’,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채널에이의 최대주주 임원과 직원의 겸임 및 교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oo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조선방송의 최대주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과 신문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주주가 조선일보사인데 사장이 TV조선 사외이사가 되고, 또 이사회 의장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TV조선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이념이나 콘텐츠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대주주가 방송사의 사외이사가 되거나 의장이 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이 의견 좋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OOO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러면 문구를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문구를 바꾸시려면 제안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배구조 관련해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회사의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외이사들이 전부 다 주주사 대표들입니다. ooo 사장, ooo 고문에, 차라리 저렇게 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또는 주주와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자구를 한 번 수정해 보십시오.

○ 심사위원

-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선임하는 것이 필요함',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저것을 검정 글씨로 바꾸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셨으니까 이것은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다음에 3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심사위원

-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합뉴스TV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종합의견, 중점의견 그다음에 뒷부분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여기에 넣을까요, 아니면 연합뉴스TV에 넣을까요?

○ 심사위원

- 중점심사사항별 소견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도채널은 다 빠져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고 보도채널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 불러 주십시오. 제1분과에서 논의된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제1분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 심사지원반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점심사사항별 소견은 저희가 중점심사사항으로 정한 <2>번 심사사항과 <3>번 심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방송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초안에 포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합뉴스TV 운영의 독립성은 운영 부분의 독립성 측면이 더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서 포함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도 <2>번 심사사항과 유관하다고 판단하시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점심사사항을 위주로 이것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내용적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앞부분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1분과에서 논의했던 연합뉴스TV 관련된 조건(안)을 넣자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뒤에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제1분과 의견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논의 결과는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검토의견을 참조해서….

○ 심사위원

- 8페이지 <3>번….

○ 심사위원

- 8페이지는 토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점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8페이지 빨간 글씨요?

○ 심사위원

- 8페이지 <2>번, <3>번을 우리가 논의했는데 재승인 조건에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광고영업과 <2>번, <3>번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내용이 재승인 조건(안)에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빼자는 말씀이십니까? ooo 위원님 말씀은 보도전문채널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중점심사사항별 소견이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 수준쯤 되는 요약이지요. 그런데 보도PP라는 이야기는 2페이지 상단에 종편·보도PP 이외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종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연합뉴스TV가 이 수준에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반대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문구를 약간 원론적으로 쓰는 것은….

○ 심사위원

- 이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때 원론적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빼고, 그 명세표를 주시고 워딩을 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의결하도록 하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채널A에 지적했던 임원과 직원의 교류….

○ 심사위원장

- 이것 먼저 하고….

○ 심사위원

- 채널A와 비슷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겸직하는 것과 그다음에 직원 간의 교류가 커서 독립성을 저해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내용적으로….

○ 심사위원

-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 끓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아니지요.

○ 심사위원

-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요.

○ 심사위원장

- 채널A하고 그 밑에는 (주)연합뉴스티브이의 무엇무엇,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채널A 다음에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 심사위원

- 제 생각에 중점심사사항별 소견의 배열이 중구난방입니다. 첫 번째 일반론, 두 번째 조선방송, 세 번째 채널A, 네 번째 또 일반론, 다섯 번째 채널A니까 일반론적인 서술을 앞에 모았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 심사위원

-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별로 간단히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형식상의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종편과 보도PP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는….

○ 심사위원

- 일반론 먼저 하고….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 안에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것하고 나서 3개의 서브로….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 있는데 소유·경영 분리 관련된 것은 어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채널A는 민간 기업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뒤에서는 그렇게 됐고, 연합뉴스TV는 나랏돈이 들어 가면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입니다. 저는 뒷얘것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채널A 경영에까지 가서 '그 2개를 분리하라' 이것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오버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채널A가 동아일보사와의 교류 관계에 의해서 뉴스가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이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소유·경영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소유·경영에 의해서 직원 간의 교류에 의해서 동아일보의 정파적인 성격이 방송에서 지나치게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연합뉴스TV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연합뉴스가 국가로부터 300억원이라는 지원을 받는데 왜 분리하지 않느냐, 분리를 통해서 연합뉴스의 뉴스가 독점적으로 연합뉴스TV에 제공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소유와 경영 문제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경영과 편성의 분리를 거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경영과 편성의 독립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을 경영과 편성 혹은 경영과 보도국 간 독립 문제가 따라 나와 주지 않고 사실은 추정이지요. 추정치인데 정교하지 못한 이야기가 서술이 되니 그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소유와 경영 문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심사위원

- 경영 사이즈도 보면 엄청나게 작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사장을 또 하나 둔다는 것은 잘 못하면 사장 자리 하나 만드는 것, 그렇게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회사 규모를 따라서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방송사이고, 신문사입니다.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사회에서 민간 기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되지만 방송의 특수성, 그러면 은행도 왜 개입을 많이 합니까? 은행 임원이 경고만 받아도 임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경고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당연하겠지만 경고 정도 받아서 민간 은행인데 왜 임원을 못 하게 합니까? 은행이나 방송이나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은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방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사장 하나 더 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회사에서 사장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에서 사장 역할이 뭐가 큽니까?

○ 심사위원장

-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제일 첫 번째로 일반론적으로 예를 들면 경영이 보도와 편

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소유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말하자면 이렇지요. 동아일보의 오너이자 대표가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와 채널A 간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채널A의 오너이자 대표가 경영과 편집, 경영과 편성·제작에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개입이 아니고 개입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

○ 심사위원

-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전제로, 따라서 그 문제를, 즉 경영과 편집 혹은 경영과 보도의 이야기를 먼저 거론해야지 논리상 모순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집 이야기는 우리가 못 합니다. 보도와 편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여기는 방송이니까요. 보도·편성 이야기가 전제되지 않고서 이렇게 나가면 ooo 위원님이 이야기에 십분 이해하면서도, 동감을 하면서도 연결구조가 조금 약합니다.

○ 심사위원장

- 경영이 보도와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뒤에 한다면 예를 들면 채널A의 경우 사장 겸영의 문제와 사장이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을 천명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 연합뉴스TV는 채널A에 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조건 연합뉴스TV의 대표와 그다음에 연합뉴스의 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 워딩을 해서 한 번 마련해 보십시오.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 워딩은 분과 회의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에 연합뉴스TV에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일반론 정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맨 앞에 것을 다 올리고 이것은 놓아두고 여기 것 내려와서 이것을 위로 옮리고, 이것은 놓아두고 그다음에 이것 할 때 이 사이에 일반론적으로 앞에 무엇을 하시냐 하면 경영과 소유 그 이야기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 방금 ooo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편성이라는 부분을 문구로 추가를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주식회사는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뒤에 쓰고, 여기는 일반론적인 것을 쓰자고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 심사위원

- 제가 대략 빨리 써 본 안은 이렇습니다. 채널A의 경우에는 채널A….

- 심사위원장

- 채널A말고 일반적인 것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심사위원

- 일반적인 것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 보지요. 방송사업자 일반론적 2개가 다….

- 심사위원장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보도 및 편성의….

- 심사위원

- 그것을 앞부분으로 빼고 먼저 그것으로 시작하는….

- 심사위원장

- 편성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 심사위원

- '보도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소유·경영의 분리가 자꾸 나옵니까? 소유·경영 분리 검토도 회사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을 전체 4개 사업자에게 둘러 씌우면….

○ 심사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유와 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경영과 보도·편집, 편성의 문제지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문제가 풀리지, 그냥 막연히 경영과 소유를 자꾸 거기에 집착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 심사위원

- 000 위원님이 워딩을 한 번 불러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 쪽에서 '소유·경영'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통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합뉴스TV에 사장 하나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율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연합뉴스TV나 YTN 하는 것 전부 다 정부 방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한 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론적인 것인가 '종편·보도 방송의 공익성은 경영과 편성·보도의 건강한 견제를 전제로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심사위원

- 공익성이 아니고 공공성입니다.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경영과 편성이 견제를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공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입니다.

○ 심사위원

- 편성이나 보도를 위해서 경영이 서포트하는 구조니까 저렇게 견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마련이 필요함' 일단 빨리 만들어본 키워드인데 저는 건강한 견제라는 말에 협력과 견제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 심사위원장

- 종편·보도PP에 대해 공공성은….

○ 심사위원

- 즉, 제도적이라는 말 앞에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 심사위원

-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문제입니다.

○ 심사위원

- 지배구조는 아니지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좋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지배구조가 아니고 운영구조지요.

○ 심사위원

- 방송국 내 경영 파트, 편성·보도 파트가 서로 간 견제기능이 없습니다. 저 견제라는 말은….

○ 심사위원

- 의견청취할 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제일 핵심적인 질문은 'ooo대표님 보도에 관여 하십니까?'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전제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동아와 채널A 간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종편·보도PP의 공정성은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여 경영과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사위원

- 아니, 경영과 자꾸 분리를 시켜서 소유를….

○ 심사위원

- 경영진이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니까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연합뉴스TV와 YTN은 전부 다….

○ 심사위원장

- 제가 하겠습니다. ‘종편·보도PP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 심사위원

- 일단 여기까지 팩트….

○ 심사위원장

-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경영과 분리되는 것에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까지는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렇게 하려면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을 아예 넣으십시오.

○ 심사위원장

-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니까 정부 통제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서 자꾸 소유·경영을 물고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일단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전제인데 경영이 자꾸 거기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넣으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경영과 분리된다는 것은 조금 세고….

○ 심사위원장

-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분리 말고 경영을 위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이라든지 그렇게

가보지요.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장치의 마련이 어떤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대표이사 겸직 금하라' 이런 이야기를 그 장치로서 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경영적인 것을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심사위원

-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만 하시고, 제가 워딩을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건전한 경제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누가 경제하느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있고.

○ 심사위원

- 이 전제의 논의가 ooo이 과연 보도·편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립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 미친다고 당연히 봐야지요. 만약 그럴 권한이 없으면 왜 굳이 사장을 하려고 합니까? 사장을 하면서 보도·편성·경영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권한이 없으면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또 우리도 이렇게 문제제기하지 않고. 내부 사정이라 우리가 증거가 없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총평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총평의 전제로는 저런 이야기가 그래도 주어지는 것이 균형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으로 합시다. '경영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도록' 지우고,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 정도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

- 총론에는 그렇게 하고….

○ 심사위원장

- 그 밑에 있으니까 그것 지우고….

○ 심사위원

- 총론에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 심사위원

- 편성, 보도 사이에 점 하나 찍어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예. '편성·보도', '필요함', '필요함' 하니까 '요구함'으로 하든지요. '마련이 요구됨'

○ 심사위원

- 그 바로 밑에 있는 조선방송에 해당되는 내용이 채널A도 똑같이 통용되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 이야기는 하나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장

- 넣어야지요. (주)연합뉴스티브이….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거기 이야기는 뒤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요약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 부분만 제1분과에서 정리된 것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드렸습니까?

○ 심사위원

- 예, 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해소라는 말이 적합합니까?

○ 심사위원장

- 해소는 아니지요.

○ 심사위원

- 방지가 명확하기는 한데 저것을 완화시켜서 쓰려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뒤에 재승인 조건 초안을 보시면 연합뉴스TV는 조건에 들어가서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이라고 썼고, 권고(안)에 되어 있는 채널A와 TV조선은 '자제할 것'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안)에 들어가는 것을 차용했고, 조건과 권고는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해소가 명확합니까?

○ 심사지원반

- 예, 파견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이 용어가 불편하시면 앞에 총평 부분이니까 그것은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있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것인니까 해소도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개선으로 쓰시지요.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심사위원

- 파견을 개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소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해소로 합시다. '필요함'이 아니고 '방안',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것은 조금 세계 해야지요.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이것이 8페이지 내용과도 연결되는데 전부 속기가 되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사장을 꼭 분리를 시켜야 이것이 독립성이 된다, 그런데 연합뉴스TV 사장을 분리시켰다고 이 사람이 자율적인 경영을 1%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000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문제는 2014년, 2017년에도 그때 심사위원들이 연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시했고, 또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대표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00 위원님 입장과 다르고, 개인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결하려면 의결하시고, 아니면 충분히 의견개진을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왜냐하면 2014년, 2017년에 심사위원들이 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조금 이해하시면….

○ 심사위원

- 예, 알고 있는데….

○ 심사위원

- 표결에 부치십시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앞에 있는 종합의견과 중점심사사항별 소견과 관련해서만 논의가 있어서 뒷부분은 나중에 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재승인 조건(안)과 그다음에 권고(안)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없습니까?

○ 심사위원장

- 권고(안) 뒤의 내용이요?

○ 심사위원

- 예, <3>번….

○ 심사위원장

- 앞엣것하고 뒤엣것은….

○ 심사위원

- 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도 계속 그런 의문이 드는데 앞에 있는 표현의 강약을 고민할 때 뒤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래서 제가 아까 9시~10시 사이에 미리 비교하면서 자꾸 수정이나 배열을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뒷부분이 확정되어야지 앞에 있는 문구의 강약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의결하기 전에 뒷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앞엣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을 넣고 빼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지금 계속 논의 자체가 뒷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중에서 아까 ooo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각 사별로 하나씩 넣자는 입장에 따라서 배열을 다시 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다시 총론으로 돌아와서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채택됐다는 말씀만 드렸지, 의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결은 뒤에까지 대해서 의결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택되었다는 말만 했지, 의결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가 뒤엣것을 보면서 앞에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다면 보고 자꾸 수정을 하든지 빼든지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택만 된 것이지요. 됐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이 부분을 쭉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으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채택하는 것이지 의결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가 아까 ooo 위원님 말씀처럼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는 밑으로 내리고 밑에 있는 2개를 위로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이 부분과 이 2개는 뒤로 빼고 여기를 먼저 위로 옮리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채택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총론에 관한 내용이고, <2>번이 각론이어서….

○ 심사위원

-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자리 바꾸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 심사위원

- 예. 흠크핑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것하고….

○ 심사위원장

- 됐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계획의 적절성 문제는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승인 조건(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재승인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조건 중에서 TV조선부터 순서대로 한 번 쭉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이나 TV조선의 권고사항에 대해 읽어보시고 질의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채택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2가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방통위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7>번 협찬고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협찬고지의 문제는 종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종편·보도PP 2개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지상파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

○ 심사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것은 전체 방송사업자를 다 규율하는 법령 부분에 포함되어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라고 하면 그 부분이 개정되어서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희가 아직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번 종편·보도PP사업자 심사할 때 반영해야 한다면 권고(안)이 든 재승인 조건으로 포함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후에 방통위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000 위원님,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행정제재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심사지원반

- 말씀드리면 이것은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나와 있고, 지금 법제처 심의 중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이 법령이 미비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이 문장은 조금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찬을 받은 '해당'자는 뒤로 가고, '받은 프로그램에서',

○ 심사위원장

- 다시 읽어주십시오.

○ 심사위원

-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쭉 그대로 가다가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 심사위원장

-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그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TV조선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고친 것에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TV조선에 대해서는 이 2가지 내용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널A 부분 봐

주시지요.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조선방송과 채널A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거의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 중에서 보면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직원 파견을 자제할 것, 아울러 3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 심사위원

-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해소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단 3개월 이내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사업자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권고일 때 앞에 나와 있는 조건과는 조금 달리 추상적이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너무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니까….

○ 심사위원

- 주주총회도 해야 하고 이사회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할 문제들이니, 아까 앞에 총론에서 다룬 그 워딩을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켜 봐 달라는 식으로 나가야지, ‘시행할 것’ 했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권위도 안 서지 않습니까? 권고인데….

○ 심사위원

- 저는 ‘아울러’ 이후부터 빼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어떤 부분이요, 몇 번째요? 재승인 조건 몇 번이요?

○ 심사위원

- 7페이지 권고사항 <3>번에….

○ 심사위원

- 7페이지 <3>번….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 어느 것이요?

○ 심사위원

- <3>번에….

○ 심사위원장

- <3>번 빼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아울러'부터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그렇게 해도 많이 좋아지네요.

○ 심사위원

- 그것이 없으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시행을 하지 않으면….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 올려 보십시오. '아울러'를 빼달라는 것이지요, 자제할 것까지?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사항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점심사사항별 소견에서는 채널A의 대표이사 겸직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민간 회사인데 '최대 주주의 대표이사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겸직' 이것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ooo 위원님 입장에서는 소유와 경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되고 굴러 가더라도 보도나 편성에 관여하지 않고 보도와 편성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무 이상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선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채널A의 경우 권고사항을 보겠습니다. <1>번은 ‘…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2>번 ‘… 자체 규정을 정비할 것’ 이 정도 수준이 권고의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3>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넣었습니다.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공동대표를 하지 말고’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ooo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무엇이라는 것은 다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소유·경영의 분리, 그다음에 경영, 보도·편성의 분리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것이….

○ 심사위원장

- 앞에 총평에 나왔던 내용을 집어넣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장

-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앞에 총평에 나왔던 내용을 넣어서 워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보도·편성 분리가 중요하지요. 소유·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ooo이 채널A의 대표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소유자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책임 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십시오. ooo이 채널A의 대표자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최대주주로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최대주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자는 것이 수없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 그런 추세이고, 방송사만이 아니고 일반회사에서도 전문경영인을 세우고 소유와 경영이 많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ooo이 양쪽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이유 하나이지 않습니까? 최대주주라

는 이유 하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겸직해서 긍정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하고, 그렇게 겸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또 해야 할 필요성이나….

○ 심사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oo 위원님, 자꾸 소유·경영이 분리되면 회사 실적이 좋아진다는 데 그것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질문을….

○ 심사위원

-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어저께도 장·단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긍정적인 면….

○ 심사위원

-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논의가 계속 되니까 이제는 우리 마무리 지어야 될….

○ 심사위원장

-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넣고 빼고 문제는 의결할 것이고, 최대한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자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5분 드릴 테니까 자구 조정하셔서 약간….

○ 심사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oo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여기에서 소유·경영의 분리라는 것은 동아일보와 채널A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알아요.

○ 심사위원

- 동아일보와 채널A를, 하나는 신문이고 하나는 방송이니….

○ 심사위원장

- 그런 워딩으로 작업하셔서…

○ 심사위원

- 소유와 경영을 자꾸 아까 ooo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 심사위원장

- 소유·경영 분리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ooo 위원님 말씀처럼 동아일보가 (주)채널에이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개입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바로 잡자는 의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구를 넣을 것인가 빼는 것인가에 대해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율이 되면 채택하고 조율이 안 됐을 때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의사발언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방송사와는 다르게 종편과 보도PP는 방송법상 소유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방송법 1인 주주 30%, 신문에 대한 지주가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취지 자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강약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 심사위원

- 저는 '분리를 통한'이라는 이런 강한 문구가 거북스럽다면 '분리의 이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취지를 살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반발하는 내용은 '분리를 통한', '하지 말 것', '하지 않도록 하고', '해소할 계획을 수립해라', 이것이 불만족스럽다면 그런 내용을, 저희는 '소유와 경영 분리가 안 되셨지요?'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분리가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제 생각에 권고사항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재사항으로는 강력하니 방통위가 실제 현장점검을 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실효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3개월이나 4개월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강제력을 띤다는 표현보다는 이것은 권고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문구는 적절하다.

○ 심사위원장

- 시간관계상 제가 효율성 관계에서 이 부분은 다른 것 채택된 다음에 마지막에 자구 수정을 해서 의견이 다르면 그때 가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A의 권고 <3>번에 대해서 이 주장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로 가기 위해서 자구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 심사위원

-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는데 자구 수정보다는 이 항목에 있어서는 이 (안)과 또 다른 (안)을 하나 만들어서 <1안>, <2안>을 놓고 어차피 의결해야 할 때도 그것이 편리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2>을 만들어서 같이 보시면서 의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지금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을 다하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하시죠.

○ 심사위원

- 질문 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빠진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드립니다. TV조선에서 저희가 앞에 총론에서는 사외이사 부분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쪽에는 빠져 있어서 이것이 권고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ooo 위원님 말씀하시고 자구 수정해 주신 부분이요.

○ 심사위원장

- 앞에 총평에 나왔던 내용?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것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이것이 2014년, 2017년도에는 채널A나 TV조선에 독립성 관련된 이슈가 들어 갔습니까?

○ 심사지원반

- 2014년, 2017년도에는 이 사안은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 왜 안 들어갔습니까?

○ 심사위원장

- 채널A에 관계된 것이요?

○ 심사위원

- 예. 채널A는 TV조선이든….

○ 심사지원반

- 그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다음에 연합뉴스TV는 2014년도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안 지켰는데 2017년도에도 재승인 조건으로 안 들어가고 권고사항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심사위원장

- 그 의견을 주시고, 이것 채택은 지금 하지 않고….

○ 심사위원

- 이것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을지, 재승인 조건으로 넣을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궁금한 사항은 심사지원반에게 들으시고 결정할 때 나중에 채택하기 전에 의견을 주셔서 그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권고사항으로 TV조선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연합뉴스TV입니다. 연합뉴스TV의 재승인 내용 세 번째에 빨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조건 1, 2, 권고사항 1, 2를 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만이요?

○ 심사위원장

- 예. 연합뉴스TV 재승인조건과 권고사항을 보시고 여기에서 채택이 될 여부를 판단할 것인니까….

○ 심사위원

- 심사지원반에 여쭤보고 싶은데 2017년도에는 왜 이것이 재승인 조건에 포함이 안 되고 권고사항으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까?

○ 심사위원장

- 연합뉴스TV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아까 ooo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대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심사지원반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재승인 조건으로 하는 것은 조금 세 보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심사지원반

-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는 연합뉴스TV 관련해서는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강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이사는 임기제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건으로 언제까지 해소하라든지 강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맞습니다. 임기제가 있는 사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라는 것도….

○ 심사위원장

- <3>번을 예를 들면 가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저는 권고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저도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연합뉴스TV에 권고가 나갔고, 2017년도에 권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권고가 나갔습니까?

○ 심사위원장

- 권고가 나갔습니다.

○ 심사위원

- 예, 두 차례에 거쳐 계속 권고, 저는 궁금한 것이 권고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권고가 나갔습니까? 아까 이야기만 있었다고….

○ 심사위원

-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이' 그것이 권고로 나갔습니다.

○ 심사위원

- 초기 승인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고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정확한 워딩이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가 조건이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재승인 조건에 다시 또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제공받지 않을 것', 권고에서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해라', 그리고 재승인 권고에서 또 똑같이 그 때 지키지 않으니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워딩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 '17년도 권고사항이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2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것을 좀 더 이번에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하되, 두 번째는 재승인 조건의 이 내용 워딩이 너무 제약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이 부분을 완화해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예 빼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꾸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권고사항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채택하지 않고 좀 더 쿨링타임을 가진 다음에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정확히 정리하면 이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회의 위원회 속기록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이 맞고, 재승인 권고사항은 딱 한 문장입니다. ‘최다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이것 하나입니다.

○ 심사위원

- 운영의 독립성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7년 재승인에는 권고에 운영의 독립성이 언급됐다.

○ 심사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재승인 조건에 일부 드러나도 물론 워딩을 바꿔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결정하고 나머지 재승인 조건 <1>, <2>와 권고사항 <1>, <2>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이것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재승인 조건 <2>도 이의가 없으신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1>, <2>에 대해서요?

○ 심사위원

- 저번에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 심사위원

- 솔직히 <2>번, <3>번이 연관이 있는데….

○ 심사위원

- <2>번에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2>번, <3>번이 연관 있지요.

○ 심사위원

-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

- <3>번이 먼저 나와야 하고….

○ 심사위원장

- 결정이 되면 <3>번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 심사위원

- 저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다른 시대에 이런 심사를 했으면 재승인 조건에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당장 광고영업대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강하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완화하든가….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한 가지 위딩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방안을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 심사위원

- 방안을 제출해도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경영진이 힘들지요.

○ 심사위원

-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기를 반영하자는 것인데, 그 방안에 이 시기를 감안 해서 올 해는 힘드니까 내년쯤에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 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경영적인 측면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 심사위원장

-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가 재승인이 되고, 예를 들면 재승인이 되었으면 재승인 조건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있지요.

○ 심사위원장

- 관계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니지요. 기본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건은,

○ 심사위원장

- 예를 들면 650점, 700점이 넘어도….

○ 심사지원반

- 점수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불일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구속력이 조금 있네요.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650점 이상 받아도 그런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그럼요.

○ 심사위원

- 시간이 그러니까 YTN부터 먼저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 부분도 채택하는 것을 미루겠습니다. 다음에 YTN은 간단하게 3가지로 있습니다.
쭉 보시고….

○ 심사지원반

- 참고로 한 가지 YTN 관련해서 의견청취 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기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이렇게 붙여도 괜찮은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것을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 심사위원장

- 그 워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이 사업계획서가 너무 미비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추가 자료가 아니고 추가 계획서겠지요.

○ 심사위원장

- 추가 계획서를 했는데 그것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이라는 말 앞에….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 심사위원장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부득이 한 경우로 사업계획서', '부득이한 경우' 하면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워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1>번 조건은 일반적으로 붙는 조건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부실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몇 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것이라 듣가,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검증이 한 번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추가….

○ 심사위원

- 그래야 그다음 조건이 재승인 심사할 때 계획서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씀….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내용은 연합뉴스TV에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

-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예,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와 비슷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의견청취 때 한 이야기여서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특히 YTN과 연합뉴스TV는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해결방안들이고, 24시간 뉴스 보도채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과 이 사업의 미래 계획에 대한 큰 그림 하나가 또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사실은 이 회사들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당장의 광고수익, YTN의 경우에, 연합뉴스TV의 경우에 오고 간 자체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나쯤 재승인 조건에 넣어서 계획을 고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중장기 비전이라는 말을 넣어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

- 단순히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너무 미흡하니 부족한 부분을 세우라고 하면 저희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제출해서 이미 낸 사업자와 여기는 심사 결과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부실한 사업계획서인데 이렇게 넘어갔느냐고 될 수 있어서 그 워딩은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계획에도 저 자신은 큰 점수를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은 보완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 보완에ooo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하라고 하고, 기술적 코멘트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기술이 거기에 따라 와야 되겠지요.

○ 심사위원

- 그런 것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언제까지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것, 그런 식으로 워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과정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점수 배점한 것과 별개로 해서 저는 YTN도 상당히 많이 기술했는데 재승인 조건이 하나 밖에 없는지요.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제안을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희가 특별히 YTN에 대한 재승인 조건 내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가 너무 세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YTN의 경우에 경영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약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총매출 규모에 비한 총순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직이 25년 되고 이제 슬슬 노후화됨에 따라서 유류인력들도 많고 인건비 늘어나는 그런 내막이 있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런 것이 재승인 조건에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게 된 것이 다 녹여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짜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재승인 조건 <1>은 제가 나중에 워딩 하나 만들어 제시하겠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할 것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저는 재승인 앞에 <4>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미래 비전이 뚜렷하지 못한 관계로 향후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새로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아주 좋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이 낫겠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 앞에 ‘구체적인’

○ 심사위원장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미래 비전이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이런 식으로….

○ 심사위원

- 그런데 이 경우에는 향후라는 시간을 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3개월 내’라든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그러면 됩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 않으면 2년 후에, 1년 후에 낼 것입니다.

○ 심사위원

- 3개월….

○ 심사위원회

- 3개월로 하면 되겠지요.

○ 심사위원

- 저기는 한 1개월로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회

- 1개월은 너무….

○ 심사위원

- 채널A는 더 봐도 됩니까?

○ 심사위원회

-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개는 의결하려고 합니다.

○ 심사위원

- 5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 심사위원회

- 워딩만 잡아주십시오.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심사위원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심사위원회

- 정회 시간 동안 자구 수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고, 5분 정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합의가 되면 바로 채택해서 의결하기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위원님들 다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빨간 것은 수정한 것이고, 파란 것은 집어넣은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심사위원

- <4>번 항목이 소유·경영 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항목은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그다음부터 '소유·경영의 분리부터 그 방안으로'까지는 빼고, 소유·경영 이야기는 제가 밑으로 집어넣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 심사위원장

- <3>번의 일정 부분을 <4>번에 넣겠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4>번을 한 번 쭉 워딩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3>번을 소유·경영 분리 및 최대주주로부터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 심사위원

- <3>번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예, 위에는 지우라는 것입니다. 소유·경영의 분리부터 그 방안으로까지….

○ 심사위원

- 일단 놓아두고 논의를 하고, <4>번은….

○ 심사지원반

- 이것은 놓아둡니까?

○ 심사위원

- <3>번에 그것이 빠졌네요. 방송사로 기자들이….

○ 심사위원장

- 그대로 있습니다. ooo 위원님 말씀은 <3>번의 소유·경영 분리 내용을 <4>번에 집어넣고 수정하자는 이야기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고….

○ 심사위원

- <3>번에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빠졌습니다.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자제할 것’ 앞에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이런 부분이….

○ 심사지원반

- TV조선은 겸직과 공동대표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TV조선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TV조선입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러면 이렇게 한 것에 동의하시면 이것으로 하고요.

○ 심사위원

- ‘분리가 필요하고’를 빼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3>번에 그 방안으로….

○ 심사위원장

- 위를 빼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3>번의 ‘소유·경영 분리부터 그 방안으로’까지 빼라, <4>번이 소유·경영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3>번, <4>번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3>번, <4>번 순서를 바꿔 오십시오. 위로 올라가고, 위가 <3>번이 되는 것이고 아래를 지우는 것이지요. <4>번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이것은 TV조선 부분이지요?

○ 심사위원

- <3>번에 ‘위해’, ‘위해’가 두 번이 됐습니다.

○ 심사위원

- 영향력 배제 및 이사회 독립성….

○ 심사위원

- 영향력을 배제하고….

○ 심사위원장

- 배제하고….

○ 심사위원

- ‘배제하고’가 쉽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넣자고 하는 것인가, ‘이사회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를 빼야 됩니다.

○ 심사위원장

- 독립성·공정성….

○ 심사위원

- ‘소유·경영 분리 및 최대주주로서의 영향을 배제하고….

○ 심사위원

- ‘및’은 맨 마지막 <1>, <2>, <3>에 들어가니까 ‘분리’ 콤마 해야 합니다. ‘및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인 사람들로 사외이사’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에서 ‘최’를 빼고, ‘대주주 등’과, ‘최’를 빼십시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ooo 위원님.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권고사항은 이번에 수정된 것으로 해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 다음에 채널A입니다.

○ 심사위원

- 아까 3개월 이내에 해소 계획 수립은 괜찮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다 좋다고 했습니다.

○ 심사위원

- 밑에 '제출할 것'에 줄을 쳐 놓은 이유는….

○ 심사위원장

- 그것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런 것 없고, <4>번 채널A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안>, <2안>이 있습니다. 권고사항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

- 어디의 권고지요?

○ 심사위원장

- 채널A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3>번이 <1안>, <2안> 나눈 것이었지요?

○ 심사위원장

- 예. 간단하게 <2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 심사위원

- <2안>의 경우 위쪽 앞에 TV조선과의 균형성을 위해서도 최대주주사에서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줄부터 들어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 계획까지는 넣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직원 파견의 해소 계획은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최대주주사에서 세 번째 줄….

○ 심사위원장

-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지원 파견을 자제할 것에 동의하신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해소 계획 수립도 동의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여기에서 대표이사의 겸직, 공동대표 그 부분은….

○ 심사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 앞에도 저것이 들어가서 아까 제가 3개월 이내에 동의하시냐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권고사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장

-ooo 위원님은 의견은 그렇고, 나머지 위원님 의견이 어떤지에 따라서….

○ 심사위원

- 저도 권고사항은 약간 원칙적인 내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고, 너무 구체적이고….

○ 심사위원장

- <1안>, <2안>에서 <2안> 쪽에 더 기운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3개월 이내에'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권고사항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TV조선도 바꿔야 합니다. TV조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 심사위원

- 빨리 넘어가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 심사위원

- 저도 지금 있는 것을 기준으로 '채승인 후부터'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자제할 것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재승인 후 3개월 이내' 하지 말고, '직원 파견 해소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제출할 것'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심사위원

- 그러면 계속 무작정 미뤄 버리지요. 기한을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3개월 이내로요?

○ 심사위원

- 이것은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 방송사가 생각하는 그림은 무엇이냐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니까 기한을 어느 정도는 줘야지요.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해소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 해소 계획이지, 3개월 이내에 파견을 중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상황이 경영진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 파견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하지?'

○ 심사위원

- 그 조차도 협의를 하면 감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면 '1년 내에 편성 쪽에서는 파견하지 않겠다', '영업 쪽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계획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계획이 단서가 뭐냐 하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재승인할 때 그런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3년 후에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 심사위원

- 지금까지 권고사항이 나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만으로 했지, '언제까지 계획을 제출해서 내라' 이런 말은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3개월 이내에 해소 계획이기 때문에, 해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두루뭉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행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3개월 내에 해소 계획을 내라는 것이지, 해소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아니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3개월은 너무 빠른 것 같으면 6개월로 하든지….

○ 심사위원

- 기간은 지금 계획 세우기도 머리 복잡하다면 기간을 늘릴 수도 있지요.

○ 심사위원

- 6개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6개월로 합시다. 6개월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6개월 이내로….

○ 심사위원

- 왜냐하면 지금이 위기상황이니까….

○ 심사위원

- 그렇다면 <2>번 ‘이를 적극 이행할 것’도 6개월, 8개월 시간 줘야지요.

○ 심사위원장

- 어느 것이요?

○ 심사위원

- 가이드라인?

○ 심사위원장

- <2>번 그렇게 하시지요.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는 계획을 6개월 내로 제출할 것’ 하든지요.

○ 심사위원

- TV조선도 바꿔야 합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은 계획을 받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안 받습니까?

○ 심사위원

- 예, 이미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안>, <2안>에 대해 논의가 된 것 같고,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 주시고 이 부분은 표결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이해가 안 돼서 ooo 위원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지금 신문사 사장과 방송사 사장이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제는 “시너지 효과도 있다” 그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허용했을 때 긍정적인 면이나 순기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도 위원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말꼬리가 아니라 제가 긍정적인 면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그것은 있습니다. 오너가 ooo이나 ooo은 어떻게 됩니까? 방송이라는 것을 떠나서….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1안>, <2안> 놓고 표결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1안>, <2안>을 놓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1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1안> 찬성자가 많기 때문에 <2안>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1안>으로….

○ 심사위원

- 그래도 표결하십시오. 몇 대 몇 원래 표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숫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의록에 남기지요.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 부분에 대해서 9명이 대해서 채택하셨기 때문에 <1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반대도 있고 기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록에 남겨야지요.

○ 심사위원장

- 아홉 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권으로 하시고, 다음은 <2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2안>은 두 분이고, 나머지는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누가 기권했습니까?

○ 심사위원장

- 저는 기권해야지요.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이렇게 됐는데 아까 TV조선에서도 문구 적용할 때 했던 것처럼….

○ 심사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다시 조정할 때 한 번 더 할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TV입니다.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 <2>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경영이나 대표 겸직과는 별도로 저는 광고대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000원 이상 받는 통신사이지 않습니까? 이 통신사는 모든 매체에 통신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매체와는 다른 차원의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것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광고영업에서 핵심은 Commission과 fee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면서 얻는 수수료가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공정거래 문제인데….

○ 심사위원장

- 공정거래의 부당한 거래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언제부터 광고영업을 했습니까?

○ 심사위원

-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도 6개월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6개월 이내에, <2>번에 대해서 어떻게….

○ 심사위원

- <3>번이 더 순서가 원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2>번부터 먼저 하시고 <2>번에 대해서, 2개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and니까 <2>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 위원 있음) <2>번 의결할까요, 동의해 주시면 <2>번을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승인 조건 연합뉴스TV는 <2>번은 채택하고, 저것은 빨간 것으로 하면 안 되니까 까만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2>번만 하고, <3>번입니다. <3>번 부분에 대해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아까 3개월을 6개월 이내로 바꿨습니다. 6개월도 해소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

- 순서는 <2>번과 <3>번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3>번을 채택하면 바꿔도 되니까….

○ 심사위원

- <3>번은 표결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의견이 다릅니까? 재승인 조건 <3>번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채택해야 한다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것이 아니고 재승인 조건이냐, 혹은 권고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무엇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들어간다, 뺀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항이 재승인 조건으로 들어갈 것인지, 권고사항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을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열 분이 10명이 이 부분은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야 간다고 표결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고 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기권입니다.

○ 심사위원

- 전체는 12명입니다. 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나요.

○ 심사위원장

- 위원장은 6:6 캐스팅보트일 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되, 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 문구가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러려면 <1안>, <2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아닙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다가 채택이 안 되면….

○ 심사위원

- 채택된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재승인 조건이 되는데 재승인 조건에 자구와 관계없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열 분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앞에서 저 문구를 다듬은 다음에 우리가 의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그전에 자구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3개월을 6개월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YTN 재승인 조건에 대해 '재승인 받은 후 6개월 이내'로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가 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지우고 <2>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2>번 자구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1>번을 빼고 <2>번만 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1>번은 넣어야지요.

○ 심사위원

- YTN을 사업계획서….

○ 심사위원

- <1>번은 원래 일반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1>번은 들어가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1>번 하고….

○ 심사위원

- 예, <1>번은 하고….

○ 심사위원

- <1>번과 <2>번은 다른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2>번도 저것은 6개월이면 너무 늦지요. 3개월로, 이것은 빨리 받아야지요.

○ 심사위원

- 6개월이 아니지요. 이것은 조금 강하게 해야지요.

○ 심사위원장

- 이것은 3개월 해야지요. 새로 문구 들어간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특별히 표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심사위원장

-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 심사위원

- 받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방통위와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 방통위가 승인한 것을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 심사위원

- 궁금한 것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이것을 한 번 더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계획서를 방통위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방통위의 재승인을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승인을 받을 것이 우리가 다시 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에서 승인하는 것인지요?

○ 심사위원장

- 예.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지금까지 모든 자구에 대해 한 번 더 리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것도 검정으로 바꿔주십시오. 채택이 됐으니까 총평을 다시 한번 쭉 리뷰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이 심사의견서가 채택된 것으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가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문구를 고치기 편하게 가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 심사위원장

- 지금은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고치자는 것은 아까 TV조선부터 시작한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 이 표현을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소유·경영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TV조선에 적용했던 문구 그대로 뒤로 가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그냥 해도 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왜냐하면 처음에 주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나중에 하고 소유·경영….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제가 보기로 아까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것 자꾸 이야기하면 약간의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 심사위원

-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문장을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 심사위원

- 토씨 정도만 바꾸지요.

○ 심사위원장

- 그전에 아름답게 하도록 도와주시지요. 다들 내용을 다 보셨고 표결했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따로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에 관한 수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오늘 제5차 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공식 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주야로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맡으신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폐회】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신청법인 의견청취

■ 일 시 : 2020. 3. 18.(수) 09:2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2020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09시 28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 신청법인 의견청취

○ (주)채널에이

○ 심사위원장

- 의견청취 진행순서는 지난 2월 26일 사업자 간에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주)채널에이, (주)조선방송,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채널에이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장)

다 입장하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 유의사항을 다 숙지하셨지요? 마스크를 쓰고 해 주시기 바라고, 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채널에이(채널A)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대면방식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채널에이(채널A) 대표자이신 ooo 님.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ooo 님.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ooo 님.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ooo 님, ooo 님 맞습니까?

○ (주)채널에이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배포된 유의사항을 숙지하셨지요?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그리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ooo 대표님,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 모두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자 모두발언 후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익명성 때문에

보통 심사위원 가~바까지, A~F까지 랜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채널A 대표 ooo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재승인 심사 때 약속드린 것처럼 채널A는 방송을 통해 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건전하고 따뜻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소통과 치유를 다룬 <아이콘택트>가 대표적인 콘텐츠입니다. 국민 여가와 여가 형성에 기여한 <도시어부>, 또 새로운 형식으로 청소년의 두근거림을 표현한 <하트시그널>도 채널A만의 콘텐츠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도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따른 법정제재 별점은 지난 2017년 재승인 기간의 oo%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편성 다양성을 위해 보도비율을 적극 줄였고, 방송시간의 oo% 이상을 어린 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습니다. 광고시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다양한 부가수입을 확보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트시그널>은 한한령(限韓令) 속에서도 시즌 1, 2 모두 중국 최대 OTT 플랫폼에 포맷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채널A 개국 이래 한 차례도 빠짐없이 재승인 심사를 받는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좋은 방송사가 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해 주시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고 밀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몇 가지 다짐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더욱 공정하고 품격 있는 채널A가 되겠습니다. 방송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허위정보를 걸러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신뢰받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성 점검기구 등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늘리겠습니다.

방송 편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송 분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재승인 기간에 oo%였던 보도 비율을 향후 5년간 oo%로 더욱 낮추려고 합니다. 드라마 라인업도 신설해 올해 연간 4개 이상 드라마를 제작·편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다지겠습니다. 투자를 향후 5년간 ooo원으로 늘리고, 또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와 서비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꾸준히 발전하는 저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채널에이(채널A)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 심사위원들

질의에 앞서 방통위에서는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심사위원장인 제가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묻는다’는 내용은 국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마련한 것으로 시청자를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의견 및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된 내용으로 도를 넘고 있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 보도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며 악의적인 내용에 걱정되는 바 재승인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자사 혹은 경영자 입장에 득이 되는 쪽으로 가짜뉴스생산, 불공정한 취재를 통한 편협한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에만 방송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 폐업시켜야 마땅하다”, “방송을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잘못된 논지나 추측성 내용 없이 팩트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보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시청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방송을 해야 함에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행태와 사업자 이익만을 위한 방송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널A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ooo 대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공정한 여론을 형성해야 민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대신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그동안에 사전 또 실시간 모니터링, 사후검증시스템 등 ooo개의 심의시스템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재승인 심사 기간 동안 별점이 ooo점이었는데 이번 재승인 심사 기간 동안에는 ooo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재승인 심사 때 오보·막말·편파방송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와 관련한 별점으로는 팩트 오류에 따른 객관성 위반 심의제재 ooo건을 제외하고는 양성평등이나 광고 관련, 방송사고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도 허위·조작 정보를 팩트체크하는 시스템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메인뉴스에 <팩트맨>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의 질의를 받아서 사실을 규명하는 심층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거의 매일 세상의 속설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잘못된 허위·조작 정보 등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검증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해서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의는 나중에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귀 사업자 (주)채널에이는 재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리고 오늘 심사에 임하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요? 가장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ooo 대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오늘 의견청취에 와서 의견개진하면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저희가 새로운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시청률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콘텐츠를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광고협찬도 늘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에도 제시했는데 저희가 꾸준히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다음 5개년 기간 동안에는 콘텐츠 투자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부족한 점은 콘텐츠 투자 관련된 계획이나 투자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장 부족한 점….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현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콘텐츠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분, “심사위원 D”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D**

- 오늘 아침에 안개가 엄청 심했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것은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ooo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이 두 분이시니까 편의상 사장님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D**

- 종합편성 사업자 중에서 오너가 대표 사장님 역할을 수행하시는 데 채널A가 상당히 특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책임경영이나 투명경영에 양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책임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일 수 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종편 승인받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속해 오시는데, 일단 투명경영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등 활성화되는 것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편성 쪽에는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 쪽에 재무나 회계 쪽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오늘 배석하신 분 중에도 전략팀장이나 여러분이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재무나 회계 쪽에 감사위원회 또 투명경영을 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채널A가 경영 측면에서 종편을 선도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권유를 드립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D

- 또 하나는 투명경영이나 책임경영 강화 측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것 말고 추가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심사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계 쪽에서 보강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 D

-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GDP 성장률을 0.00% 정도로 해서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자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편 승인 된 다음에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어제도 계속 저희 들어와 있는 동안 뉴스를 보니까 사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 같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충격을 받아서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혼약해진 상태에서 한 번 두들겨 맞았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게 사업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는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자체도 위축이 되어 있고,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더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드라마 촬영장소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오락물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출연자들이나 제작진들이나 기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조직에서나 어떤 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상당히 경영이나 또는 오퍼레이션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도본부의 경우 반드시 내근을 해야 하는 부서들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층에서 만약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제작시스템에서도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했었던 일인데 그것을 조를 짜서 노출빈도를 줄여가면서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팀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에 관련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떻게 보면 지속 경영 가능성 또는….

○ 심사위원 D

- 제가 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겠다, 오너시니까 사장님께서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투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채널A는 경영 외적인 외부 충격에서 지금 처음 겪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맞습니다.

○ 심사위원 D

-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 다 되셨습니까?

○ 심사위원 D

- 예.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자 질문 부탁합니다.

○ 심사위원 나

-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편방송사의 프로그램 상품 관련 내용이 현재 TV홈쇼핑사의 상품판매 방송과 연계 편성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 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을 비슷하게 시간대를 편성해서 TV프로그램과 상품광고를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채널A의 경우 <나는 몸신이다>, <닥터지바고> 같은 프로그램이 해당 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 ooo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홈쇼핑방송사와 시간대를 맞춰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유사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사례가 나타나서 저희도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시청자들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몸신이다>, <닥터지바고>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는 2개밖에 안 되지만 다른 방송사들을 보면 건강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방송사마다 많게는 5~6개까지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에서도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또 홈쇼핑사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

오기 때문에 건강식품 관련된 편성을 많이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간대에 조금 비슷한 시간대에 물리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고효과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은 심의를 더욱 강화해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꼼꼼하게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서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내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쇼핑과 관련된 것 중 의사들이 출연해서 동일시간대에 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출연 의사처럼 전문직에 대해서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의사의 방송 출연을, 오보·막말만 하는 패널들 말고 그 의사들도 자칫 동일시간대에 홈쇼핑 광고와 같이 연결됐을 때는 출연을 제한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 쭈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런 의사들은 출연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C

-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채널A가 <나는 봄신이다>라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징을 설명 할 때 홈쇼핑사들이 그 프로그램이 나간다는 것을 미리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전에 교감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동일한 시간대에 상품이 방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 쭈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저희가 편성정보를 홈쇼핑사에 일부러 넘겨주거나 하는 사전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하고 그 편성정보가 내부든 외부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된 이후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제작사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협찬한 협찬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저희 편성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케팅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정보가 내·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마

- 공정성 강화 프로그램 품격제고를 위해서 채널A에서 ooo개의 사전검증장치와 ooo개의 사후검증장치를 가동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청서에 다 기재되어 있고 시간관계상 다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ooo개 사후검증장치가 유사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ooo개 사후검증장치는 무엇무엇이고, 또 ooo개 위원회나 TF가 현재 잘 가동되고 있는지, 또 가동한 결과 그 효과는 있는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3가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ooo 대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ooo개의 검증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겹치는 분들도 있고, 겹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보도본부 주관으로 하는 검증시스템도 있고, 심의실에서 개최하는 검증시스템도 있고, 시청자 모니터단도 있고, 시청자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체크 기능이 있어서 보도본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층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마

- 그 답변이 전부입니까? 현재 잘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 결과 효과는 있고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재 심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상호 크로스체크인 기능을 하는 검증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내부 의견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검증시스템을 보도본부도 그렇고 심의실도 그렇고 확대 개편하기로 되어 있고, 여기 계획서에도 일부 명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심사위원 마

-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공정보도심의위원회, 공정성심의위원회, 공정성TF, 공정보도감시TF 이런 것은 서로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본부소위원회, 공정성심의위원회는 구성원도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위원회 TF 개수만 많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 예를 들면 시청자 모니터단, 시청자위원회 이런 것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 자주 개최하는지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합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시청자 모니터단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심의실장이 배석해 있는데 심의실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마

- 예.

○ 심사위원장

- 배석자께서는 저의 동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뒤에 배석자님이 손들어서 저에게 허가를 받으셔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배석자께서는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 쭈채널에이 심의실장

- 채널A 심의실장 ooo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기구가 여러 개 가동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재승인 기간 동안 별점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촘촘하게 가동을 해야 어디서든 새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구를 가동하고 있고, 그 결과 ooo점이라는 별점을 ooo점으로 줄일 수 있었던 데는 이런 기구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개최되고 있고 모두 ooo 분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열 분의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 저희가 답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주셨던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는지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위원회에서 팩트체크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개편하면서 <팩트맨>이라는 코너를 메인뉴스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 '가뭄의 심각성'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실제로 2주 동안 o차례에 걸쳐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심사위원 마

- 공정성TF와 공정성보도감시TF를 굳이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공정성심의위원회와 공정보도심의위원회 역할이 거의 중복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유사한 것을 ooo개씩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쭈채널에이 대표자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쭈채널에이 대표자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아마도 효율성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재승인 평가받을 때 제가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약속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채널A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번 심사 때는 ‘우리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는 의지와 또 그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철저히 보여드리겠다” 하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채널A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재승인을 받았고, 그 결과 제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후에 “이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 약속이다. 우리 방송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법정제재를 000점이나 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창피하다. 우리가 신문을 100년 가까이 해 온 회사가 어떻게 이런 공정보도와 관련해서 또는 품격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점수는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매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너무 속된 말로 뭐같이 굴어서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가 000점에서 이번 재승인 기간 동안에는 000점이라고, 000% 정도 수준까지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심사위원장

- “마 심사위원”님 잠깐만요. “다 심사위원”이 요청하셔서 질문하고, “마 심사위원”님은 추후 질문 하십시오.

○ 심사위원 다

- “마 심사위원”님 추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들이 약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에 앞서 할 질문들을 추가 형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청자 불만 관련해서 내역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 000건 이상 시청자 불만들이 접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법정제재 건수는 줄어들어서 법적인 지표상으로는 개선되어 보이지만 실제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문제들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로 각종 위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중 몇 부분에서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피드백 장치가 없다는 것이 회의 내용에서 있었습니다. 공정 관련된 심의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실장님의 말씀은 춤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피드백 장치가 없이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춤춤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또 말씀 주신 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면 시청자들의 불만들이 이렇게 대폭 증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쭈채널에이 대표자

- 000 대표입니다. 시청자 불만 제기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다

- 각종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 위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어떠한 내용들이 편성이나 제작팀에 피드백이 되는지”, 그랬더니 참석했던 회사 측 위원 한 분께서 “그러한 피드백 장치가 별도 있지 않지만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정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다른 측면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시청자 분들의 불만사항들이 ooo건 이상 증가되는 것들이 이러한 위원회들이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보도본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심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의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회의 결과나 평가 결과를 저희 온라인 시스템에 바로 올리고 보도본부뿐만 아니라 관계된 제작부서에 즉각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검증시스템은 보도본부는부장단 회의를 하루에 0번씩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검증시스템의 최고 책임자가 그 결과를 바로 그다음 날 제작회의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마 심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마

- 추가보다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외부에 우리는 0개나 사후검증장치를 둘다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유사한 기능은 내실 있게 통폐합해서, 이렇게 0개나 해서 유사한 것이 여러 개 있고 구성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소해서 양보다는 질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실천할 수 있는 약속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라

- 저도 앞서 이야기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0개 정도지요. 사전·사후시스템을 거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대신 질문하셨던 ‘국민이 묻는다’ 같은 의견청취를 보면 이것이 12월 것입니다. 12월에 의견접수를 한 것인데 대다수 80% 정도가 답변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 와서 조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한 내용들이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팩트가 비틀기, 추측성 발언, 편향, 편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귀사에서 보시는 공정성의 관점이나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내부적 컨트롤 시스템도 중요 하지요. 그리고 잘 작동되어야겠지요. 그것을 잘하시면서 더불어서 내부적 시스템과 관련 없이, 내부적 관여 없이 제3자가 외부에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좀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사를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2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체널에이 대표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 방송법 제6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정파나 어느 한 시각을 가진 집단이나 국민들의 의견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양측 의견을 같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보고 판단은 시청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널 섭외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양측 의견이 같이 표출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더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외부검증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도 꼼꼼히 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기구를 만들어서 위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라

- 예.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 부탁합니다. “심사위원 바”입니다.

○ 심사위원 바

-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불만처리와 관련해서 2017년~2019년까지 시청자 상담실의 전화상담을 통해서 연간 한 000건의 시청자 불만이 접수되고 처리되었습니다. 불만 내용을 보면 내용 불만과 출연자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 00% 정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00% 불만처리에 대해 이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서도 시청자 불만을 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불만 내용 대부분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00%대 전후인데 이 내용도 어떻게 불만처리가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시청자 불만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구현하시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 ooo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불만 가운데 저희가 바로 시정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돌직구 쇼>에서 한 출연자가 ooo 사무관 예를 들면서 “ooo를 패스하고 ooo에서 일했던 그런 엘리트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이 시청자 불만으로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시청자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제작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또 어떤 출연자는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 이런 표현을 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스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시청자 불만이 바로 방송 직후에 제기가 되어서 그것도 바로 전달해서 이런 용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작진에게 당부를 했고, 그리고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불만에 대해 조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면 그것들을 모아서 전체 제작진들에게 전달을 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고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 시청자 불만 건수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ooo건 이상 증가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받다 보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해 주시는 분들이 불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의견제시에 가까운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불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수를 다 기록해 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견 제시인데 불만으로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2017년도에 ooo건 정도였는데 그것이 2018년도에는 ooo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도에는 ooo건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서 ooo건 정도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꼼꼼히 살피고 있는데 홈페이지만 가지고 이용이 불만스럽다는 건수는 2017년도에 ooo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이것은 전체 불만건수 대비 홈페이지만 놓고 보면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대비로 보면 상대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신 분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바

- 한 가지 추가 질문 있습니다. 불만에 대한 이행률이 oo%입니다. 불만접수를 받으면 전화나 홈페이지에 불만을 이야기한 시청자에게 남겨서 다시 이행한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이행처리율이 oo%가 나오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oo%가 나오는 것이지요?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피드백을 다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혀락해 주시면 심의실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1분 정도 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심의실장

- 채널A 심의실장 ooo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상담실로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oo%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작진에게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 부분들은 생방송 중 어떤 불만이나 의견이 왔거나 아니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청자 상담요원들이 직접 부조정실로 전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방송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담입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진소처럼 채널A가 다른 방송사에서 보지 못한 위원회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F

- 제가 하겠습니다. 채널A는 재난경보조기방송시스템 같은 일부 모범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UHD, 5G, AI 등 이런 신기술들이 요즘 방송 서비스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UHD가 국내에 2019년도, 5G가 작년 그리고 AI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방송제작이나 서비스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UHD 제작설비 도입 관련해서 2019년도 계획분이 다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된 사유를 UHD 표준 자연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일단 자연되고 있는 해당 표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넷플릭스가 급격하게 국내 방송시장을 점유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NHK 같은 경우

에는 AI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바로 서비스에 도입되어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른 기술변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을 보더라도 그런 쪽 전문가도 보이지 않고 어떤 전략이 제시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2가지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ooo 대표입니다. UHD는 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되고 있는 장치나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드리고,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국산 장비도 도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 심사위원 F

- 그것은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장

- 대표자님이 어려우면 뒤에 배석자에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배석자는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경영지원본부장

- 채널A 경영지원본부장 ooo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경영지원본부장

- 채널A는 2017년에 상암 DDMC 후반작업 시스템 및 스튜디오 증설과 더불어서 광화문 제작 시설에 상암 DDMC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린 UHD 투자는 2019년~2021년까지 UHD 전환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UHD 기술표준이 자연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기술내역은 장치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 심사위원 F

- 제가 기술표준 목록을 다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준 미비를 이유로 계획하신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표준이 무엇인지 표준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 적용하는 TTA 방송기술표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 코드명을 알려주시고, 아니면 표준 명칭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가가 아예 없고 외부의 방송기술 표준화 활동이나 실적이 전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채널A뿐 아니라 다른 PP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무지하고 이쪽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보면 팩트가 아닌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그것을 근거로 대시는, 제가 봐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인지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 생존전략도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보완을 약속하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충고 받아들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 “C 심사위원”님.

○ **심사위원 C**

- 저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발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관련해서 해외 기업과 콘텐츠 공동제작을 하고 일부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포맷 매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하트시그널> 같은 경우 포맷 매출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실제 해외기업의 콘텐츠 공동제작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포맷이나 콘텐츠 판 금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굉장히 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콘텐츠 제작하겠다, 네트워크를 확보하겠다, 수출 권역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한데, 차라리 과거 연도에 발생했던 수출금액과 제작 규모 등을 가지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지금 저희가 당장 해외에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포맷을 판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액수와 사례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C

- 첫 번째는 원래 종편의 설립 취지 자체가 글로벌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하고, 캘러콘텐츠가 없어서 수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생존과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C

- 그러면 추가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회

-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회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위원 가”.

○ 심사위원 가

- 귀사는 2011년 4월 21일 종편 승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당시에 채널A 출자 과정과 관련하여 ooo, ooo, ooo, ooo 의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의 공통점은 채널A가 승인 당시 주주였던 회사들이 명의만 대여했거나 동아일보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대가로 출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법상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이고, 일간신문사의 소유제한 규제인 30%를 넘는 것으로 방송법 제1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 또는 관계자로부터 동아일보가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채널A에 대한 출자를 대가로 부당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등 채널A 출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회

- 일단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미흡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최대주주

- 동아일보 ooo 부사장입니다. 여러 건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ooo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7년 전 2013년도에 ooo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뒤에 검찰수사를 거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ooo와 관련된 것입니까?

○ (주)채널에이 최대주주

- 예. 아마 제기된 의혹 요지는 ooo라는 회사가 채널A에 명의만 빌려줬지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ooo은 이미 종편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투자의향을 밝히고 그 투자의향서까지 작성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종편 선정 당시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만 준다, 나중에는 2개만 준다, 그래서 황금을 낳는 거위다, 혹은 아니다 등 여러 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자본금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 컨소시엄에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4개가 되면서 예상과 달리 많이 나오면서 투자를 포기하면서 실권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 아마 초기 판단과 사후 판단이 달라졌고 자금 사정에도 혹은 투자 동기에도 변화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ooo에서는 그 당시 이미 투자의향서를 다 밝히고 제출했는데 아마 당시 자금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ooo은 그것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한 달 뒤에 팔아서 바로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돈의 흐름이나 주식의 흐름으로 보면 이것은 당시 제기된 의혹처럼 차명주주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래부터 출자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주금납입에 따라 일정 기간 주주 권리를 보유했다는 점들을 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ooo의 출자금액은 ooo원이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ooo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면 다른 의혹을….

○ (주)채널에이 최대주주

- 그리고 ooo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ooo은 그때 저희들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휴양시설 같은 것 타운하우스를 하나 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미 그전에도 사원용 휴양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ooo에도 있고 ooo에도 있고 ooo에도 있는데 그 당시 ooo에 있는 휴양소 하나를 팔아서 다른 대체휴양소가 필요했고, 그것을 이쪽에서 타운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목적과 맞아서 이것은 전혀 별개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엮어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 형태로,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들이 아주 많아서, 타운하우스가 실현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사소송도 벌어졌는데 법적으로 그 뒤에 문제가 다 해결된 사안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하면….

○ 심사위원 가

- ooo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고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 (주)채널에이 최대주주

- ooo 건에 대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ooo이 저희에게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지금까지 문제 된 적이 없는,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저도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ooo 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된 바를 들어보지 못해서,

나중에 혹시 심사위원님께서 별도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질의에 응답이 되었습니까?

○ 심사위원 가

- 예. 해당 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고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쭈채널에이 대표자

- 어떤 건에 관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심사위원 가

- ooo과 관련해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oooo년 0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쭈채널에이 대표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무혐의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가 심사위원”님, 무혐의 사건 자료를 받으셔야 하는지, 아니면 무혐의와 관련 없는 것을….

○ 심사위원 가

- 주요 내용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법상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일간신문사 소유제한 규제가 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oo% 이렇게 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했던 자료와 마지막에는 무혐의받은 결정문, 그리고 4가지 중 ooo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고발된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간단한 페이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쭈채널에이 대표자

- 알겠습니다. ooo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정리해야 할지….

○ 심사위원 가

- ooo이 채널A에 ooo원 출자한 대가로 ooo 주식 ooo주를 매입한 부분이….

○ 쭈채널에이 최대주주

- 제가 동아일보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ooo,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 동아일보에서 투자 차원에서, 동아일보가 ooo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회사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ooo 등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 심사위원 C

- 제가 정리를 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심사 단계에서 이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재승인 심사 기간 현재 최대주주께서 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약해 주시고 확약서를 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반사실이 없고, 향후에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재승인 취소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검찰이 아니고 밝혀내기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그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의결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C

-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일단 최대한 자료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최대주주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 심사위원 A

- 채널A가 종편방송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잘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더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방송의 주력부대는 역시 제작과 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 측면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예로 채널A는 2019년 기준으로 약 ooo원이 넘는 콘텐츠 투자를 했고, 2020년에는 약 ooo원 정도 투자를 하실 예정입니다. 대개 편성과 제작 전략 쪽으로 간다면 아마도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주의 비율이 있을 것이고, 구매의 퍼센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비율이 대략적으로나마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그 구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는 지금 현재의 우리 방송과 통신, 방송 영상을 다 아우르는 산업군의 거대한 변화에 비춰놓고 볼 때 이것이 채널A만의 독자생존이 아니고 플랫폼사업자들, 국내외 플랫폼사업자들과의 공생의 문제, 전체

생태계의 유지에도 채널A가 어떤 공헌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투자액의 활용 비율과 전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

- ooo 대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외주 제작 플러스 국내 프로그램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고, 저희가 자체제작하는 비율이 절반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매출 대비 투자계획이 ooo% 가까이 되고, 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수급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랫폼과의 상생도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국내 IPTV나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외국 OTT 기업과도 많이 협업하고 프로그램도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는 단지 저희 프로그램을 판매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제작하고 기획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 다른 PP들이 많이 있는데 그 PP들의 경영 상황에 맞춰서 저희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PP의 형편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판매가를 조절해서 방송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A

- 예를 들어 ooo나 ooo나 ooo 같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과의 제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외국 글로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주력부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예. 저희는 이미 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본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ooo을 비롯해서 이런 쪽과 협업하고 저희 프로그램이 일부 그쪽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만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도 약간씩 늘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고, 특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 시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B

- 저는 선거방송 공정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올 4.15 총선을 비롯해서 앞으로 대선, 지방선거가 쭉 이어질 텐데, 방송사의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널A의 경우 2012년~2018년 사이에

선거방송 관련하여 심의제재가 oo건에 이릅니다. 이것은 종편·보도채널 4사를 합쳐서 과반 수가 넘는 수치입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법률 준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분석이 어떤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또 2016년 20대 총선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oo건의 법정제재도 받으셨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 또 앞으로 항구적인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 쭈채널에이 대표자

- ooo 대표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방송은 평소에도 물론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하지만 훨씬 더 중요성이 강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보나 편파방송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민주적인 여론 형성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 자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 기간 중 포함되어 있는 선거가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법정제재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널A는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4개 원칙을 가지고 사전검증 모니터링,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원칙은 공정성·객관성·균형성·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거방송 준칙도 만들어져 있고, 선거 한 달 전에는 저희 내부 보도본부장 지휘 아래 부본부장, 정치부장, 관련된 부장들 중심으로 공정성선거TF를 만들어서 보도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패널 섭외의 균형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운영하는 시청자 모니터단에 선거 분야를 중점 모니터하는 공정선거보도 모니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초부터는 외부전문가들로 선거보도공정성 평가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이분들과도 공약 평가를 비롯해서 같이 협업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B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E

- 저는 경영·재정 분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2017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실제 2017년 ~2019년까지 현황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신 사업 계획을 보면 물론 코로나19 이전에 제출하신 자료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내 경제성장률을 0~0%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0%보다 훨씬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제, 국내 경제 상황과 더불어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거의 원점에서 점검해서 수립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방송 콘텐츠 투자 계획을 보면 향후 5개년간 평균 oo원 정도, 5개년 다 합하면 oo원을 넘는 수준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자본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항들을 어떤 불확실성을 예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

겠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 있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2017년 당시 재승인 계획 때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채널A가 적자폭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저희가 드라마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 쪽을 잘 아시는 심사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드라마의 제작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회당 제작비 비용이 저희가 채널A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사실은 매출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연자들에 대한 제작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확실한 담보가 되어 있는 출연자는 몸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는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막힌 상태에서 결국은 이 사람을 써야지만 국내 시장에서라도 히트 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쓰이는 주연들은 계속 쓰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 편성을 늘리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드라마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방송의 꽃은 드라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자를 감안하고서도 꾸준히 드라마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드라마를 상반기에 0개 편성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0개, 0개 정도 편성할 예정인데,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잡혀 있는 드라마 편성을 조금 내년으로 늦추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저희가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채널A가 '이만큼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 약속서를 쓰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 이상씩 다하셔서 저희 약속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분이 추가 질의를 요청하셔서 한 분의 추가 질의를 받고 질의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라

-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모두 발언 하실 때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향후 5개년 동안 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지요?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아닙니다.

○ 심사위원 라

- 그런데 사업계획서 264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5년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소개 해서 총 oo%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도 분야가 이 4개를 다 아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뉴스만 이야기하신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라

- 설명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oo%라는 것이 4개 프로그램을 다 아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도 뉴스만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보도프로그램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라

- 그러면 보도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에는 o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보도, 오락, 교양….

○ 심사위원 라

- 법적으로는 비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서는 향후 5년간 뉴스는 oo%,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까지 해서 총 oo%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oo%가 이 4개 프로그램을 다 아우르는 것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뉴스만 oo%를 하면 오히려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뉴스라고 세부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방통위에서 요청하신 4개 세부 장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스트레이트 뉴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스트레이트 뉴스는 아니지만 저희 보도·시사 프로그램 중 보도 장르에 구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oo%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oo%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사프로그램 중에도 교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쳤을 경우, 그러니까 보도 장르, 교양 장르 합쳐서 전체 보도·시사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합이 oo%라

는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 라

- 그러면 oo%라는 것은 뉴스와 탐사보도라는 것이지요?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조금 미흡하더라도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고 의견청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ooo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것은 채널A를 경영하는데 잘 녹여서 경영하겠습니다. 아까 한 심사위원님께서 채널A의 철학 또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널A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앞서 위원장님께서 시청자들의 불만 중 채널A가 가짜뉴스, 왜곡보도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됐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2017년 심사 때 별점을 ooo점이나 받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법정제재 건수를 이렇게까지 대폭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 시청자들께는, 또는 여기 계신 일부 심사위원님들께는 채널A가 막말·편파·오보를 하는 방송사로 각인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 스스로도 상당히 창피했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꾸준히 법정제재 건수, 수치적으로 딱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법정제재 건수와 별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널A가 공정하고 또 정확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방송사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일 때문에, 3년 전까지 했었던 일 때문에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그런 오해가 다 풀릴 때까지 시청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널A의 철학을 말씀드리면 앞서 한 위원님께서 신방 경영 또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거나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의 전문가가 경영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은 저희 채널A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분들은, 저희가 채널A를 처음 개국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 내부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여러 분들을 모셔다가 제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스스로 젊은 친구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우리의 색깔을 낼 수 있는 프로듀서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방송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은 기준에 좋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은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작할 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에서 이미 검증된 PD들에게 엄청난 양의 스카우트 비용을 주고 스카우트를 하지 않고 저희가 스스로 젊은 수습사원들을 뽑아서 PD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 만 4년밖에 되지 않은 PD가, 사실 방송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 4년밖에 안 된 PD가 5년차 때 처음으로 채널A가 처음부터 기획한 <열두밤>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젊은 친구에게 주면서 “그래, 네가 한 번 해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그 드라마로 대박을 치겠다는 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비용을 순수하게 그 친구에 대한 교육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000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000원을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비로소 채널A에 이제 조금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PD가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능 분야에서도 초창기 때 입사한 친구들이, 또는 그중에서 한 3년차 만에 아이디어를 내서 <개밥 주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그만큼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외주제작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방송 생태계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채널A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저희도 스타PD가 나오고, 또 지상파나 tvN에서 보이는 스타PD들처럼 그런 훌륭한 PD들이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심사위원님께서 잘 해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곧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주)채널에이의 000 대표님, 000 대표님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주)채널에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신청인 퇴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5분, 2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조선방송(TV조선)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주)조선방송(TV조선)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조선방송(TV조선)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주)조선방송(TV조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주)조선방송(TV조선)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대면방식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소리를 높여서 하셔야지 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조선방송(TV조선) 대표자이신 ooo 님.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ooo 님.

○ (주)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ooo 님.

○ 주조선방송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질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주로 해 주시고, 혹시 대답이 조금 곤란한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석자가 답변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까? 대표님.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작성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ooo 대표님 모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님들 앞에서 TV조선 대표이사로서 방송 전반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진실 되고 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은 2011년 12월에 개국했습니다. 8년 4개월 된 신생 방송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조선이 완전한 방송사 기준으로 볼 때 60%~70% 정도의 틀을 갖춘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처음 이익을 실현한 2015년 연간 ooo원이던 순제작비가 2019년 지난해 ooo원 정도로 2개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ooo원 안팎인 지상파와 비교하거나 ooo원대에

도달한 타 종편사와 비교할 때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TV조선이 완전한 종합편성 채널로서 소임을 다하려면 아직 채워야 할 공간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연중 드라마 제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작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남북의 눈물>, <실크로드>, <아마존 기행> 같은 고품질 탐사다큐 프로그램도 점차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항전 A매치 스포츠 이벤트나 영국 프리미그 같은 국제 스포츠도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선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을 대형 공개홀로 초청해서 수준 높은 음악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방송법이 규정한 공정한 방송, 품위 있는 방송,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 측면에서 볼 때 TV조선은 지난 3년간 그 이전 3년에 비해서는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이 아직도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확실히 진일보한 방송사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해서 더 나은 내일로 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장께서는 (주)조선방송(TV조선)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방통위에서 접수된 질문을 심사위원장인 제가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묻는다’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강화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시청자를 대표하여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이신 (주)조선방송 관계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묻는다’의 내용입니다. 시청자 의견청취와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서 이런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방송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균형이 전혀 없는 언론의 존재는 좌와 우 진영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 “편파적 시각으로 극단적인 여론형성에 몰두하는 해로운 방송국이다. 반드시 퇴출시켜 국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전 대통령 및 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서 방송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시청자들은 귀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규

정 제12조제2항은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편향적인 방송,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불안 야기, 극단적인 여론 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표자님 또는 관계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대표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었고, 그 이후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소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균형성이라도 먼저 이루어한다고 판단하고, 그러려면 여야 각 정당에 패널 추천자 리스트를 보내서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출연자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2차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각 정당으로부터 000명에 달하는 패널 명단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마지막으로 000으로부터 000명의 명단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예를 들자면 그중 정당 추천인 중 000명이 저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연 인원으로 따지면 000명 정도가 출연했습니다. 이 중 여대 야의 균형은 000 0대 야권 인사 0의 비율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비판하신다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할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외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폐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점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쳐 나가서 향후 TV조선이 공정성 시비가 걸리기 않을 때까지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인 저부터 솔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대표님께서 ‘국민이 묻는다’에 대한 시청자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격적인 위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TV조선 채널은 재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또 오늘의 심사에 임하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지난 2017년 3월에 재승인 받으면서 저희들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가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방송사다, 공정하지 못하다, 편향적이다, 막말, 품위 없는 방송이 거칠게 나간다,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객관성·공정성, 막말·품위유지 이 조건에 관해서 연간 4건 이하로 법정제재를 관리하라는 특별 명령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련을 겪은 이후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 두고 제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지난 3년 1,100일 가깝게 매일 매일이 소리 없는 법정제재와의 전쟁을

별어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조건부 재승인 연중 4건 이하 관리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당시 그 이전 3년에는 연간 oo건에 가까운 법정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건 이하 관리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모두들 공포심에 가까운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키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맡은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ooo의 <정치옥타곤>, ooo의 <라이브 쇼>, ooo의 <왜?> 같은 3개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법정제재 과다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진아웃제 등을 통해서 조건부 재승인 법정제재를 1건이라도 받은 경우 진행자, 출연자 모두 하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ooo이 <신통방통>에서 하차했고, 지난 2월에도 ooo 부장이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음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생방송 중인 시사프로그램에 잘못된 내용이 나갈 경우 즉각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심의조직도 한 팀에서 세 팀으로 늘려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월 o회씩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 결과 3년간 저희에게 부가된 조건부 재승인 법정제재 요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정제재도 그 이전 3년에는 53건에서 지난 3년에는 8건으로 85%를 줄일 수 있었고, 행정지도도 260건에서 84건으로 68%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터치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맡는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TV조선,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TV조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각 심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D

- 대표님,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되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D

- 아까 모두 받은 말씀 중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겸손의 말씀도 하시고 70점밖에 못 받았다,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종편도 그렇습니다만 역할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편 승인이 2011년도에 났기 때문에 1997년 IMF, 2008년 국제경제위기, 이번 코로나19는 종편에서 겪어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물이나 금융 쪽이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망가지고 여파가 엄청나게 갈 것이다, 이 부분은 종편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 업계 쪽에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당장 광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사이기 전에 방송사에서 공정한 것도 해야 하고 다해야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기업으로 살아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조직 구성원들 고용도 하고 있고, 드라마 하다 보면 외주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TV조선 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보수적인 재무구조가 상당히 장점으로 이럴 때는 나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관련해서 TV조선 채널에서 비상경영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드라마, 스포츠, 콘서트 한다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허리띠를 줄라매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명경영 측면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외이사들이 보니까 주주사와 관련된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ooo, ooo 고문부터 해서 사외이사들이 주주사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 관련된 사항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상시국에 대비해서 경영이나 회계 관련된 외부전문가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코로나 건과 관련되는데 향후 추정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첫 번째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자금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향후에도 이런 기조를 가져가져 가실 것인지 3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은 2019년 ooo~ooo원의 매출구조에 ooo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편이 출범한 이래로 한 종편사가 결 수 있는 연중 최다 이익의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규모도 저희들은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부터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미스트롯>을 런칭하면서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매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초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을 결산한 결과, 그런 성적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시장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아시다시피 한 방송사가 연간 ooo원 가까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 속에 있고, 올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1월부터 oo% 시장 축소가 있었고, 2월~3월에는 작년 대비 oo% 정도 방송시장이 축소되는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송시장은 모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저희들이 거둔 경영 성적은 <미스트롯> 때문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TV조선의 경우는 지상파가 2019년 6월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제작비를 축소하고 축소경영에 나섰지만 저희들은 연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단독 본사 건물을 갖지 않고 셋방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직은 외형적인 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는 국내 어느 방송사 못지않게 전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IMF 같은 위기 구조가 오더라도 TV조선은 경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매일매일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한 차례씩 받아서 재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경영적으로 약한 고리에 대해 진단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회계·경영 파트에서 외부전문가를 모셔 오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세밀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편 3사는 출범할 때 000~000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조선은 000원으로 그리고 다른 데보다 000원 적은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당초 그렇게 자본 규모를 최소화한 것은 당시 지상파에 계신 방송전문가들이 “지금 방송시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경험이 없는 신문사들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살아남지 못한다. 아마 TV조선이 가장 먼저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모두 다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경영전략을 그 기조에 맞춰서 지금까지 대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5년부터 매년 어느 정도의 흑자를 5년간 시현해서 지금까지 누적 흑자가 000원 정도 되고, 000원 자본금 중 순적자는 000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나 내년 저희들이 잘 이겨낸다면 순적자 제로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회계 측면에서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의응답이 되셨지요?

○ 심사위원 D

- 예.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나

- 저는 홈쇼핑과의 연계 편성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을 비슷한 시간대에 편성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방송의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내 몸 사용 설명서>나 <내 몸 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대표자님이 하지 않으시면 편성책임자가 하셔도 됩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되도록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지금 TV조선은 소위 말하는 교양·생활정보 프로그램을 매년 10개~11개 타이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상파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타이틀이 하나이기 때문에 타이틀로만 보면 아마 2개 타이틀로 해서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범 이후 시장조사를 해 보면 가장 시청자의 니즈가 높은 부분이 역시 건강, 생활, 인테리어 그다음에 여행, 가구 등 생활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현재 10개~11개 프로그램을 해서 1주에 000분 정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000가 000분 정도 내보내고 있고, 종편에서 가장 많이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1주에 000분 정도 내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홈쇼핑 연계 부분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한 2~3년 전부터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2018년에는 방통위로부터 TV 조선이 현장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TV조선 미디어렙이 또 한 번 방송통신 위원회의 현장실사를 받았습니다. 그 두 번의 실사 결과,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홈쇼핑과 무슨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나중에 보면 홈쇼핑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그 광고주들이 그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종편이나 지상파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방통위도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로운 처방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나

-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73조에 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연계 편성의 문제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지요. 프로그램과 광고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상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고지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모든 정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실무진들이 매일매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협찬을 받아서 제작했더라도 시청자들이 가장 필요한 형태로 저희들이 제공해서 그것이 협찬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도의 제작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들도 들여다보면 너무 뻔한 그런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게 그렇게 질적으로 낮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고도화하고 품질을 높여서 그런 심의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제작진의 가장 큰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로 다른 편성 관련된 사업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의사나 이런 분들이 건강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녹화됐을 경우 그 시간대에 다른 홈쇼핑 채널에 들어가면 그분이 생방송으로 나와서 어떤 물건을 파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보입니다. 혹시 그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의사들이 진행하는 경우 출연을 될 수 있는 대로 편성책임자께서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의사들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연예인들은 조금 예외이지만 전문가들이 나서서 하고 동 시간대에 방송이 진행됐을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약속이 가능하신지, 편성책임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런 의사들에 대한 출연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지 연계판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 (주)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고맙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 (주)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다음 이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마

- 000 조선일보사 사장님이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TV조선 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시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마

- 2020년 3월에 임기가 끝나던데 아직 주총 하지 않았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7일에 할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 마

- 그러면 그때 또 새로 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이사회 의장은….

○ 심사위원 마

- 의장 맡고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냐는 것입니다. 이사 임기가 금년 3월로 끝나는데, 지금쯤 주총(안)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 되는 것이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 마

- 10일 전인데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제제기하신 대로 아마도 이사로 또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 심사위원 마

- 그렇지요. 당연히 되겠지요. 10일 전인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최근 방송사를 비롯해서 주식회사의 경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또 이사회라는 것이 모든 법인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나 의장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ooo 사장이 10년째 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의사는 없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굉장히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V조선 이사회는 다른 이사회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7인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ooo 조선일보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또 2대, 3대, 4대 각각의 주주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TV조선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대 주주가 마음대로 전횡하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닌지 직접 경영을 감시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2대, 3대, 4대 주주가 이사를 파견하거나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명 이사 중 0명이 2대, 3대, 4대 이사들이 대주주가 추천한 쪽에서 0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중에 2대 주주에서 파견한 이사는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대 주주 쪽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이사회 구조로 볼 때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은 저희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편사의 경우 1대 주주가 대표이사까지 겸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유와 경영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주주는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이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이견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사회 의장님께서 경영과 편성에 대해서 보도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리고 이사회 의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TV조선 행사에 얼굴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마

- 이사회에서 TV조선에 투자나 방향을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얼마 할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다하지요. 모든 법인이라는 것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들이 결정해서 이사회 추인을 받습니다만 이사회 의장이 TV조선 투자에 대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 이사회에서 보고를 합니다만….

○ 심사위원 마

- 그런 중요한 결정 권한이 없는데 왜 굳이 의장을 합니까? 의장을 할 필요가 없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의장을 하지만 경영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에게 맡깁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마

- 그리고 다른 회사가 대표도 겸한다는 곳 있지 않습니까? ooo이나 ooo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아주 많이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자위원회에 대해 물겠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다양한 시청자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겸중도 받고 또 좋은 제안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나 내실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도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 구성은 다양화하고 말은 그렇게 써 놓았는데,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TV조선 시청자위원 구성은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oo명 중 미디어·방송연예 관련 교수가 o명입니다. 나머지 o명도 변호사 o명 빼고는 플래닝팀 국장, 어디 플래너, 유튜브 콘텐츠 파트너십 수석부장, 한 o~o명이 방송연예계 계통 종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양한 시청자 계층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미흡합니다.

제가 다른 곳 예를 들어 그렇지만 다른 종편 하나와 보도채널 하나는 미디어·방송연예 관련 교수가 o명~o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o~o명은 소비자, 경제, 과학기술, 소외계층, 인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청자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o~o명도 많은데 o~o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너무 형식적입니다. 다양한 계층 의견을 어떻게 듣느냐고요? 온통 미디어·방송 전문가들 이야기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TV조선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 o~o명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o~o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새로 구성할 수 있을까 봤더니 또 작년 12월에 구성해서 임기가 2021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내년도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다음에 새로 구성할 때는 정말 다양하게 다른 곳을 참고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잠깐만요.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방통위 규칙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등 여러 단체들의 인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향후 그것을 준수하겠다고 해야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위원회가 ooo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ooo분이 대학에서 미디어 쪽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ooo분 중 미디어학을 또는 방송을 직접 전공하신 분은 ooo분이고, 나머지 ooo분은 방송 쪽에서 15년 또는 20년, 30년 현장 경험이 있는 PD 또는 보도를 하시다가 전직을 해서 학교로 가신 분 ooo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송 경험이 아무래도 다른 대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을 모셔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제대로 듣고, 또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를 제대로 받는 것이 좋은 방송에 빨리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

해서 방송 경험자들을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포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 시청자위원도 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30대, 40대 젊은 층도 고르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들은 저희들이 시청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부 시각에 또는 심사위원님들 시각에 다양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성할 때 그 점을 유념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 심사위원 마

- 신청서 99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무슨 ooo명입니까? 교수가 ooo명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세 번 다 방송·미디어연예 쪽 교수가 ooo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미디어플래닝팀 국장, 미디어플래닝팀 국장도 미디어 계통이지 않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은 광고 협업부서 국장입니다.

○ 심사위원 마

- 그 사람이 3년간 세 번 계속 했는데, 어쨌든 그쪽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ooo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런 계통은 o~o명밖에 없고, o~o명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경험이 일천해서 그렇다는데 ooo은 경험이 많습니까? 그쪽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려고 충실히 구성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TV조선도 추천 단체는 꼽고루 했습니다. ooo협회, ooo협회, 문화, 언론학술, 여성단체, 사회계층 등, 그런데 그쪽 사람들 추천을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연예학과 교수 이쪽 사람들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은 단체로 법에 있기 때문이….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마

- 예.

○ 심사위원장

- 질의가 조금 오버됐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3분 정도만 답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를 1분 내로 질문했으면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라

- TV조선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7년 재승인 이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과감하게 프로그램

폐지도 하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자들이 보는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방통위에서 ‘국민에게 묻는다’는 시청자 의견청취를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들어봤는데, 다른 사보다 TV조선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습니다. 17,000명 정도, 다른 사들은 8,000명 내지는 보도PP는 2,000~3,000명 수준인데, 그만큼 TV조선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응답자들의 75% 정도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TV조선의 공정성 훼손에 어떤 측면이 문제냐는 부분에서 ‘팩트를 왜곡한다’, ‘추측성 발언을 통해서 편파하고 그다음에 편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적입니다.

또 2018년도에 방심위가 TV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했던 내용이 대부분 행정지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언론시민단체가 시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검증해 봤더니 그중에서 대부분 가장 중한 징계인 ‘프로그램 폐지’ 내지는 ‘관련자 징계’가 합당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든 것은 국민들이 보는 공정성에 대한 시각은 TV조선이 생각하는 시각과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나름 TV조선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자 일진아웃제, 제작진 이진아웃제, 프로그램 삼진아웃제 등 강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73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이 제작 및 섭외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계제도를 운영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의 방향이 어떤 식인지, 지금 말했던 아웃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정성의 관점 차이나 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잘해 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부적 장치 외에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진단해 볼 수 있는, TV조선 내부의 시각이 관여하지 않는 그 속에서 외부의 진단을 받아보는 보는 시스템을 한 번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소 질문이 길어졌지만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3분을 넘기지 않는 수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바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편향적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끈을 놓지 않고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일진아웃, 이진아웃, 삼진아웃제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저희들이 그 이전 3년 보다 지난 3년이 많이 개선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3년간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출연자 000명 정도를 지난 3년간 출연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편사에서 법정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경우도 000명 가까이 출연정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그분들이 만약 저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진아웃제, 이진아웃제, 삼진아웃제 취지와 정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다음 재승인 기간에는 제대로 지혜롭게 처방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객관적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로 반드시 진단을 받아서 공정한 검증을 한 번 받아서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라

- 제 첫 번째 질문에서 아웃제에 대해 길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개선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신과 취지를 그대로 저희들은 살려서 앞으로도 심의제재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심사위원 라

- 결국은 개선하는데 아웃제는 폐지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그 정도로 줄이고, 추후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기하시는 동안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바

- 앞에 질문하셨던 분과 약간 연관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부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방송특별위원회를 꽤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개선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들은 공정보도특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그날 보도본부장에게 지적내용 전문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표이사인 저에게 문서로 지적사항 전체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개별 제작진 PD나 또는 부장이나 해당 부서에 그 사안에 대해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도본부장이 다음 공정보도위원회가 열릴 때 문서로 어떻게 시정했는지에 대한 문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정보도특위에 그것을 보고하고, 시청자위원회도 문서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 심사위원 바

-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TV조선은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이 방송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 이탈주민 관련 프로그램이 타 방송사보다 많이 기획되고 방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대한 <모란봉 클럽> 같은 프로그램이지요. 진실성, 객관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북한을 희화화시켜서 시청자들에게 북한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로 나오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선정 기준,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대한 확인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저희 제작진이 크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의 신분을 숨긴다든지, 자기가 실제 탈북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르게 포장을 한다든지, 또 직업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이야기해서 출연하는 일들이 왕왕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탈북자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또는 통일부로부터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거르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과 면담해서 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국내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검증해서 일단 출연시키고,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탈북자들이 보고 즉각적으로 저희 시청자센터나 프로그램 책임자들에게 문제제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후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정밀한 기준, 관계당국이 저희들이 명단을 내면 그 출연자 명단리스트를 보고 검증해 줄 수 있는 협조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전에 좀 더 면밀한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바

- 그러면 계속 출연자들과의 면담내용을 기준으로 이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없다는 것 입니까?

○ 주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화 당일에 전문가들이 다 현장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정확하게 팩트라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막으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남북평화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F

- 제가 방송기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 관련된 투자 실적이 계획 대비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재승인 신청 당시 계획상으로 제시했던 UHD 제작장비 투자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기로 계획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이행했다고 명시하셨고, 미이행 사유로 UHD 표준이 미비하다는 사유를 적어놓았습니다. 해당되는 미비됐다는 표준이 어떤 표준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술 쪽 관련 신청서를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배석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요즘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HD, 5G, AI 등이 방송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고, 사실은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송사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TV조선은 그런 것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장비와 기술투자를 000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편사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술투자와 관련해서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F

- 대표님, 죄송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기술 파트 작성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리고 기술표준이 미비되어서 2019년도 이행사항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술표준이 무엇인지, 미비되어 있는 표준이 무엇인지 일단 그 2가지는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술투자에 대해서는 2가지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국 10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TV조선 본사 건물을 마련하고 이전해야 할 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기술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과정이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UHD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19년에 지상파 쪽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다 지금과 같이 방송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UHD를 계획대로 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래서 시기를 다소 유보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통위의 UHD 일정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면 철저하게 준수하고 투자 할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 F

-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기술 표준이 미비하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F

- 팩트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 쪽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나중에 자료 보충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자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B

- 저는 법정제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이 계속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라고 많은 불만이나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2017년 이후 많은 노력을 해서 25건에서 4건 이하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7년 2월에 4건이 있었기 때문에 8건입니다. 심의 처분 8건, 그리고 행정지도는 7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사회자 혹은 패널 외부인들을 포함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사후제재장치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선거방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방송 국면에서 공정보도가 더욱 중요해질 텐데 여기에서도 오보·편파방송·막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먼저 법정제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앞으로 저희는 또 다시 특단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도본부에서 생산되는 리포터나 뉴스의 경우 현장기자들은 속보 그리고 특종에 우선 가치를 두고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개선된 결과를 손에 들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하루 빠른 보도보다 하루 늦고 일주일 늦더라도 팩트가 정확하고 공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장기자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석데스크, 부장들 인식을 바꿀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다시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도 재배치해야 합니다. 저희 내부 구조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시행해서 그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TV조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진아웃제, 이진아웃제와 관련해서 실무자들을 책임자들을 어떻게 징계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재조건부 재승인 법정제재, 일반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이진아웃제와 관련해서는 <신통방통>에서 두 번 법정제재 받은 ooo PD가 실제 징계위에 회부되어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ooo 부장이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법정제재를 받아서 프로그램 하차뿐만 아니라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든 누구든 법정제재와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다 내부 징계라는, 프로그램 하차에 그치지 않고 내부 징계라는 2차 제재를 받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방송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선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방송 심의가 활동하기 전 모든 보도본부 구성원들에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는 정치적 중립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훼손한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부 제재 엄격하게 해서 정치적 중립은 절대로 지키도록 함께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질의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가

- 2018년 4월에 학교법인인 ooo, 즉 ooo가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주식을 조선일보가 주당 ooo 원에 ooo주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가 TV조선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한 것이 적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이른바 바이백 또는 손실보장약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8조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승인 시 또는 그 이후에 ooo과 TV조선의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조선일보가 ooo으로부터 TV조선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가 TV조선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한 경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을 최대주주 대표자가 하시겠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제가 답변드리고 대주주 쪽에서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각각 2~3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이 주식거래는 201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백 이면계약 문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TV조선의 주주 구성 과정에서 이면계약은 결단코 없습니다. 제가 2011년 TV조선 개국 당시에 주주 주금모집 TF팀장을 맡았습니다. 직원 oo명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제주도를 몇 번씩 가면서 설명회를 갖고 주금을 모금했습니다. 저는 구두로나 문서로나 이면계약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떤 책임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세청 조사도 있었고, 또 감사원,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타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결단코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 심사위원 가

- 그러면 배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ooo원에 계약한 것이 횡령·배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찐 주식을 원래 액면가로 사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식거래가 된 것이 총 ooo건입니다. 그중에서 명의가 이전 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현금이 오고간 거래는 총 ooo건입니다. 그 ooo건 중 ooo건은 ooo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ooo건도 ooo원~ooo원대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식가격은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 1월에 회계법인에 의해서 주식 가치를 산정한 바에 의하면 약 ooo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ooo원에 산 것이 터무니없이 찐 것을 비싸게 산 것 아니냐, 물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쪽에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최대주주

- TV조선 대표께서 기본적인 열개를 설명하셨습니다. 저희 조선일보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조선일보는 처음에 TV조선에 투자를 할 때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보다 적게 했습니다. 비율도 작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이 변해서, 팔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측에, 조선일보가 법적인 한도의 여력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TV조선 측에서 ooo에서 “이것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되어서 팔려고 한다” 그래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TV조선에 투자한 최대주주로서 TV조선의 앞으로 장래성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주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 이지, 가격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TV조선 측에 저희들이 물어봐서 “TV조선 주식이 거기에서 거래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이 액면가로 거래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TV조선의 주식을 지금 매집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장래를 봤을 때 합당한 행위냐 아니냐, 이것 책임 있는 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TV조선이 어려웠습니다만 점점 더 TV조선이 안정되어 가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1분 정도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C

-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가 지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30% 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확약서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주)조선방송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대표자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 심사위원 C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가

- 그리고 제가 아까 서면 요청드린 자료 중에서 말씀하셨던 ooo건의 주식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의 평가가치는 평가 주체와 평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도 같이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이미 방통위에는 다 제출되어 있고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끝나고 대기 중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나중에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3분 내로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C**

- 방송발전을 하기 위해서 최초 승인할 때 000, 000에 한 000원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기업에 000달러에 전체적으로 000원 정도 이상 콘텐츠 펀드에 투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저희가 당시에는 그것이 000원밖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서 추가 개선계획으로 000원, 그 이유 중 하나가 펀드에 참여했지만 참여가 무산됐기 때문에 안 되어서 다음부터는 000원의 펀드를 운영하겠다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내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000원 정도의 펀드에 참여하신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000원의 펀드 내용을 보면 그중 000원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하고 계셔서 실제로 최초 계획 대비 000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년 재승인 당시에는 000원 규모를 운영한다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운영은 000원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저는 개국 초에 TV조선의 자금만 모금했고, 실제로 초부터 바로 근무하지 않고 2013년 2월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한 약속내용에 대해 심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펀드를 000원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000원에 대해서 2017년 재승인 심사 때 000원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시정하라고 명령이 내렸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펀드 투자를 늘려서 지금 000개 펀드에 000원 약간 넘는 액수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C**

-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C**

- 지금 용어에 차이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은 참여로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실제로 8년 넘게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2017년 사업계획서에 있는 추가적인 것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성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는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석해서 평가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것 이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생각이 있으시면 보완자료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은 이행명령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 심사위원장

-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A

- 종합편성방송에 요구되는 공익적인 가치, 직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니까요. 또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10년이 다가오는 종합편성채널이 지속가능하고 아주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지, 또 앞에 다루어진 공익성 문제도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비즈니스 영역에 투입될 그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인데, 콘텐츠에 대한 투자액으로 2019년에도 약 000원, 2020년에는 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와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큰 액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즉 군대에 비유를 했으니까 1사단, 2사단, 3사단이 있다면 직접제작이 있을 것이고, 또 외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매가 있을 것이고, 또한 외국의 플랫폼사업자, 콘텐츠사업자와의 제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관점에서 구매와 외주와 자체제작에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자본투자액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의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자체제작에 투입하는 비율이 약 00% 약간 넘는 선이고, 외주파트가 00% 정도 수준, 구매가 00% 안팎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에 000원의 제작비를 투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 콘텐츠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2017년에 000원, 2018년에 000원, 2019년에 000원을 콘텐츠에 순수하게 투자하라고 방통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과연 그것이 실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아했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콘텐츠가 풍부해져서 경쟁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산업은 콘텐츠 투자 없이는 절대로 업그레이드와 경쟁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약속한 콘텐츠 투자는 반드시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가 대체로 00% 수

준이었는데 2020년~2022년까지는 oo%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환경이 좋아진다면 이보다 더 투자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다

- 방송편성위원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 공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며,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국민의 소리에서도 나왔듯이 여전히 공정성과 다양성, 바른 여론 형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안서의 시청자 불만내역에서도 2018년 내용불만이 ooo건에서 2019년 ooo건으로 ooo건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편성 불만도 꽤 많이 증가되었는데 ooo건에서 ooo건으로 o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조선방송의 방송편성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의록을 봤더니 회의에서도 제작·편성과 무관한 연봉 협상에 대한 이야기, 복지에 대한 이야기,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건으로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방송 공정성과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논의들 중심이 아닌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는데 외부 시스템의 검증 필요성이 보완될 필요성이 느껴질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방송에서는 방송편성위원회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투명성과 자율성·합리성을 위해서 어떤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구체적인 개선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TV조선에는 아직 노조가 없기 때문에 편성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내부 소통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이나 또는 사측에 대한 요구사항이 전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까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봉 협상이나 복지 문제가 거기에서 논의된 것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편성위원회가 노조의 역할을 대체하는 효과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됩니다. 주52시간에 대한 합의, 유연근로제에 대한 합의도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특파원 파견 문제, 연수자 파견 문제 또는 콘텐츠에 대한 불만사항까지 모두 다 이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소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편성위원회에 나가서 모든 지적사항에 즉문즉답으로 회사의 방침을 설명하고, 또 합의에 이를 것이 있으면 합의에 이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종편사에서 저희보다 더 바람직한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면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심사위원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조선방송에서는 심사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약속하시지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주)조선방송 ooo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청문을 통한 소중한 지적과 가르침 저로서는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TV조선이 보다 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저는 2013년 2월 신문기자에서 방송으로 전업하면서 TV조선 구성원들에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19번 채널을 보면서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울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TV조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울음으로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 하나면 내 역할은 끝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스트롯> 또 올해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한국인의 혼이 녹아 있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한동안 가슴 저미게 울고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목요일을 어떻게 보내하느냐? 너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슴 졸이는 상황이 두세 달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V조선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고통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30여년 전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했던 것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프로그램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방송계 원로 선배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 방송 93년의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고 조그마한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TV조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심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를 가슴 깊이 새겨서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방송, 또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주)조선방송의 ooo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조선일보(TV조선)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청인 퇴장)

점심식사 후, 이어서 보도전문채널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식사 후 오후 2시까지 심사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와이티엔(YTN)

○ 심사위원장

- 앞서 종합편성PP의 재승인 의견청취에 이어서 2개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와이티엔(YTN)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이티엔(YTN)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주)와이티엔(YTN)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주)와이티엔(YTN)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대면방식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와이티엔(YTN) 대표자이신 ooo 님.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ooo님.

○ (주)와이티엔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ooo님 맞습니까?

○ 주)와이티엔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YTN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ooo 대표님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YTN 사장 ooo입니다. 국가재난상황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여러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YTN 재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5년 대한민국 최초 뉴스 전문채널로 개국한 YTN은 25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이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 자신 언론인으로서 방송산업에 37년 동안 종사해 오면서 방송인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객인 시청자여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시청자를 위해서 언론이 존재해야 하고 시청자를 주인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시청자의 니즈에 철저히 봉사할 때 언론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제가 YTN 사장에 취임하면서 YTN 조직도 가장 위쪽에 시청자를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위해서 어떤 뉴스를 서비스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진실, 맥락, 통찰입니다. 정확한 팩트와 단편적인 사실의 열거가 아니라 그 콘텍스트 맥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과 맥락을 짜뚫는 통찰이 담긴 뉴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뉴스를 하기 위해 YTN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 콘텐츠 속에 공정성과 유용성·신뢰성이라는 기본적인 언론의 가치를 담아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YTN 윤리강령과 방송편성 규약,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쓸모 있는 뉴스를 시청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YTN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디지털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뢰성은 결국 시청자들이 평가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보를 줄이고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교양과 실력을 갖춘 패널들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무결점 뉴스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가 그래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위안과 자신감을 줍니다.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에게 의뢰해서 조사하는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언론사 평가에서 YTN은 지난 4년 동안 공정성 부문 1위를 4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유용성은 2위, 신뢰성은 3위로 2018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9년 만에 조사해 지난 12월에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도 YTN 신뢰도와 영향력 면에서 SBS와 조선일보 등에 앞서 모두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정된 경영이 건강한 보도의 기반이 됩니다. 경영은 보도와 공정성과 합리성·객관성을 일치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YTN를 끌어가는 축입니다. 저는 결국 뛰어난 보도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영업이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채널 시대에 치열한 경영 환경에도 YTN은 영업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십사 기간 3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YTN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맥락과 통찰이 살아 있는 뉴스로 시청들에게 신뢰 받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의 융합,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방송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장을 이끌기 위한 시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YTN은 지난 2017년 심사 때 심사위원님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배려 덕분에 3년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YTN를 아끼는 마음으로 비판, 격려, 조언, 충고의 말씀과 질문 주시면 성심껏 경청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심사위원님들의 말씀이 YTN를 더 건강하게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와이티엔(YTN)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YTN에 관련된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서 접수된 질문을 심사위원장인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묻는다’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시청자를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이 묻는다’에 대해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정한 질의 내용입니다.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심층적인 탐사보도 고정 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부조리나 약자를 대변하는 특화된 탐사보도 고정프로 기대해봅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YTN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국민신문고’라는 탐사보도 장르 성격의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로서 위상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단독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심층탐사 고정 프로그램의 필요성, 부조리와 약자를 대변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적이 정확한 방향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출입처 중심의 보도국 내 보도제작국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도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필러물들 이런 제작을 주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 출입처 중심, 원래 보도국을 제1공장이라고 보고 제2공장에서 출입처 중심의 보도가 아닌 다른 보도를 해 보려고 조직을 이번에 재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도제작국팀을 구성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가**

- YTN은 보도전문 방송으로 보도 윤리를 넘어 인권 보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서는 지난 3년간 자살보도와 관련해서 방심위의 심의제재를 3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충격·혐오감·자살묘사 등으로 3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YTN의 윤리강령 실천 기준 73페이지에 보시면 자살보도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YTN의 직무교육 및 교양교육 실적을 살펴보니 자살보도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윤리 교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등 법률상식에 대한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윤리 교육 자체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자살보도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저도 회사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나라에 자살보도 윤리강령이 생기기 이전에 오스트리아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제반 규정들을 제가 제시하면서 단어에서도 '자살'이라는 단어가 가능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장부터 나서서 내부 교육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심사위원 가

- 그러면 교육실시 현황에서 명예훼손 안에 민감 교육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명예훼손뿐 아니라 자살과 관련한 저희 보도에서도 미스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획안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것을 특집으로 다룰 때 제목에서 자살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쪽으로 하면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할 때도 저희와 깊은 토론을 통해서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에서 작년 2월에 인권교육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도에서 자살과 관련된 보도가 뒤태를 때에는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나

- 첫 번째 시청자 의견과 일부 유사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YTN은 보도전문채널로서 하루 종일 유사한 형태의 뉴스를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지금과 같은 디지털 사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과 같은 방식은 보도전문 채널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전문 채널로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콘텐츠제작 계획을

말씀해 주시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도제작국을 별도로 꾸려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해 주셨고, 제출하신 재승인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련한 콘텐츠 제작계획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쭈와이티엔 대표자

- 아까 보도제작국을 통해서 진화된 뉴스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동일 뉴스의 반복,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방송하기 시작하면 한 7번, 많게는 10번까지 동일한 뉴스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보도국 구성원들과 상의하고 있는 내용은 진전되는 뉴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간 뉴스가 팩트가 틀리거나 아니면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시청자들부터 피드백이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데이트시키고, 또 반론이 있으면 반론으로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는 충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 한 달 정도 이내에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데스크라는 액세스 프로그램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게 쳐서 실시간 단위로 반영이 되어서 하는 그런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의 새로운 유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인력 등을 충원해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도전문채널로서 차별성을 보여주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도제작국을 말씀드렸는데 이 보도제작국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녁 7시 30분부터 방송되고 있는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뉴스쇼입니다. 이 뉴스쇼는 기존 하루 종일 방송되고 있는 24시간 뉴스쇼와 조금 다른 형태로 심층적이고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조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조금 결이 다른 뉴스를 폭넓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 깊이 있는 탐사프로그램 고민까지 앞으로 담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다

- 질문드리겠습니다. YTN은 공정방송위원회를 공정방송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중반부터 2018년까지 공방위가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사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고, 제안서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도 8월 10월, 11월, 12월 자료에 의하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정방송을 위한 내부시스템의 공백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 공정방송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공방위라고 하는 내부시스템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안별 또한 프로그램별로 기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어떠한 방송 저널리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나 방금 출입처 문제 이야기해 주셨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계적 중립의 문제, 그리고 연차 낮은 후배 중심의 현장 투입 문제들, 이러한 고질적인 취재보도 관행들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이러한 내부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의지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기구가 2019년에는 제가 사장을 맡게 된 뒤로는 이것을 정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2019년에 o차례,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난주에 베트남 다낭에서 있었던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노사 간 합의로 했습니다. 지금 공방위 제도 중에는 공방위 개최에 관한 노조 측에서만 이것을 문제제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측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공정방송에서, 저희가 보도국장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보장을 해 주지만 공정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 회사 측에서도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공정방송 개정안에 이것을 단협안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월례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는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30년 전에 제가 ooo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 ‘내 위치가 어디로 가건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평생 가져가기로 하겠다’고 약속을 저 자신하고 했습니다. 지금 YTN에 와서도 제가 어떨 때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일을 할 때 했던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측이 있는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와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에 따라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각 직능, 그다음에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청자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장이 직접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거의 90% 이상 제가 참석해서 시청자위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합쳐지면 지금 걱정하셨던 관행에서 생기는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인식을 바꿔서 나중에 머지않은 시기 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심사위원 다

- 예.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바

- 추가 질문 있습니다. 공정방송위원회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공정방송위원회를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안도 있을 텐데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마련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을 때 출입처 제도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우선 공방위의 중재제도는 중재할 수 있는 안은 현재 없습니다. 보도책임을 전적으로 맡아서, 임명권도 사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임명한다고 했을 때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판단과 책임을 전적으로 보도국장이 지는 것으로 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간섭으로부터 방어 체제로, 저도 노동조합에 있을 때 그런 제도를 만든 쪽에서 싸워 왔는데 경영자가 되어서 보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방위 제도에서 서로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은 조율하고 합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지, 그것이 중재기구에 의해서까지 각 보도국 내에, 이 논의 자체가 보면 보도국과 노동조합의 갈등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중재기구를 불러들이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그런 사안들을 수렴해서 의견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출입처 제도와 관련해서 출입처 제도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처가 없이 24시간 뉴스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출입처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보도출입처에서 나오는 소스만 따라가다가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찾아나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라

- 사장님 모두 발언에서 YTN을 공공재라고 인식하시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보도는 팩트와 콘텍스트 맥락이 중요하다, 저널리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 오랫동안 언론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을 전체 YTN 구성원들이 같이 다 공유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재로서 보도전문채널이 뉴스 전달에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2월 13일자 ‘마스크 구입 노인사망’ 기사입니다. 더구나 또 중요하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재난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보도내용들 사실 관계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보도부문에 대한 내용이 실제 팩트체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미비하다면 앞으로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었고 이것은 사장으로서 제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사장으로 올 당시 YTN 오보 몇 개가 굉장히 눈에 띄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ooo 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존재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현재 실시간 압수수색 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ooo 금감위원장 후보자 출국 금지’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YTN를 통해서 연속보도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는 제가 YTN에 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ooo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ooo에서 YTN 기사나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려면 자기 개인잔고를 확인하고 해라, 나중에 돈을 크게 물어내는 일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했었고 실제로 신뢰 부문에 대해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빠른 뉴스보다 정확성이다. 빠른 뉴스를 늦게 했다고 해서 문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1년 5개월, 1년 4개월 정도 잘 지켜왔다고 나름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담아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지 만들어서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원래 데스크 기능이 각 출입처 팀장들, 출입처 반장들, 부장 그다음에 에디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데스크 라인인데 거기에서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보도국장께 이 부분에 대해 짧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 마스크 구입 노인 사망과 관련된 기사가 나간 다음에 정정보도를 하셨습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정정을 올렸는데 가족이 그것도 내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셔서 그것을 내려달라고, 사죄문까지 올렸습니다. 바로 2시간 만에 정정하고 사죄의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내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 심사위원장

- 두 번째, 이것을 보도한 취재기자나 데스크에 대한 내부징계가 있었습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그것은 곧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진행 중입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보도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주)와이티엔 보도국장

- 보도국장 ooo입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가 사회부였는데, 최근에 저희 진용이 바뀌었는데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뼈아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책을 사회부부장, 관련 데스크, 시경캡 모두 모여서 월요일에 다시 한 번 재발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방침을 만들고 있고, 곧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 보도국장이 책임지고 이런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팩트체크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 심사위원 라

- 대책안을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개하시겠지요?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마

- 재승인 심사 대상이 2017년~2019년까지 3개년 실적과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계획이 평가 대상인 것은 아시지요?

○ 쭈와이티엔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마

-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세부심사항목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실 텐데 항목별 배점이나 실적과 계획의 배점 비율은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지만 계획의 배점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YTN은 참 특이한데 3년간 실적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실천방법을 제시하려면 상당한 분량이 필요할 텐데, 제가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계획이 필요한 소항목이 한 oo개 되는데 2개만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과 경영 전략 및 이것은 o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항목, 예를 들면 공정책임·공정성, 시청자권익보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방송프로그램 투자, 공익성 관련 등 여러 개 있는데 oo쪽이나 oo쪽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5년 계획을 oo쪽이나 oo쪽에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대상자 세 군데는 짧으면 oo쪽 내지 oo쪽이고, 긴 것은 oo장, oo장 정도 됩니다. 5년 계획을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법을 쓰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겠지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YTN은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내부 기준입니다만 공적책임 비중이 제일 큽니다. 향후 5년간 계획, oo쪽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방안, 신청서 가지고 있으면 114페이지 보십시오. 세부 내용, 간단히 이렇게 나열만 해 놓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공익적 캠페인 제작·편성, 컴퓨터 그래픽 수준 향상 노력,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 수준 향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해 놓아야지, 공익적 캠페인 제작·편성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oo쪽으로 간단히 나열해 놓았습니다. 계획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만 나열해 놨는데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한 정보나 요령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답변 성의가 없는지, 무슨 이유로 5년 계획을 oo장 또는 oo장으로 이렇게 간단히 작성했습니까?

○ 쭈와이티엔 대표자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5년 동안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표출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보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몇 가지 지적사항만 가지고도 앞으로 5년이든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것이 콘텐츠의 경쟁력이고 시청자들의 신뢰도의 확보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도를 높이면 기업의 경영도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7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고 뉴스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시청자들로부터 답이 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

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고, 또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맥락을 보여주는 뉴스로, 통찰 있는 뉴스로 가겠다는 것을 향해서 달리고 뛰는 순간 경영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는 길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했던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항목별을 채워 넣어서 낙낙한 페이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부족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마

- 그러면 정보나 요령이 부족한 것입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그런 것으로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마

- 교수가 학생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그 학생이 아무리 머릿속에 실력이 많이 있더라도 답안지에 표출을 못 하면 점수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이것을 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어떻게 압니까? 달랑 oo쪽 해 놓았는데, 공적책임과 공정성은 점수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이것 하나 보고 점수를 어떻게 줍니까? 아무리 세부적인 내용이나 실천의지가 있건 내용이 좋더라도 우리가 이것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반 생산공장과는 다르게 저희 방송환경이 처한 상황이 위낙 어렵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그리고 당장 당면한 숙제에만 너무 급급해 있었던 것이 또 문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계획이고 비전이라는 점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충자료를 최대한 시간 내, 지금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것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그 보고서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늦게라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A

- 대표님, 아까 모두 발언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니즈들이 변하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앞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방송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봐야 하는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계획 부분이 사실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큰 그림에도 불구하고 계획 부분의 디테일이 너무 없어서 저도 똑같은 문제를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쭉 논의한 방송 보도채널의 공익적인 논의에 하나 덧붙여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뉴스채널은 올드미디움(old medium)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 CNN이 시작했고, 1995년에 YTN이 시작한 모델인데 그것은 보도채널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 아니고 TV와 신문이 다 가지고 있는 운명이지요. 그렇다면 똑같은 보도 전용채널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니즈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전략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안에 대해서 대표님이 혹은 YTN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유타이티엔 대표자

- 심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문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언제까지 유효한가? 케이블TV 뉴스 채널은 미국에서도 CNN은 효용성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어도 YTN 뉴스 채널을 몇 시간 보는 것이 적합할까를 고민하고 계속 시청시간을 얼마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이것이 계속 상호교감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필요성을 교감하면서 비판을 수렴하면서 진화되는 뉴스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YTN에 왔을 때, 그 이후 시청률이 보통 1일 시청률이라고 하는데 0.8% 정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0.4%, 0.8%, 0.9% 정도 찍더니 올해 들어와서 특히 재난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2월에 1.4%, 3월에는 1.7%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니즈로 보자면 각자의 안전과 안위 이런 것이 걸리게 되고, 진짜 정보가 필요하면 무섭게 시청자들이 YTN에 다가와서 정보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키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작년 9월에 제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노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10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중에 다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겠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 그 다음에 전해지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쪽에서 약간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YTN의 경우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탑 순위의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고서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144만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3개월 사이에 16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YTN플러스라는 조직에 제가 요청해 놓기는 200만을 언제까지 만들어낼 것인지 그 답안지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를 넓혀나가고 그쪽에서 확장해 나감으로써 기존 케이블 채널에 닫힌 시청자의 문제를 향후에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A

- 대표님께서 아까 '방송환경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전제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YTN의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YTN은 뉴스와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편성과 관계없이 자유스럽게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위 지식과 정보의 저수지 혹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데이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 저널리즘의 센터가 되기 위한 계획이나 혹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현재 다른 회사에 많이 없는데 저희는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밖에서 강한 구조 하에서 하고 있는 뉴스타파와 제휴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팀에서 만든 뉴스들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해서도 데이터 저널리즘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얼마 만에 완치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빅데이터 분석해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과 정보의 저수지로서의 YTN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양식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의 변화나 또는 국가 경쟁력 순위의 변동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YTN에 거기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자고 보도국 구성원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F

- 뒤에 있는 제 질문을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사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사장님 모두에게 방통위와 변화나 미디어 환경에 받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빨언도 해 주셨고, 의지는 상당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그것을 뒷받침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5G 광역화 이후 2019년도에 실행계획 사항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이후에 하겠다, 5G 광역화가 안 되어서 2019년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G 광역화는 이미 다 됐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수준이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보고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실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UHD, 5G, AI 등 신기술들이 방송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신서비스 그런 것이 방송사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폭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래 전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총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기술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입장을 잡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기술에 대한 확신에서의 약간 부족이나 효용성에서의 부족이 예산이 지금 들어갈 때냐, 아니면 조금 늦춰서 가야 하느냐, 선택과 집중을 어느 쪽에 더 먼저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깔고 있을 때 조금 늦게 반영이 됩니다. 5G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 UHD도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이냐, 조금 더 늦게냐 이 정도 고민의 선상이지, 저희가 YTN플러스라는 디지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선두 지위를 만들어낸 과정들을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갑니다. 지난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파도 그렇고 광고영업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저했던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스퍼트(spurt)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F

- 투자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F

-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B

-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작보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많은 방송사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9년~2020년도 보도국장 임명동의에 있어서 YTN이 두 차례 부결되고 세 차례 임면동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 그 다음에 진지한 문제의식, 노사 간 협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소모적이고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내 갈등이나 모순이 있었다면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굉장히 아픈 지적이고 또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사가 빼야 될 힘을 너무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진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노사가 보도국장 임면동의 협약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1일입니다. 그전에는 추천제였습니다. 3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 제도였는데 당시 노동조합이 보기에 3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제일 적합도가 낮아 보이는, 평가점수가 낮은 분을 계속 임명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를 강화시켜서 이런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제도 중에는 직선제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추천제를 하는 곳도 있고, 임면동의제를 하는 곳도 있고, 중간평가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제도들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제를 했을 경우 파별이 미리 생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조직간의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추천제도가 과거에 묵살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천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 적도 있어서 강한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장 재지명 이후에 구성원들이 과반 투표하고, 유효 투표 과반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도국의 독립성도 확보해야겠고, 사장의 인사권도 작동되도록 하는 밸런스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사실은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굉장히 놀라워했고 당황했고 그 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측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있었던 제도가 규정한대로 쭉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 투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단체협약 중인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난 10년 동안 공정방송 투쟁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이 여러 충위로 나뉘면서 직종별, 세대별로 생각이 달라서 현실과 제도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겨난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현재 YTN이 안고 있는 상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지 또 다시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자님께서 공정방송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나 계획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 구성원 간에 공감대 확산이나 스킨십 등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외부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표자님 포함해서 임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킨십을 더 늘리고, 사실은 가장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구성원들, 다른 구성원들의 다른 생각, 지금 공정방송 개념에 대해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의를 통해서 생각을 좁혀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부결에 이르기까지 사원 간담회라고 하는, 원래는 대표성을 지닌 조합과 대화를 하면 그것이 완성된

토의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토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일각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 일반 구성원들과의 집단 토의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서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C

- YTN의 수익 구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YTN을 보니까 광고매출액이 연간 000원 정도 수준이고, 협찬이 000원 정도 해서 광고와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000% 정도 수준입니다. 광고시장이 위축되어서 그런지 광고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YTN의 전체적인 수익이 감소 추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대표님께서 수익 구조에 대한 변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수익이 나아지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방송광고시장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 미디어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뉴미디어 쪽으로 광고가 흘러가면서 이쪽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획기적인 방송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매출을 늘림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디지털 쪽 투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상파에서 000원씩 마이너스 나는 상황에서도 YTN의 경우 방송광고 수입에서 저하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켜낸 쪽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000원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비용 대비 광고 수입이나 매출이익을 가지고 그 부분을 극복해 낸 케이스로 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는 회계상 다른 손상매출을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줄어들어 온 과정을 오히려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송광고 자체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방송광고에서 들어오는 것 대비 제작에서 들어가는 인력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아직 까지는 버티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C

- 광고는 줄어드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다른 추가적인 수익원에 대한 고민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YTN플러스를 통해서 디지털 쪽에서 수익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네이버와 o:o 지분의 디지털플러스 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지분 중 000%를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디지털 쪽에서 이익을 더 만들 수 있다

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것을 주식으로 밖에서 투자를 같이 받고 있던 것을 저희가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C

- 디지털 시대 쪽에 향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C

-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 293페이지를 보시면 처음에 저도 재외동포 재단지원금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타수입에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YTN이 매년 재외동포 재단지원금이 000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무엇인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 합계를 오타를 쓰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 C

-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빠른 시간 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D

- 지금까지는 저널 쪽 관련해서 주로 공정방송 쪽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경영 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만 답변하시는데 제가 YTN를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24번을 켜놓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 똑같더라도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3번보다 24번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000 기자님과 000 기자님을 직접 여기에서 뵈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2018년도 9월에 취임하셨는데, YTN은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한 번도 연임한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주)와이티엔 대표자

- 두 번 연임이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 D

- 두 번 연임은 있었고, 임기 다 마치지 않고 자신 분도 계시고….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임기는 다 마치지 못하신 것으로….

○ 심사위원 D

- 이런 것이 왜 나오느냐 제가 봤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은 ooo와 ooo 출신이지 않습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D

- 여기 보면 책임경영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주주 구성이 상당히 특이하지요. 1995년도에 승인 날 때부터 공기업들 위주로 주주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ooo, ooo, ooo, ooo은 그때 ooo 시절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연임이 안 되시고 3년, 그러면 1년 정도 내부 파악하고 1년 정도 하다가 또 연임 걱정하다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소신 있는 경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주요 주주다, 최고 경영진이 연임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보도국장 그런 것도 나왔지만 내부 조직 구성원의 경영에 대한 참여도가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맞물려서 책임경영에 대해서 약간 외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네거티브한 것으로 보면 YTN이 그들만의 리그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외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사, 교수 등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보시기에 경영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주주가 일단 많다 보니까 주주의 협력경영 차원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주들이 많은데 협력경영 차원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주주 구성 자체가 YTN의 아픈 것을 담고 있습니다. IMF 직후 연합뉴스가 원래 제1대 주주였는데 자본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봉급이 8개월 정도 체불되고 우리 구성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파산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케이블 뉴스채널을 살리는 것이 맞다는 공공적인 판단이 당시에 정부의 판단까지 합쳐져서 공적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견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기재도 굉장히 많이 작동되어서 어떤 때는 지금 말씀하신 ooo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직자가 많이 나오면서도 굴하지 않고 한 10여년 가까이 싸워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적인 부분도 있고,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했고, 돌발영상을 없애려니까 그렇게 오래 싸워오기도 했고 이런 DNA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성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고, 신문물의 유입을 약간 저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조금씩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제 소신대로 필요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경쟁력을, 시청자들의 신뢰를, 그리고 시청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으로 기억해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있는 동안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에 DNA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제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D

- 사장님이 외부에서 오셨고 또 감사도 ooo 출신입니다. 사장도 ooo 출신, 감사도 ooo 출신, 감사라는 것이 원래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 하라고 기능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처음에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체크 앤드 밸런스 중 저는 YTN 유전자 중 공정성에 대한 오랜 동안의 싸움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감사로 오신 분이 ooo의 해직 1호셨던 분입니다. 노동조합운동을 하면서 초기에 ‘농촌 이대로 둘 수 없다’는 OO프로그램을 당시에 경영진이 못하게 하자 그 싸움을 하다가 첫 번째 해고됐던 분입니다. 체크 앤드 밸런스를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에 역할을 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분이라서 오신 뒤에 저와 체크 앤드 밸런스를 하면서도 제가 같은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D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C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YTN은 광고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YTN이 코로나19 임팩트로 인해서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광고 비중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쉬는 시간에 YTN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나오셔서 청와대 회의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공공재로서의 방송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가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건강해야지요. 조직 구성원들 고용창출도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청자, 고객들 더 잘해 주려면 조직이 튼튼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장님 주위에 보좌 조직이 있지요? 경영을 보좌하는 스태프들 많이 있지요?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있습니다.

○ 심사위원 D

- 오늘 기획실장님도 오셨으니 심도 있게 봐서,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는 임팩트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회사 내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경영상 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YTN은 전체 000원 매출 중 광고 비중이 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언론의 경우 대부분 다 광고매출이 000% 가까워서 광고가 줄어들면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는 임대사업을, 1997년 아픔 기억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을 비상경영을 대비해서 탄탄하게 해놓아서 경영적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고 5년 정도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미래의 성장동력까지 그때는 또 좀 더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고 보고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되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E

- 저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5개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을 보면 2020년~2024년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해서 법인세 차감전순손익이 000원, 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만 000원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착오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2017년~2019년도까지 프로그램 투자실적이 연평균 000원 정도 되는데 향후 5년간 평균 투자계획을 보면 연간 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비용이 증가하면 이런 것이 향후 5개년 자금사용 부분에 반영되어서 매출원가 부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손익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000원이라는 투자계획이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 금액들이 어떻게 발생될 계획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의 액수를 하나하나 추정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계 추정치로서의 의미이고 이 정도는 힘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밸런스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사옥을 매각한 후 000, 서울역 사옥입니다. 그것을 000라는 곳과 같이 하는 000가 내년에 청산이 되면서 정산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잡아놓은 것으로 그것은 다시 그 다음 투자를 위해서 또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수에 있어서 디테일을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놓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추정치일 수밖에 없겠다,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E

- 그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없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YTN에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대표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 정도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의 질문 속에 이미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질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짚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배석한 간부들, 참모들과 함께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궁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 왔지만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도 가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그리고 3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져서 화면이 변하고 있고, 조금씩 시청자들에게 더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같이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더 다듬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YTN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청자들에게 '그만 하면 됐다, YTN.' 이 소리 들을 때까지, 그래서 'YTN이 있어서 그 어려운 시대 잘 지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답해 주신 ooo 대표님 및 YTN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와이티엔(YTN)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신청인 퇴장)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시 이전까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 심사위원장

- 지금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대면방식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ooo 님, 맞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ooo 님 맞으십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먼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 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회

- ooo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ooo입니다.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연합뉴스TV 대표로서 심사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채널로서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가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로부터도 뉴스를 차별적으로 제공받지 않고 있고, 단독보도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016년~2019년까지 4년 연속 보도채널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했고, 17개월 연속 보도채널 시청률 1위 기록도 세웠으며, 2018년 2월에는 개국 이후 월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정통 보도채널로 자리매김하면서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특보 체제로 전환해서 신속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 2월 21일 시청률은 2.028%를 기록해서 개국 후 처음으로 시청률 2%대를 넘어섰습니다. 이후에 연일 시청률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공정방송위원회와 패널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보도의 공정성은 물론 방송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적용해서 구성했으며, 시청자위원회 선정을 위해서 노사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연령, 성별, 분야 등을 고려한 위원들의 다양성 확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영면에서도 지난 4년 연속해서 혹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영 및 방송 운영 면에서 포괄적으로 안정궤도에 올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함이 여전히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찾아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심사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묻는다’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시청자를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묻는다’ 시청자 여러 다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뉴스를 만든다고 했지만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를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저희 1주주인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정부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공적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연합뉴스TV도 당연히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런 영향권 하에 놓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의 독립성 부분이 훼손될 우려 또한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각각 별도의 주주와 이사회로 운영하고 있고 편집국, 보도국 등도 별도의 제작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 조직 또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사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양사의 대표 겸직이 두 법인 간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다’ 질문을 통해서 해 주신 것은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연합뉴스TV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불가불한 관계를 봤을 때 상응한 공적인 책무를 과연 보도 측면에서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저희들이 콘텐츠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나름대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노력해 온 덕분에 편향성을 많이 극복하였고, 불편·부당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 구성원이 꾸준히 노력해 온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제도적으로나 콘텐츠 또 경영 측면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을리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 2017년도에 연합뉴스TV가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심사위원들이 연합뉴스의 대표가 연합뉴스TV의 대표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두 차례나 제시했고, 저희 심사위원들 의견에서도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습니다. ooo 대표님께서 내년 3월까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주)연합뉴스와 (주)연합뉴스TV의 대표를 분리할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저희 연합뉴스TV는 일단 연합뉴스가 1주주로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다 아시다시피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 감독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합뉴스가 1주주로 있는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와 함께 같은 연결선상에서 볼 때 공적인 책무, 특히 공익성과 공정성·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적인 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공영적 성격의 언론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의 겸직을 해지하는 것이 콘텐츠 면에서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가 조금 안 됩니다.

○ 심사위원장

- 법적으로 3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30% 제한 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민간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공적인 성격의 언론사로서 연합뉴스TV의 1주주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다고 해서 운영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콘텐츠의 불편·부당성 부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의 겸직보다는 대표를 분리해서 경영 또는 콘텐츠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느 분이 진행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가

- 2019년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 중 VIP 이미지 위에 북한 인공기를 삽입하는 그래픽 삽입 관련 방송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고가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러한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발생한 이후 정정보도, 사과보도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릴 것은 후속조치와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인 보도본부장 이신 ooo 보도본부장, ooo 보도국장 등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발생한 이후 행동 요령을 제도화였는지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이른바 '인공기 사건'이라고 보도되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일입니다. 저희

내부의 엄격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물론 저희들은 실수라고 봤습니다만 실수로만 보기에는 너무 의도성이 게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외부의 지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당사자뿐만 아니고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파트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고의성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입증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파문을 일으킨 방송사고, 대형 방송 사고였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방송 콘텐츠를 총괄하는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을 다 즉각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파트의 관계자들은 전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응한 징계를 과실에 따라서 감봉에서부터 견책, 경고 순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중요성을 뚜렷하게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된 방송사고였기 때문에 사전·사후 모니터링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것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송전문가를 사전·사후 모니터링 요원으로 모셨고, 내부에도 모니터링팀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주 사고가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우려를 키울만한 큰 사고 없이 지난 1년 동안 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가

- 정정보도와 사과보도에 관한 행동요령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이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공정보도와 사과보도는 즉각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물론 그 당시에도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런 유사한 방송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일단 사과방송을 하고, 해당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사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 구축하는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가

- 그런 매뉴얼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매뉴얼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 심사위원 가

-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후속 자료로 매뉴얼이 있으시면 매뉴얼 자료를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다

- 최근 방송 저널리즘에 대한 시청자와 일반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와 완전히 별개로 보통 일컬어지는 취재와 보도 관행에 대한 개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따옴표로 해서 저널리즘을 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출입처의 문제, 기계적 중립의 문제, 기존에 당연시 되어 오던 취재와 보도 관행들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안서에 어떠한 개선의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경영을 보면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000건, 그전에는 000건이었습니다. 쭉 계속되는 많은 불만들이 기존에 했던 저널리즘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서 나오는 저널리즘의 고인 물 효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선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연합뉴스TV는 다른 어떠한 방송 저널리즘 채널에 비해서 탐사와 심층 있는 보도기획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자와 기획이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비 대표자·최대주주

- 우선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아까 기계적 중립성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채널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불편·부당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고 편파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편·부당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고, 편파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데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만약 불편·부당한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공급 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에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보도채널이라면 보도채널로서 존립이유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덕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부단히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완벽한 중립성을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독려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기계적 중립성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계적 중립성을 통해서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계적 중립성도 형식적 중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몰가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분명한 가치적 측면에서 중립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최소한도 기계적 중립성이라도 기하기 위한 자세가 콘텐츠 제작 과정, 그리고 보도 과정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사기획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채널의 특성상 스트레이트 리포트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진지하게 탐사보도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가 필요하고, 또 기획을 해 나가야 할지는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다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 주셨듯이 두 회사가 대표는 동일하지만 운영과 경영에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매체 간의 방송내용과 저널리즘의 내용도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연합뉴스TV는 기계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연합뉴스의 통신사의 역할을 약간 복제하는 느낌이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시청자들이 두 매체 간 동일성을 인식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내용상 형식상의 어떤 유사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것이 소유구조가 미디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보다는 내용과 저널리즘 다양성에 약간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명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라

- 방금 말씀하시면서 공정성 관련해서 중립성, 기계적 중립성이라도 최소한 확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합뉴스TV가 스트레이트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도전문채널의 특성상 꼭 필요한 일인데, 보도하는 데서도 객관성과 정확성이 생명이지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관련 분위기 속에서도 연합뉴스TV 말고 다른 사들에서 오보를 내면서 혼란들을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분위기에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연합뉴스TV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장치들을 스스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가 사실검증,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개인의 윤리강령을 떠나서 기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설명서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연합뉴스TV 안에 자체적으로 팩트체크팀이나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팩트체크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혹시 눈여겨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팩트체크 코너를 그때그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개연성이 높후하다고 보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그날그날 코너를 만들어서 팩트체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오보를 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만 크고 작은 미진한 부분들 좀 더 완벽을 기해야 할, 특히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우선 시 해야 한다는 자세로 보도국을 운영하고 있고, 보도국 안에서도 그런 기조 하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겸비해야 할 숙명적인 위치에 있지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확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더구나 감염병 사태와 같은 대재난 상황에서는 정확성을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보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라

-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자 개인의 역량이나 윤리에 맡기지 않고 조직적으로 일반보도에서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정확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자 개인의 역량이나 윤리 측면이 아니라 조직적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보도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방송사도 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노사가 공동으로 공정방송위원회, 그리고 공정보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심사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팩트체킹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좀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팩트체크와 관련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인 팩트체크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유튜브나 다른 데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내부 팩트체크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 부서는 두고 있지 않은데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실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담파트나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할 수 없더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마

-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임을 감안하더라도 소수 시청자 그룹 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소수 시청자 그룹이라 함은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약자, 외국인, 새터민, 난민들을 말하는데, 2017년~2019년까지 3년 동안 0%, 0%, 0% 평균 0%인데 향후 5개년 계획에 보면 0%입니다. 그것도 어린이·청소년이 0%, 기타 0%, 장애인이 0%, 다문화, 노약자, 외국인 0%인데 종편은 00%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임을 감안하더라도 0%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은 공익적 기능도 중요하고, 또 배려 차원에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비중을 방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 개인으로는 최소 0% 정도는 해야지 0%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종편은 00%입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다르기는 하지만 0% 비중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더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아무래도 보도전문채널이다 보니까 현장성을 중시하는 보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하모니>나 <투데이 고용플러스> 등 사회 소수자나 사회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공적책무를 중시하는 공영적 성격의 보도채널을 지향한다면 다양한 청소년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쪽 리포트를 좀 더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보도를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몇 %로 높인다는 당장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높여나갈 수 있는지 연구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바

-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로 편향적이지 않다,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불편·부당한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주셔서 그 영향력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또 시청자들이 바라기에는 단순히 연합뉴스 같은 방송으로서 연합뉴스TV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치가 실현되고, 또 좀 더 풍부한 그 다음에 탐사보도도 들어가 있는 그런 채널을 원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불편·부당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패널선정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사건·사고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패널의 전문성과 성향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섭외한 것이 중요할 텐데, 패널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실지 궁금합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저희 경영진이 처음 2년 전에 취임할 때 가장 많은 지적받았던 부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편향성, 그리고 패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뚜렷해서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을 적어도 진영논리를 떠나서 자기 입장은 분명히 개진하더라도 균형감각을 가지고서 쌍방 간 충실한 의견교환이 가능하고 디베이트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패널선정위원회를 oo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전히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으로 지극히 이념이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이 패널로 나오는 것 아닐까?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라는 지적을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2년 전보다는 패널선정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하고 끊임없이 그 패널들에 대해서 발언내용을 분석해서 이런 분들을 계속 출연시키면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피드백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널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패널을 선정 하지만 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깊숙이 분석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탐사보도나 공영적인 측면, 공적인 책무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편적이고 사건·사고에 매몰되는 듯한 그런 리포트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공적책무를 다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빼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광고를 통해서 경영을 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나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런 난점들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주고 부축해 주는 프로그램 리포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고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바

-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패널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패널을 선정해도 그때그때 평가하기가 어렵더라,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기계적 중립을 중심으로 패널들을 선정하다 보면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연합뉴스TV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채널로서, 보도전문채널로서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하는 기준을 좀 더 확고히 한다면 오히려 패널 선정을 하고 기준을 잡는데도 지금보다 어려움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아시겠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A

- 지금까지 주로 심사위원분들께서 보도채널의 보도의 공적인 가치, 그 다음에 공익적 책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공익성의 문제와 아울러 경영 그 다음에 연합뉴스TV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질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구조의 안정성, 즉 경영의 안정성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한 공익성 강화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A

- 제가 수익, 매출 자료를 쭉 봤더니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매출 중 약 60%는 광고수익입니다. 그런데 000원 정도의 매년 광고수익이 아주 안정적으로 3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고 우리 경제가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도 금년 재정 전망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으로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비단 연합뉴스TV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칠 수 있는 저희 경영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특히 재정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폭은 저희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광고수주액이 감소할 것이며, 그렇게 감소하면 새로운 먹을거리는 어떤 분야에서 새로 발굴해서 그것을 메워나갈 것이며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구성원들에게 같이 공유하게끔 할 단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 포션인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수신료 수입 등이 있지만 광고수입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 심사위원 A

- 제가 볼 때 광고매출이 000원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이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포화상태로 와서 더 이상 24시간 보도채널을 가지고 그야말로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4시간 보도채널은 이미 올드미디움(old medium)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과 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미래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기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앞으로 소위 연합뉴스TV가 나가야 할 방향 어떤 매체로서 나갈 것이냐? 지금까지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숙의적인 반드시 지켜 할 하나의 규범적인 것이라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획서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한다거나 어떤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뉴미디어 분야를, 물론 저희뿐만 아닙니다. 다들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뉴미디어 분야가 새로운 먹을거리로 안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연합뉴스TV뿐만 아니고 어떤 방송사도 안정적으로 뉴미디어 분야에서 지금의 기준 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수입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보는 방송사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도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분야에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1주주로 있지만,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공적 책임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00%는 민간 주주들입니다. 민간 주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공적인 책무, 공영성을 외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배당 측면에서 수익을 주주들에게 안겨주지 않는 회사는 우리가 왜 주주로 참여를 했단 말인가 하는 틀림없이 불만 또는 지적이 이런 부분들이 공·사석에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부분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간단치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콘텐츠 판매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뉴미디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도채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인력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딱 이것이 아주 먼 훗날까지 쭉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분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A

-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저는 24시간 보도채널도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시간을 확보해서 24시간 동안 보도를 나가는 서비스보다는 그야말로 뉴스와 정보와 지식을 전부 쌓아놓은 플랫폼으로서 종합적인 정보지식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 즉 공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통신사인 버라이즌(Verizon)과 같이 제휴를 해서 5G 시대에 뉴욕타임스가 정보가 없지 않지요. 많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뉴욕타임스라는 플랫폼에 담아서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는 모델을 찾고 있는데, 요즘의 화두인 데이터가 핵심이지요. 소위 그런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시도의 움직임은 내부적으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청사진을 가지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B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합뉴스TV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미 모두에 질문하셨는데 위낙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다시 반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독립적인 법인이고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차별적인 특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연합뉴스 대표이사께서 연합뉴스 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는 사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뉴스TV의 재원인 광고를 연합뉴스 쪽에서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독립적인 매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은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승인에서부터 연합뉴스의 독립을 요구했고, 2014년 재승인 조건과 재승인 권고사항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 재승인 권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연합뉴스TV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가진 비전을 밝혀 주시고 개선책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여쭙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일단 운영의 독립,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포괄적으로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광고영업을 1주주인 연합뉴스가 대행하는 문제, 그다음에 1주주인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직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연합뉴스TV의 독립성을 온전하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보도채널로서 승인 신청 할 때 그 취지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TV라는 보도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그 취지의 공적인 측면에서 대표 겸직이나 광고영업대행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상황에서 볼 때 여전히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도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별도 조직으로 공적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방통위뿐만 아니고 밖에 전문가 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공·사석에서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광고영업대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광고영업대행을 연합뉴스 영상마케팅 쪽에 넘긴 것은 특별한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고 양쪽이 원원하는 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보도채널로서 아직 자리가 잡히기 전인 상황에서 볼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게 재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겠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합뉴스 쪽 광고영업을 대행해서 그 대행수수료를 막대하게 안겨주는 식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을 해 왔다면 저는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시대 흐름에 과연 맞느냐? 이런 것을 그대로 온전히 시킨 상황에서 독립성을 과연 지키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료에도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광고영업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TF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디어렙 쪽으로 가든 직접영업 쪽으로 가든 이런 문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연합뉴스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콘텐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서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콘텐츠를 먼저 봐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광고영업을 영구히 연합뉴스가 대행하는, 밖에서 볼 때 전문가들 시각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행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연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지금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는 인식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 심사위원장

- 광고영업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일단 연구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D

-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아주 간결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연합뉴스부터 쪽 출발해서 특파원 두 번 하시고 TV 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전무이사님, 상무이사님 전부 연합뉴스 출신입니다.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연합뉴스 측에서 오셨으니까 연합뉴스 TV에 잘하는 것, 또 고쳐야 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8년도에 오셨는데, 지금 제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먹에 완전히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책임경영 측면에서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투명경영 제고 차원에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님들 프로파일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프로필 요청받아서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D

- 아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저는 아까 그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출자한 통신사 연합뉴스가 00% 가지고 있지만 민간 주주가 00%입니다. 그러면 민간 주주에 대한 보답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안정성이나 돈도 벌어서 배당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외이사들이 경영에 대한 감시나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를 잘해야 하는데 재무·회계 쪽 경영 전문가들 보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프로파일을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거의 경영진이 언론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나중에 사외이사나 감사인 선임할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 D

-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경영 독립성 차원에서 대표이사 겸직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사장님이 똑같기 때문에 경영 시너지를 내서 경영 효율성을 내야 될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외주사, 도급사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운서도 0명 빼고 전부 다 프리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영지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영 시너지, 경영 효율화를 낼 수 있는 차원에서 독립성과는 약간 차원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연합뉴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E

- 저는 2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뉴스 독립성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표자님께서 독립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문이 됐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말씀하신 내용이 외부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독립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외부에서 보기에는 외관상으로는 독립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이다, 정신적으로는 독립적이라는 답변만 계속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외관상과 정신적 독립성이 있는데 정신적 독립성은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보다 외관상 독립성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할 때도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위원이 분명히 정신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지만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척사유로 제외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방송국의 경우에는 이미지나 레퓨테이션(reputation)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는 그동안 대표자님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안정적으로 이끌어오셨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내오셨는데, 옥에 티처럼 외부에서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독립성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표자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는 정신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정말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표자님께서 겸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외관적 독립성도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기대, 그리고 독립성을 좀 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갖추도록 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속마음을 따로 별 기회가 있으면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사 청문을 하는 자리라서, 단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라는 보도채널을 YTN를 만든 전력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떨쳐낸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왜 연합뉴스TV라는 보도채널을 다시 했느냐는 것을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가뉴스기간통신사로서 그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나 정부 주권을 수호하는 공적책무의 일환으로 보도채널이 병행해서 가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연합뉴스TV라는 보도채널을 다시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때 연합뉴스TV를 왜 만드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YTN를 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는 연합뉴스가 그것을 왜 다시 만들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를 만든 것은 보도와 관련해서, 리포트와 관련해서,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인 그런 측면의 콘텐츠를 국민의 기대치에 맞게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앞으로 보도채널과 같이 가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만들었습니다. 단, 독립성과 관련해서 형식적 독립성, 외관의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 하십시오.

○ **심사위원 F**

-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송장비나 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이 목표 대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향후 5개년간 계획 작성성이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63쪽 제작기술시스템 고도화, 송출, 주조정설 장비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고도화의 내용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HD급, 4K급 등 그런 디테일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예산 얼마, 이런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도 평가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완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 중 뉴미디어에 대한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면 넷플릭스 단기간에 성장해서 뉴미디어 시장에 엄청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모바일 시대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바일 시대에 맞는 신기술, 그리고 뉴스전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화시키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를 잘 대응하면 기회이고 잘못 대응하면 위기인데 여기에 대해 신속히 전략 수립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사위원장

- 대표자님이 응답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배석자가 대신 하셔도 됩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일단 그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F

- 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뉴미디어에 대한 전략 부재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짧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뉴미디어 분야는 당장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전망은 보이지 않지만 콘텐츠와도 직결될 수 있고, 결국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굴하지 않으면 아까 지적했듯이 제대로 된 보도채널로서 기능을 아예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는 그런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투자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해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뉴미디어 분야에 인력도 그렇고 무엇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잘 것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단, 필요성이 큰 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는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F

- 외부전문기관 자문도 받으십시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문 간단하게 1분 정도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마

- 지금까지 질문을 여러 분들이 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뉴스의 겸직에 대해 지적하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연합뉴스가 왜 YTN을 버렸고,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를 만들 때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다 공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왜 꼭 겸직을 해야 하는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으니까 겸직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회사가 대표이사를 겸직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안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지적도 받지 않고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겸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데 꼭 겸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저희들 자체 경험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겸직하는 경우가 종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대부분 민간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지요. 저희 연합뉴스TV는 거버넌스 자체가, 이미 거버넌스 그 안에 공적인 측면이 게재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겸직하지 않으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겸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콘텐츠 면이나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겸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D

- 그러면 급여를 한 군데에서 받는 것입니까, 두 군데 다 받는 것입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것에 대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고 대부분 두 군데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OO%씩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D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위원회 질의와 사업자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ooo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님께서 3분 정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심사위원님들 오늘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허투루 듣지 않고 저희들 경영상, 그리고

콘텐츠를 개선하는데 반드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견청취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깐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고 의존도가 높은 방송사들, 특히 저희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앞으로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보고 더욱 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행치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내핍경영이 불가피하다, 획기적인 비용 절감 가능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 노력을 획기적으로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그룹 안에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흥수 속에 저희 오해했습니다만 국가나 국민이 잘못된 정보, 그릇된 정보에 휩싸이고 휩쓸리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보도채널의 책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연합뉴스TV는 심사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또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갈길 또한 멍니다. 하지만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디어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 생존에 관한 방안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한 단계 더 나은 모습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합뉴스TV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흔자서 답변하신 ooo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oo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번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신청인 퇴장)

3. 폐 회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모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폐회】

VII. TV조선 청문

1. TV조선 청문조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제목	[주]조선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청문주재자	소 속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 교수)		
	성 명	유 선 영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김 민 배 (조선방송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 세종대로 21길 40(태평로 1가)	출석	
	홍 준 호 (조선일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 세종대로 21길 30(태평로 1가)	출석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방송지원정책과장, 담당 등 차중호, 이해련, 이치상, 김종우	출석	
청문의 일시 및 장소	2020년 4월 10일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청문공개	공개 여부	비공개		
	이유	공개할 이유 없음(행정절차법 제30조)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불입"		
	제출된 증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사자) [주]조선방송 '추가 개선계획' 등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2020년 4월 10일

청문주재자 성명 : 유 선 영

밀람·확인자 성명 : 김 민 배

홍 준 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 [백지지 80g/m² (저항성)]

청문 요지

의견진술 개요

- TV조선은 '17년 재승인 당시 공정성, 콘텐츠 투자, 보도비율 등이 시비의 대상이 되었고, 공정성 부분에서 보다 특별한 대책을 요구받은 바 있음
- 특히 연중 법정제재 4건 이하라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 과격적인 아웃제를 도입하고 재승인 이후 3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올해 심사평가 결과 공정성·공적책임 분야에서 기준점에 미달하였음. TV조선은 이를 보다 홀륭한 방송을 만들라는 공적 주문으로 생각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함
 - 또한 청문 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저널리즘 평가 위원회

- 저널리즘 평가위원회는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 학계·변호사 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7~8명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운영방안은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임
- 또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공할 예정이고 그 결과는 내부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개선여부 등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임

-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취재기자, 데스크 등 전직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전면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임
- o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보도본부 내 간부급 팩트체크장을 둘 것임. 팩트체크장이 리포트를 확인하고 현장 취재기자와 확인해서 출고할 자격이 없으면 출고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할 것임. 또한 SNS 가짜뉴스를 가리기 위해 SNS 팩트확인 전담요원도 둘 계획임
- 반론보도를 위해 반론공유센터를 신설하여, 이익단체·정부기관 등의 반론보도문을 공유센터 등을 통해 게재할 계획임

지배구조·독립성 관련

- o 현재 방송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구조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 다만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보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o TV조선은 다수의 주주가 참여한 회사로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 다만 대주주의 이사회 의장 겸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
- o 2,3,4대 주주가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최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주주 요청사항으로, 이는 상호 간에 견제·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것임
- o TV조선 대표이사 선임과 방송의 공적책무 등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를 외부인사 출신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청문주체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회 판단과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하는 문제임
- o 10년 전에 비해 TV조선과 조선일보는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 조선일보 기자들이 TV조선으로 파견 나간 경우도 많았으나, TV조선 자체역량 강화로 인해 현재에는 인력 교류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해소 되었다고 생각함

편성위원회 운영 관련

- 연봉·복지 문제 등을 편성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TV조선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원들이 편성위원회를 의사전달 창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음
 - 향후 복지나 임금 사항은 별도로 논의하고 편성위원회는 편성과 관련된 사항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방송심의 관련

- 행정지도 견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행정지도가 타 종편에 비해 많은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 행정지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것임. 또한 행정지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에도 내부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임
 - 선거의 중립성은 공직선거법·방송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함.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계획임
 - '20년 심의제재 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자로서 보도본부장 및 책임자에게 주의를 줬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최종 법적결과를 받아보자는 내부 구성원 의견이 있었음. 제재건수가 많은 것은 반성하고 있음
 - 방송심의 관련 내부교육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함께 요청한 것으로, 타방송사도 관련 사례가 있음

기 타

- 추가로 개선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임

2020. 4. 10.

- 4 -

2. TV조선 청문주재자 의견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주)조선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가. 처분의 원인

-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20.3.16.~20.')하였음
-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음
※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재승인',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

나. 당사자의 진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에서는 (주)조선방송의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조선방송 재승인과 관련하여 재승인 심사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재승인 사전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처분을 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후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음
 - 심사위원회는 (주)조선방송에 대해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부여함. 중점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은 2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V조선은 해당 중점심사사항에서 만점의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획득
 - 심사위원회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제시함
 - 첫째, 시청자가 바라보는 눈높이에 비해 사업자의 인식은 뒤떨어진 상태이므로 공정성과 관련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며 객관성과 진실성에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함
 - 둘째,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어른 다양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의견반영,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여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됨

- 셋째,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심사위원회는 TV조선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며, 진행자와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주)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점수가 104.15점으로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20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에 TV조선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o 이러한 행정청의 진술에 대하여 **(주)조선방송은 다음과 같이 진술함**

- TV조선은 '17년 재승인 당시 공정성, 콘텐츠 투자, 보도비율 등이 시비의 대상이 되었고, 공정성 부분에서 보다 특별한 대책을 요구받은 바 있음
- 특히 언중 법정제재 4건 이하라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 파격적인 아웃제를 도입하고 재승인 이후 3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올해 심사평가 결과 공정성·공적책임 분야에서 기준점에 미달하였음. TV조선은 이를 보다 출중한 방송을 만들라는 공적 주문으로 생각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함. 또한 청문 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 저널리즘 평가위원회는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 학계·변호사 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7~8명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운영방안은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임
- 아웃제와 관련하여 뉴스 프로그램에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TV조선의 약속과 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 충돌하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시청자 위원회와 관련하여 TV조선은 신생 방송사인 점을 고려하여, 방송현업 종사 경험을 가진 교수님을 시청자위원회에 포함하였으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여 다양한 위원 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보도본부 내 간부급 팩트체크장을 둘 것임. 팩트체크장이 리포트를 확인하고 현장 취재 기자와 확인해서 출고할 자격이 없으면 출고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할 것임. 또한 SNS 가짜뉴스를 가리기 위해 SNS 팩트확인 전담요원도 둘 계획임
- 지배구조 독립성과 관련하여 TV조선은 다수의 주주가 참여한 회사로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 다만 대주주의 이사회 의장 겸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TV조선 대표이사 선임과 방송의 공적책무 등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를 외부인사 출신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회 판단과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하는 문제임
- 편성위원회는 향후 복지나 일금 사항은 별도로 논의하고 판성위원회는 판성과 관련된 사항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 방송심의와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것임. 또한 행정지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에도 내부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며, 선거방송 실의규정 위반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계획임

다. 증거조사 및 사실 확인

- o 주조선방송이 'TV조선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추가개선계획' 등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함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가. 청문에서 확인한 사항

- o 청문에서는 조선방송의 향후 개선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하였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개선조치들과 실적, 그리고 2020년 심사평가서를 토대로 질의를 구성하였음. 배점 50% 미달한 중점심사사항인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조선방송의 실적, 향후 추가 개선계획에 대한 청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
 - 청문조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조선방송은 저널리즘평가위원회, 팩트체크장의 설치, 반론 공유센터, 시청자위원회 위원 다양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음. 이런 개선조치들은 2017년의 조건부 재승인 이후 조선방송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회(시청자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 편성위원회,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또 다른 유사 위원회를 추가, 증설하는 것임. 그러나 위원회를 통한 사후 논의/평가 방식은 2014년, 2017년 조건부 재승인에 이어 2020년 심사에서 50% 미달점수가 증거 하듯이 조선방송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개선에 전혀 실효적이지 않고 실패한 제도와 조치들임. 실효성이 낮은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가능 수행에 합당한 인원 구성 및 안건상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앞에서 지적한 편성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의 사례가 이의 근거임. 추가개선계획에 신규로 제시하고 중점 강조한 저널리즘평가위원회는 연1회 개최되는 사후평가 조직이며, 팩트체크장 직책은 내부 인력이 총당하고, 반론보도공유는 저널리즘 질의 향상에 유용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조선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로는 매우 미흡함
 - 조선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 처분 건수는 2017년 조건부재승인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수적으로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타 종편방송사에 비해 많음. 조선방송은 아웃제가 막말, 오보, 품위저하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컸다고 자체 평가하고 시민사회, 행정청,

그리고 재승인심사 심사위원들도 그 효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조치임. 그러나 조선방송은 추가개선계획서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내에서도 아웃제가 자사 프로그램의 안정적 방송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뉴스프로그램은 아웃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조선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 수행의 미흡은 상당 부분은 '막말, 오보, 편향, 품위상실' 등의 언어적 표현방식 때문에 악화, 가중되는 면이 큼. 또 여전히 막말, 오보, 비속어, 차별표현, 혐오표현 등으로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특정 집단, 소수계층, 피해자에 대한 혐오, 증오,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아웃제를 완화,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이러한 입장전환은 조선방송 재승인 심사에 임하는 인식과 접근방식이 현안을 해결하기에 부적합하고 의지 또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임

- 조선방송은 청문에서 문제의 원인을 일부 직원들의 인식부족문제로 접근하였고 해결책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심의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는 2011년 조선방송의 설립 이래 반복되고 있는 공적책임 수행 미흡의 책임과 원인을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전가하는 것임. 2017년 이후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심의기준, 선거보도관련)에도 불구하고 중점심사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여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또 다시 직원의 인식과 교육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조선방송의 자기성찰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결과적으로 문제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방안 도출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드러냄
- 방송의 공적 책무는 조선방송이 자체 공표한 설립목적과 운영방향에 적시되어 있음. 공적 책무는 우선적으로 집행기구인 경영진과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수준/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경영철학과 방향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고 유효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음. 경영진교체, 이사회 구성에서 최대주주 및 물의를 일으킨 주주와 친인척 배제, 각종 위원회에서 공익성을 담보할 외부 인사의 일정 지분 선임, 보도논조를 포함한 경영영역에서 최대주주인 조선일보로부터 일정한 분리 내지 독립성 확보, 조선방송 시사보도 인력의 편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조설립 등 파격 조치, 조선일보 전현직 구성원들이 조선방송의 주요 보직을 맡는 시스템의 혁신,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 조선방송의 의사결정시스템과 조직문화에 공적 책무 수행방안을 기획하고 점차적으로 푸리내리게 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 것임. 조선방송은 청문 당일 이 제안에 대한 추가개선계획 제출을 하지 않았음
- 방송의 공적 책무에는 지역, 사회소수층보호, 문화적 기여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조선방송이 제출한 실적이행보고서에 기반해서 사회소수계층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보면 가) 조선방송은 한국사회가 소수계층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을 따르지도 않고 있음. 동일하게 보수매체를 지향하는 타 종편방송들과 비교해 보면 조선방송의 소수층에 대한 인식은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심각하게 오도하는 수준이었음. 조선방송의 소수계층은 노인, 어린이/청소년, 장애인에 집중되어 있음. 그 외 일반적으로 소수계층으로 분류, 규정되는 성적 소수자, 여성, 젠더다양성, 이주자 등을 배제하는 것은 차치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혐오성 막말 방송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질타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증가했다는 이형실적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뉴스프로그램에서 '사건성 뉴스'로 다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수층보호의 실적으로 계상될 이유가 없었음. 이는 조선방송이 소수계층, 소수자권리,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실천할 의지도 없거나 걸어되어 있음을 나타냄

○ 종합하면 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미흡하여 이러한 인식부족은 경영진, 이사회는 물론 조선방송 전반에 고루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의사결정구조는 물론 조직문화 자체가 공적 책무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
- 설립부터 현재까지 막말, 오보, 편향, 품위실격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음을 확인했음. 언론계, 법조계 등 학계, 언론은 물론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조선방송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각성을 촉구하고 있음
- 행정청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적책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
- 조선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논쟁이 여전한데도 조선방송은 자체 개선안을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작성, 제출하였음. 이는 조선방송이 행정청을 포함한 외부에서 제기하는 자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수긍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고 있음을 의미함. 또 행정청의 반복되는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한다는 확신을 주기에 매우 미흡함
- 공적 책무, 공익성, 공정성 관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판단 부족, 개선의 의지 미흡, 자체 추진 개선방안들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크게 미흡함을 청문에서 확인하였음
- 청문에서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조선방송의 현안 해결 역량과 판단, 의지가 부족함을 시사했음. 지배구조 개선은 어타 공공기관이나 또 경쟁 중편방송사에서 효과가 판명된 방안임을 감안하면 조선방송이 현재의 기조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나. 종합의견

- 2014년 재승인심사는 승인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확정했으나 의견주문을 통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유효기간은 최소한인 3년으로 한다. 매년 사업계획 이행 실적 점검을 의결” 했음. 또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는 “공적 책임, 공정성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흡하다는 점, 편향방송, 막말방송은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시했음. 보도공정성 보장 장치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의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단서도 부기함. 이는 2011년 창립부터 2020년 중점심사항목 50%미달의 성적표를 받기까지 전 방송기간에 걸쳐 조선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실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더구나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는 총점625점에 공적책임 세부심사항목 점수는 57점으로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음. 엄밀하게 판정하면 조선방송은 지난 2번의 심사에서 공적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말, 편향, 품위저하, 오보(히트엔런방식) 방송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 2020년 심사결과도 본질면에서 앞선 두 재승인심사의 우려사항을 그대로 재연하였고 또 조건을 충족하는데 실패했음. 2020년 재승인심사 및 행정처분은 해당 3년간의 실적이 아닌 설립 이래 현재까지 10년의 기한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처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그럼에도 2020년 청문에서 조선방송의 추가 개선방안은 지난 10년간의 공적책무 미흡과 막말·편향·오보방송의 문제를 개선하기에 역부족이거나 실효없는 방안의 반복, 답습 수준에 머물렀음. 이는 2020년 이후에도 조선방송의 문제는 그대로 지속, 반복, 재연될

것임을 말해주는 예후일. 10년에 걸쳐 3번의 심사에서 공적책임에서 미흡한 이행실적으로 사회적 물의와 논란을 일으킨 방송사를 3번째도 재승인하는 것은 법의 준엄한 가치를 훼손하고 행정청의 관리감독 기능에 심대한 불신과 의문을 초래하여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정행위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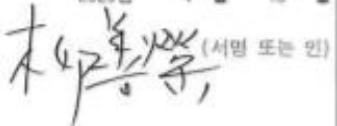
- 청문주재자는 조선방송이 항후 개선의 어지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증거사실을 확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개선의지가 미흡함을 확인한 상태에서 최종 의견 또한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려웠음. 재승인 의견을 내는 것은 청문에서 검토한 실적자료와 개선계획서의 증거에 반하는 의견일 것이며 이는 청문의견서의 합리적, 절차적 타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지난 10년간 3번에 걸쳐 모두 반복적으로 심사미달~미흡판정을 받았고 항후 개선의지, 계획, 실행력이 의심되므로 '재승인 거부' 가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볼. 청문의 원인이 된 중점심사항목 미달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을 앞에 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청문에서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원칙적 판단을 한 것임. 상대적으로 조선방송이 총점 65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음
- 조선방송은 중점심사항목 미달이지만 심사점수 총점 650점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부가 아닌 재승인을 하는 경우 동일한 문제의 반복과 누적에도 불구하고 거듭 재승인 판정을 내리는 것이 됨. 일반적인 상식과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법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방송법이 직면한 달레마임. 현행 방송법, 시행령 등에 위반 가중을 형량하여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승인 3년의 위험과 재승인 거부의 위험을 비교 형량했고 원칙적으로 재승인 거부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행정청에 제안함. 이는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감독처분기능을 존중하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함임. 나아가 작금의 한국 미디어에 대한 불신,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 우리사회가 가진 원칙과 규약에 입각해서 정면 대응하는 것 또한 정의라고 볼. 언론에 대한 불신은 사회 부문간, 계층간, 지역간, 집단간 상호이해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태이고, '신뢰'에 기반한 원만한 사회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고려했음. 방송의 공적 책무, 언론의 자유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이고 철학적인 장치임. 행정청은 조선방송의 고질적인 공적 책임 부재 문제는 무겁게 다루어야 할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다. 추가의견

- 행정청의 처분판결에서 '재승인'으로 조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조건부 3년' 보다 더 강한 조건부 내지 시한부 재승인 처분이 합당함. 다음 평가까지 방송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만약 조건부 재승인으로 처분할 경우 다음 재승인 심사에서 다시 미흡/미달로 판정될 경우 무조건 재승인 거부(일률)처분 하는 것을 조건 내지 단서조항으로 부기할 것을 제안함. 4번째 심사에서 어느 쪽이라도 미달인 경우(총점 미달 or 중점심사항목 미달) 자동취소조건을 명시해야 함

2020년 4월 13일

청문주재자 성명 : 유선명


(서명 또는 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² (제작용종)]

VIII. 채널A 의견청취 관련

(주)채널에이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주요내용

□ 개요

- (일시/장소) '20.4.9(목) 15:00~17:00 / 방통위 회의실(4층)
- (참석자) (주)채널에이 대표자(김재호, 김차수)
 - 배석자는 2인(OOO 경영총괄팀장, OOO 심의실장)

□ 의견청취 주요내용

- (의견청취 목적) 최근 언론을 통해 채널A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채널A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채널A 입장- 김재호 대표) 취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 윤리를 위반하였음. 인터뷰 욕심으로 검찰 수사 확대,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했음. 스스로 윤리강령을 거스르는 행동, 보도본부 간부들은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음. 송구스럽게 생각함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보도본부, 심의실 등 간부직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 김차수 대표가 위원장
 - 외부인사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향후 검찰 조사 등이 있을 예정이므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 (조사경과) 조사진행 중이며 종료시점도 말하기 어려우나, '20.4.21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해당기자의 취재과정) 취재과정에서 해당기자가 OO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OO 대표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보하면 검찰 수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은 사실임
 - (채널에이 간부 개입 여부) 보도본부 간부가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사실이 아님. 보도본부 간부들은 부적절한 취재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함
 - 2월초 신라젠 등에 대한 검찰 재수사 이후 해당 기자는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법조팀장은 OO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받지 못하였음
- ※ '20.3.22 법조팀장과 해당기자가 같이 제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제보자는 해당기자만 만났음
- 김차수 대표는 3.23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
 - 김재호 대표는 3.31 보도본부장으로부터 MBC에서 당일 채널에이 관련 보도가 나간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
- (녹취록 관련) 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입수하여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외부에 맡기지는 않았으며, 기자로부터 입수한 노트북은 외부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기자로부터 받은 녹취록은 A4 반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으나, MBC에서 보도된 내용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재 조사 중임
- 녹취록에 있는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검사장인지 여부는 특정하기 곤란하나, 김차수 대표가 해당 기자를 조사할 당시에는 해당 기자는 검사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조사에서는 녹취록의 내용이 검찰관계자나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도 진술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녹취록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곤란함

※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기자의 조사과정에서 MBC가 보도한 녹취록이 특정인의 것임을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음. 녹취록이 특정인의 것이라고 한 진술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 진술도 있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며 객관적 근거로 확인되어야 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발표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방통위 입장

- o 금일 의견청취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나 채널에이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였으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지 10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여짐
- 진상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 o 금일 의견청취 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 검토절차를 거쳐 채널에이의 재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

IX. 재승인 의결

1.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20.3.26)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서면회의)

의안번호	제2020 - 15(서) - 090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20. 3. 26.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2020. 3.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

< 2020. 3. 26. (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불임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붙임1: (주)와이티엔, 붙임2: (주)연합뉴스티브이)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승인유효기간이 '20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 승인유효기간이 '20년 4월 21일에 만료되는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7. 3. 9 (주)와이티엔 및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의결
(승인유효기간 : '20.3.31까지)
- '17. 3. 24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재승인 의결
(승인유효기간 : '20.4.21까지)
- '19. 5. 1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9. 8. 23 「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9. 9. 30 (주)와이티엔 및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9. 10. 21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9.12.20~'20.1.19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실시
- '20. 3.16~20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총 5일간)
 -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기간 중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20.3.18)

4.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가. 구 성

- 「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보도PP'라 함)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방송·미디어 3명, 법률 2명, 경제·경영·회계 3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3명) 등 총 13명

※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나. 운 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20. 3. 16. ~ 3. 20. (총 5일)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 >

구 분	주요 내용
3. 16(월)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3. 17(화)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자 의견청취 준비 등
3. 18(수)	사업자 의견청취,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3. 19(목)	계량평가 결과와 추가 심사자료 의결,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작성 등
3. 20(금)	심사의견서 의결

5. 심사평가 결과

- (종편PP) 심사결과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주)조선방송은 653.39점을, (주)채널에이는 662.95점을 획득하였으나, (주)조선방송은 2번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음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보도PP) 심사결과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주)와이티엔은 654.01점, (주)연합뉴스티브이 657.37점을 획득하였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항목이 없었음
 - 다만,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음
-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 방통위 의결)에 따라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및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도 조건부가 가능)

<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 >

심사사항 (배점: 종편PP/보도PP)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 티브이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400점)	343.34	344.00	340.29	343.84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점/260점)	104.15	109.60	134.30	136.2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160점)	103.90	103.50	83.80	88.4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점/80점)	56.57	56.33	41.19	50.06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100점)	50.10	52.37	57.18	43.04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점/50점)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28.00	30.30	29.95	28.70
합계(1,050점)	686.06	696.10	686.71	690.24
최종 환산점수(1,000점)	653.39	662.95	654.01	657.37

6.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보도PP)

가. 종합 소견

-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종편·보도PP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도PP는 뉴스제작과정에서 오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나. 사업자별 주요 심사의견

- (**(주)연합뉴스티브이**)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주)와이티엔**) 일부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래 비전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종편PP에 대한 심사의견서는 종편PP 재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결 시 공개 예정

7. 검토 의견

< 종편PP >

-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조선방송과 (**주**)채널 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 후,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주**)조선방송의 경우, 중점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추가 개선계획 등을 청문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도PP >

- (재승인 여부)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 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는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승인 유효기간)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으로 부여하고, '20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로 함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 방통위 의결)에 따라 재승인 유효 기간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시 3년을 부여하기로 함
 - (재승인 조건)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
 - (주)연합뉴스티브이는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5번 심사사항^{*}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된 점을 고려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된 재승인 조건을 부가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주)와이티엔 주요 재승인 조건 >

-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주)연합뉴스티브이 주요 재승인 조건 >

-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개선방안은 재승인 후 6개월 이내,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권고사항)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부가

< (주)와이티엔 권고사항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수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
 - 시청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시청자의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 ※ 탐사보도 장르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따름

< (주)연합뉴스티브이 권고사항 >

-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 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최대주주사로부터 연합뉴스TV로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의 겸직 및 직원 파견의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수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
 - 시청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시청자의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 ※ 탐사보도 장르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따름

8. 향후 계획

- '20. 3월 중 (주)와이티엔 및 (주)연합뉴스티브이 승인장 교부
- '20. 3월~4월 중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추가계획 확인 등
- '20. 4월 중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재승인 여부 의결
- '20. 4월 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붙임 1. (주)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3.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4.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끝.

(주)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구 분	내 용
(주)와이티엔	<p>재승인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 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p>권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수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 2. 시청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시청자의 주시청 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p style="text-align: right;">※ 탐사보도 장르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따름</p>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구 분	내 용
(주)연합뉴스 티브이	<p style="text-align: center;">재승인 조건</p> <p>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p> <p>2.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개선 방안은 재승인 후 6개월 이내,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권고 사항</p> <p>1.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 주주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최대주주사로부터 연합뉴스TV로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의 겸직 및 직원 파견의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수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 할 것</p> <p>3. 시청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시청자의 주시청 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p> <p>※ 탐사보도 장르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따름</p>

종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공적책임·공정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5)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2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정성(30)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80)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우수성(35)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45)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1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우수성(20)	이행계획의 우수성(10)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절성(15)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절성(25)
4. 경영 · 재정 · 기술적 능력(100)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20)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3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부채비율(12) 자기자본순이익률(9) 총자산증가율(9)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1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1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0)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20)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7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15)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35)

보도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2.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260)	공적책임 ·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0)	공적책임 · 공정성 이행실적의 적정성(75) 공적책임 · 공정성 실현계획의 적정성(75)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5)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5)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10)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2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 구매 등 수급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60)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 제작 · 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25)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 제작 · 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35)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60)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70)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30)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적절성(4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3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15)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4. 경영 · 재정 · 기술적 능력(80)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4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이행계획의 우수성(15)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15)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25)
		부채비율(12)
		자기자본순이익률(9)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0)	총자산증가율(9)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5)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5)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0)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2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70)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70)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15)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35)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장 르	정 의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등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정규 뉴스 및 특별 편성 뉴스포함)
탐사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특정 시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 취재 사실 및 관련 분석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사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자사 및 타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토론·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음악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게임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2.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20.4.20)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 - 20 - 099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20. 4. 20.	
공개여부	공 개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2020. 4. .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

< 2020. 4. 20.(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 주문

가. (주)조선방송

< 1안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붙임1>과 같이 방송연장을 명령한다.

< 2안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 <붙임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0년 4월 22일부터 '23년 4월 21일까지 3년으로 한다.
-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2>의 재승인 조건 중 2,3,4,5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 방송의 공정성 구현) 및 추가개선계획(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클럽 객관성 강화방안,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다만, 추가개선계획으로 제출한 일진·이진·삼진아웃제 운영은 보도 장르(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에 모두 적용하여 운영 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3. 재승인 신청서 중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재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향후 계획은 '2'번 조건의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것

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건수에만 포함함

5.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나. (주)채널에이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년 4월 22일부터 '24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한다.

-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20.4.9)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안 이유

○ 승인유효기간이 '20년 4월 21일 만료되는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 사항

- '19. 5. 1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9. 10. 21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9.12.20~'20.1.19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실시
- '20.3.16~'20.3.20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총 5일)
 -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기간 중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20.3.18)
- '20. 4. 9 (주)채널에이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실시
- '20. 4. 10 (주)조선방송 청문 실시

4.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가. 구 성

- 「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분 야	성 명	현 직
방송(3인)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정미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법률(2인)	민경한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경영 · 회계(3인)	노진백	삼일회계법인 이사
	이정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본부장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
기술(1인)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시청자 · 소비자(3인)	김은규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나. 운 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20. 3. 16. ~ '20. 3. 20. (총 5일)

5. 심사평가 결과

- 심사결과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주)조선방송은 653.39점, (주)채널에이는 662.95점을 획득하였으나, (주)조선방송은 2번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음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 방통위 의결)에 따라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등 중점심사 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

<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 >

심사사항 (배점)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343.34	34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점)	104.15	109.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	103.90	103.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점)	56.57	56.33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50.10	52.37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점)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28.00	30.30
합계(1,050점)	686.06	696.10
최종 환산점수(1,000점)	653.39	662.95

6.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

3. 가. 종합 소견

- 2017년에 비해 콘텐츠의 질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향후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이 요구됨

-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종편·보도PP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편PP는 약속한 콘텐츠 투자 등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재승인 기한 내에 콘텐츠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 콘텐츠 투자 분야를 비롯한 일부 사업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의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나. 중점 심사사항 별 소견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 시청자가 종편·보도PP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비해 사업자의 인식은 뒤떨어진 상태이므로 공정성과 관련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며 객관성, 진실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함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여론 다양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의견반영,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여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됨
- (주)조선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구성이 미디어 관련 학과 교수나 현업 종사자들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시청자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매우 미흡하므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비평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고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진행자와 출연자(시사·대담)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는데 시청자 의견과 자체심의 간 괴리가 크므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엄격히 통제할 필요

- (주)채널에이는 유사한 위원회와 TF(ex :공정심의위원회와 공정보도심의 위원회, 공정선거TF와 공정선거보도TF)는 통폐합을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겸증장치의 운영이 필요함
 - 또한,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품격저하, 신뢰성저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 종편·보도PP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주)조선방송의 최대주주인 조선일보사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함
- (주)채널에이의 최대주주사(동아일보) 임원과 직원의 겸임 및 교류가 타 종편PP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종편PP가 홈쇼핑방송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동시간대에 건강 등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 현혹 및 혼동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편PP는 협찬을 받아 방송을 하는 경우 협찬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하여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주)조선방송이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웃제' 같은 제도는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속 유지시키는게 바람직함
- (주)채널에이는 Killer Content의 개발을 위한 편성·제작의 노력과 제작 자원의 투입전략이 필요하며 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함

다. 기타사항

-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각각 최초 승인 당시 주주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심사 시 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당법인과 최대주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약서(붙임5, 6 참조)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하였음

7. (주)조선방송 청문 결과

가. 청문 개요

- 일시/장소 : 2020. 4. 10.(금) 14:00~16:00 / 4층 위원회 회의실
- 청문 주재자 : 유선영 교수(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청문위원 : 주정민 교수(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 참석자 : 김민배 (주)조선방송 대표이사, 홍준호 (주)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등

나. (주)조선방송 및 최다액출자자 의견 진술 주요 내용

- 공정성·공적책임 분야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결과는 보다 훌륭한 방송을 만들라는 공적 주문으로 생각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추가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청문에서 지적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 (저널리즘평가위원회) 학계·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7~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공하고 그 결과는 내부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청자위원회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위원 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팩트체크)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반론이 있는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보도본부 내 간부급 팩트체크장을 두고, 팩트체크장이 현장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확인해서 출고할 자격이 없으면 출고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지배구조 독립성 관련) 현재 방송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구조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보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방송의 공적책무 등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를 외부인사 출신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회 판단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함

다. 청문주재자 의견

- (주)조선방송은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저널리즘 평가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사후평가 조직이고, 팩트체크장은 내부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선 조치로서 매우 미흡함
- 법정제재 건수가 타 종편PP에 비해 여전히 많고, 오보·막말 등으로 방송품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프로그램에 아웃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주)조선방송이 '17년 이후 다양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이번 심사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방송의 공적 책무 개선을 위해 집행 및 의결기구 등 지배구조의 개선이 유효한 방안이라 판단하여 '경영진 교체', '이사회 구성 변경', '각종 위원회에서 공익성을 담보할 외부인사 포함', '최대주주인 조선일보와의 독립성 확보' 등의 추가개선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주)조선방송은 추가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

- (주)조선방송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적책무·공정성 관련 문제의 개선 의지가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을 반복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재승인 거부'가 합당하다고 판단됨
- ※ 행정청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처분하는 경우 승인유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다음번 재승인 시에도 총점 미달 또는 중점심사사항 과락의 경우 무조건적인 재승인 거부를 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의견을 제시
- ※ 청문 당사자의 의견진술 세부 내용과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붙임7>, <붙임8> 참조

8. 검토 의견

< (주)조선방송 >

- (주)조선방송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
-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에서도 시청자들은 (주)조선 방송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으나,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자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함
- 청문주재자도 청문을 통해 (주)조선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개선계획이 오보·막말·편파 방송 문제를 개선하기에 역부족이고 공적책무 이행에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을 반복·답습하는 수준이며, 공적책무에 대한 인식부족은 (주)조선방송 전반에 고루 확산되어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주)조선방송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할 만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2017년에 이어 반복적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주)조선방송에 대해 '재승인 거부'가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재승인을 거부하는 방안이 가능함

- 한편, '20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은 과락이었으나, '17년 재승인 이후,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방송평가 점수가 점차 상향되고 이번 심사결과 총점은 650점을 넘긴 점,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승인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선방송의 사업계획서 중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계획 분야를 재작성하고,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승인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되,
 - 청문주재자가 (주)조선방송에 제안한 사항 중 방송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각종 내부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라는 내용을 권고 사항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 조건에 추가하여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방안도 필요함
- 따라서 (주)조선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의결한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된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아래 주요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방송법 제101조)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 (주)조선방송 주요 재승인 조건 >

- | |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구현) 및 추가개선계획(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클럽 객관성 강화방안,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
|--|

다만, 추가개선계획으로 제출한 일진·이진·삼진아웃제 운영은 보도 장르(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에 모두 적용하여 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3. 재승인 신청서 중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재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향후 계획은 '2'번 조건의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것

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건수에만 포함함

5.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에는 재승인 유효기간은 '20년 4월 22일부터 '23년 4월 21일까지 3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와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며, '조건부 재승인' 시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을 부여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였음

< (주)채널에이 >

-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채널에이는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
- 한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나 (주)채널에이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 '20.4.9,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주)채널에이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 다만 (주)채널에이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포함이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문제제기에 (주)채널에이는 진상조사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취재 진실성·투명성 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에게 추가 조사 요구권과 관련자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 동 사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대책(윤리규칙 제정, 취재원과의 관계 관련 제작가이드라인 개정, 정기적인 기자재교육 실시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음
- (주)채널에이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였고, 취재윤리 위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승인을 의결하되,
-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고 조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철회권 유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에 따라 총점이 650점을 넘은 점,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20년 4월 22일부터 '24년 4월 21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중점심사사항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위반 관련 조건부가 필요성은 (주)조선방송의 검토의견과 동일함

< (주)채널에이 주요 재승인 조건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구현,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추가개선계획(내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삼진아웃제 등 프로그램 개선사항 반영방안, 심의규정 벌칙 강화 등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검증 시스템 마련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20.4.9)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건수에만 포함함
8.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세부내용은 <붙임2>, <붙임3> 참조

9. 향후 계획

- '20. 4월 중 방송연장명령((주)조선방송 재승인 거부시)
- '20. 4월 중 승인장 교부((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재승인 의결시)
- '20. 4월 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붙임 1. 방송연장명령 결정사항

2. (주)조선방송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안)
3. (주)채널에이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안)
4.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5. (주)조선방송 주주구성 관련 확약서
6. (주)채널에이 주주구성 관련 확약서
7. (주)조선방송 청문조서
8. (주)조선방송 청문주재자 의견서
9. 종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10.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끝.

[주]조선방송 - 1안 : 방송연장명령 결정 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법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4,5항에 근거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하도록 (주)조선방송에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 가.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 2020년 4월 22일 ~ 2021년 4월 21일(사업 승계자가 방송을 개시할 경우 단축될 수 있음)
- 나.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 다. 기타 : 방송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방송법 등을 잘 준수하도록 하고, 2017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시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시청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주)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의결후 수정사항 반영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p>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p> <p>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구현) 및 추가개선계획(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클럽 객관성 강화방안,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다만, 추가개선계획으로 제출한 일진·이진·삼진아웃제 운영은 보도장르(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에 모두 적용하여 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p> <p>3. 재승인 신청서 중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재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향후 계획은 '2'번 조건의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것</p> <p>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p>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건수에만 포함함 5.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6. 편성의 독립성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편성위원회를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고 전년도 편성위원회 논의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7.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8.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 9.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17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미달하였을 경우, '20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 10.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11. 최초 승인 주주구성 의혹과 관련하여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2.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3.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 4. 방송의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수계층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5.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6.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방송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7. 방송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방송콘텐츠 펀드 조성·운영, 펀드 투자 참여 등 방송콘텐츠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8.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내부 위원회에 시민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노력 할 것

(주)채널에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의결 후 수정사항 반영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p>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p> <p>※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p> <p>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구현,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추가개선계획(내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삼진아웃제 등 프로그램 개선사항 반영방안, 심의규정 벌칙 강화 등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검증 시스템 마련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3.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진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 자문위원회의 검증절차가 종료된 직후 그 결과와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4.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취재윤리 등을 담은 기자준칙에 대한 임직원 내부교육을 분기마다 시행하는 등 교육제도를 보완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5. 방송사업 수행을 위해 구비하고 있는 윤리강령, 방송강령 등을 재정비하고 취재윤리를 포함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것, 아울러 내부규정을 위반한 기자·PD 등에 대해 징계규정을 강화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6.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20.4.9)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p>

구 분	내 용
	<p>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p> <p>※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건수에만 포함함 <p>8.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p> <p>9.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p>10.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p> <p>11.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17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19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금액에 미달하였을 경우, '20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p>

구 분	내 용
	<p>12.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p> <p>13. 최초 승인 주주구성 의혹과 관련하여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p>
권고 사항	<p>1.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p> <p>2.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p> <p>3.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p> <p>4.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p>

설교집

Le₁,
72



한국어 표기법

אָמֵן מְרַגְלָה

卷之四

卷之三

5050 ፲፻፭፻

이 책은 산수이 명승을 화양합니다.

기사단장을 했던 그는 1990년대 초반에는 노무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노무현 정부 출범을 기원하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총회는 죄송함을 표하는 이호 사학상을 하반학기등이 행해져
는 아울러 사학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정신을 넓힐 목적으로
수학여야 학사학회 올해 하반학기에는 학부 학사학회에서
는 학부 학사학회에서 학부 학사학회에서 학부 학사학회에서
는 학부 학사학회에서 학부 학사학회에서 학부 학사학회에서

၁၂

<看句>

(붙임6)

제1장 서론



한국어 대표작 : 문학



ଶ୍ରୀକୃଷ୍ଣଙ୍କାର : ଶ୍ରୀମଦ୍ଭଗବତ

2020 ମେ ଢାଇଁ ପରେ

한국 체육학회는 이 책을 산학연이 협력으로 출판합니다.

한국의 대가상 계약은 이전에 학교를 재건하는 사업이 끝나며 이전 학교
주체(본교)와 학교(한국)는 학교 재건 사업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확정
하였다. 당시 학교는 학교 재건 사업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였다.

죽여할 삼진이 끝등등 화재한 그다.

한국의 대중문화(大眾文化)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친 미술, 문학,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예술가들로 구성된 운동이다.

총회는 죄악인을 헌 등 이호 서한사화를 하마와였으니 유험경
를 외어 아뢰 사화에 드하여 죄악인 서한와며 유험을 하마하니
수악여야 죄 사화 온통 하마와여 주주를 낸 성화 사경이 떠나니
이 왜하를 와거나 하마하나 죄악인사가족에서 죄악인 사경자와
죽 죄인등 죄악인 온인 신경(모든 온인과 죄악 신경)은 죄악

四百一

〈脣印〉

3.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20.4.20)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4. 20.(월) 14:31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음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0-20-099)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 지원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조선방송 <1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붙임1>과 같이 방송연장을 명령합니다. <2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 <붙임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 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2>의 재승인 조건 중 <2>번, <3>번, <4>번, <5>번 항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2>번 조건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개선계획으로 제출한 일진, 이진, 삼진아웃제 운영은 보도 장르에 모두 적용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구현 등입니다. 추가개선계획은 저널리즘 평가 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클럽 객관성 강화방안,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방안 등입니다.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3>번 조건입니다. 재승인 신청서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제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2>번 조건의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4>번 조건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입니다.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새로 추가된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건수에만 포함합니다. <5>번 조건입니다.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

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채널에이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채널에이에 대해 <불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한다.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이 2020년 4월 21일 만료되는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 사항은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주)채널에이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고, 4월 10일 (주)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명단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주)조선방송은 653.39점, (주)채널에이 662.95점을 획득하였으나 (주)조선방송은 <2>번 중점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평가점수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습니다. 방송사업자별 심사사항별 배점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 소견입니다. 2017년에 비해 콘텐츠의 질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향후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종편·보도PP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도의 공정성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투자 등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콘텐츠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심사 사항별 소견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청자가 종편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비해 사업자의 인식은 뒤떨어진 상태 이므로 공정성과 관련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며, 객관성·진실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여론 다양성, 시청자 권리보호 및 의견반영,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여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구성이 미디어 관련 학과 교수나 현업 종사자들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시청자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매우 미흡하므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비평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고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채널에이는 유사한 위원회와 각종 TF(공정심의위원회와 공정 보도심의위원회, 공정선거TF) 등을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검증장치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편·보도PP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조선방송의 최대주주인 조선일보사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채널에이의 최대주주사 임원과 직원의 겸임 및 교류가 타 종편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편PP가 홈쇼핑방송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동시간대에 건강 등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 현혹 및 혼동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편PP는 협찬을 받아 방송을 하는 경우 협찬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하여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조선방송이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웃제’ 같은 제도는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채널에이는 Killer Content의 개발을 위해 편성·제작의 노력과 제작자원의 투입전략이 필요하며 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각각 최초 승인 당시 주주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해당 법인과 최대주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조선 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은 지난 4월 10일 14시부터 진행을 했고, 청문주재자는 성공회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선영 교수가 주재하셨습니다. 참석자는 (주)조선방송의 김민배 대표이사, 그리고 (주)조선일보사의 홍준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 측의 의견진술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성·공적책임 분야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결과는 보다 훌륭한 방송을 만들라는 공적 주문으로 생각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청문에서 지적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학계·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7~8명의 외부인사로 저널리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내부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위원 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반론이 있는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보도본부 내 간부급 팩트체크장을 두고, 팩트체크장이 현장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확인해서 출고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구조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보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책무 등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를 외부인사 출신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회 판단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청문주재자는 (주)조선방송은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저널리즘 평가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사후평가 조직이고, 팩트체크장은 내부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선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제재 건수가 타 종편PP에 비해 여전히 많고, 오보·막말 등으로 방송품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프로그램에 아웃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이 '17년도 이후 다양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이번 심사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무 개선을 위해 집행 및 의결기구 등 지배구조 개선이 유효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경영진의 교체'나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제안하였으나 (주)조선방송은 추가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조선방송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적책무·공정성 관련 문제의 개선 의지가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재승인 거부'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의견으로 만약 행정청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인유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다음번 재승인 시에도 총점이 미달하거나 중점심사사항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주)조선방송입니다. (주)조선방송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에서도 시청자들은 (주)조선방송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으나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자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청문주재자도 청문을 통해 (주)조선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개선계획이 오보·막말·편파 방송 문제를 개선하기에 역부족이고, 공적책무 이행에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을 반복·답습하는 수준이며, 공적책무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조선방송 전반에 고루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주)조선방송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재승인 거부'가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2020년도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은 과락이었으나, '17년도 재승인 이후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방송평가점수가 점차 상향되고 있고, 이번 심사결과 총점이 650점을 넘긴 점,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승인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선방송의 사업계획서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계획 분야를 재작성하고,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승인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되, 청문주재자가 (주)조선방송에 제안한 사항 중 방송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각종 내부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라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 조건에 추가하여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조선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방송의 공정책임·

공정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된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된 아래의 주요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박스의 주요 조건은 의결주문 <2안>에서 말씀드린 조건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할 경우에는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 까지 3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채널에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채널에이는 과락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한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나 (주)채널에이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주)채널에이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포함이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주)채널에이는 진상조사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취재진실성·투명성 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에게 추가 조사 요구권과 관련자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 사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채널에이가 재발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취재윤리 위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승인을 의결하되, 조사 종료 후 그 결과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총점이 650점을 넘은 점, 과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중점심사사항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관련된 조건은 (주)조선방송의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아래 주요 재승인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2>번 항목은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의 내용이 (주)조선방송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주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6>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전과 관련하여 향후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7>번은 (주)조선방송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8>번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조선방송의 경우 <1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4월 중에 방송연장명령을 할 계획이고, 4월 중에 (주)조선방송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할 경우, (주)채널에이 재승인의 경우 승인장을 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그중 <2>번과 <3>번이 각각 사업자에 대한 주요 조건과 권고 사항입니다. <붙임> <2>번을 먼저 보시면 <1>번 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일반적인 조건 항목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그리고 <4>번, <5>번까지는 아까 보셨던 주요 조건입니다. <6>번 항목은 편성위원회를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7>번은 상품 등의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았다는 내용을 고지하라는 조건이고, <8>번과 <9>번은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해서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심사 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고사항 관련해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1>번 항목은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의 목록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입니다. <2>번 권고 사항은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항목은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3>의 (주)채널에이 조건을 보시면 <1>번 항목은 (주)조선방송의 항목과 동일하고, <2>번 항목도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의 세부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관련해서는 취재윤리 위반 건과 관련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항목, <8>번, <9>번, <10>번, <11>번 항목까지는 TV조선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12>번, <13>번 항목도 동일하고, 권고사항은 <1>번, <2>번, <3>번, <4>번 4가지 권고사항이 있는데 전부 TV조선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 표철수 상임위원

- 오늘 안전으로 올라온 것이 2개 방송사업자입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고, 조건 부여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TV조선부터 말씀드리고 그 이후 채널A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안전 대상인 TV조선은 지난번 재승인 때 와는 달리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총점이 650점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이 되었는데 기준점수에서 소수점 단위의 근소한 차이로 과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보·막말·편파 방송과 관련된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유지하도록 부가했던 조건을 지켰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조건부 재승인을 해서 앞으로 더 공익적이고 보다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실무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해 5월에 의결한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700점 이상일 경우는 5년, 650점 이상은 4년, 650점 아래는 3년으로 했고, 당시 과락에 대한 단서는 없었는데 TV조선에 대해서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점 미만을 받았는데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에는 3년을 부여한다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과락으로 인한 조건부 재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3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조건들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본래 650점 이상은 4년인데 3년 한 이유가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받았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는 것이 안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 2019년 9월에 채택된 모든 사업자들에게 보내준 사전기본계획(안)에는 어디에도 중점심사사항을 어겼을 경우 유효 기간을 1년을 내린다, 2년을 내린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얻은 사업자는 4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갑자기 1년을 내렸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에 주신 여기 이런 문장, 이 부분에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심사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와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며, 조건부 재승인 시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언제 3년으로 부여하기로 고려를 누가 했습니까? 이 문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건부 재승인 시에는 3년으로 부여한다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전에 사업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4년을 3년으로 내린 것인지, 물론 법에는 5년 가운데 2년까지는 감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내용인데 그 법을 세분화시킨 것이 바로 점수를 세분화시킨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철수 위원님께서 제안으로 700점 이상에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까지는 4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에게 갑자기 중점심사사항 때문에 1년을 깎는다면 이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으로 말미암아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차별이, 이것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1년을 감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 그대로 사업자들에게 보내줬던, 알려줬던 규정 그대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점수를 얻은 사업자는 4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본계획에 보시면 유효기간 관련된 부분은 상단에 일반 규정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밑에 중점심사사항 관련된 과락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경우가 과락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에는 똑같이 3년으로 부여해야….

○ 안형환 상임위원

- 여기에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이지요. 행정관청이 예측

가능하게 보여 주어야지 마음대로, 분명히 많은 사업자들 유효기간 위에 650점에서 700점 미만이라면 4년을 생각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이기 때문에 1년을 더 깎아서 3년을 한다, 이런 조항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재승인 사전기본계획에서 위에는 점수 기준이고, 위에 점수 기준할 때는 중점심사사항….

○ 안형환 상임위원

- 점수 기준에 유효기간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유효기간이라는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에 4년인데 조건으로서 '중점심사사항에 해당 된 경우는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자, 이것만 본다면 중점 유효기간 여기만 보고 판단하지, 이것을 마음대로 '중점심사사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1년을 깎는다'는 문장은 한 문장도 없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3년을 깎을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행정청이 그렇게 재량권이 강합니까? 저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1년을,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지나 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작용 헌 칼 휘두르듯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얻은 사업자는 4년이라는 규정을 지켰으면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 4년을 지키자는 것은 안형환 위원님의 주장이시고, 답변은 명확하게 듣고 그 주장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결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답변을….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보시면 위에는 과락을 예정하지 않고 점수만 했고, 밑에서 보면 과락할 경우에 심지어 재승인 거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상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고, 법률자문도 마쳤을 때 이것은 3년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락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해석상 3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중점심사사항에서 이중처벌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중처벌입니다. 저 혼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처벌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존경하는 안형환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단서를 분명히 달아서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리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안>, <2안>이냐, 이 이야기도 아직 논의하지 않았는데 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문제는 거기에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것은 법의 확대해석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법의 확대해석인데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4년으로 늘릴 수 있다, 이것은 확대해석이고 법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답변하신 것이니까 논의는 위원님들끼리 하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허 육 상임위원

-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작은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위원님 의견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안)을 짤 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국장이 설명한 대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그리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재승인 시 3년을 부여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점심사사항 역시 종편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승인 거부 까지도 가능한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에 대해서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맞은 사업자와 오늘 예를 들면 채널A와 조선방송 사이에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면 유효기간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재승인 그리고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3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변별력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성이 주어지는 행정의 재량권, 또 각 단계별로 방송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 승인 기간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편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중점심사사항과 유효기간과의 법적인 연계성 그리고 관련된 해석의 타당성을 볼 때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후에 더 논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실 분 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금 보면 <2안>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1안>, <2안> 가지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방송사든 방송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송사의 독립과 역할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며 권력을 감시한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하는 노력과 또 하나는 TV조선이 명문화시킨 방송윤리강령이나 보도준칙 이런 것을 준수하겠다는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해서 정립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TV조선의 현실이나 과거를 보면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특정 권력 편들기, 혹은 권언유착이라는 말이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마한 막말과 편파 방송의 주범들의 독무대가 되었던 종합편성채널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종편 고정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식으로 정치권력과 방송은 스스로 경계 구분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막말·편파방송 정치인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마땅을 깔아준 종편 방송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V조선 공정보도 가이드라인의 공정보도 불편·부당성 편이나 균형성 편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는데, 조선방송은 2010년도에 논란 끝에 최초 승인을 받은 뒤에 2020년도 세 번째 재승인 심사 때까지 늘 막말·편파방송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선방송은 2014년에도 공적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57%를 기록했고, 2017년도에는 이보다 더 낮은 52%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항목에서 50% 못 미쳐서 과락을 받게 된 것인데,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심사를 맡았던 외부위원들의 의견도 승인을 취소하라는 그런 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청문위원들도 승인 취소하라는 이런 강력한 주문을 내릴 정도인데 2017년도에 재승인 심사 때 조선방송은 650점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625.13점을 받아서 승인 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승인 취소가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당시 방통위가 다시 조건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요 부문에서 과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개선될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승인 취소를 의견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방송은 그동안 진실을 추구하기는커녕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도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진실이 확립된 사건인데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탈북자를 출연시키고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고, 또 빨갱이로 이렇게 낙인찍는 이런 일에 중심에 선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정정하고 사과했지만 진실과 역사를 부정·왜곡한다는 비판이 반복 된다는 것은 사회적 공기,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방송사의 존재를 스스로 저는 부정하는 셈이라고 보고, 또 공신력 있는 방송사로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확대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방송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한·일 외교 분쟁이 벌어졌을 때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그런 비판을 받은 것도 과연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사인가에 대한 거듭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2020년 방통위가 새롭게 시도한 시청자 의견청취 및 “국민이 묻는다”에서의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서도 조선방송은 OOO건의 의견 중에서 승인을 취소하라는 불승인이 전체 OO%에 해당되는 OOO건의 의견이 모아졌던 문제의 방송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TV조선의 방송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의 정신은 시청자위원회 제도나 또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내실화되어야지만, 그렇지 못해서 내적 규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와서 짧은 기간에 20만을 돌파해서 청와대 답변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방통위가 답변을 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과 TV조선 심사위원회 의견서를 종합하고, 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와 청문의 종합의견을 포함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공통된 요구는 모두 TV조선 방송 승인을 취소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 언론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TV조선이 자초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방통위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 될 동안 과연 제대로 제 역할을 했던가에 대해서도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분에서 거듭된 저조한 점수로 또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과락을 받았다는 점을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조선방송에서도 물론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압니다만 그런 노력이 시청자의 기대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지난 기간 동안 수차례 기회가 있었고, 또 방송의 공정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거듭 실패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TV조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저는 <1안>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정리하자면 표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재승인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고, 김 위원님께서는 재승인 거부안의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조건부 재승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조건부 재승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조건부 재승인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가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건부라는 것은 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종합편성 채널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내줄 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여서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건, 즉 부관이라고 하지요. 부관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붙이는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 논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건을 붙이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사업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이 조건을 붙일 때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붙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건부 재승인의 기준으로 나온

것이 총점은 넘어섰지만 중점사항 점수 미달입니다. 배점 50%에서 공익성·공공성, 지역 이런 내용들이지요. 여기에서 0.4%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공정성 부분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사위원도 조건부 재승인의 기준인 중점심사사항에서 <1>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항목에서 공정성 문제를 가장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이 과연 방송의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누가 심사해야 할 것인가, 그 심사 자체가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지요. FCC에서도 '87년부터 공정성의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왜냐? 오히려 공정성의 원칙이 언론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역행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도 공정성 원칙이 공정 보도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언론규제에 직접 개입하도록 한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공정성의 원칙은 이미 폐기된 상황입니다. 특히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전파가 한정된 상황에서 그 전파의 영향력을 보고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다채널·다선택·다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파의 희소성 원칙에 근거한 공정성 조항 자체가 큰 매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 예속된 정부기구에 의해 이 공정성 문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 처음 만들 때 사회주의자들이 방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 때 이 공정성의 원칙을 이용해서 보수 라디오 방송을 많이 제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그 심사위원들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정성 부분은 정량적 평가가 불가합니다. 심사위원들의 느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 때 공정성 문제, 심사 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까지 맞물려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잘못되어서 과락 점수를 맞고, 과락 점수도 0.4%이다, 그것 때문에 한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한다? 만약 문을 닫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정성 부분은 보도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성 부분, 보도에 관한 부분인데 보도가 문제 있다고 해서 종합편성 채널의 교양·오락까지 다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 때문에 어떤 특정 언론사를, 특히 방송사를 재승인하니 마니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만든 사전 기본계획(안)에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음’으로 이 조항을 들어서 저는 이번에 TV조선 같은 경우 조건 없이 중점심사사항을 고려하지 말고,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서는 “재승인할 수 있습니다”이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지 않고 규정 그대로 65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4년을 재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조건 없는 재승인이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신 것이네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알고….

○ 김창룡 상임위원

-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우리 방송법에 공정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미국 것을 끌어와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공정성 논란이 그렇게 됐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지금처럼 이런 문제의 방송을 했다가는 방송사 문을 닫는 또 다른 강력한 법이 있다,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가지고 설명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위원님은 그런 안을 제시했지만 저는 <1안>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께서 언론학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법에 “방송은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상당히 저는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이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항목이지 그것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정부기구에서 그것을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논의한다면 조건 중 선거방송 심의 위반 때문에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피해를 본 선거후보자나 정당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민사상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청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받아서 처벌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면 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말씀하셨고, 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승인에 관련된 의견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안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심사를 하는 방송법의 근본 내용 자체가 방송법 제6조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송제도의 전반적인 제도적 틀, 그리고 운영체계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같이 종편이나 보도채널도 라이선스, 즉 특허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방송사업을 유지·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의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방송법, 또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통위 설치법에 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상업방송 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시장 추구, 시장주의적인 방송정책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공익적인 방송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문시장, 사상의 자유처럼 다종다양한 진입의 장벽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원성·다양성 그리고 상업적인 경쟁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는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 정신, 그리고 미국의 언론자유의 논점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1987년에 FCC에서 공정성 원칙을 폐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Telecommunication Act)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사례가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국의 방송제도 틀 내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의 내용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선상에서 지난 3년간 종합편성 채널이 제대로 방송법에서 제시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제대로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방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에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 종편채널이 출범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역시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생존 애국지사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1,500여 분이 빗속에서 시위를 하고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재승인 취소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깊이 되새겨야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조선방송 의결주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7년 3월 24일 두 번째 재승인 심결 회의록을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재승인 조건을 추가개선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차례만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2017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청문을 실시했던 청문주재자 의견도 다음과 같습니다. “(주)조선방송이 2017년 이후에 다양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이번 심사에서 과락을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무 개선을 위해서 집행 및 의결기구 등 지배구조 개선이 유효한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추가개선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조선방송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방송은 공적책무·공정성 관련된 문제의 개선의지가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 등을 반복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재승인 거부가 합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종합 소견은 2017년보다 콘텐츠 질이 개선되었지만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문주재자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숙고한 끝에 저는 의결주문 <2안>을 하되, 보완된 <2안>, 즉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2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방송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선방송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합점수가 650점을 넘은 데다 '17년 재승인

이후에 방심위의 법정제재 감소, 콘텐츠 투자 확대, 편성의 다양화 등 부과된 재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방송이 지난 '17년 재승인 심사에서 625.13 점을 얻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중점심사항목의 과락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승인 처분 취소의 4가지 조건에 추가해서 만약 다음번 심사 때 또 다시 종합점수 650점에 미달 또는 주요한 심사항목에 과락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재승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안>의 후반부인 3쪽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중점심사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즉, 올해와 똑같은 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안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붙임>에서 밝힌 재승인 조건 11가지와 권고사항 8가지 모두 조선 방송의 조건부 재승인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서 유효기간 역시 650점 이상이고 또한 과락이 없는 것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채널에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께서 조건 없는 재승인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허 욱 위원님께서는 의결주문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는 이런 조건부 재승인(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의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나온 안들을 저희가 표결을 하든 아니면 계속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든 간에 나온 안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안이 성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대해서 뭔가 의견 동의가 있으시고 재청이 있어야 안으로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안 위원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는 재승인(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으로 성립시키는 데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안을 내셨으니까,

○ 한상혁 위원장

-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안을 냈는데.

○ 한상혁 위원장

- 표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것으로 보고, 조건 없는 재승인(안)을 안건으로 성립시켜서 기존 안 2개에 하나를 더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허 욱 위원님이 제시하신 추가된 조건부 재승인(안)에 대해서도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 한상혁 위원장

- 안으로 성립할지 성립하지 않을지만 판단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그것도 안으로 일단 포함시켜야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올려놓으시지요. 그럼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존 사무처에서 제시한 2개 안과 안 위원님과 허 위원님께서 제시한 각각의 안으로 해서 4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해서 더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의안 정리를 위해 잠깐 철회를 하고 정리를 할까요?

○ 허 육 상임위원

- 제가 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존경하는 안형환 위원님 말씀의 취지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중점심사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인 해 주되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즉 부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행위의 본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특정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재량행위의 당연한 사안들로, 복잡다단한 현재의 행정처분을 감안할 때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안들입니다. 이를테면 채널A에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철회권 유보도 분명히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여러 가지 부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는 선에서 재승인을 해 주는데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과연 안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심사사항에서 두 조항입니다. 두 조항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두 사안입니다. 저는 물론 앞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 점을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사항으로 볼 것이 6개 조항이 있습니다. 6개 사항 가운데에서 굳이 이 두 조항을 중점심사사항으로 뽑히는 과정 자체가 저는 법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2개 조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정성적 판단이고, 그래서 뽑혔다고 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이 문제가 과락을 맞았다, 50%에서 0.4%로 과락을 맞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언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국의 방송환경이 바뀌었다는 것, 아까 허 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부분이 공영방송 체제하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방송은 이미 상업적 시스템으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종편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KBS, MBC, EBS까지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종편 상업방송화되어 있습니다. 다채널·다매체 시대는 이미 상업 방송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것도 정부기관이 한국처럼 이념적인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난번 사업자들에게 준 이것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맞았을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음’이 조항을 고려해서 저는 ‘할 수 있다’로 보고 이 조항을 일단 거론하지 않고 유효 기간 조항만 들어서 65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4년의 재승인을 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잠깐만 언급을 하면 전부 점수도 넘고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특허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재승인을 해 줄 수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근본적인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 한상혁 위원장

- 안건은 성안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의견이 3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3개 안 가운데….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4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4개 각자 다 다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4개 안이지요. 그런데 크게 따지면 3개 안 아니겠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거부.

○ 안형환 상임위원

- 김창룡 위원님 말씀 거부,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 또 1건 조건 없이 승인하자는 것인데 이 3개를 정리해서 한 안건을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어떻습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4개 안을 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재승인 거부, 조건부 재승인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 없는 재승인 3가지를 놓고 간단히 의견을 질게 설명하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을 놓고 하면 다시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부가하는 데 있어서 저도 조건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따로 수정해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에 중요심사항목에서 과락되거나 총점이 650점이 안 됐을 때는 재승인·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부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인들도 많이 방청하고 계시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정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안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잠깐 늦어도 4시까지는 의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가급적 그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신 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잠깐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래 4가지 안이 아니라 3가지 안이라는 것은 조건부 재승인에 있어서 조건은 수정 조건부라는 것에만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조건부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가지 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그렇지요. 조건부에 다른 조건까지 붙인 수정안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나머지 현재 <2안>에 관련해서는 그것으로 <2-1>이라는….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에 전에 발언한 것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새로 부가한 조건을 붙인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조건은 아니고 어쩌면 ‘행정 의지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 왔으니까 그것들을 주문에 담아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 신청인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의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충 내용에 대한 의견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잠깐 정회를 하면서 의안을 조정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40분 정회 】

【 16시 08분 속개 】

○ 한상혁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수정안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안을 완성하기로 하고, 각자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제시한 <2안> 그것이 기본골격이고, 아까 존경하는 혀 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포함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안> 가운데 조건부 재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2>의 재승인 조건 중 <2>, <3>, <4>, <5>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항 중 <2>번, <3>번은 별 문제가 없고, <5>번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이 규정은 일반조건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심의에서 법정 제재의 전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이번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른 법정제재 2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종래보다도 두 항목이 더 들어갔습니다. 심의규정 제21조 제3항 인권 보호 부문과 제25조 윤리성 조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추가됐을 경우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5건으로 조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혀 육 상임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2안>의 유효기간, 조건부 승인과 유효기간 그리고 뒤에 재승인 처분 취소의 <2>, <3>, <4> 조건 가운데 저는 명시적인 기준으로 선언적 내용들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 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중점심사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적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2안>의 주문 첫 번째 다음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으로 한다. 다음에 동그라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주문에 추가를 한다, 이것이 안입니다.

○ 혀 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일단 전제는 다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합니다만 자꾸 조건을 계속 붙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성안된 안은 <1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1안>과 지금 방금 <2안>이 수정된 수정된 <2안> 이렇게 2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어느 안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금 자세히 못 들어서….

○ 한상혁 위원장

- 거부안 <1안>과 지금 <2안>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되었으니까 수정된 <2안> 2가지 안건 중에….

○ 안형환 상임위원

- 왜 <3안>은 빼십니까? <3안> 조건 없이 승인하자는 것.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아까 조율한 것으로 봐서….

○ 허 육 심사위원

- 아까 제시했었던….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아까 방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 안형환 상임위원

- 거기에서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었지요.

○ 한상혁 위원장

- 그럼 조건 없는 재승인(안)을 <3안>으로 해서 이 3개 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씀하시고….

○ 표철수 상임위원

- 재승인 심사는 여러 가지 사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심사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건을 부가하는 것 자체도 규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고 절제된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안, 수정안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더 이상의 조건을 계속 달면서 이렇게 계속 승인을 허락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문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을 정도로 저는 정말 종합방송채널사업사들이 다시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단다면 저는 승인 취소하라는 <1안>에서 <2안>이라는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허 육 상임위원

- 저도 수정된 <2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안을 포함해서 제가 아까 붙였던 그 내용이 포함된 수정 <2안>을 지지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 위원님.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조건 없이 재승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한다면 제가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결 절차를 진행할까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좋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이 모아지긴 했는데 굳이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저 혼자 내봤자 소수 의견인 것 같고, 다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수정된 <2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수정된 <2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록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 <붙임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중점심사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2>의 재승인 조건 중 <2>, <3>, <4>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재승인 조건 중에는 <4>번 조건에서 기존 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4건 이하를 5건 이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하나만 실무진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선방송의 경우 이른바 일진 아웃제, 이것이 영구히 출연을 정지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개선됩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선방송 측에서는 일진 아웃제의 경우에 무기한 출연정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채널에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재확인을 위해서 읽어주시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주)채널에이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한다.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가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도 조금 전에 TV조선 논의를 하면서 수정된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표 위원님께서 그 부분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 표철수 상임위원

- 원래 여기에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취재 윤리와 관련된 사안은 방통위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재승인 심사기간 중에 이런 사안이 생겨서 사실확인 차원에서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취재과정에서 있었던 취재기자의 일탈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기획한 것인지 회사 차원의 기획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방송 언론생활을 해 온 제 경험에 비추어서 회사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기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안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태의 조건 부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또 말씀하시지요.

○ 허 육 상임위원

- 최근 불거진 (주)채널에이의 공정보도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자율 심의와 내부 윤리강령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널에이에 대한 철회권 유보를 포함시킨 의결주문에 저는 동의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철회권 유보를 명시해서 재승인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종편 채널사업자 재승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채널에이의 공정보도 위반사건의 처리를 놓고 일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주)채널에이의 기존 방송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고 재승인 심사를 다시 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채널에이의 자체 진상조사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승인을 미룬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둘째는 (주)채널에이의 공정보도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취재윤리 위반사건이라는 표현 외에 협박 취재사건, 검언 유착 사건 등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의결서에 취재윤리 위반사건이라고 표현할 경우에 사건 자체를 기자 개인이 특종을 위해서 과도한 취재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을 축소시켜서 예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보도 위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건이 보도본부 간부와 회사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취재의도와 취재방법 등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수준을 넘어서 검찰개혁의 무산, 또는 선거 개입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채널A가 재승인 심사를 받기 전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기존 심사 점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권의 유보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철회권의 유보는 허가나 승인 해제 조건의 특별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철회권이 유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회조건을 명시해서 공익상 필요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만큼,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의 공정보도 위반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 재승인을 연장하는 방안과 철회권 유보를 포함시킨 재승인 처분(안)을 형량, 즉 저울질해 볼 때 후자가 재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붙임>에서 밝힌 (주)채널에이의 수정된 조건들은 아까 조선방송과 마찬가지로 수정되어야겠지요. 그 수정 사안을 담은 13개 재승인 조건, 그다음에 또한 4가지 권고사항 모두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주문에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TV조선 때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채널에이 같은 경우 과락 점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취재기자의 윤리 관련 건을 가지고 방송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취재윤리 관련 건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재기자의 일부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방송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의 자율심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본다면 이것은 게이트키핑(gate keeping)에 의해서 이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런 조건을 달기 시작한다면 어느 언론사가, 어느 방송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조선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보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송편성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도와 관련된, 또 취재윤리와 관련된 일부 기자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보도와 관련된 그것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면 나머지 교양·오락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방송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부분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주)채널에이는 심사결과 점수나 배점 여러 항목에서 승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

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피해자가 최소한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의 저널리즘이 정말 다시 초라한 그런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 언론이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또 다른 사건이고,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것이 무형의 큰 피해를 우리 언론계 전체에 가져온 사건이다, 아직까지 그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지금 이 시점에서 (주)채널에이 소속기자의 방송윤리의 문제로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검찰 출입기자와 검찰의 검언유착이라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다시 이슈가 되어서 취재원과의 녹취록과 서신 내용의 부분 공개는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하더라도 기자 개인의 윤리 문제 차원을 넘어서 협박죄나 이런 형법 위반이나 방송법 위반의 의혹까지 저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철회권 유보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야 한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방통위에서도 채널에이 대표 그리고 진상조사위원장과의 진술을 듣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차 제대로 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기자 선에서 저지른 단순한 윤리강령 위반에 한정되는지, 부장이나 국장 이런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 보고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정말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러면 어디까지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입기자가 검사장과 유착되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이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장과의 친분 과시용으로 일종의 기자의 자작극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말처럼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이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이야기들, “3월 말, 4월 초가 좋다”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불리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자칫 방통위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회권을 유보해서 조건을 단다는 허 옥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표 위원님, 조건 <7>번 법정제재 4건, 5건 이 부분….

○ 표철수 상임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채널에이 조건 가운데 <7>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법정제재, 이것은 (주)조선방송과 똑같이 여기에도 인권보호 부문과 윤리성 부문이 새로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4건을 5건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 위원님.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만 수정하면 원안에 동의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표철수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채널에이 조건 부분에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그런 함의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지금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 주문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가 회사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고 외부에 개입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무작정 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그 문안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처음 발언한 대로 회사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회사 내 조사, 또 외부자문위원회의 검증 이런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거기에 실제로 함의가 회사 차원에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이냐고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런데 회사 차원이라는 표현을 여기 주문에 넣기에는 '회사 차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 한상혁 위원장

- 여기에 있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부분으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승인·재승인을 철회하는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청문을 거치고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장님, 부연설명도 있었으니까,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이 건에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4건이 5건으로 수정된 원안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도 굳이 표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아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표결하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표결 준비를 해 주시지요. 보니까 <1안>이 성립 안 됐네요. <1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재승인 없는,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되겠네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어차피 무기명 투표가 아니니까 표결을 따로 준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의사를 명확히 다 밝혔고 그것이 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냥 표결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표결해도 같은 절차가 나올 것 같아서 한 위원님이 이 사안에 관련된 반대의견들을 명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수정된 이 의결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입장이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표결을 한들 안 한들 이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소수인 <1안>은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방송에도 똑같이 부여된 사항인데, 홈쇼핑 연계편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3회 이상 고지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협찬을 받았습니다'라고만 고지하면 시청자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안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래서 기준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문구 라든가 어떤 식으로 고지할 지에 대해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다만, 이것이 협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찬고지에 관한 방통위 규칙에 어긋나면 그 취지 와는 달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주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실은 홈쇼핑 연계편성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모 방송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청자를 속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뻔히 바로 옆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제품이 굉장히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기 때문에 방금 실무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반드시 시청자들이 '아, 저것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만든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5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하실 분이 최소한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규정은 올해 말에 있게 될 지상파 재허가에서도 반드시 조건으로 부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보·막말·편파 방송, 인권보호, 윤리성 이것과 관련된 방심위 법정제재,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관련 이런 조건들도 반드시 지상파 재허가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편이나 지상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우리 정책목표에도 부합되고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가지 연계 편성 부분이 지상파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종편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제재 그 부분은 나중에 지상파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원래 법정제재 4건 오보·막말·편파 부분은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종편이 초기에 이것이 심각했기 때문에 조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상파가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봐서 이것이 심각하다면 지상파도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드리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상파가 홈쇼핑 연계편성이 많다고 한,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 표철수 상임위원

- 지난번에 조사한 데 따르면 특정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일정 기간에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종편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왜 오보·막말·편파 방송 이런 것은 지상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5기 방통위원회에서는 꼭 이것을 반영해주시기를 정말 앙청 드립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5기가 될 것 같으니까 주신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5기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건을 붙여서 한 이 부분들은 만약 방송사에서 작성하고 법정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그런 입법이나 그런 행정처분을 할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청의 기본원칙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법 문제를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무처에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만일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정성 문제는 충분히 토론의 가치가 있고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심사의 가장 근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방송법에 정해진 방송법과 그리고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공정성이라는 조항이 곳곳에 되어 있고, 심사기준에도 첫 번째에 공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점심사사항에도 또 위원회에서 합의하신 중점심사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일 근간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성 문제는 법과 기준에 따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 심사 건을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 결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5기 때는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선언적 의미인 것인지, 또 이 부분이 과연 행정청이 어디까지 재량권을 발휘해서 처분 내릴 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지금 행정권에 있어서 재량의 남용 부분에 관한 우려를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5기 때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저는 방송·통신 행정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 그리고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법치행정입니다. 행정이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 행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복잡다단한 행정행위 전반을 법률로 다 관장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조리라고 하는 일반행정법을 보완하는 원칙 중 평등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그것이 결국은 사업자들의 피해 최소화의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피해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4기 방통위의 정책적 목표가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 구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사업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본질적 주인인 국민의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5기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피해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시청자와 이용자들에게 진정으로 피해가 최소화되고 있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 행정처분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 가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속기록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유념하고 5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방송, 저희들이 반드시 채택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과도한 확대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항상 국민들 앞에 겸허하고 사업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임무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서….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난번 보도전문 방송에 대한 일부 방송사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른 두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 원칙이 지금 지역민방을 비롯한 지상파사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적용될 수 있게 이번 연말에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 위원님과 5기를 같이 할 것 같은데 우려가 앞섭니다. 저는 방송사업자에게도 서비스하고 최대 도움을 드려야 된다,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존재 목적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대원칙, 그리고 공적책임을 부여한 것은 바로 시청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최대한의 정보를 서비스

한다는 그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규제가 아니라 방송 스스로가 만든 시청자위원회 제도라든가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자신들이 만든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지켜 주십사,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조건을 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사업자도 생각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방통위는 최종 미디어 소비자인 시청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내실화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신 말 100%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의 존립 근거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여전상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현실 여전상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피해할 것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방송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방송을 예속화시켜서 빅브라더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방송 행정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지적에 안 위원님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올해로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편PP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이 묻는다”라는 시청자 의견청취 방식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다양하고 건설적인 여러 의견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고 종편PP 역시 한 번 더 자기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종편PP 스스로가 특허사업자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X.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종합편성	(주)조선방송	조건부 재승인	2023년 4월 21일
	(주)채널에이	재승인	2024년 4월 21일
보도전문	(주)와이티엔	재승인	2024년 3월 31일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2024년 3월 31일

2. 시청자 의견 접수('국민이 묻는다' 포함) 결과 및 반영여부

- (접수기간) 2019. 12. 20.(금) ~ 2020. 1. 19.(일)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우편, 방문
- (접수결과) 총 32,355건
- (반영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국민이 묻는다' 포함)을 재승인 심사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국민을 대신해 재승인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였음